

제6부 요약

제6부는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에 대해 다룬다. 정부에서는 안전한 청소년 활동을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 점검'을 각 분야별 안전점검 전문 공공기관과 연계·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2005년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오고 있으며, 기존 학교폭력 대책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17. 12. 22.) 및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대책」(18. 8. 31.)을 발표하였다. 2019년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통해 학교의 교육적 해결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2019. 1. 30.)하였다. 2020년에는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제4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를 수립(2020. 1. 15.)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수립(2021. 4. 15.)하여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아동학대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2014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전국에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전문 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020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되었고,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본부에서 아동 학대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년 약물관련 제도 및 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약물예방에 관한 국제적 표준에 적합한 제도와 법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궁극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에 대한 사회적 관리 및 강화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는 사이버 역기능 해소를 위해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대응의 일환으로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심각한 수준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의 치유를 돕기 위해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161개 치료협력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치료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성범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21년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중앙지원센터 1개소(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역지원센터 17개소를 운영하였다.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상정보 고지 제도와 관련하여 2018년 7월부터는 우편고지 된 고지정보에 성범죄자의 실제거주지 등이 사실과 다르게 잘못 기재된 경우 누구든지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정청구의 처리절차를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를 받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자나 보호기관의 장이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피해 대응 요령'을 인포그래픽과 카툰(Cartoon) 형식으로 제작하여 우편고지서와 함께 동봉·발송하고 있으며, '성범죄자 알림e'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0년에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고 우편고지가 비용 대비 효과성이 저조하다는 의견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하였다. 전자고지는 아동·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둔 세대의 세대주 스마트폰으로 발송되며 세대주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고지정보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데, 2018년 7월 17일부터는 대학, 학생상담 지원시설, 장애인특수 교육지원센터가, 2018년 9월 14일부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등이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되었으며, 2020년 5월 27일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이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되었다.

제6부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

제1장 청소년 안전

제2장 청소년 유해환경 및 매체환경

제3장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제1장 청소년 안전

1.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위생점검

가. 도입 배경 및 경과

청소년수련시설 내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가스, 위생 등 총 7개 분야별로 안전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은 안전한 수련활동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의3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2006년부터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야영장·특화시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014년 7월 22일부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년 주기로 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2017. 3. 21.)에 따라 위생 분야에 대한 점검이 추가되었다.

나.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위생점검 추진 현황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위생점검의 전문성 강화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각 분야별 점검은 해당 분야 전문 공공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다. 건축, 토목, 기계 분야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소방 분야는 ‘한국소방안전원’, 전기분야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가스분야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위생 분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각각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각 분야별 점검등급과 안전점검 주요 내용 및 평가기준은 <표 6-1-1> ~ <표 6-1-3>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위생 점검 결과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정책사업 추진 시에도 반영된다.

〈표 6-1-1〉 분야별 점검등급 구분

점검분야	등급 구분	비고
건축	A, B, C, D, E(5등급)	D, E 등급 : 부적합 처리
토목	A, B, C, D, E(5등급)	D, E 등급 : 부적합 처리
기계	A, B, C, D, E(5등급)	D, E 등급 : 부적합 처리
소방	A, B, C, D, E(5등급)	D, E 등급 : 부적합 처리
전기	적합, 부적합(2등급)	부적합 등급 : 부적합 처리
가스	적합, 부적합(2등급)	부적합 등급 : 부적합 처리
위생	적합, 부적합(2등급)	부적합 등급 : 부적합 처리

자료 : 여성가족부(2021).

〈표 6-1-2〉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주요 내용

분야	주요 점검 내용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자체안전점검 수행여부 확인 및 검토 • 분야별 설비 및 각종 구비서류 현황 • 시설 환경(쾌적성 등) • 비상연락망 구축 등 안전관리 계획 • 보험가입여부 확인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도서 및 유지관리 대장 작성·비치 여부 및 실태 • 건축물 내·외부 균열 • 주요 부재 변형 상태(기울기, 처짐) • 콘크리트 부재 결함 상태(철근 부식 노출, 콘크리트 파손) • 철골 부재 결함 상태(철골 부식, 내화 피복 상태) • 마감재 결함 및 미끄럼 방지 상태(복도, 욕실, 계단 등) • 배수 상태(지붕, 욕실, 주방) • 증축 시 접합부 결함 상태 • 누수 여부(지붕, 외벽, 욕실, 주방, 수영장 등) • 비상구 통로 관리 상태 • 각종 안전 난간 상태 • 방화 벽체, 각종 안전 표지판 등 부착 상태 등
토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축·옹벽 전도 및 토사 안전성 • 담장 전도 여부 • 파고라·벤치·담장 시설 등 결함 상태 • 단지 내 포장 및 배수 상태 • 부속시설 안전 상태(천막, 각종 수련시설) 등

분야	주요 점검 내용
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난방설비 상태 • 반송설비 상태 • 위생설비 상태
소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관리 및 위험물 관리상태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상태 • 소화활동설비 및 피난활동설비 상태 • 감지기 및 소방펌프 상태
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정기점검 여부, 누전차단기, 분전반, 옥내내선 상태 등
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정기점검 여부, 가스배관, 배기통, 자동 차단장치 등
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급식소 신고여부, 청결상태, 식품유통기한 등

자료 : 여성가족부(2021).

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결과

2021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청소년수련 시설협회’에서 수행하였으며, 2014년부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2021년 청소년 수련시설 각 분야별 안전점검 결과는 <표 6-1-3>와 같고, 여성가족부 및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홈페이지¹⁾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6-1-3> 2021년 분야별 점검 결과

◎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가스 분야

(개소 : 백분율)

분야	합계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건축	492	325	(66.1%)	159	(32.3%)	8	(1.6%)	-	-	-	-
토목	492	366	(74.4%)	113	(23%)	13	(2.6%)	-	-	-	-

1)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홈페이지: www.youth.go.kr.

분야	합계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기계	492	361	(73.4%)	125	(25.4%)	6	(1.2%)	-	-	-	-
소방	492	469	(95.3%)	19	(3.9%)	4	(0.8%)	-	-	-	-
전기	492	490(99.6%)						2(0.4%)			
가스*	205	203(99.0%)						2(1.0%)			

주 : * (가스) 가스설비 설치시설 대상.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02-2100-6262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정책을 수립·시행하였으며,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2005년 정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1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05~2009)」을 수립·시행하였고, 2007년 2월에 '5대 폭력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의 2년간 성과와 문제점, 저해 요인을 심층 분석하여 중점 과제 15개를 선정·추진하였다. 「제1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이 2009년 종료됨에 따라 「제2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10~2014)」을 수립·시행하였다.

이후 학교폭력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불러일으킨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발생하고 집단 따돌림, 학생들의 자살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2012년 2월 6일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2012. 2. 6.)하였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7대 영역 54개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 하에 철저하게 대응'하고 '학교-가정-사회의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수립되었다. 학교 현장에서는 그간 학생·교사·학부모가 협력하여 학교폭력을 해결하고 학생들의 배려·공감 능력 향상 등 인성 교육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중대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학교폭력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2013년 정부는 학교폭력을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유통과 함께 4대 악으로 규정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2013. 7. 23.)하였다.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근원적인 해법은 현장에 있다는 판단 하에 2012년부터 도입된 ‘학교폭력 실태 조사’의 결과를 분석하고 기존 대책의 성과를 토대로 사후 대응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었다. 동 계획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어울림’)을 개발·보급하는 등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고, 언어 폭력, 사이버폭력, 집단따돌림 등 학교폭력 유형별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각 학교별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 유형별·학교급별 대응을 강화하였다.

이후 정부는 2014년 12월에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비전으로 삼고, ‘학교폭력 및 학생 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 목표 하에 전반적인 학교문화 개선, 학교폭력 대상별·유형별·시기별 맞춤형 대응 강화, 학교폭력에 대한 단위 학교의 실효성 있는 자율적 예방 활동 활성화 등이 포함된 5대 영역, 16개 추진과제가 설정되어 추진되었다.

한편 2015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중·고등학생 피해응답률에 비해 높았으며,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 및 피해자 수가 증가하는 등 초등학교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 교육부는 4대 중점 추진과제와 1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된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2015. 8. 7.)하였다. 또한, 2017년에 잇따른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이 연이어 발생하고 2018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기존 학교폭력 대책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2017. 12. 22.) 및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대책」(2018. 8. 31.)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2011년 이후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를 강화하기 위해 단위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사안을 심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으나, 모든 학교폭력 사안을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가해학생 간 소송이 증가하고 학교의 교육역량이 소진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학교폭력사안을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통해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해결하여 학교의 교육적 해결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2019. 1. 30.)하였다. 2020년에는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제4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2020~2024)」을 수립(2020. 1. 15.)하고,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학교문화 조성, 학교의 신뢰 제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5대 영역에 걸쳐 14개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20. 9~10월) 결과 피해 피해유형 중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2021년에는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수립(2021. 4. 15.)하고, ‘사이버폭력 제로 환경 조성으로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목표로 5대 영역에 걸쳐 18개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가.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2013)

2013년, 학교폭력 문제해결의 근원적인 해법은 현장에 있다는 판단 하에 201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201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토대로 2013년 7월 23일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이 마련되었다.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비전으로 삼고 단위 학교의 자율적 예방활동 활성화와 피해학생 보호·지원 강화, 가해학생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표 6-1-4>와 같이 5개 영역, 20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었다.

<표 6-1-4> 「7.23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

영역	추진과제
학교 현장의 다양한 자율적 예방 활동 지원 강화	1. “어울림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예방교육 내실화 2. 학교의 자율적인 예방활동 활성화 3. 학교의 자율적인 예방활동 적극 지원 및 유도 4.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 및 대안교육 활성화
학교폭력 유형별·지역별·학교급별 맞춤형 대응 강화	5. 언어문화 개선을 통한 언어폭력 예방 6. 사이버폭력 신고 및 예방교육 활성화 7. 처벌보다는 관계회복에 역점을 둔 집단 따돌림 해소 8. 성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치유·보호 강화 9.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폭력서클 대응 강화 10. 지역별·학교급별 맞춤형 대책 수립·추진

- 제 1 부
- 제 2 부
- 제 3 부
- 제 4 부
- 제 5 부
- 제 6 부
- 제 7 부
- 제 8 부
- 제 9 부
- 제 10 부
- 부 록

영역	추진과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강화	11. 학교폭력 진단 및 관리 강화 12.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강화 13. 가해학생 선도 및 조치 강화 14.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여건 등 조성
학교역량 제고 및 은폐·축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15. 학교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 16. 은폐·축소 및 부적절 대처 관리·감독 강화
안전한 학교환경 및 전 사회적 대응 강화	17. 학교폭력 신고 시스템 개선 18. 학교안전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19. 지역사회의 예방 및 근절 활동 확산 20. 학교폭력대책 추진체계 재정비

자료 : 교육부(2013).

2013년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5대 영역별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현장의 자율적 예방활동 지원을 강화하였다. 즉, 국가 수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인 ‘어울림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단위학교의 체험형 예방교육을 체계화하고 내실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연극 및 뮤지컬 등 감성 중심의 문화 체험형 예방교육을 활성화하였다. 또한, ‘또래상담’, ‘또래조정’, ‘학생 자치법정’ 등 또래활동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이 중심이 되는 자율적인 학교폭력 문제 해결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고,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우수학교 (일명 ‘꾸미움 학교’) 3,000개교를 선정·육성하였다.

둘째,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였다. 언어폭력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욕설 퇴치 아이디어 공모전’ 등 언어문화 개선 활동을 확대하였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사이버폭력 발생 시, 학교전담경찰관을 대화방에 초대하여 즉시 폭력상황에 개입·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청소년 대상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상설 ‘인터넷 치유학교 설치 및 유관기관(상담복지센터)과 연계하여 ‘인터넷 중독 전담 전문상담사’를 양성·배치하였다.

셋째,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를 내실화하였다. 시·도별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전담 지원 기관’을 구축함은 물론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자살 위험,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상담, 치료연계, 사례관리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학생 정신건강 지역협력 사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가해학생을 위한 가족 단위의 다양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위(Wee) 프로젝트’를 확대하였다.

넷째, 현장의 학교폭력 대처 역량을 제고하고 은폐·축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전국 교육장 및 학교장 대상 연수 실시를 강화하였으며, 학교폭력 은폐·축소 등 관련 민원을 즉시 신고하여 신속·공정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학교폭력 민원신문고’ 및 ‘학교폭력특별점검단’을 운영하였다.

다섯째,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및 전 사회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하였고, CCTV와 학생보호인력을 확대하며 학생보호인력의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하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경찰-학교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교사와 전담경찰관 간 정례 협의 체계’를 구축하였다.

나.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

학교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하에 2012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및 2013년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이 수립되고 시행됨으로써 2012년 이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낮아지고,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 센터’ 신고 및 처리 건수도 줄어드는 등 학교폭력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 및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의 배치가 확대되고, 대다수 학교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한편, 학교별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어울림’)등을 통한 예방교육 운영시간이 증가하였고 학생 참여·활동 중심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위(Wee)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치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실시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추진상의 한계점도 일부 발견되었다. 먼저, 학교폭력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 현장 문화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학교폭력이 언제든지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학교폭력 안전 인프라의 양적 확충에 상응하는 질적 제고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즉, CCTV 설치 대수(설치율)는 2013년 141,790대(10.5%)에서 2014년 164,282대(25.5%)로 양적인 확충은 이루어졌으나, 고화질 CCTV 비율이 여전히 낮고, 실시간 관제에 필요한 통합관제시스템의 구축이 부족하였다. 아울러 학교폭력을 신고한 학생 중 ‘신고효과를 봤다’는 학생은 36%에 불과하여 신고 후 처리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재심기관이 달라 상호 모순된 결정이 나오는 사례가 있는 등 혼선이 초래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아울러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가정·사회에 걸친 전반적인 폭력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에 2014년 12월에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2015년부터 시행된 「제3차 기본계획」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5대 영역, 16개 추진과제로 구성하였다.

〈표 6-1-5〉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

영역	추진과제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1. 인성 함양을 통한 학교폭력 사전 예방 2. 또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 3. 체험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4. 폭력유형 및 추세에 따른 대응 강화
학교폭력 대응 안전인프라 확충	5. 학교폭력 위해요인 지속적 해소 6. 학생보호인력 확충 7. 학교 밖 안전관리 강화
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 역량 강화	8. 학교폭력 조기 감지·신고 체계 강화 9. 사안처리의 공정성 확보 10.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11.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내실화 12. 가해학생 맞춤형 교육 및 선도 강화 13.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14. 가정의 역할 및 교육기능 강화 15. 지역사회 역할 및 책무성 강화 16. 대국민 인식제고 및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자료 : 교육부(2014).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의 5대 영역별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본적인 학교 문화의 변화를 위해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였다. 주요 교과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7대 안전교육 표준(안)에 폭력·신변 안전교육을 포함하였다

둘째, 학교폭력 안전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학교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을 확대하고 학교의 신·개축 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의무화하였으며,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학교전담경찰관 및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을 확충하였다.



셋째, 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다. 담임교사의 확인,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117 신고·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 위촉을 확대하는 한편,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 은폐·축소 등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였다.

넷째, 피해학생 보호·치유를 위해 위(Wee) 프로젝트를 통해 피해학생 상담을 강화하고, 치료비 지원대상 기관 및 치료비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피해학생 통합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또한 가해학생 특별교육 지원기관을 확대하였으며,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유형·수준에 따라 맞춤형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다섯째, 전 사회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 교육을 확대하였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지역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학교별 학교폭력 정보공시, 지역사회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책무성을 강화하였다.

다.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201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제1차~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및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이 수립·추진되어 학교폭력 발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이 중·고등학생 피해 응답률에 비해 높고, 초등학교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 및 피해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2015. 8. 7.) 하였다.

동 대책에서는 중·고등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이 더 많은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초등학생은 뇌의 감정조절기관이 발달하는 시기로 감정이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고,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 유해매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또한 가정적 요인(맞벌이·학부모 가족 증가, 아동학대 등)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초등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미흡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대책」은 4대 영역,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추진되었다.

〈표 6-1-6〉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영역	추진과제
1. 정신 의학적 지원 강화	1. 위기 의심학생 조기감지 2. 고위기 학생 선별 및 지원 3. 고위기 학생 치료 지원
2. 유해매체 노출 대책	4.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조치 5.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위험군 상담 및 치유 6. 유해요인 예방교육 지원 강화
3. 가정의 역할 제고	7. 가족관계 회복 및 부모역할 교육 확대 8. 학부모 소통 활성화 및 체험형 치유 강화
4. 학교의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9. 학교폭력 유형별 예방교육 추진 10. 초등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예방교육 강화 11. 담임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역량 강화 12. 초등학교 상담 역량 강화

자료 : 교육부(2015).

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지원 방안」 (2015)

2014년 4월 초등학교에서 한 남성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사건을 비롯해 본드 흡입 남성의 돌봄교실 침입 사건, 학교 부적응 학생의 방화사건, 학교 인근 성범죄자 증가 등 학생과 학교의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슈들이 다수 발생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5개 영역 11개 과제로 구성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지원 방안」을 마련(2015. 10. 16.)하였다.

〈표 6-1-7〉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지원 방안」

영역	추진과제
1. 학생보호인력 확충 및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확충 및 내실화 • 학교전담경찰관 지원 체계 구축
2. 안전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출입자 통제 및 관리 강화 • CCTV 성능 개선 및 관제 강화 •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선편드 점진적 확대

영역	추진과제
3. 학생안전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안심알리미 보급 확대 및 기능 개선 • 스마트폰 보유 학생을 위한 앱서비스 확충
4. 안전 인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의 책무성 강화 •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5. 부적응 학생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응 학생 조기 감지·진단 기능 강화 • 학교-Wee센터-전문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 구축

자료 : 교육부(2015).

마.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및 보완 대책((2017~2018)

2017년과 2018년에 잇따라 강력한 청소년 폭력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에 엄정 대처하고, 동시에 피해자 지원과 가해학생 선도·교육,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2017. 12. 22.)과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2018. 8. 31.)을 발표하였다.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에는 다음과 같이 6대 영역에서 24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표 6-1-8〉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

영역	추진과제
청소년 폭력 엄정대처 및 선도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 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 연계 강화 •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대상 청소년 집중관리 • 소년범 관리환경 개선을 통한 재범 예방
청소년 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학생 등을 위한 전국단위 전담지원 기관 확충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학생 전학관련 지침 마련 • 마을변호사와 청소년 폭력 사안처리 연계 강화 • 병원형/가정형 Wee센터 체제 구축 • 청소년 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종합지원 강화
기관 간 정보공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관찰소와 경찰간 정보공유 • 신속한 가해자 정보 공유 • 자살 위기상황 신속 개입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영역	추진과제
학교폭력 대응체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적 관계회복 중심의 학교폭력예방법 등 개정 추진 • 학교폭력 피해자 특별교육 내실화 • '(가칭) 학생 상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 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 강화 • 학교폭력 실태조사 체계 정비 및 심층분석 방안 도입
청소년폭력 예방 및 문화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성교육 기반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 체험형 청소년 폭력 예방교육 강화 • 모든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 •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 • 청소년 유해물에 대한 관리 강화 • 사이버상의 2차 피해 대응 강화
민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 협동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자료 : 교육부(2018).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폭력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선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10~13세)과 촉법소년의 범 죄 증가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법무부와 협력하여 현재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또한 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부 위(Wee) 프로젝트,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협력하여 범죄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였다.

둘째, 청소년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2018년 기준 1곳인 전국 단위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을 확대하고 가정형 위(Wee)센터 확충, 병원형 위(Wee)센터 모델 추가개발 등 위(Wee) 프로젝트 내실화도 진행하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청소년안전망(CYS-Net)을 기반으로 청소년 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셋째,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법무부와 경찰 중심으로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에 대한 경찰과 보호관찰소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였으며, 경찰과 학교가 가해자의 정보를 신속히 공유 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서 자살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였다.

넷째, 학교폭력 대응체제를 정비하였다. 경미한 학교폭력은 전담기구의 확인을 거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경미한 가해학생 조치에 한하여 학생부에 미기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할 경우 징계를 강화하고 학교장 중심으로 교육적 관계회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가해학생·보호자 특별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

치유·상담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임용과정을 내실화하였다.

다섯째, 청소년 폭력 예방 및 문화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체험·활동 중심의 청소년 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칭) 청소년 정책 모니터링단’을 구축하여 민간기관이 청소년들의 참여와 함께 정부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협업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바.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2019)

정부는 2011년 이후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를 강화하기 위해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사안을 심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으나, 모든 학교폭력 사안을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가해학생 간 소송이 증가하고 학교의 교육역량이 소진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학부모·교원·민간전문가로 정책숙려제 참여단을 구성하고 토론을 거쳐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2019. 1. 30.)하였다. 첫째, 중대한 학교폭력은 엄중하게 대처하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기로 하였다. 둘째,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피해학생, 학부모 모두 위원회 개최를 원치 않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이 교육적 해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학교폭력 사안 은폐·축소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교육적 해결을 한 경우에도 피해학생, 학부모가 잘못된 정보에 의해 판단하였거나 새로운 피해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였다. 셋째,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해 전국단위 피해학생 보호 전담기관을 추가 신설하기로 하였다.

사.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이 2019년에 종료됨에 따라 2020년에는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2020. 1. 15.)하고, 이에 따라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학교문화 조성, 학교의 신뢰 제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5대 영역에 걸쳐 14개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표 6-1-9〉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영역	추진과제
학교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	1. 학교·학급 단위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2. 학생 참여·체험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확대 3. 학교폭력 유형 추세 대응 예방활동 강화 4. 전 사회적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문화 조성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강화	5. 학교폭력 조기 감지 및 대응체계 강화 6. 학교의 교육적 해결역량 제고 7. 사안처리의 공정성·전문성 확보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시스템 강화	8. 피해학생 맞춤형 보호·지원체계 강화 9. 사후지원 강화 및 학교 안팎 협력체계 구축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	10. 가해학생 교육·선도 내실화 11.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대처
전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	12. 가정의 교육적 역할 강화 13. 지역사회의 역할 및 책무성 강화 14. 전사회적 대응체계 강화 및 대국민 인식제고

첫째, 학교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단위학교에서 교과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활동지 등의 형태로 개발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교과연계 어울림’)을 확대한다. 또한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등 정서적 폭력의 비중 증가와 초등학생 학교폭력 경험 증가 등 학교폭력 추세변화를 고려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지원한다.

둘째,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을 강화한다. 2019년 9월부터 시행된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활성화하고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또한 2020년 3월부터 운영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안착을 지원하고 심의의 공정성·전문성 신장을 위한 심의위원 연수를 실시한다.

셋째, 피해학생 보호·치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피해학생 지원기관을 내실화하여, 피해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피해학생 지원기관 이용만족도를 조사하여 기관 운영을 평가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등 피해학생 요구를 반영하여 보호 및 치유 체계를 보완한다.

넷째,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대처하고 가해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교육을 강화한다.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우범소년 송치제도와 통고제를 적극 활용한다. 또한,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특별교육기관의 질 관리를 강화하여 학교폭력 재발방지 효과를 높인다.

다섯째, 전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를 구축한다.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부모교육에 참여하도록 교육이수 유도방안을 마련하고,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실질적 학교폭력 예방활동 확대를 추진한다.

아.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2021)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20. 9~10월) 결과 피해 응답률은 전반적으로 감소(’19, 1.6% → ’20, 0.9%)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증가에 따른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시간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소통 증가 등의 원인으로 피해유형 중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19, 8.9% → ’20, 12.3%)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1년에는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수립(2021. 4. 15.)하고, ‘사이버폭력 제로 환경 조성으로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목표로 5대 영역에 걸쳐 18개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표 6-1-10〉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영역	추진과제
교육공동체 사이버폭력 예방역량 제고	1.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유아) 교육·활동 지원 2. 교원의 사이버폭력 예방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3. 부모 대상 대면·비대면 교육·활동 지원 4. 디지털 성폭력 예방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5. 사이버폭력 대응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6.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및 신고체계 강화 7. 청소년 유해매체 차단 및 모니터링 활성화 8. 교육 현장의 사이버폭력 대응·심의역량 제고
피해학생 보호·치유 지원	9. 피해학생 초기보호 강화 10.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11.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상담·치유 지원 강화 12. 부처 협력을 통한 피해학생 지원 제도화
가해학생 교육·선도 강화	13. 가해학생 특별교육 내실화 14. 2차 가해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15. 디지털 성폭력 가해학생 대상 교육적 조치 시행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영역	추진과제
전사회적 협력을 통한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16. 민관협력을 통한 사이버폭력 예방 활동·캠페인 전개 17. 사이버폭력 대응 강화를 위한 주기적 점검체계 구축 18. 부처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첫째, 교육공동체 사이버폭력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과연계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미디어 교육 교수·학습 자료’ 등을 개발하여 단위학교에서 교과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이버폭력 예방 공동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학생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체계적인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양성과정에 미디어교육 내용을 확대하고, 교과연계형 미디어 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을 통해 교원의 미디어교육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학부모 원격연수 및 각종 웹콘텐츠 보급을 통해 학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제고 및 가정의 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둘째, 사이버 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을 강화한다. '21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학교 사이버폭력의 유형별·지역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에도 디지털 성폭력 관련 문항을 포함하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교원의 사이버폭력 사안의 인지·조사·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세분화된 지침을 마련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이버폭력 심의역량 제고를 위해 위원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유형/피해/처벌 등을 포함한 사이버폭력 이해 심층연수를 추진한다.

셋째, 피해학생 보호·치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위(Wee)센터별로 중대한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사례관리자를 지정하여 상담·병원치료·법률상담 등 연계지원을 실시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담임·전문상담(교)사의 상담, 외부기관과 연계한 상담·치료 등을 지원하여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초기상담지원과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상담역량 강화를 위해 위(Wee) 클래스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대상으로 연수를 강화한다.

넷째, 가해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교육을 강화한다.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교육·선도 강화를 위해 특별교육프로그램에 처벌내용, 인터넷윤리, 미디어리터러시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표준안을 마련하고,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에 정보통신망 이용행위도 포함되도록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다섯째, 전사회적 협력을 통해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한다. 민관이 협력하여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사업'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활동·캠페인, 올바른 인터넷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신종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응, 학생·교원·학부모 대상 교육 등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관련 부처 간 협력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청)-관계기관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고통과 아픔은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 있으므로, 정부·기업·학계·민간단체 등이 협력하여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044-203-6975

3. 아동학대 대책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정부 차원에서 아동학대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실행한 것은 200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도입 이후부터이다. 「아동복지법」은 1961년 「아동복지법」으로 제정된 이후 20년 동안 특별한 수정 없이 존속되어오다가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1991년에는 「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아동권리의 4대 원칙인 “무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아동참여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국제법상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후 「UN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라는 UN의 권고를 받았다. 1996년 OECD 가입 시에도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화롭고 체계화된 안전수단을 강구하라”는 권고를 받는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아동보호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정부는 2000년 「아동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11개의 아동학대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개정된 법령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을 정의함과 동시에 신고의무, 긴급전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공식적으로 도입된 아동보호체계는 민간위탁 중심으로 운영되어 아동보호의 공적 책임성 부재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다. 2012년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으며, 아동학대를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신고 및 처벌을 통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점진적으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다. 2019년 5월,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발표를 통해 학대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학대아동보호 인프라 확충과 함께 학대조사 업무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020년에 수립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에서도 2022년까지 중앙-시·도-시·군·구 단위의 공적 아동보호 체계 인프라 구축 완료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 전담 인력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 등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를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가. 아동학대 실태²⁾

1) 아동학대 현황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였고, 2001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³⁾를 발간하고 아동학대 발생 현황 및 추이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0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되었고, 현재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보건복지부, 2021)에 의하면,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은 아동학대를 발견하여 보호한 수치로서 추계 아동 인구(만 0~17세)를 기준으로 2020년 4.0%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대비 0.19%p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전라북도 7.9%, 전라남도 7.5%, 울산광역시 6.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낮은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은 서울 2.3%, 경상남도 2.7%였다.

2)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각 년도).

3) 2018년 통계부터는 '아동학대 주요통계'로 명칭을 변경하여 발간함.

〈표 6-1-11〉 지역별 학대피해아동 발견율(2020)

(단위 : 명, 건, %)

구분	추계 아동 인구(만 0~17세)	아동학대사례	피해아동 발견율(인구 천 명당)
서울	1,199,002	2,780	2.3
부산	436,150	1,558	3.6
대구	355,528	1,271	3.6
인천	445,512	2,427	5.4
광주	244,226	698	2.9
대전	231,275	1,363	5.9
울산	188,742	1,234	6.5
경기	2,174,093	7,669	3.5
강원	208,639	1,153	5.5
충북	242,263	1,025	4.2
충남	340,092	1,940	5.7
전북	262,910	2,086	7.9
전남	255,937	1,909	7.5
경북	366,978	1,450	4.0
경남	529,971	1,443	2.7
제주	116,760	562	4.8
세종	80,815	337	4.2
계	7,678,893	30,905	4.0

자료 : 보건복지부(2021).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2020년 기준, 전국 7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된 사례는 총 42,251건으로 전년대비 2.1%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중에서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총 38,929건으로 전체 신고 접수율의 92.1%를 차지했으며, ‘일반상담’은 2,761건(6.5%), ‘동일 신고’는 557건(1.3%), 그리고 ‘해위발생 사례’는 4건(0.0%)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2016년부터 꾸준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6-1-12〉 학대피해아동 발견율(2016~2020)

(단위 : 건, %)

구분	아동학대 의심사례	동일신고 ¹⁾	일반상담	해의발생 사례	계	전년대비 증가율
2016	25,878(87.2)	189(0.6)	3,604(12.1)	3(0.0)	29,674(100.0)	-
2017	30,923(90.5)	292(0.9)	2,951(8.6)	3(0.0)	34,169(100.0)	15.1
2018	33,532(92.1)	420(1.2)	2,464(6.8)	1(0.0)	36,417(100.0)	6.6
2019	38,380(92.7)	449(1.1)	2,560(6.2)	0(0.0)	41,389(100.0)	13.7
2020	38,929(92.1)	557(1.3)	2,761(6.5)	4(0.0)	42,251(100.0)	2.1

주 : 최초 신고접수 이후에 동일한 학대내용(동일시점 및 동일행위)에 대한 신고가 다른 신고자를 통해 접수되는 경우.

자료 : 보건복지부(2021).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2020년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총 30,905건으로 2019년보다 86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112로 통합되고 신고의무가 강화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및 처벌규정이 강화된 이후 매해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구분되며, 여러 유형의 학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중복학대’로 분류될 수 있다. 2020년에는 중복학대가 14,934건(48.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정서학대 8,732건(28.3%), 신체학대 3,807건(12.3%), 방임 2,737건(8.9%), 성학대 695건(2.2%)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학대는 14,934건(48.3%)이었다.

〈표 6-1-13〉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 현황(2016~2020)

(단위 : 건, %)

구분	계	아동학대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학대
2016	18,700(100.0)	2,715(14.5)	3,588(19.2)	493(2.6)	2,924(15.6)	8,980(48.0)
2017	22,367(100.0)	3,285(14.7)	4,728(21.1)	692(3.1)	2,787(12.5)	10,875(48.6)
2018	24,604(100.0)	3,436(14.0)	5,862(23.8)	910(3.7)	2,604(10.6)	11,792(47.9)
2019	30,045(100.0)	4,179(13.9)	7,622(25.4)	883(2.9)	2,885(9.6)	14,476(48.2)
2020	30,905(100.0)	3,807(12.3)	8,732(28.3)	695(2.2)	2,737(8.9)	14,934(48.3)

자료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각 년도).

2) 아동학대행위자, 학대 발생장소, 학대후 조치

2020년 기준,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부모가 25,380건(82.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모는 친부·모, 계부·모, 양부·모를 모두 포함하며, 학대행위자는 친부(43.6%), 친모(35.4%), 계부(1.9%), 계모(1.0%), 양부·모(각 0.1%)의 순이었다. 부모의 비중은 2019년 75.6%에서 2020년 82.1%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2020년에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모에 의한 학대율이 증가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 발생은 2019년 16.6%에서 2020년 9.5%로 감소하였다. 이 역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유치원 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보육교직원 등 대리양육자와의 대면 접촉 급감이 원인으로 예측될 수 있다. 다음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학대행위자는 친인척으로 매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2019년 4.4%에서 2020년 5.4%로 그 비중이 소폭 증가하였다.

〈표 6-1-14〉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2016~2020)

(단위 : 건, %)

구분	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	타인	파악불가	기타	계
2016	15,048(80.5)	795(4.3)	2,173(11.6)	201(1.1)	29(0.2)	454(2.4)	18,700(100.0)
2017	17,177(76.8)	1,067(4.8)	3,343(14.9)	294(1.3)	45(0.2)	441(2.0)	22,367(100.0)
2018	18,919(76.9)	1,114(4.5)	3,906(15.9)	360(1.5)	-	305(1.2)	24,604(100.0)
2019	22,700(75.6)	1,332(4.4)	4,986(16.6)	663(2.2)	-	364(1.2)	30,045(100.0)
2020	25,380(82.1)	1,661(5.4)	2,930(9.5)	565(1.8)	-	369(1.2)	30,905(100.0)

주 : 대리양육자에는 부·모의 동거인, 유치원 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보육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 위탁부, 위탁모, 아이돌보미 등이 포함됨.

자료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각년도).

한편, 아동학대 발생장소는 2020년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87.4%(26,996건)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학교 2.9%(893건), 어린이집·유치원 등 아동보육기관 2.5%(787건), 복지시설 639건(2.1%)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2019년과 비교하면, 가정 내에서의 학대 발생은 9.9%p 증가한 반면, 학교나 아동보육기관에서의 학대 발생은 각각 4.7%p, 2.6%p 감소하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정 내 학대는 증가하고 보육·교육기관 내 학대는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

4) 2019년 아동학대 주요 발생장소는 가정 내 77.5%(23,270건), 학교 7.6%(2,277건), 아동보육기관 5.1%(1,510건의) 순임.

〈표 6-1-15〉 아동학대 발생장소(2020)

(단위 : 건, %)

구분		건수	비율
가정 내	아동 가정 내	26,249	84.9
	학대행위자 가정 내	747	2.4
소계		26,996	87.4
집근처 또는 길가		586	1.9
친척집		193	0.6
이웃집		42	0.1
어린이집		658	2.1
유치원		129	0.4
학교		893	2.9
학원		174	0.6
병원		55	0.2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605	2.0
	기타복지시설	34	0.1
소계		639	2.1
숙박업소		126	0.4
종교시설		37	0.1
기타		377	1.2
계		30,905	100.0

주 : 대리양육자에는 부·모의 동거인, 유치원 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보육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 위탁부, 위탁모, 아이돌보미 등이 포함됨.

자료 : 보건복지부(2021).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아동학대사례 상황을 살펴보면, 2020년 아동학대사례 30,905건 중 당해에 종결된 사례 수는 9,870건 (31.9%), 서비스 지원 등 개입을 진행 중인 사례는 21,035건(68.1%)로 나타났다. 2020년에 발생한 아동학대 피해아동 상황⁵⁾을 살펴보면, 원가정보호가 유지된 사례가 25,916건으로 전체의 83.9%였으며, 분리조치 3,926건(12.7%), 가정복귀 798건(2.6%)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사망한 경우는

5) 피해아동의 상황은 아동의 초기조치와 최종조치를 포함한 전체 상황을 의미함.

90건(0.3%)으로, 전년대비 30건(0.1%p) 증가하였다.

〈표 6-1-16〉 피해아동 상황(2020)

(단위 : 건, %)

구분		건수	비율	
원가정보호	최초			
	최종			
원가정보호 유지		25,916	83.9	
가정보귀	최초			
	원가정보호	82	0.3	
	분리조치	680	2.2	
	기타	36	0.1	
	소계	798	2.6	
분리조치	최초			
	최종			
	분리조치 유지		2,381	7.7
	원가정보호	445	1.4	
	분리조치	1,085	3.5	
	기타	15	0.0	
소계		3,926	12.7	
기타		175	0.6	
사망		90	0.3	
계		30,905	100.0	

주 : 1) 원가정보호 : 피해아동을 실제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주양육자에 의해 계속적으로 보호 받고 있는 경우.

2) 분리조치 : 아동을 실제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주양육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경우, 종래 양육되던 환경을 떠나 다른 누군가(예: 친권자, 친족, 시설 등)에게 보호되는 경우 모두 해당.

3) 가정보귀 : 아동학대로 원가정보호에서 분리보호 된 아동이 원래 가정으로 복귀된 경우.

4) 기타 : 소년원 입소, 행방불명(예: 가출 등) 등으로 인해 아동의 신원확인이 불가한 경우.

자료 : 보건복지부(2021).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나. 아동학대 예방 대책

1) 아동방임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정부는 2006년 4월부터 ‘보건소 아동보호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방문간호서비스’에 ‘아동보호서비스’를 연계한 것으로, 학대 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6년 시범사업은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이 방문건수 대비 16.5%로 나타나는 등 사업성고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 전국 16개 지역에서 보건·복지·교육 통합서비스를 실시하는 ‘희망스타트’ 사업을 착수했다. 2008년 희망스타트 사업은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저소득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2016년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되었다. 드림스타트는 지원대상 아동과 가족에게 사례관리와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방임을 예방하고 방임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및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급증하고 있는 아동학대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시행되었다. 동 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강화 및 현장 출동,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 조치와 보호처분,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특히 아동학대 처벌 및 보호 절차를 대폭 강화하였다. 개정 특례법에는 과거 「형법」에만 있었던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부모는 검사의 청구로 친권을 상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동 법에서는 신고의무자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다. 신고의무자제도(Mandatory Reporting)의 강화는 신고 및 조사를 기초로 하는 아동보호체계의 중요한 작동기제로 간주된다. 200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금지 및 신변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2015년부터 의료인 직군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교육 및 강사양성 사업추진, 신고 직군의 지속적 확대 등을 통해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2020년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신고의무자 범위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유치원은 유치원의 장과 종사자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학교의 장과 종사자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2020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접수 총 38,929건 중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사례는 10,973건(28.2%)으로 2019년의 8,836건(23%)에 비해 5.2%p 증가한 수치이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 법의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사법처리 신청권을 부여하게 되었다.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 등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2021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여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하였다(법제처, 2021a)⁶⁾.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 그 행위의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살인죄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의 선정을 의무화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법제처, 2021a).

다. 아동보호체계의 공적 책임 강화

정부는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0년 10월 전국 16개 시·도에 17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였으며, 2001년 10월에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체계를 갖추었다. 2004년부터는 지역 기관 23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보호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2004년에는 복권기금을 확보하여 아동학대의 예방부터 치료·보호 및 가정 복귀까지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종합센터’ 기능을 부가하여 시·도별로 1개소씩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2014년에는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이 발표(2. 28.)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시행(9. 28.)되는 등 국가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구축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법무부가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을 마련하였고, 별도로 운영되어온 아동학대 신고전화번호 범죄 신고 전화인 112로 통합하였으며, 신고접수 당시 아동의 안전에 위협이 의심되는 응급아동학대 신고인 경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동행하여 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부터는 개정된 현행법에 따라 기존의 상담원이나 경찰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전담

6) 법제처(2021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도 아동학대 범죄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현저하고 급박한 경우, 피해아동 등에 대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긴급으로 취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아동학대범죄현장에서 상담원,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응급조치 1,508건 중, 상담원이 응급조치를 실시한 건수는 811건(53.8%),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실시한 건수는 77건(5.1%),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한 건수는 620건(41.1%)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응급조치 중 가장 많은 조치를 취한 내용은 상담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모두 3호(학대피해 아동 보호시설 인도)로, 각 766건(78.6%), 75건(80.6%), 444건(45.1%)이었다.

〈표 6-1-17〉 아동학대 응급조치 현황(2020)

(단위 : 건, %)

구분	건수	비율	조치내용				
			1호	2호	3호	4호	계(중복집계)
상담원	811	53.8	54(5.5)	97(10.0)	766(78.6)	57(5.9)	974(100.0)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77	5.1	4(4.3)	10(10.8)	75(80.6)	4(4.3)	93(100.0)
경찰	620	41.1	217(22.1)	258(26.2)	444(45.1)	65(6.6)	984(100.0)
계	1,508	100.0	275(13.4)	365(17.8)	1,285(62.7)	126(6.1)	2,051(100.0)

주 : 1) 1호 : 아동학대범죄 행위 제지 2) 2호 :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3) 3호 :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4호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자료 : 보건복지부(2021).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는 2000년 「아동복지법」을 전면 개정하고 2001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도입하면서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년 대비 4개소가 증가하여 2020년 기준 전국에 7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46조를 근거로 수행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요 업무는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이다.

지속적으로 지적된 민간 중심의 아동보호에서 벗어나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아동복지법」이 재개정되고 2018년에 시행되면서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이 시작되었다. 2017년 6월부터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이 만들어져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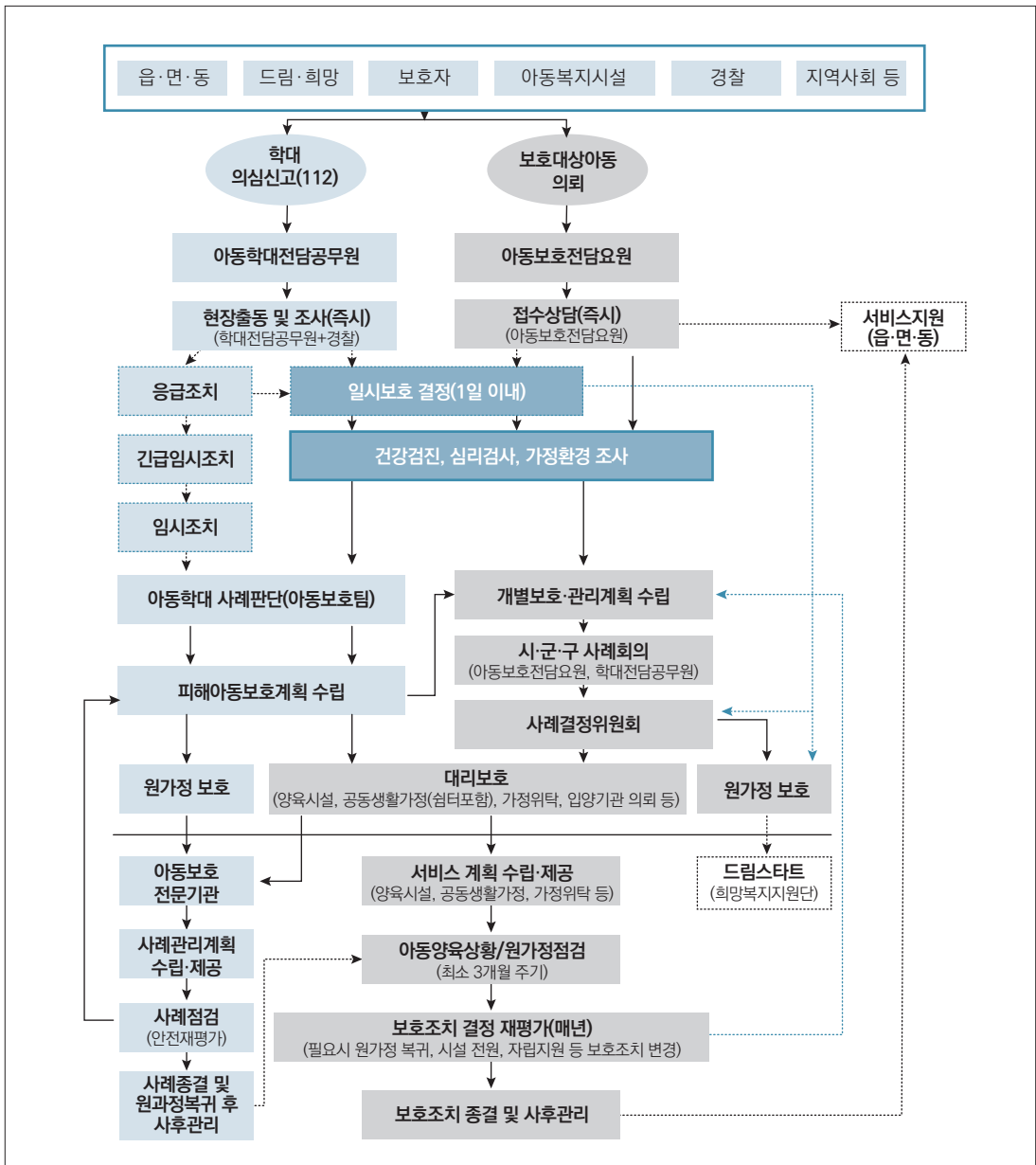
지자체에 배포되었고, 같은 해 7월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었다. 동 국정과제는 학대피해아동과 보호대상아동 지원을 위한 중앙 및 지방의 컨트롤 타워 구축,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2019년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첫 번째 핵심과제로 하여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발표되었다(5. 23.).

2020년에는 지자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의무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다시 개정되었고, 선도지역 118개 시·군·구에 총 290명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였다(보건복지부, 2020). 2021년 229개 시·군·구 및 5개 시·도에 총 374명의 기준인건비를 추가 배정하여 모든 시·군·구에 총 664명을 배치하도록 계획하였다(보건복지부, 2020).⁷⁾ 2021년 11월 말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730명이 배치되어 배치 목표 664명 대비 110%의 달성률을 보였다.⁸⁾ 또한 2020년 10월부터는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원가정 복귀 등 보호종료 후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할 아동보호전담요원(334명)이 시·군·구에 배치되기 시작하였다. 2021년 1월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발표에 따라 아동보호전담요원은 2021년 10월부터 190명이 추가된 총 524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12. 29). 중앙·지방이 함께 아동학대 대응에 앞장서겠습니다! p.1.

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1).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268>에서 2021. 12. 15. 인출.

[그림 6-1-1] 아동보호 전담인력별 주요 역할(2021)



자료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1). 2021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p.18.

라. 아동권리보장원 설치·운영⁹⁾

「아동복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2019년 7월에 출범한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을 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업무이며 관련 사항은 「아동복지법」 제22조제3항에 따른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기술 지원, 그 밖에 「아동복지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포함한다.

마. 보호대상아동 발굴 및 아동보호 관련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¹⁰⁾

정부는 2018년 3월부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위기아동을 발굴하고 있다. 또한 2019년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운영하여 아동학대 대응, 가정위탁, 입양 등 아동보호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정보시스템은 아동학대·가정위탁·입양·자립지원·취약아동 등 보호대상아동 유형별로 존재하여 타 보호대상아동 유형의 관리시스템과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사업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아동보호 관련 업무가 통합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정보가 개별 업무 단위 및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나뉘어 보호대상아동 발생 전 예방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로 인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현황 파악이 어려워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보호조치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직접적인 파악이 불가능함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20. 7.)”을 통해 경찰청의 학대예방경찰관(APO)이 사용하는 APO 업무관리시스템이 보건복지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과 2021년 1월부터 통합이 완료되었다.

9) 아동권리보장원(2021). 아동권리보장원 소개.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129&cntntslid=1105>에서 2021. 12. 7. 인출.

10) 김우림(2021). 보호대상아동 지원 사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p.24-26.

〈표 6-1-18〉 보호대상아동 관련 정보시스템 현황(2021)

구분	위기가동 발굴	아동학대	가정위탁	입양	자립지원	취약계층아동
정보시스템명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	가정위탁통합 전산시스템	입양정보통합 관리시스템	자립지원 통합관리시스템	행복e음 시스템
관리주체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원
연계정보	학생 장기 결석 현황(교육부), 예방접종 정보 등	업무관리시스템 (경찰청) ¹⁾	X	X	X	X
계획	2022년 7월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예정					

주 : 1) 2021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과 연계 완료.

자료 : 김우림(2021). 보호대상아동 지원 사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p.24.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보호대상아동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법률 제17784호). 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의 내용이 일부 또는 전면 개정되었다. 이를 근거로 아동권리 보장원의 역할이 일부 조정되고, 향후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아동학대 관련 정보, 자립지원에 관한 정보 등이 통합 관리될 예정이다.

제15조의2(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는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로 변경되어 조항의 내용이 전면 개정되었다. 이에 의하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연계 정보는 다음의 13개 항목이 포함된다.

1. 아동복지시설이 보유한 정보
2.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3. 아동학대 관련 정보
4.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에 관한 정보
5.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정보
6. 다함께돌봄센터가 보유한 정보
7.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
8.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보유한 정보
9. 입양아동에 관한 정보

- 10. 사회보장급여 중 아동 관련 정보
- 11.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 12.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 13. 아동학대행위자의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인한 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아동실종예방 및 실종가족 지원

아동에게 있어 부모와 떨어져 격리되는 경험은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평생 지워지지 않는 심리적 충격으로 남게 된다. 부모 또한 아동이 실종되면 모든 일상 생활을 포기하고 아동을 찾는 일에만 전념하게 된다. 아동의 실종은 부모에게 실종아동에 대한 죄책감과 우울증, 경제적 어려움 등과 같은 고통을 겪게 하여 최악의 경우 가정의 해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실종아동 문제를 개인의 문제 또는 실종아동 가족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2003년 이전의 실종아동 찾기 체계는 경찰의 초동조치 미흡, 보호시설의 아동카드 송부누락 및 지연, 미신고시설 관리부실, 관련 법률의 부재, 일반 국민들의 인식 부족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1991년에 실종되었던 일명 개구리소년들의 유골이 2004년에 뒤늦게 발견되고, 같은 해에 부천초등생, 포천여중생 실종사건 등으로 인해 실종아동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국가 차원의 실종아동 찾기 체계 구축 및 예방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가. 실종아동 현황

1) 실종아동 신고접수 및 처리 현황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제2조에 의하면, “아동등”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 장애인,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아동등”을 말한다.

장애아동을 제외한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의 실종 발생 건수는 2011년 28,099명에서 2015년 19,428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6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2019년부터는 실종아동의 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2020년의 경우 신고접수 19,146건, 미발견 105건으로 나타났다. 미발견사례 건수는 2017년 3건, 2018년 6건, 2019년 9건, 2020년 105건으로 최근 연도에 가까울수록 미발견 건수가 높으나 지속적인 추적과 발견 활동으로 시간에 따라 당해년 기준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장애인 및 치매환자는 연령을 불문하고 실종자 통계를 집계하고 있어 실종아동 중 장애가 있는 아동의 수는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표 6-1-19〉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및 처리 현황(2011~2020)

(단위 : 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신고접수	43,080	42,169	38,695	37,522	36,785	38,281	38,789	42,992	42,390	38,496
	미발견	-	-	-	-	-	14	14	18	33	161
아동	신고접수	28,099	27,295	23,089	21,591	19,428	19,870	19,956	21,980	21,551	19,146
	미발견	-	-	-	-	-	3	3	6	9	105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연령불문)	신고접수	7,377	7,224	7,623	7,724	8,311	8,542	8,525	8,881	8,360	7,078
	미발견	-	-	-	-	-	5	5	9	21	47
치매환자 (연령불문)	신고접수	7,604	7,650	7,983	8,207	9,046	9,869	10,308	12,131	12,479	12,272
	미발견	-	-	-	-	-	6	6	3	3	9

주 : 1) 2013. 6. 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실종아동의 범위가 실종 당시 14세 미만에서 실종 당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치매환자가 추가되어, 2011~2012년 통계자료는 개정법을 적용하여 산출함.

2) 신고접수건수 : 실종자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찾는 아동등 건수.

3) 미발견건수 : 통계산정시점(매년 12월 31일)에 실종자정보시스템상 미해제상태인 찾는 아동 등 건수를 의미하며, 미발견 현황은 2020. 12. 31. 기준임.

자료 : 경찰청 내부행정자료(각년도).

2) 장기실종아동 현황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장기실종아동은 2021년 4월 말 기준, 총 840명이다. 20년 이상 장기간 실종상태인 아동은 663명(78.9%)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1년 미만 86명(10.2%), 10~20년 46명(5.5%),

1~5년 30명(3.6%), 5~10년 15명(1.8%)의 순이었다.

〈표 6-1-20〉 장기실종아동 현황(2021)

(단위 : 명, %)

구분	계	1년 미만	1~5년	5~10년	10~20년	20년 이상
수	840	86	30	15	46	663
비중	100.0	10.2	3.6	1.8	5.5	78.9

주 : 2021. 4. 30.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경찰청·아동권리보장원 보도자료(2021. 5. 25.). 어쩌면 당신 옆에 있는 아이, 실종아동일 수 있습니다. p.12.

3) 실종아동 유전자 분석 현황

「실종아동법」 제11조제1항¹¹⁾에 따라 장기실종아동의 발견을 위해 2004년부터 ‘유전자 분석 제도’¹²⁾를 운영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21년 4월 말까지 38,226명의 유전자를 채취하였고, 분석을 통해 장기실종아동 647명이 가족과 다시 만났다(보건복지부·경찰청·아동권리보장원, 2021). 장애인과 치매환자를 제외한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유전정보 채취건수는 2019년 841건, 2020년 467건, 2021년 4월 말 기준 157건에 이르고 있으며, 유전자 검사 제도를 통한 실종아동등 발견건수는 2019년 26명, 2020년 27건, 2021년 4월 말 기준 5건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경찰청·아동권리보장원, 2021). 유전자 분석 제도는 2020년 1월 1일부터 해외까지 확대하여 14개국 34개 재외공관을 통해 해외 한인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등록하고 있다.

〈표 6-1-21〉 실종아동등 유전정보 채취 현황(2019~2021)

(단위 : 건)

구분	계	실종아동등				실종아동등 보호자
		소계	아동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	치매환자	
2019	1,808	1,393	841	481	71	415
2020	816	546	467	73	6	270
2021. 4. 30.	238	167	157	10	0	71

자료 : 보건복지부·경찰청·아동권리보장원 보도자료(2021. 5. 25.). 어쩌면 당신 옆에 있는 아이, 실종아동일 수 있습니다. p.13.

11)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보호시설 무연고 아동등 및 실종아동등의 가족으로부터 유전자검사 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다.

12) 무연고 아동 등과 실종자 가족 유전자 대조로 가족을 찾는 사업.

〈표 6-1-22〉 유전자 검사 제도를 통한 실종아동등 발견 현황(2019~2021)

(단위 : 건)

구분	계	아동	장애인 (지적·자폐성·정신)	치매환자
2019	50	26	23	1
2020	42	27	15	0
2021. 4. 30.	8	5	3	0

자료 : 보건복지부·경찰청·아동권리보장원 보도자료(2021. 5. 25.). 어쩌면 당신 옆에 있는 아이, 실종아동일 수 있습니다. p.13.

4) 실종아동 지문 등 사전등록 현황

실종아동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한 ‘지문등 사전등록 제도’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 제도는 보호자 신청을 받아 사전에 아동 등의 신체특징(지문·사진 등)과 보호자 정보를 등록하고 아동 등이 실종될 경우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발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실종아동법」 제7조의2에 근거하여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 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 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등록대상자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이다. 아동 등은 실종 시 의사능력이 부족하므로 사전등록을 한 경우 정확하고 빠르게 실종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가정으로의 복귀를 촉진하고자 한다. 통계 현황에 의하면, 2021년 4월 말까지 총 473.7만 명이 사전등록을 완료하였다(보건복지부·경찰청·아동권리보장원, 2021).

〈표 6-1-23〉 실종아동등 지문 사전등록 현황(2021)

(단위 : 명, %)

구분	계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 (지적·자폐성·정신)	치매환자
대상자	8,886,225	7,928,907	344,594	612,724
등록실적	4,737,036	4,466,234	96,134	174,668
등록률	53.3	56.32	27.9	28.5

주 : 2021. 4. 30.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경찰청·아동권리보장원 보도자료(2021. 5. 25.). 어쩌면 당신 옆에 있는 아이, 실종아동일 수 있습니다. p.14.

나. 아동실종예방 및 실종가족 지원 대책

1) 관련 법 및 제도 구축

실종아동 찾기 체계 구축 및 아동실종예방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2005년 5월 「실종 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은 아동과 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고, 신속한 가정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2008년에는 「실종아동법」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법률을 개정·시행하였다. 정신병원에서 환자의 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거나 신상카드가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도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등을 보호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신상카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아동의 출생 신고를 접수한 경우, 아동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관계 공무원이 정신병원이나 보호시설을 방문하는 때에는 실종아동의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실종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유전정보의 보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2011년 8월에는 실종·유괴경보, 실종신고를 경찰청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4년 7월에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을 빨리 찾도록 하였으며, 실종아동의 조기발견 지침을 마련하였다. 2017년까지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된 실종아동전문기관은 중앙입양원이 이어 받았으며, 2019년 아동권리보장원이 중앙입양원을 비롯한 주요 아동정책 중앙기관을 통합하였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현재 아동권리보장원 산하에 실종아동전문센터를 설치하여 실종아동 DB 구축 및 운영, 실종예방, 실종가족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실종 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을 담당하고, 경찰청은 실종아동등의 발견과 관련한 역할을 담당한다.

몇 차례의 「실종아동법」 제·개정에 따른 주요한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2013년 6월 「실종아동법」 개정에 따라 실종아동의 대상연령이 만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상의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과 「치매관리법」 상의 치매환자는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실종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보호 및 지원하도록 하였다.

둘째, 실종업무를 전담할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2020년 개정을 통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실종아동 업무를 담당하고, 실종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치매환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실종 아동·장애인·치매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실종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종가족 지원 등 실종예방 및 가족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규정하였다.

넷째,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장의 신상카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설보호 대상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의 자료를 전산화하여 실종아동 찾기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경찰의 수색·수사를 의무화하여 경찰의 초동수사 및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미신고보호행위를 금지하여 개인의 불법 입양이나 미신고시설 등의 불법 보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일곱째, 보호시설에 대한 경찰의 현장 조사권한을 명시화하여 시설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여덟째, 유전자검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실종아동등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하였다.

아홉째, 현행법은 아동 등이 실종될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대상자의 인상착의 등 관련 정보를 언론·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개하여 국민제보를 통해 실종자를 발견하도록 하고 있다(법제처, 2021b)¹³⁾.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문자와 같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종자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여 국민의 관심과 제보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그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다(법제처, 2021).

실종아동 보호·지원 추진체계는 보건복지부-경찰청-지자체-보호시설 또는 정신의료기관 등-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의 역할 분담을 통해 이루어진다. 먼저 보건복지부 산하 실종아동 전문센터에서는 정책을 수립하고, 무연고 아동 등 신상카드 DB를 구축하며, 실종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한다. 경찰청에서는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색 및 수사, 유전자 검사 대상물 채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자체에서는 경찰관에게 실종아동등을 발견하여 신고하고 신상카드 작성 및 제출 여부를 지도한다. 보호시설 등은 경찰관서에 실종아동등을 발견 신고하고, 신상카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조기발견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 발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3) 법제처(2021b).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표 6-1-24〉 실종아동 보호·지원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실종아동전문센터)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182)	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 또는 정신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수립 • 무연고 아동 등 신상 카드 DB 구축 • 실태조사, 연구 • 실종예방·교육 및 홍보 • 실종아동등의 가족 지원 •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침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신고 접수 • 수색 및 수사 • 유전자검사대상을 채취 • 관계장소 출입·조사 • 실종아동등 조기 발견지침이 준수되도록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서에 실종아동등 발견 신고 ※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국번없이 182) • 신상카드 작성·제출 여부 지도 • 관계장소 출입·조사 •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서에 실종아동등 발견 신고 ※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국번없이 182) • 신상카드 작성·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아동등이 신고되는 경우 조기 발견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 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 • 시설 종사자에게 실종아동 등 조기 발견지침에 관한 교육·훈련 연 1회 실시 • 경찰관서에 교육실적 보고

자료 : 보건복지부·경찰청·아동권리보장원 보도자료(2021. 5. 25.). 어쩌면 당신 옆에 있는 아이, 실종아동일 수 있습니다. p.12.

2) 실종아동 예방 및 대응 종합정책

법적 변화와 함께 정부 차원의 실종아동 예방 및 대응 종합정책을 살펴보면, 2006년 11월 「실종아동 및 실종 장애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하였으며 동 대책에 따라 신고의무자,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의무 불이행자 및 불법양육자의 처벌규정에 관한 홍보도 병행하여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2008년 4월에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범정부차원의 아동 범죄 예방 및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하였다. 동 대책에서는 첫째,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놀이터, 공원, 학교주변 및 아동범죄 다발지역 등 아동 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전개·지원하였다. 둘째, 시·도별 ‘실종 아동·장애인 일시보호센터’를 지정(2010. 6. 8., 60개소)하여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및 장애인 발생 시 우선적으로 일시 보호센터에 보호조치하고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실종여부를 확인하는 등 실종아동등에 대한 보호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가족 또는 경찰서에서 이들을 찾아 전국을 헤매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셋째,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해 경찰청의 실종신고 자료와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신상카드 자료 간 전산연계 구축을 추진하였다. 넷째,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종·유괴 예방교육을 의무화(「아동복지법」 개정, 2008. 12. 14. 시행)하고, 실종예방 인형극 순회 교육을 연중 실시하며, 연령별·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실종예방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였다. 다섯째, 유괴예방 3단계 구호 100만인에게 알리기, 실종예방 공익광고 송출, 어린이안전 특별생방송 방영 등 온라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2007년부터 ‘실종아동의 날(5월 25일)’을 기념하여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찾아주기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였다. 여섯째, 실종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부모활동비·전단제작지원비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실종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한편,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에서는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실종아동 정보 전자등록 및 연계를 통해 실종아동 찾기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심리상담·치료 프로그램 권역별 운영,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사례관리 미등록자 등록 권유·안내 등의 추진을 통해 맞춤형 실종아동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는 실종아동등 찾기 지원 서비스와 가족들의 심리·정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실종가족 지원 서비스'에는 실종아동·장애인 찾기 지원, 가족 심리상담 지원, 사회·경제적 지원, 실종아동등 유전자 코드화 및 DB 관리, 실종가족 상봉 서비스, 실종아동 제보가 있다. 그리고 실종(미아·유괴) 예방 교육 및 홍보, 실종아동 찾기 홍보 등의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다(아동권리보장원, 2021).

〈표 6-1-25〉 실종아동등 보호 지원

구분	사업	지원내용
실종가족 지원 서비스	실종아동·장애인 찾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ST 실종아동 현재 나이 얼굴 추정 변환 작업 • 실종아동등 찾기 물품(전단지, 현수막, 명함 등) 지원 • 실종아동등 찾기 단말기(GPS) 지원 • 실종아동등 및 유전자 정보 포스터 제작·배포 • 경찰청과 연계한 일제 수색 지원
	가족 심리상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가족들이 겪는 심리·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심리상담 지원
	사회·경제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아동등 찾기 활동과 실종가족 지원을 위해 활동비 및 의료비 지원
	실종아동등 유전자 코드화 및 DB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서로부터 송부받은 유전자 시료를 코드화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검사 의뢰 및 DB 관리
	실종가족 상봉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가족이 상봉할 시에 센터에서 상봉 관련 서비스 등 지원
	실종아동 제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아동전문센터로 제보되는 실종아동등에 대한 내용을 담당 경찰서로 의뢰

구분	사업	지원내용
실종(미아·유괴) 예방 교육 및 홍보	실종(미아·유괴) 예방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종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교사, 부모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실종 예방 교육 실시 실종예방 강사 양성교육, 아동교육, 성인(교사·부모)교육, 매뉴얼 제작 및 배포 등
	실종(미아·유괴) 예방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종(미아·유괴)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아동실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다양한 광고 및 캠페인 진행 실종아동 홍보대사 위촉, 실종 예방 포스터 배포 등
	실종아동 찾기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종아동 찾기 콘텐츠 제작 확산 사업의 결과물들을 활용하여 광고 송출 실종아동등 사진 홍보 기관·기업체 등 지원 온·오프라인 홍보매체 운영

자료 : 아동권리보장원(2021). 실종아동등 보호 지원.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3&cntntsId=1037>에서 2021. 12. 5. 인출.

5.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

아동·청소년 안전은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위해없이 여러 환경요소로부터 건강하게 보호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안전사고는 이러한 안전 사고에 대비되는 사고, 부상, 상해 또는 사망 등을 의미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피해나 손실을 사전에 막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이며,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다. 안전의 사전적인 정의는 ‘인체에 유해한 조건들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려는 여러 가지 활동’ 또는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이 편안하고 온전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8, p.1).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청소년 안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대상으로 인체에 유해한 조건들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려는 여러 가지 활동으로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없이 편안하고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2018, p.1)¹⁴⁾.

14)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8). 청소년수련활동 종합매뉴얼: 활동안전관리 편/자연권 수련시설. file:///C:/Users/LG/Downloads/5_%ED%99%9C%EB%8F%99%EC%95%88%EC%A0%84%20%EB%A7%A4%EB%89%B4%EC%96%BC(%EC%9E%90%EC%97%B0%EA%B6%8C)%20(1).pdf 에서 2021. 12. 1. 인출.

가. 안전사고 사망자 현황

1) 아동(14세 이하) 안전사고

정부는 어린이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2003년 6월부터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매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당시 OECD 회원국 최하위에서 중위권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분야별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추진상황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점검해 나갔다. 2016년에는 2020년까지 어린이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선진국 수준인 2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2020년 아동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150명(안전사고 사망률 2.4%)이었으며, 2005년 8.17명 대비 대폭 감소하였다.

〈표 6-1-26〉 14세 이하 아동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 현황(2016~2020)

(단위 : 천명, %,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4세 이하 인구	6,982	6,845	6,701	6,466	6,307
아동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률	2.8	2.9	2.4	2.6	2.4
안전사고 사망자 수	196	196	163	167	150

주 : 안전사고는 사망원인분류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해당하며, 운수사고, 낙상(추락), 불의의 익사 및 익수,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유독성 물질 중독 및 노출, 기타 외인 등을 포함하며, 고의적 자해(자살)나 가해(타살)는 제외함.

자료 : 1) 통계청, 아동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률.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2711&board_cd=INDX_001에서 2021. 12. 1. 인출 (2016~2019년 자료).

2) 통계청, 아동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률(시·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10005&conn_path=I3에서 2021. 12. 1. 인출(2020년 자료).

3) 통계청,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5N&conn_path=I3에서 2021. 12. 1. 인출(2020년 14세 이하 인구 자료).

2019년 기준, 14세 이하 아동 안전사고 유형별 사망자 수는 전년대비 4명 증가한 167명이었고, 사망원인으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교통사고가 54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익사(27명), 추락(25명), 화재(2명), 중독(1명)의 순이었다. 2010년부터 질식사고는 기타로 집계하고 있다. 연차별로 살펴보면 14세 이하 아동 안전사고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아동 사망이 201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표 6-1-27〉 14세 이하 아동 안전사고 유형별 사망자 현황(2015-2019)

(단위: 명)

구분	계	교통사고	익사	추락	화재	중독	기타
2015	225	103	28	28	10	-	56
2016	196	87	19	28	5	1	56
2017	196	75	24	26	7	2	62
2018	163	54	18	28	8	4	51
2019	167	54	27	25	2	1	58

주: 1) 1년 동안 안전사고로 사망한 14세 이하 아동의 수(외부요인에 의한 사망)에서 자살·타살·질병 제외.

2) 2010년부터 질식사고는 기타로 집계.

자료: 통계청(2021). 사망원인통계. 14세 이하 아동에 대한 안전사고 사망자 유형별 현황(통계공표시기: 2020. 10. 22.).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2711&board_cd=INDX_001에서 2021. 12. 1. 인출.

사이버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의하면, 2020년 기준 만 13세 미만 아동의 교통사고는 8,400건,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483건, 아동보행자 교통사고는 2,079건에 이르고 있으며, 아동의 교통사고는 2019년에 잠깐 증가하였으나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동년 기준 만 13세 미만 아동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4명이며, 스쿨존 내에서는 3명, 보행 중에는 16명의 아동이 사망하였다. 사망자 수 역시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동년 기준 만 13세 미만 아동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는 10,500명,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507명, 아동보행자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2,135명이었다. 부상자수 역시 2016년 이후 지속 감소하다 2019년에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표 6-1-28〉 아동(만 13세 미만) 교통사고 현황(2016~2020)

(단위: 건, 명)

구분	사고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아동 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아동보행자 교통사고	아동 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아동보행자 교통사고	아동 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아동보행자 교통사고
2016	11,264	480	4,288	71	8	36	14,215	510	4,402
2017	10,960	479	4,019	54	8	35	13,433	487	4,101
2018	10,009	435	3,582	34	3	22	12,543	473	3,695
2019	11,054	567	3,856	28	6	20	14,115	589	3,9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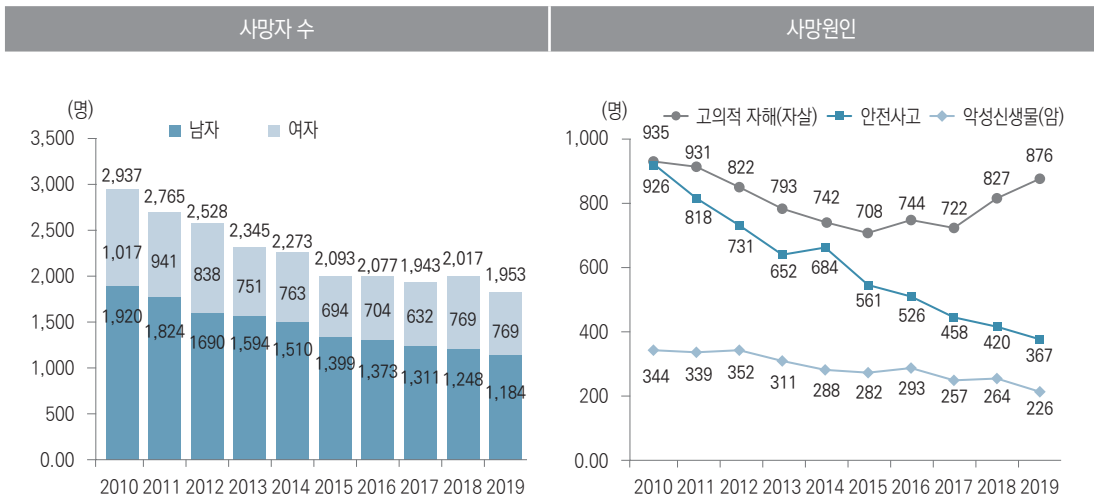
구분	사고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아동 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아동보행자 교통사고	아동 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아동보행자 교통사고	아동 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아동보행자 교통사고
2020	8,400	483	2,079	24	3	16	10,500	507	2,135

자료 : 사이버경찰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부문별 교통사고: 어린이 교통사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어린이보행자 교통사고(각 년도).
http://taas.koroad.or.kr/sta/acs/gus/selectChildTfcacd.do?menuId=WEB_KMP_OVT_MVT_TAS_CHT, http://taas.koroad.or.kr/sta/acs/gus/selectShczTfcacd.do?menuId=WEB_KMP_OVT_MVT_TAS_SZT, http://taas.koroad.or.kr/sta/acs/gus/selectChildPdstrnTfcacd.do?menuId=WEB_KMP_OVT_MVT_TAS_CPT에서 2021. 12. 1. 인출.

2) 청소년(9~24세) 안전사고

‘2021 청소년 통계’(통계청·여성가족부, 2021)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청소년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3.2% 감소한 1,953명이며, 사망자 중 남성 1,184명(60.6%), 여성 769명(39.4%)이었다. 사망 원인은 고의적 자해(자살)가 87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안전사고 367명, 악성신생물(암) 22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사망원인 중 안전사고는 201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 반면, 자살은 증감을 반복하며 2011년 이후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대책 보완이 시급하다.

[그림 6-1-2] 청소년(9~24세) 안전사고 현황(2010~2019)



자료 : 통계청·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 5. 25.), 2021 청소년 통계, p.12.

나. 아동·청소년 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 대책

1)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¹⁵⁾

정부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소관 분야별로 각 부처에 분산된 아동 안전 관련 정책의 체계화를 위해 2003년 “제1차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2003~2008)”을 수립하였다. 13개 부처와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12개 분야, 76개 과제를 추진하였고, 주요 성과로는 어린이안전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아동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2002년 12.5명에서 2007년 6.1명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2008년 차기 정부에서는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으나, 2013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린이 연령별·활동공간별 안전사고 유형을 분석하여 유형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한 “제2차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4개 분야, 10개 과제, 26개 세부과제를 추진하였다. 어린이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목표를 2012년 4.3명에서 2014년 3명대, 2017년 2명대 진입을 목표로 하였다. 2016년에는 2020년까지 어린이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선진국 수준인 2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종합대책을 통해 아동의 안전정책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아동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의 부처별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 상황은 반기별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의 협력을 도모하였다. 특히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강조하여 안전교육 콘텐츠, 안전체험시설, 안전교육 강사 확보 등에 주력하였다. 또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를 마련하여 연령별 및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3차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을 집중적으로 감축해 나가기 위해 어린이 카시트 착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교통안전 대책이 포함되었다.

둘째, 학교 주변 교통 및 유해환경 등을 집중 단속하고, 안전 점검을 엄격하게 하는 등 놀이시설을 비롯한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셋째, 어린이 안전체험교육 활성화 및 수상안전교육 확대를 포함하는 어린이 안전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린이 안전수준을 평가하고 환류하는 것이다.

15) 지광석(2018). 정부의 어린이안전대책 현황과 시사점. 소비자정책동향 제90호. 한국소비자원에서 발췌·요약함.

2017년에 다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8년 5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2개 관계 부처합동으로 5개 분야 14개 과제에 대해 ‘어린이 안전대책’을 발표하였다. 교통, 제품, 식품, 생활 공간, 안전을 포괄하는 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공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학원가·놀이공원 주변까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확대, 키즈카페 안전 통합관리 강화, 체험중심 안전 교육 확대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매년 300여 개씩 확대하여 2022년까지 18,155개소로 지정, 보도와 통행로의 설치, 학교주변 CCTV를 2022년까지 10,949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사용량이 제한된 화장품 원료의 함량 표시 의무화, 영유아용 보존제, 색소 등의 사용금지 원료 어린이용으로 확대 등 사용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어린이 화장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확대 및 위생 관리 강화, 키즈카페 통합관리 운영지침 마련 및 관계부처 합동 점검,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확대를 포함하였다. 어린이 안전대책의 추진과제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수행하여 아동이 더욱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표 6-1-29〉 「어린이 안전대책」 추진과제(2018)

분야	과제
교통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사고 감축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강화
	어린이 교통안전용품 보급 및 교육·홍보 강화
제품안전	위해 어린이제품의 관리 및 감시 강화
	어린이용품 환경유해물질 관리 강화
식품안전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 개선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기준 강화
	어린이 이용시설의 위생 점검 강화
생활공간	학교주변 안전사고 예방 강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안전교육	어린이 안전체험교육 활성화
	어린이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교직원 등의 안전교육 역량 강화

자료 : 소비자정책동향 제90호(2018. 5. 31.) p.14.



2)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정책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아동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주요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중앙 부처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시행·관리하는 중장기 관점의 계획이다.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에서는 안전한 삶 영역을 설정하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안전 마스터플랜 수립 등 체계적 정책대응 상황을 고려해 아동기 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발달주기별 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투자를 확대하고, 가정·학교에서의 생활안전을 강조하였다. 생활안전에 있어서는 가정·학교(돌봄기관 포함) 등 아동의 주된 생활공간에서 위해요인을 줄이고, 도로 등 이동공간에서의 안전확보 방안 마련을 제시하였다. 특히 아동기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습관 내면화를 도모하였다. 안전체험관 등 아동안전관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을 확보하며,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발달주기별 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투자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안전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에서는 생활 속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대폭 개선 및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보호구역에 신호등 및 무인교통단속장비를 2022년까지 설치하고, 보호구역 식별 용이성 강화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기준 보완 등 표준모델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2020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5,529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였고 3,330곳에 신호기를 추가하였다(행정안전부, 2021)¹⁶⁾. 또한 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기존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여 일 평균 254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행정안전부, 2021).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통행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맞춤형 교통안전 기준을 신설(2020년, 교통안전법령 개정)하고 지자체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2021년~)하고 있다. 2021년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시설을 확대하여 안전의무도 강화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목표인 5개 법률에 규정된 6종 시설에서 11개 법률에 규정된 18종 시설로 확대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서 법규 위반 처벌수준을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로 상향조정하여 통학버스 안전의무 준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안전 교육대상을 운영자와 운전자에서 동승보호자까지 추가 확대하고, 안전운행기록 작성을 의무화하여 매분기 시설 감독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치원 구성원, 학부모 등이 협력하여 유아의 건강·안전에 관한 사항을 점검·개선하는 모델인 ‘학부모안심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6) 행정안전부·교육부·경찰청 보도자료(2021. 3. 25.). '정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 협력: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발표'에서 인용.

지속 확대 중이다. 어린이집, 초등학교, 키즈카페 등 어린이 주요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먹거리 안전·위생관리 강화, 아동 사용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도 지속 확충 중이다.

3)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등·하굣길 안전 강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위생 점검 및 종합평가를 지속 실시하고, 안전체험교실 및 안전체험관 확충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교육 과정에 안전 관련 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하여 체험활동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 밖에도 복지·문화시설 및 기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체험처에 수련활동과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청소년지도사의 배치 확대를 제시하였다.

한편, 이와 별도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서비스’를 2021년 5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상담 범위는 상해·시설물 사고 등 청소년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 관련 사항, 청소년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령 해석·자문 등 청소년활동 운영 관련 사항 등이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1)¹⁷⁾.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2020년에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사례집”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청소년활동 안전컨설팅 서비스’를 별도로 운영하여 시설관리 종사자의 안전 역량 강화를 통한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정착 및 안전한 청소년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가 안전사항을 확인하고 관련된 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수련시설, 신고·인증수련활동 운영시설 등 청소년활동 운영시설 및 청소년 보호·복지시설 종사자이다. 컨설팅 내용은 분야별 시설안전 관리사항 전반 진단 컨설팅, 시설 및 활동안전 점검결과(자가점검 포함)와 연계한 컨설팅, 시설안전 관련 긴급사항 및 문제사항 발생 시 수습·복구 등 개선을 위한 컨설팅, 분야별 시설안전 관련문의(일반적이고 경미한 사항은 온라인 컨설팅 운영)가 포함된다.

〈표 6-1-30〉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서비스(2021)

상담 범위	주요 내용
청소년활동 안전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성범죄, 시설물, 위생(음식, 식중독) • 기타 안전 등 관련한 사항

17)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1). 청소년활동 안전지원. <https://www.kywa.or.kr/business/business18.jsp>에서 2021. 12. 1. 인출.

상담 범위	주요 내용
청소년활동 운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시설(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프로그램, 지도자, 활동시설)에 관한 법령 해석 및 자문 •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 심판 등에 관한 사항 등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1). 청소년활동 안전지원. <https://www.kywa.or.kr/business/business18.jsp>에서 2021. 12. 1. 인출.

4)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 추락, 익사사고 등 주요 어린이 안전사고에 관한 정책을 포함하였다. 여기에는 아동안전 관련기관 간 업무 협조체계 강화,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확대, 아동 안전체험 행사 개최, 아동 안전교육 관련 온·오프라인 콘텐츠 보완·개발 등 사회 전반의 아동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안전 통계의 주요지표인 ‘통계청’의 ‘사망통계’와 ‘질병관리본부’의 ‘손상관리정보’, ‘한국소비자원’의 ‘위해정보시스템’간 협력방안을 강구하였으며, 각 부처별·기관별 어린이 안전관련 통계를 통계청의 통계자료에 반영하도록 추진하였다. 특히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에서는 아동·청소년 생활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연령대(만 5세 이하)와 사고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부모교육 실시, 가정 안전꾸러미를 배포하는 등 생활안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에서 안전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아동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물놀이, 가정, 학교, 승강기 및 자동계단, 놀이 안전 등 생활안전분야 추가로 아동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조금 더 큰 틀에서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을 과제로 제시하고 아동의 균형적 발달과 성장 보장, 아동·청소년의 보호안전망 강화를 주요 지원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2010년부터 당시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16개 어린이 안전 관련 민간단체와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를 시행하였다. 워킹스쿨버스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원 봉사자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등·하굣길을 동행하고, 등·하교 상황, 학교 결석여부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제도이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와 차도 분리시설’ 및 ‘도로부속물’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어린이 보호 장구 개발 지원 및 표준화, 저소득층 무상대여 등 어린이 보호 장구 착용률 제고 대책을 지속 추진 중이다.

- 제 1 부
- 제 2 부
- 제 3 부
- 제 4 부
- 제 5 부
- 제 6 부**
- 제 7 부
- 제 8 부
- 제 9 부
- 제 10 부
- 부 록

제2장 청소년 유해환경 및 매체환경

1.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가. 청소년 유해약물예방 기반 구축

청소년유해약물은 「주세법」에 의한 주류,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 「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환각물질 등이며, 이 외에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을 말한다.

약물중독은 약성 약물에서 강성 약물로 전이되는 것이 보편적이고, 한번 사용하게 되면 습관성과 의존성 및 중독성과 내성이 강하여 중단하기 힘들데, 특히 청소년의 약물사용은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기까지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청소년의 일탈행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청소년 약물예방 대책은 「청소년 보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지만, 주류나 담배의 유통규제 제도의 한계 등으로 청소년의 흡연·음주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기존의 청소년 약물 관련 제도 및 법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현행 정책과 제도에 대한 효과적·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 약물 중 빈번한 사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음주 및 흡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약물예방에 관한 국제적 표준에 적합한 제도와 법안 마련 등이 그것이다. 이는 기존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규제 위주의 보호정책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보호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에 대한 사회적 관리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1)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 실태

2020년도 청소년 흡연율은 4.4%로, 2016년 6.3%, 2017년 6.4%였다가 2018년은 6.7%, 2019년 6.7%로, 최근에는 감소하는 정도가 주춤한 추세이다. 2020년 기준 남자 청소년의 흡연율은 6.0%, 여자 청소년 흡연율은 2.7%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최초 흡연 시작연령은 평균 만 13.4세로 나타났다.

〈표 6-2-1〉 청소년 현재 흡연율, 평생 흡연 경험률 및 처음 흡연 연령

(단위 : %, 세)

구분		현재 흡연율	평생 흡연 경험률	처음 흡연 연령
2016년		6.3	14.8	12.7
2017년		6.4	13.7	12.9
2018년		6.7	14.9	13.0
2019년		6.7	12.7	13.2
2020년		4.4	10.2	13.6
성별	남성	6.0	13.9	13.4
	여성	4.0	10.6	13.9

주 : 1) 현재 흡연율 :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비율.

2) 평생 흡연 경험률 : 평생 동안 담배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운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각 년도.

청소년 음주의 경우, 2020년도 현재 음주율은 10.7%, 평생 음주 경험률은 33.4%이며 청소년의 최초 음주 시작연령은 2020년 13.2세로 나타났다.

〈표 6-2-2〉 청소년 현재 음주율, 평생 음주 경험률 및 처음 음주 연령

(단위 : %, 세)

구분		현재 음주율	평생 음주 경험률	처음 음주 연령
2016년		15.0	38.8	13.1
2017년		16.1	40.2	13.2
2018년		16.9	42.3	13.2
2019년		15.0	39.4	13.3
2020년		10.7	33.4	13.2

구분		현재 음주율	평생 음주 경험률	처음 음주 연령
성별	남성	12.1	37.5	12.9
	여성	9.1	37.0	13.5

주 : 1) 현재 음주율 :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2) 평생 음주 경험률 : 평생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셔본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각년도.

2) 청소년 흡연·음주예방 기반 구축

(1) 청소년 흡연·음주예방 기반 구축

2005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회원국에 음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고, 「국제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에서는 회원국에 담배의 광고, 판촉 및 후원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미국은 2006년 12월 연방의회에서 「청소년음주예방법」 제정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상황을 살펴보면, 청소년 흡연·음주 환경 규제내용이 각 개별법에 분산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즉, 청소년 흡연규제는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음주는 「주세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세법」은 주류소매(면허) 제도를 시행하는 선진국과 달리 면허 없이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류가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흡연·음주예방을 위한 기존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류·담배의 청소년 대리구매 및 무상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청소년 치료재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시행(2012. 9. 16.)하였다.

또한, 술·담배 판매업자에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와 담배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업소에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시행(2015. 3. 25.)하였다. 이에 따라 술·담배 판매영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내용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 또는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주류 및 담배 판매 시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보호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부과 등 선의의 피해를 입는 영세사업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에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으로 인해 술, 담배를 판매한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



시행(2016. 3. 2.)하였다.

2017년 10월에는 궤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도록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해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결정 고시하였고, 12월에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담배형태의 흡입제류를 추가로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결정 고시하였다. 한편 계속 감소 추세였던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2018년에 2.7%로 다시 증가하였고, 성인 사용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10월에는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하여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중단을 위한 권고문을 작성·배포하여 청소년과 교사·학부모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2) 청소년 흡연예방 대책 추진

최근 들어 청소년 흡연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은 세계 청소년들의 흡연율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청소년 유해약물로 지정된 담배에 대한 청소년 대상 불법판매 모니터링과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편의점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와의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 BIS(버스안내정보시스템)를 활용한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이성적인 판단을 통하여 흡연을 자제하고, 흡연은 좋지 못한 사회적 행동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표 6-2-3〉 관계부처의 청소년 흡연예방 정책 주요 내용

관계부처	추진과제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 강화 및 유통업자 종사자 교육 • 시·군·구 및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협력하여 신분증 확인 캠페인 전개 •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교육 및 다양한 홍보 실시(여름휴가철, 수능 전·후 등 계기별) •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3~2015)」 추진 •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 추진 •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9~2021)」 추진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운영 • 보건소 금연상담 및 금연치료프로그램(금연교실, 금연지도자 교육,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 등) 제공 • 매스미디어 홍보(언론매체, 인터넷, 금연월간지, 스티커 등)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 실태에 대한 주기적 파악 • 전국 초·중·고등학교 대상 흡연·음주예방 교육 실시(금연학교 운영) • 학생건강정보센터를 통한 유해약물에 대한 정보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관람가 영화 속의 흡연장면 노출문제 개선(영상물등급분류위원회 운영규정 보완)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사업법」 제정·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상의 청소년 유해약물 유통 규제 방안(인터넷상의 청소년 유해약물 유통 심의 강화 및 기준 보완)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 등 단속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방송 3사(KBS, MBC, SBS)의 드라마 흡연 장면 노출문제 개선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판매 업소 특별계도 및 단속

자료 : 여성가족부(2021).

3) 청소년 음주예방 대책 추진

그동안 우리 사회 특유의 관대한 음주문화의 영향 등으로 사회 전반에서 음주로 인한 수 조 원대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였고, 음주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채 청소년들은 기성세대들의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침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주류협회, 주류관련 유통업체 등에 청소년신분증 확인 교육 동영상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였고, 청소년 음주예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매체를 통한 일방적인 홍보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 흡연·음주예방 UCC공모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하계휴가지 청소년 흡연·음주예방 캠페인’, ‘애니메이션 제작 홍보’, ‘학교 스쿨터치 및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광고’, ‘흡연·음주예방 카드뉴스 온라인 홍보’ 등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해 연중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다.

〈표 6-2-4〉 관계부처의 청소년 음주예방 정책 주요 내용

관계부처	대책 추진과제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및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협력하여 신분증 확인 등 캠페인 전개 • 청소년 대상 음주예방 교육 및 다양한 홍보 실시(방학, 수능 전·후 등 계기별) •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3-2015)」 추진 •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 추진 •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9-2021)」 추진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주폐해 감소 및 예방을 위한 국민의식 제고 • 생애집단별 교육 및 홍보(학생과 비행청소년, 또래 지도자와 교사, 주류 판매업자 대상 교육) • 정신건강검진사업을 통한 조기발견과 음주폐해 예방(학교와 연계해 방과 후 예방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중학생과 초등학교까지 적용) • 주류 판매자의 자정노력 강화(클린판매점 선정 및 운영) • 절주 상담실 운영 • 알코올상담센터를 통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음주율 증가 및 저연령화 문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학생의 체계적 음주예방 교육(정규수업, 학교장 재량시간 활용) - 학생 음주예방 교육을 위한 지도능력 배양과 인식제고 - 전문지도자 과정 운영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청소년(소년원)들의 음주율 증가 문제 관련: 갱생프로그램에 최소한의 음주예방 교육 반영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관람가 영화 속의 음주장면 노출문제 개선: 영상물등급분류위원회 운영규정 보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상의 청소년 유해 주류 유통물 규제 방안: 인터넷상의 주류 유통물 심의 강화 및 기준보완
대검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관련 범죄 수사 시 「피의자 원포」에 음주여부 조사항목 신설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 등 단속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방송 3사(KBS, MBC, SBS)의 드라마 음주장면 노출문제 개선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판매 업소 특별계도 단속

자료 : 1) 여성가족부(2021).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청소년 흡연·음주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정화활동

다양한 유흥문화의 발달로 인해 우리나라의 청소년 유해업소 및 신·변종 유해업소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증가 추세는 아래의 <표 6-2-5>와 같다.

<표 6-2-5> 청소년 유해업소의 수

(단위 : 개소)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875,329	892,092	930,531	951,189	963,979	985,732	984,843	1,004,019

자료 : 행정안전부 새을행정 시스템(2021).

도시지역에서의 청소년 유해업소의 난립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의하면 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의 이용률은 코인노래방 70.7%, PC방 61.3%, 짬짬방 25.4%, 전자오락실 25.0%, VR체험카페 13.1%, 술집(소주방, 호프집 등) 2.3%에 달한다.

특히, 학교주변의 청소년 유해환경이 확산되고 있고, 주거지역 인근에도 유해업소가 난립하고 있어서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을 통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및 신도시 건설시 청소년 유해환경 격리·구획화 등을 통해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고 있다. 즉, 기존 시가지에 청소년 유해시설과 주거지, 학교, 학원 등이 혼재되어 입지하면서 청소년에게 교육적·정신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이 만들어짐에 따라 유해환경에 대한 체계적·계획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인 ‘레드존(RED ZONE)’을 설정하였다.

2016년 11월 9일, 헌법재판소는 2015년 부산, 서울에서 제기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의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8)에 대한(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위헌소원에 대해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2호> 제3호 영업형태의 가항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이 불확실한 개념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함에 따라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마사지업소 및 피부미용실 등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되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33곳, ‘통행제한구역’ 19곳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신도시 건설시 청소년 유해환경 격리·구획화 추진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년)」에 신도시 개발 도시계획 수립 시 유해업소 접촉이 최소화되도록 청소년 유해업소 격리·구획화 사업의 시범도입(국토교통부)을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화성·동탄 2신도시 실시계획에 중심상업용지 등 4개 구역에 한하여 위락시설, 숙박시설, 청소년 유해업소 건축을 허용하는 ‘레드존’을 지정, 격리·구획화 하도록 반영하고 시범 실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격리·구획화 사업의 시범실시 결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사업 주관부처 및 시행자 간의 지속적인 업무협조 체계 유지를 통하여 추후 신도시 개발 시에도 청소년 유해환경 격리·구획화 사업을 적극 확대·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6-2-6〉 2021년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

(단위 : 개소)

연도	총계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무도학원(무도장)	이용업, 목욕장	숙박업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게임제공업계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장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장
'19년	985,732	28,036	13,519	657,825	165,962	858	24,053	27,108	33,862	639	24	21,594	254	6,817	2,696	2,485
'20년	984,843	26,975	12,776	658,451	175,484	772	23,155	26,118	31,212	530	19	18,589	250	5,797	2,619	2,096
'21년	1,004,019	26,298	12,386	669,242	189,266	744	22,555	25,259	29,810	482	15	18,006	241	5,133	2,542	2,040

- 주 : 1) 출입·고용금지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무도학원, 무도장, 비디오감상실, 기타(비디오물 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업).
 2) 고용금지업소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이용업, 숙박업, 게임제공업을 지칭(일반음식점의 경우 소주방, 호프, 카페 등이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 해당되며, 숙박업의 경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은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
 3) 2021년 12월 말 기준 자료.

자료 : 행정안전부 서울행정 시스템(2021).

1)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 단속실적

「학교보건법」 상 절대·상대 정화구역의 지정·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정거리를 벗어난 사각지대에는 여전히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하는 업소들이 유혹에 취약한 청소년들을 퇴폐향락으로 이끌고 있다. 경찰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을 2020년 7,935명을 단속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10년 11월 키스방 등 신·변종 업소의 불건전서비스 광고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2011년 7월 해당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고시하였다. 2012년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9월에는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업을 ‘청소년 출입·고용업소’로, 청소년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 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였다. 2014년 3월에는 「한국마사회법」의 장외발매소 및 「경륜·경정법」의 장외매장을 경기 개최일에 한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였고, 2015년 3월에는 술·담배 판매업자에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와 담배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업소에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술·담배 판매영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내용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 또는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표 6-2-7〉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 단속실적

(단위 : 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	
	총계	유해업소 출입·고용	유해약물 등 판매	청소년이용 유해행위	유해매체물	구속	불구속
2014	8,393	870	6,933	401	189	5	8,388
2015	9,268	327	8,364	392	185	0	9,268
2016	9,313	412	8,444	371	86	1	9,312
2017	9,750	360	8,927	393	70	2	9,748
2018	9,567	276	8,800	420	71	3	9,564
2019	8,399	299	7,617	463	20	21	8,378
2020	7,935	229	7,093	573	40	9	7,926

자료 : 경찰청(2021).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정화 활동

최근 변화가 등 학교 주변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환경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톨카페, 멀티방, 등 신·변종 업소가 청소년의 탈선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이에 부응하는 단속 및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 업종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 보호의식을 제고하였으며, 기존 유해업소 및 신·변종유해업소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행위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2021년 기준 전국 240여 개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역사회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1)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운영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보호법」 제31조 및 각 지자체 조례에 의거하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1999년 7월 1일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한 미성년자출입제한 구역 67개 구역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상권변동 및 도시 재정비 사업 등으로 그 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2021년 12월 말 기준 총 53개 구역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표 6-2-8〉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계	53	35	18
서울	8	5	3
부산	4	2	2
대구	1	1	0
인천	2	1	1
광주	2	1	1
대전	3	3	0
울산	0	0	0
세종	0	0	0
경기	7	5	2
강원	5	5	0
충북	1	1	0
충남	2	2	0
전북	8	4	4

구분	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전남	2	1	1
경북	5	3	2
경남	3	1	2
제주	0	0	0

주 : 1) 통행금지구역 :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지역(24시간 통행금지).

2) 통행제한구역 :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한 지역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악물 등 판매·대여 등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지역(일정시간 통행 제한).

자료 : 여성가족부(2021).

(2) 청소년 유해업소 격리·구획화

여성가족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수도권 신도시 등 각종 신도시에서의 청소년 유해업소 난립을 막기 위하여 신도시 계획 시 지구단위 계획 등을 통해 주거지 및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청소년 유해업소를 제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특정용도제한구역을 설치하며, 도시의 건전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락시설을 집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청소년보호를 위한 MOU를 체결하여 신도시에 적용 가능한 청소년 유해업소 격리·구획화 모델을 제시하고, 주거지나 학교위생 정화구역에서 청소년 유해업소의 격리·구획화를 추진하여 왔으며, 지난 2010년 6월 29일 화성·동탄2 신도시 개발계획에 청소년 유해업소 격리·구획화가 반영되었다.

(3) 학교주변의 교육환경 보호

‘교육환경 보호구역(구, 학교교육환경정화구역)’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학교 및 학교 주변에 교육환경위생에 지장이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쾌적하고 명랑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부’에서 지정하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를 근거로 하여 설정되는데, 교육감이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고시해야 한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



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을 의미하고,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한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종래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학교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 따라 추진되어 왔다. 정부는 학교 주변 학생의 안전 및 정서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업소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2016년 2월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변경하여 관리하고 있다.

2021년 6월을 기준으로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과 교육 환경보호구역 내 적법 해제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총 206개소로 나타났는데, 그중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수가 125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신변종업소가 49개소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적법 해제시설 27,917개소 중에서는 유흥·단란주점이 약 32.8%(9,153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9〉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대기/수질/악취/소음·진동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폐기물처리시설 (폐수 종말, 가축분뇨, 분뇨)	0	2	2	4	1	0	0	5	0	0	47	7	0	1	56	0	0	125
가축사체처리장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화장시설, 보안시설, 도축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가축시장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제한상영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화방, 화상방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성기구취업소	3	0	0	0	4	1	0	0	3	0	0	1	1	1	0	0	0	14
신변종업소	9	8	0	0	0	0	0	0	32	0	0	0	0	0	0	0	0	49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1
폐기물수집장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총포, 화학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감염병 격리소 등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담배자동판매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복합유통게임	0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미니게임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당구장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무도학원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사행행위장 등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노래연습장	0	1	1	2	0	0	0	0	0	0	0	0	0	0	0	0	0	4
비디오감상실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유흥·단란주점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숙박업, 호텔업	1	1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3
만화가게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
사고대비물질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계	20	15	3	6	6	1	0	5	35	0	47	8	1	2	57	0	0	206

주 : 2021년 6월 기준 자료.

자료 : 교육부(2021).

〈표 6-2-10〉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적법 해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대기/수질/악취/소음·진동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 가축분뇨, 분뇨)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가축사체처리장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화장시설, 보안시설, 도축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가축시장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제한상영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화방, 화상방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성기구취업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신변종업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69	118	15	49	2	12	0	1	79	8	13	8	20	11	8	12	7	432
폐기물수집장소	0	3	0	0	0	0	0	0	9	0	0	0	4	1	1	0	1	19
총포, 화학류	0	0	0	0	0	0	0	0	0	0	0	0	1	1	0	0	0	2
감염병 격리소 등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1
담배자동판매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복합유통게임	575	83	109	140	180	133	0	2	365	68	61	160	265	66	52	124	7	2,390
미니게임기	0	6	0	0	0	0	0	0	3	2	0	0	2	0	0	0	0	13
당구장	598	108	65	237	89	72	0	9	380	70	75	114	109	84	47	134	25	2,216
무도학원	3	3	7	0	1	2	0	0	8	1	2	0	4	2	3	1	2	39
사행행위장 등	1	0	0	0	0	0	0	0	5	0	0	0	0	0	0	0	0	6
노래연습장	1,888	566	487	553	160	407	0	14	1,846	200	260	321	226	236	342	480	72	8,058
비디오감상실업	25	2	7	3	0	3	0	4	2	1	2	2	1	4	0	0	0	56
유흥·단란주점	1,487	1,178	385	517	68	101	0	15	1,610	333	245	388	281	566	543	1,023	413	9,153
숙박업, 호텔업	981	615	242	252	70	102	0	6	688	328	220	429	176	335	336	418	209	5,407
만화가게	10	10	2	3	1	5	0	0	23	2	3	4	23	5	0	19	2	112
사고대비물질	0	1	1	0	0	2	0	0	1	1	3	0	0	0	3	1	0	13
계	5,637	2,693	1,320	1,754	571	839	0	51	5,019	1,014	884	1,426	1,112	1,311	1,336	2,212	738	27,917

주 : 2021년 6월 기준 자료.

자료 : 교육부(2021).

(4)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1993년 ‘한국청소년학회’의 ‘청소년유해환경고발센터’ 개설·운영을 시작으로 민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이 자율적으로 추진되었다. 1994년에는 서울YM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운영되었고, 1995년부터 1996년까지는 서울 등 6대 도시에 6개 시민단체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이 보급되었다. 1997년에 제정·시행된 「청소년 보호법」 상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 규정이 마련됨

으로써 비로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2021년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238개의 감시단(총 19,576명)이 활동하고 있다.

〈표 6-2-11〉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 현황

(단위 : 개, 명)

시·도	시민단체감시단	
	단체 수	단원 수
합 계	238	19,576
서울특별시	49	7,558
부산광역시	17	1,532
대구광역시	6	470
인천광역시	6	172
광주광역시	5	371
대전광역시	5	323
울산광역시	7	402
세종특별자치시	2	431
경기도	57	4,422
강원도	12	476
충청북도	7	270
충청남도	18	1,643
전라북도	8	310
전라남도	14	537
경상북도	8	130
경상남도	12	370
제주특별자치도	5	159

주 : 2021년 12월 말 기준.

자료 : 여성가족부(2021).

2.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가.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 강화

여성가족부에서는 매체물 등에 대한 청소년유해성 심의·결정 및 고시를 통하여 유해매체물이 청소년들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고발조치·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요청 등 시정조치를 강화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의 경계 붕괴,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 등 매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시의적, 실효적 규제정책 마련을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 작업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유해매체 환경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 법·제도 개선

1997년에 제정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제도를 통하여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유해한 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매체환경의 급속한 발달과 변화로부터 청소년보호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이 국가지속발전가능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를 명문화하고, 규제·처벌 위주의 정책에서 보호·교육 지원 등의 사전 예방적 보호조치와 인터넷 중독 등 매체역기능으로 인한 청소년 피해 지원에 대한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가정 및 사회에서 효율적인 청소년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 매체물 심의기관 현황

우리나라의 매체물 심의기관은 각 정부기관 산하의 유관기관 및 매체별로 분리되어 있는 다원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인쇄매체의 경우 ‘간행물윤리위원회’가, 방송 및 통신매체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영화 및 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심의 및 등급 분류 기능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심의기관이 심의를 요청한 매체물이나 심의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매체물의 심의 및 등급 분류, 음반 및 음악 파일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 제 1 부
- 제 2 부
- 제 3 부
- 제 4 부
- 제 5 부
- 제 6 부**
- 제 7 부
- 제 8 부
- 제 9 부
- 제 10 부
- 부 록

우리나라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매체물 심의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국가 주도의 연령등급제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 연령등급제는 「청소년 보호법」 상의 청소년 유해매체물제도와 문화 관련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등급 분류 제도가 병행되고 있으며, 심의 및 등급 분류 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심의기관의 법적 성격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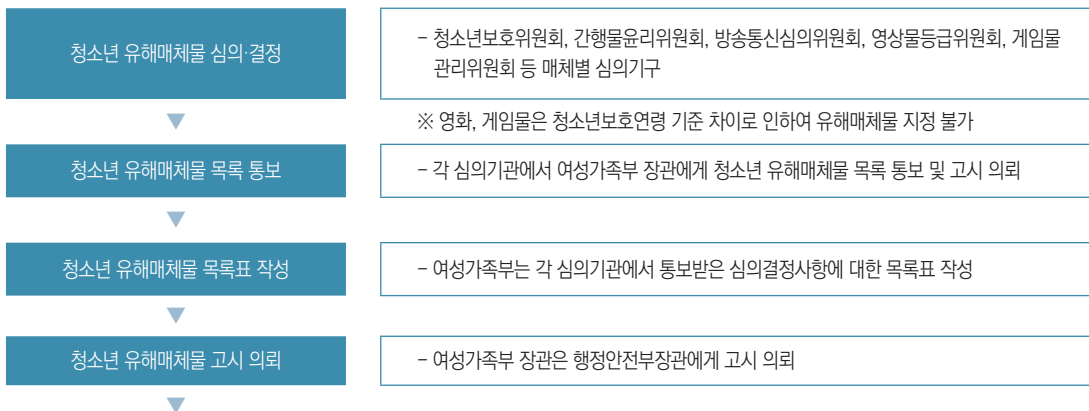
〈표 6-2-12〉 매체물 심의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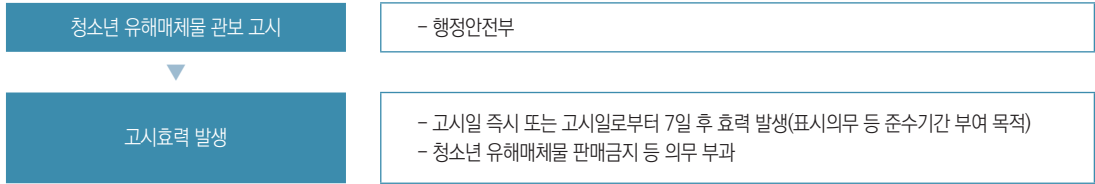
심의기관	담당 매체	소관부처·법률	심의형태
청소년보호위원회	음반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법」	사후심의
간행물윤리위원회	간행물	문화체육관광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사후심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비디오	문화체육관광부, 「영화비디오법」	사전등급분류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법」	사전등급분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사후심의
	방송 프로그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사전자율/사후심의 병행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제9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등에 따라 소관 매체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에서 제출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 고시를 의뢰하고 있다.

[그림 6-2-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절차도





자료 : 여성가족부(2021).

〈표 6-2-13〉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별 결정·고시 현황

(단위 : 건)

연도	고시횟수	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 등급 위원회		게임물 관리 위원회		청소년 보호 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계		
		도서	정기간행물	만화단행	만화잡지	광고	전자출판	영화	비디오매체	게임물	음반	무적비디오	방송프로그램								통신분야						
													영화	드라마	다큐	만화	음악	버라이어티	데이터방송	인포테인먼트	스포츠	기타	PC통신	전기통신			
97	14	59	106	1,994	29	11	0	102	444	0	0	0	1,688	0	1	19	9	0	0	0	0	0	0	8	607	0	5,076
98	43	173	416	1,140	52	0	0	151	762	0	0	0	808	30	12	52	14	0	0	0	0	0	0	0	755	0	4,365
99	45	304	388	1,501	14	1	0	71	428	0	4	0	271	2	5	2	0	0	0	0	0	0	4	61	31	3,087	
00	28	366	699	1,227	0	0	0	0	0	0	0	0	158	0	9	4	0	0	0	0	0	0	67	53	10	2,593	
01	42	289	983	1,387	1	0	0	0	0	0	0	0	597	58	5	99	451	0	0	0	0	0	962	7	41	4,880	
02	51	259	1,098	1,492	8	0	0	0	0	0	0	0	1,399	33	1	114	19	0	0	0	0	189	435	836		5,883	
03	66	611	1,220	1,802	131	0	0	0	0	0	0	0	2,623	145	0	3	510	0	0	0	0	284	0	3,510		10,839	
04	62	371	528	1,810	269	2	0	0	0	0	0	0	202	67	2	0	0	0	0	0	0	0	0	0	7,641		10,892
05	35	324	307	1,413	191	0	0	0	0	0	0	0	1,067	237	0	15	2	0	0	0	0	179	0	17,115		20,850	
06	45	351	324	1,347	72	0	0	0	0	0	4	0	2,794	207	0	29	3	0	0	0	0	480	0	18,715		24,326	
07	63	414	377	1,867	46	0	0	0	0	0	344	0	6,316	190	0	151	1	0	0	0	0	840	0	16,044		26,590	
08	45	433	264	1,653	48	0	584	0	0	0	651	0	1,041	1,059	0	142	0	0	0	0	0	626	0	884		7,385	
09	48	809	223	1,756	229	0	658	0	0	0	941	0	2,557	1,462	0	436	0	0	0	0	0	3,109	0	227		12,407	
10	36	822	276	2,066	188	0	1,131	0	0	0	991	0	1,041	902	0	459	0	491	0	63	3	412	0	280		9,125	

연도	고시횟수	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 등급 위원회		게임물 관리 위원회		청소년 보호 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계
		도서	정기간행물	만화단행	만화잡지	광고	전자출판	영화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무직비디오	방송프로그램										통신분야		
													영화	드라마	다큐	만화	애니	버라이어티	데이터방송	인포테인먼트	스포츠	기타	PC통신	전기통신	
11	51	874	404	2,882	16	0	1031	0	0	0	671	171	1,628	1,706	0	340	0	3,350	0	177	52	217	0	351	13,870
12	62	844	445	3,037	0	0	1075	0	0	0	1,049	101	2,218	2,077	0	555	0	4,424	2	0	0	61	0	447	16,335
13	32	766	425	2,196	0	0	834	0	0	0	1,000	0	1,215	984	0	544	0	2,134	0	0	0	64	0	390	10,552
14	35	824	518	1,840	0	0	926	0	0	0	1,140	0	969	795	0	1015	0	1,880	0	0	0	0	0	263	10,170
15	58	783	504	2,095	0	0	821	0	0	0	2,033	0	2,243	793	0	549	0	3,442	0	0	0	0	0	138	13,401
16	50	626	436	1,786	0	0	563	0	0	0	804	0	1,282	379	0	398	0	3,459	0	0	0	0	0	142	9,875
17	43	525	457	1,821	0	0	660	0	0	0	1,078	0	489	272	4	280	0	1,590	0	0	0	0	0	70	7,246
18	50	465	394	1,564	0	0	887	0	0	0	975	0	845	673	17	821	0	3,729	0	0	0	2	0	93	10,465
19	41	352	412	1,504	0	0	960	0	0	0	833	0	860	810	11	351	0	1,469	0	0	1	0	0	104	7,667
20	46	260	376	1,544	0	0	954	0	0	0	1,038	0	2,092	444	4	530	0	1,426	0	0	0	0	0	72	8,740
21	40	243	32	1,053	0	0	759	0	0	0	2,706	0	2,575	863	7	801	0	830	0	0	0	0	0	39	9,908
계	1,131	12,147	11,611	43,777	1,294	14	11,843	324	1,634	0	16,262	272	38,978	14,188	78	7,709	1,009	28,224	2	240	56	7,504	1,918	67,443	266,527
심의기관별 총합계				80,686				1,958	0		16,534						97,988						69,361		

주 : 2021년 12월 말 기준 자료.

자료 : 여성가족부(2021).

3) 음반의 청소년 유해성 심의

음반 심의제도는 그 근거가 되었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2006. 11.) 되면서 주로 청소년 유해성에 대한 심의임을 고려하여 청소년 유해성 심의 결정 업무를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하여 추진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음반·음악파일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가사 등을 모니터링하여

청소년유해성 심의, 유통 차단 등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매년 음반·음악파일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27일까지 유해결정 곡은 총 16,262곡(국내 8,048곡, 외국 8,214곡)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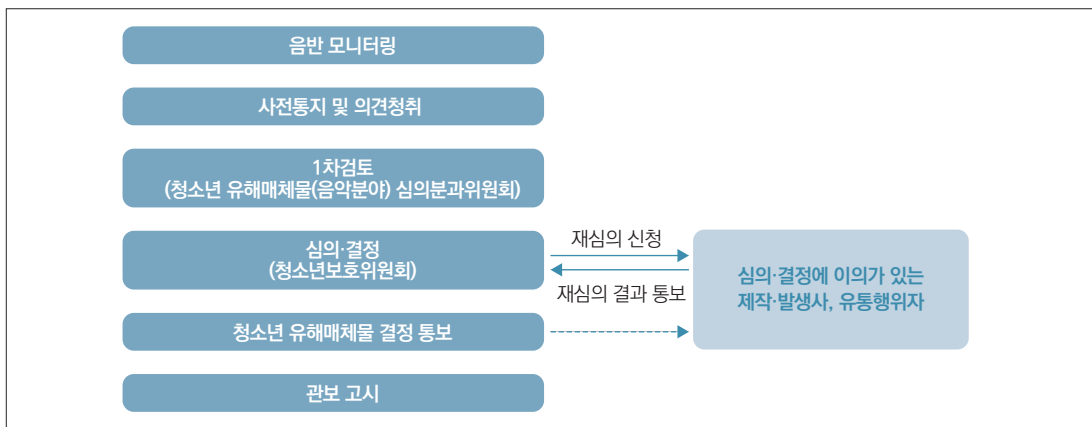
〈표 6-2-14〉 청소년 유해음반 결정·고시 현황

(단위: 건)

구분	총계	2006년 이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16,262	8	344	651	941	991	671	1,049	1,000	1,140	2,033	804	1,078	975	833	1,038	2,706
국내곡	8,048	4	151	228	445	427	253	361	382	438	566	399	475	311	400	885	2,323
국외곡	8,214	4	193	423	496	564	418	688	618	702	1,467	405	603	664	433	153	383

자료 : 여성가족부(2021).

〔그림 6-2-2〕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 청구 절차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8

나.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계자율정화 지원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및 게임 이용이 늘어나면서 건강한 매체이용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규범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이버 세계에서의 행동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가정과 학교에서만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대두된 바, 업계자율정화활동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1)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계자율정화시스템의 구축

업계의 자율정화활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청소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소비자인 청소년에게 건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제정 및 운영하는 교육, 모니터링, 감독 등 내부정화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율정화시스템은 기업 혹은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대한의 정책을 추진한다는 규약이며, 청소년 대상 서비스 제공 시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려는 기업 혹은 사업자의 노력을 확보한다는 목적과 함께,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이미지 개선과 사회공헌을 실현하려는 기업 혹은 사업자의 자율의지를 내포한다. 또한, 법위반 행위 예방 및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청소년 유해정보의 유통차단과 청소년 보호법 준수에 노력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건강한 매체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 공간 및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2) 청소년보호책임자 교육 실시

여성가족부에서는 건강한 매체환경을 조성하고 사이버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과 함께 인터넷사업자 및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에 대한 인식과 자율정화 의지를 제고하고자 2007년부터 인터넷·게임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협회를 통한 관련사업자 집합교육과 사업자의 신청에 따른 사업장 방문을 통해 포털사이트, 게임 사이트, 인터넷쇼핑몰, 홈쇼핑 등 온라인 분야의 청소년보호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 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 교육은 각 사업체에서 청소년보호를 담당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개발자, 프로그래머 등 모든 분야의 직원들이 참여하여 「청소년 보호법」 해설, 유해매체물의 심의 절차 기준, 고시제도 등의 강의를 청취함으로써 청소년보호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청소년보호 의식 고취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3) 사업자의 자율정화 지원

여성가족부에서는 사이버 상에서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계자율정화를 강화하고자 노력을 전개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들은 사업자의 자율적인 규제를 지원하고, 불법 및 청소년 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를 다양하게 실시하였다.

그간 사업자의 자발적인 정화활동으로 추진된 고객센터 및 모니터링 기능 강화, 게임업계의 자율규약선언, 이동통신사의 청소년 대상 성인서비스 중단, 인터넷신문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청소년 보호정책과 더불어, 여성가족부는 인터넷신문의 유해성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활동을 유도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등 자율정화를 지원하였다.

이 밖에도 자율규제단체 등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자 여성가족부는 자율규약 제·개정 및 자율심의 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2016. 1.) 하였다. 이러한 자율정화 활동은 앞으로도 법이나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사이버 상에서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안전한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청소년 유해정보를 차단하여 청소년을 유해매체물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3

3. 사이버 역기능 해소를 위한 대응체계 마련

가.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대응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학업성적·사회성 저하, 가정불화, 건강악화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피해 해소를 위한 단계적·체계적 대응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1)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대응체계

여성가족부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대응정책은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매체 환경을 조성해주는 정책의 주요한 분야로서, 이를 위한 상호보완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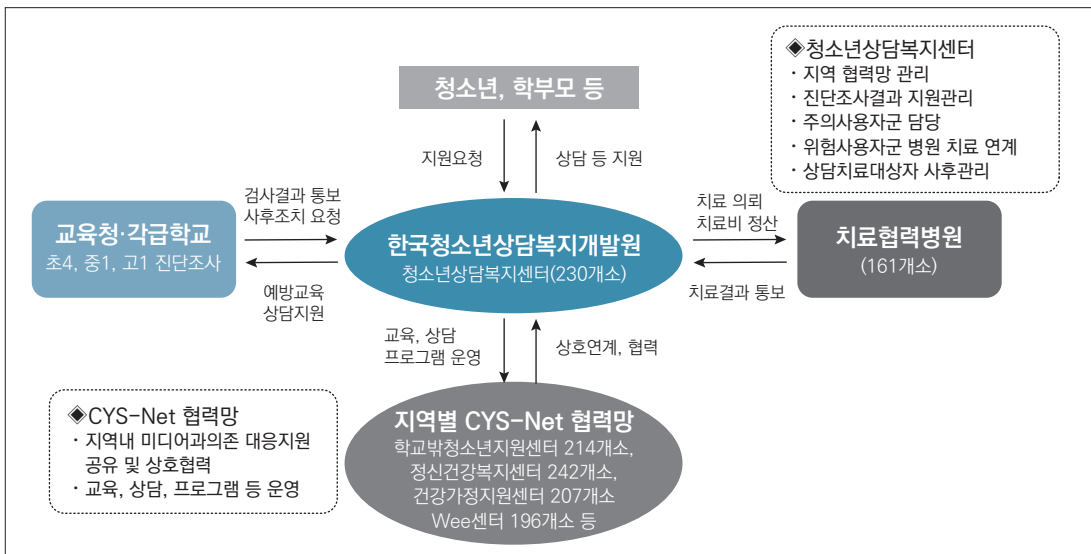
부 록

첫째, 잠재적인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예방적 상담 활성화를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중심으로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둘째, 심각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의 치유를 돕기 위해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161개 치료협력 병원 연계를 통한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치료 기반 확대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허브로 하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대응 지역 협력망을 구축하여 지자체, 교육청, 정신건강증진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단체, 학부모단체 등 지역의 다양한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지역협력망을 통하여 지역 내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대응 기관 간 연계·협력은 물론, 지역 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단조사를 실시하여 조기 발굴 및 상담·치료 등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교육 및 상담실적은 청소년안전망 종합정보망과 연계하여 지역별 과의존 해소 서비스지원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림 6-2-3] 여성가족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정책 추진 체계도



자료 : 여성가족부(2021).

2)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치유서비스 등 지원

매년 학령전환기(초4·중1·고1) 청소년 전수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3~4월)를

실시하여 과의존 위험 정도별로 상담 및 병원치료 연계 등 지원하고 있다. 위험사용자군에 대하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접 개인상담 지원하고 주의사용자군은 학교별로 찾아가는 집단상담 지원하고 있으며 공존질환보유군에 대하여는 치료협력병원 연계 및 치료비를 지원(일반계층 최대 40만 원, 취약계층 최대 60만 원) 한다.

한편, 인터넷·스마트폰 차단 환경에서의 집중치유를 위한 기숙치유 프로그램으로 방학, 주말을 이용한 인터넷치유캠프 및 가족치유캠프 운영하여 21년도에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는 10회 115명, 가족치유캠프는 12회 178가족이 참여하였다. 상시 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에서는 1~4주 프로그램을 총 18회 운영하여 323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였다.

또한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미디어 이용습관 형성을 위해 위험군 청소년 부모대상 교육을 실시하여 2021년도에 총 7,055명의 부모가 참여하였다.

과의존 대응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2021년도에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전담상담사 54명을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에 배치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상담전문 인력 양성교육을 실시, 1,437명이 참여하였다.

나. 청소년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운영

1) 제도 도입 배경

과도한 인터넷게임 이용은 학습시간을 침해하고 수면부족을 야기하는 등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약화시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일명 ‘셋다운제’)'를 도입하였다. 게임 셋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5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후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었다(2011년 5월 19일 개정, 2011년 11월 20일 시행).

2) 제도 추진 현황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의해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0~6시)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 제도는 PC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고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청소년들에 대한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보급률이 낮은 기기를 통해 진행되는 인터넷게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용을 2년간 유예하였다. 이후, 법 규정에 의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대상 게임물 범위의 적절성 여부를 매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제도 적용대상 게임물 범위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용 대상 게임물 범위를 고시하였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섯다운제의 강제성을 완화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친권자 등의 요청 시 심야시간에도 인터넷 게임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두 차례에 걸쳐 정부 입법으로 발의(2014년, 2016년)하였으나,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3) 제도 개선 검토

2021년 정부는 게임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습관 형성과 관련하여 가정 내 자율성과 양육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재추진했다.

지난 10년간 휴대전화 성능 향상, 5G 네트워크 진화 등 기술발전을 기반으로 섯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게임시장을 주도하고, 1인 방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인터넷 만화(웹툰), 누리소통망(SNS) 등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섯다운제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주요 선진국이 개인과 가정의 자율적 조절을 원칙으로 하는 점, 과거에 비해 학부모의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가정 내 게임지도도 가능한 상황 등을 고려해 섯다운제를 재검토하였다.

4) 섯다운제 폐지 및 가정 내 자율적 섯택권 부여

그 결과 정부는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정책을 자율성을 기반으로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주체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2021년 8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섯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게임 제공 시간 제한제도 중 「청소년 보호법」의 섯다운제는 폐지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섯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게임시간 섯택제’의 인지도와 편의성을 높여 가정 내 활용도를 높이고, 청소년의 게임이용 조절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게임 과몰입으로부터의 일상회복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섯다운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총 4건이 발의되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21. 9. 28.) 결과 위원회 대안이 의결(21. 10. 22.) 되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21. 11. 9.), 본회의 의결(21. 11. 11.)을 마쳤다. 개정안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 ▲중독의 부정적 낙인효과를 감안한 용어개선(중독·과몰입 병기)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상담, 교육, 치료 등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담겼다. 개정 법률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로 하였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2, 02-2100-6308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제3장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1.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사회복귀 지원

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은 ‘대상 아동·청소년’ 아닌 ‘피해자’로 규정되었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21년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중앙지원센터 1개소(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역지원센터 17개소를 운영하였다. 법 개정 이전인 2006~2020년에는 성매매피해청소년 교육 위탁기관을 전국적으로 5~11개소를 운영하였다.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방향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조기발견 및 긴급구조, 상담 및 의료·법률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일상생활 복귀, 피해아동·청소년의 자립·자활 역량 강화 도모, 아동·청소년들에게 성매매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원기관 안내 및 성범죄 피해예방활동 전개, 유관기관 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에 적극 대응하였다.

지역지원센터는 일반적으로 경찰, 검찰, 유관기관 등에서 연계된 피해아동·청소년을 중앙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받아 지원하나, 온·오프라인에서의 아웃리치를 통해 성매매 피해 혹은 피해 위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을 발견하여 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지역전담지원센터는 긴급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학업지원, 진로취업지원, 자활자립지원, 타기관 연계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긴급지원은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구조와 주거를 포함한 생계비를 지원하여 일시적으로 피해아동·청소년의 안전 보장이다. 교육지원은 피해자의 일상복귀를 위해 법정대리인 교육이 병행되며, 보호자 및 가족의 교육과 심리지원이 함께 이루어진다. 법률지원은 경찰·검찰 조사 동행, 재판 동행, 민사소송 지원 등이다. 학업지원은 피해자가 성매매로 재유입되지 않고, 피해자 스스로 삶의 주체로 살아가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 등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 지역전담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장애인지원기관 등 유관기관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을 연계 지원하고 있다.

〈표 6-3-1〉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지원 현황

연번	시도	선정기관	비고
1	서울	십대여성인권센터	
2	부산	부산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3	대구	대구여성회	
4	인천	인권희망 강강술래	
5	광주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6	대전	여성인권티움	
7	울산	울산여성의 전화	
8	경기	수원여성인권 톨음	
9	강원	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10	충북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11	충남	충남여성인권지원센터	
12	전북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13	전남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14	경북	포항여성인권지원센터	
15	경남	사회복지법인 범숙	
16	제주	제주여성인권연대	
17	서울	(사)평화의샘	장애인 특성화센터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표 6-3-2〉 주요 프로그램 총괄 예시

분야	프로그램
신고 접수	• 범죄 신고 접수
아웃 리치	• 인터넷 카페, SNS 등 온라인 아웃리치 활동
긴급구조	• 긴급지원 및 일시보호(교통비, 일반숙박비 등) • 긴급1388 통합콜센터(17개) 및 청소년쉼터 등 보호체계 연계
상담 지원	• 1:1 개별상담 • 부모 및 가족상담,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의료 지원	•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진료 및 처방 지원 • 치료비 지원 및 병원 동행
법률 지원	• 법률 지원 연계 및 정보 제공 • 경찰서 및 법원 동행, 소견서 및 청원서 제출
학업 지원	• 일반 및 특수학교 복학·진학 정보 제공 • 검정고시 원서접수기관 및 관련 정보 제공(청소년지원시설 등록)
자립 지원	• 직업학교, 취업기관 등 관련기관 정보제공 • 청소년 인턴십센터(십대자립훈련) 등 직업체험 프로그램 연계
전문 멘토	• 전문상담사가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을 성인(만 19세)이 될 때까지 진로상담 등 개별 맞춤형 상담 지원

자료 : 여성가족부(2021). 2021년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업무 안내서.

〈표 6-3-3〉 상담 및 사례관리 인원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인원(명)	787	1,077	1,034	1,021	1,055	1,274	1,285	1,610	1,688	1,962	2,727

자료 : 여성가족부(2021).

2.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

가. 신상정보 공개제도 목적과 의의

아동과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사회 환경의 변화로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등의 성범죄는 그 행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줌과 동시에 지속적인 후유증을 남긴다는 점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는 2000년 7월 1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최초로 제정·시행되면서 시작되었다. 2006년 6월 30일에 개정·시행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가 도입되었고, 2008년 2월 4일에 다시 법률을 개정·시행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10년 1월 1일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경찰서 열람 방식에서 인터넷 공개하는 방식으로 개정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아동과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20년간 등록관리 되고 있으며 법원에서 공개 명령을 선고 받은 자는 10년 이내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성범죄자 등록·열람제도는 미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법이 만들어져 시행되었다. 미국은 1994년 「제이콥웨터링법(The Jacob Wetterling Act)」을 만들어 성범죄자 등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6년 「메간법(The Megan’s Act)」을 만들어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또한 2006년에 「아담월쉬 아동 보호 및 안전법(The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을 제정하여 일반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미국 내 성폭력전과자들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각 주(State)별 운영 방식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를 통해 ‘드루 소딘 국가 성범죄자 공개 웹사이트(Dru Sjodin National Sex Offender Public Website)’를 만들어 성범죄자의 신상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등 성범죄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해 왔다.

나. 신상정보 공개제도

2010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공개대상자 결정은 법원이 하게 되었다. 법원은 아동과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공개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③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기간은 징역·금고 3년 초과인 경우 10년, 징역·금고 3년 이하인 경우 5년이다. 아동과 성인 대상 성범죄로 공개 명령을 받은 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기간은 공개기간에서 제외된다. 공개 정보의 내용은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범죄 전과사실(전과 및 횡수)’,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이다. 신상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공개되며 미성년자도 열람할 수 있다. 공개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2016년에는 성범죄 예방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식별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성범죄자의 사진(4장) 중 전신사진을 정면·좌측·우측 사진보다 크기를 확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성범죄자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하여 성범죄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홍보·보급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성범죄 예방효과를 제고하였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국민들이 여름철 피서지, 놀이터나 공원 등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알림 기능을 활용하여 이동 중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자신의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를 음성과 메시지로 제공받고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0년에는 성범죄자 ‘조두순’과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구법상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의 주소지 공개 범위를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도록 하는 부칙을 개정하여 현행 공개 제도와 동일하게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다. 신상정보 고지제도

2011년 1월 1일부터 법원으로부터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동일지역(읍·면·동)의 세대주(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자) 등에게 우편으로 송부한다. 고지대상자 결정은 법원이 한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고지정보를 공개 명령기간 동안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 어린이집·유치원의 원장, 초·중·고등학교의 장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고지대상자는 공개대상자와 같다.

고지기간은 공개 명령 기간 동안이며, 고지정보의 내용은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거주지(상세 주소 포함),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범죄 전과사실(전과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이다. 고지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된다.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실제 주소지 읍·면·동 행정구역에 지역주민 중 아동·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둔 세대, 어린이집·유치원의 원장, 초·중·고등학교의 장, 읍·면·동 주민센터의 장 등을 대상으로 고지정보서를 송부한다.

2018년 7월부터는 공개 및 고지정보에 성범죄자의 실제거주지 등이 사실과 다르게 잘못 기재된 경우 누구든지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정청구의 처리절차를 마련하였다.

2020년에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고 우편고지가 비용 대비 효과성이 저조하다는 의견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를 도입하였다. 모바일고지는 아동·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둔 세대의 세대주의 스마트폰으로 발송되며 세대주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앱을 통해 고지정보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모바일고지를 일정시간 내에 열람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재송부된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은 기존대로 우편으로 고지된다.

한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를 받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자나 보호기관의 장이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피해 대응요령’을 인포그래픽과 카툰 형식으로 제작하여 고지정보서와 함께 동봉·발송하고 있으며, 성범죄자 알림e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신상정보 공개대상자 현황

아동과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등록이 완료된 자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05,445명(법무부)이고, 공개 명령이 선고되어 ‘성범죄자 알림e’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되고 있는 사람은 3,961명이다.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4, 6406

3.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6. 6. 30. 시행)에 따라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성범죄자의 접근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으로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이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8년 2월 4일에는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만 해당), 2010년 1월 1일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0년 4월 15일에는 개인과외교습자, 2012년 8월 2일에는 의료기관의 의료인, 가정방문 학습지도교사, 2013년 6월 19일에는 경비업 법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활동 기획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 연습장업, 2016년 11월 30일에는 위탁 교육기관이 추가되었다. 2018년 7월 17일부터는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2018년 9월 14일부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아동·청소년 이용 시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등의 기관이 추가되었으며, 2020년 5월 27일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 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이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되었다.

그리고 최초 도입 당시에는 취업제한기간이 5년이었으나 2008년 2월 4일부터 10년으로 확대되었고, 2010년 4월 15일부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서 성인대상 성범죄자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인·허가 또는 신고 등록 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경찰서에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취업중인 자 포함)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해당 경찰서는 조회대상자의 성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하여 조회를 요청한 기관장에게 회신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1월부터는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도 온라인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및 회신서 출력이 가능하다. 또한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취업자 및 취업예정자 본인이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도 가능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이 연 1회 이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을 하도록 법제화되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위헌결정에 따른 법 개정으로 2018년 7월 17일부터 법원이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서 취업제한자로 규정된 자가 법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면 해당자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고 시설을 운영 중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폐쇄를 요구한 경우에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해임요구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 의무제도

유치원, 학교, 체육단체 등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 대상기관으로는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학원 및 교습소,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

상담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재활센터, 대학,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체육단체가 해당되며 2020년 5월 27일부터는 국제학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추가 되었다.

또한, 2021년부터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및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경력자 취업점검·확인, 성범죄 경력자 해임요구·기관 폐쇄, 과태료 부과·징수 등 3개 업무가 자치사무로 전환되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8년 19,612명, 2019년 19,929명, 2020년 8,485명 2021년 8,56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4, 6406

4.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운영

가.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립목적 및 의의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한다. 2007년부터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 스스로 자기 주도적, 실천적 체험학습을 통해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하게 하도록 하여 건강한 성가치관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 추진배경 및 경과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정보를 주로 성인물, 음란성 게임, 미디어 및 인터넷 또는 또래를 통해 얻고 있는데 반해, 기존 학교의 성교육은 이론 중심의 단편적인 지식 전달 위주로 진행된다는 점이 지적

되며,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멀티미디어와 다양한 설치물을 활용한 참여형 성교육이 실시되어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한정된 지역에서만 교육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였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효과적인 성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2006년 7월, 청소년정책자문위원회 성문화분과위원회는 전국에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7년 국가청소년위원회 소관 정부 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었다.

2007년 4월, 민간 성교육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립추진단은 표준 콘텐츠 및 운영매뉴얼을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콘텐츠를 갖춘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운영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2010년 4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인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1년에는 45인승 버스를 개조하여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주요 콘텐츠를 탑재하여 농·산·어촌 등 교육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 등에 찾아가는 성교육이 가능한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2개소를 신규로 도입하였다.

다.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역할과 사업내용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목적은 아동·청소년이 다양한 도구와 매체를 활용한 자기 주도적 참여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정립 지원 및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등 대상별로 특화된 성교육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발달단계별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하고 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사업은 ① 체험관 및 이동형 교육장을 활용한 이동·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② 학교와 연계한 찾아가는 성교육 ③ 지역사회 내 교육 및 홍보활동 ④ 교사 및 보호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⑤ 농·산·어촌 지역 등으로 찾아가는 성교육 실시 등이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성교육을 위해 2007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표준 프로그램인 'SAY' 매뉴얼을 개발하였고, 이후 변화된 상황에 맞게 매뉴얼을 리뉴얼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아동·청소년의 발달 단계별 특성 등을 반영한 전문적 교육 프로그램인 ‘SAY2’를 개발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다. 또한 2019년에는 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였고, 2022년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및 보완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교육 실적은 아래와 같다.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합 교육 제한에 따라 실적이 감소하였으나, 2021년도에는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표 6-3-4〉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 실적

(단위 : 명)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교육인원	1,550,447	1,989,951	1,823,194	2,154,440	2,235,751	2,297,277	2,475,441	1,031,000	1,640,136

주 : 2021년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 실적은 2021년 12월 기준으로 조사하였음.

자료 : 여성가족부(2021).

라.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현황

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07년에 전국 16개 시·도 단위에 21개소가 신규로 설치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2021년 12월 현재 고정형 47개소와 이동형 10개소로, 총 5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표 6-3-5〉 청소년성문화센터 지역별 설치 현황

(단위 : 개)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고정형	47	8	3	2	2	2	1	1	6	3	2	2	4	4	3	2	2
이동형	10	-	2	-	-	-	-	-	3	1	1	1	-	-	1	1	-

자료 : 여성가족부(2021).

〈표 6-3-6〉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현황

(단위 : 개)

구분	고정형	이동형	기관명
서울	8	-	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광진구),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송파구), 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은평구), 아현청소년성문화센터(영등포구),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도봉구), 드림센터(강남구), 서울시립중앙청소년성문화센터(중랑구),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동작구)
부산	3	2	부산청소년성문화센터(사상구),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동래구), 탄생의신비관청소년성문화센터(금정구), 탄생의신비관이동형(I, II), 청소년성문화센터(금정구)
인천	2	-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남구), 부평구 청소년성문화센터(부평구)
대전	1	-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중구)
대구	2	-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달서구),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남구)
광주	2	-	광주청소년성문화센터(북구), 광주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광산구)
울산	1	-	울산청소년성문화센터(남구)
경기	6	3	경기청소년성문화센터 탁틴 와~(안산시), 경기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소행성'(안산시),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달콩달콩'(파주시), 경기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큰키나무'(파주시),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용인시),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화성시),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부천시), 안양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안양시),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수원시)
강원	3	1	강원청소년성문화센터(춘천시), 강원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춘천시), 시소강릉청소년성문화센터(강릉시),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원주시)
충북	2	1	충북청소년성문화센터(청주시), 충북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청주시), 충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충주시)
충남	2	1	충남청소년성문화센터(천안시), 홍성청소년성문화센터(홍성군), 충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예산군)
전북	4	-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전주시),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군산시), 정읍시청소년성문화센터(정읍시),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익산시)
전남	4	-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목포시),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여수시), 전남청소년성문화센터(완도군), 순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순천시)
경북	3	1	경북청소년성문화센터(김천시),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포항시), 경북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안동시), 경북북부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안동시)
경남	2	1	경남청소년성문화센터(사천시), 창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창원시), 경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창원시)
제주	2	-	서귀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서귀포시),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제주시)

자료 : 여성가족부(2021. 12).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3

5.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실시

가. 성 인권 교육 실시 목적 및 의의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에게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계적인 성교육으로서 2011년 2개 시·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실시되었다. 점차 사업 실시 지역이 확대되어 2021년 현재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은 8개 시·도에서 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은 2015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사업을 확대 운영하였다. 학교 성 인권 교육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교재 개발을 추진하여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교사용 교수·학습안 및 학생용 핸드북은 2013년에 신규 제작하였고,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매뉴얼 제작은 2012~2013년에 걸쳐 완료하였다. 이후 2014~2015년에 걸쳐 유아용, 초등학교 저학년용, 중학생용, 고등학생용 4종을 추가하여 총 5종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후, 2018년 중·고등학생용 교재 개편, 2021년 개편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한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고도화하였다.

나.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사업내용

성 인권 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중앙지원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지역별로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을 진행할 지역운영기관을 각 8개소, 27개소를 선정·운영하였다. 중앙지원기관에서는 운영 총괄 및 실적관리, 현장점검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운영기관을 지원하고, 각 지역운영기관에서는 지역 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인권 교육과정을 실시하였다.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은 서울, 부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 시·도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성 인권 및 성평등, 관계와 소통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와 함께 아이들이 직접 발표하고 토론하는 참여형 방식으로 학교의 보건교사 또는 전문 강사가 수업을 진행한다. 주로 보건교사가 중심이 되어 표준 프로그램에 따라 수업이 운영되지만 보건교사 미배치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특성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6-3-7〉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실적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실인원	14,244	15,496	15,198	15,365	14,466	14,614
연인원	148,472	167,651	155,228	156,899	80,516	130,089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은 자기보호 및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특수학교 및 통합학급의 초·중·고등학교 지적·시각·청각·중복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장애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매뉴얼’에 따라 외부 강사가 다양한 교구·교재를 활용하여 대상별 10차시 내외의 수업을 진행한다.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성 인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경계 존중과 관계 속에서의 의사표현, 성폭력 피해 예방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한 장애 아동·청소년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표 6-3-8〉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실적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실인원	2,700	2,799	2,824	2,859	2,853	2,702
연인원	25,574	26,661	26,503	27,879	20,555	23,955

자료 : 여성가족부(2021).

향후 학교 성 인권 교육 교재 개편, 강사 및 콘텐츠 관리 강화 등 품질 제고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지속적인 만족도 관리와 이에 대한 적극적인 피드백을 실시함으로써 성 인권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5, 6407

제7부 요약

제7부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현황과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 및 학교생활 만족도를 살펴보았으며, 교육복지정책의 주요 내용도 함께 제시하였다.

2021년 현재,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학령인구는 약 770만 명으로 1980년 약 1,440만 명으로 정점에 이른 이후부터 저출산 현상의 지속화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70년 이후로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1년 기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중·고등학교 각각 14.0명, 11.9명, 9.9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 현재, 대안교육 학교는 총 43개교이고, 학생 수는 4,245명, 교원 수는 857명으로 대안학교의 학생 수와 교원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학교급별 진학률은 2020년도 졸업자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졸업자의 중학교 과정 진학률은 100.0%,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과정 진학률은 99.7%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있다. 한편,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2010년(75.4%)부터 2017년(69.7%)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2018년도부터 조금씩 증가하여 2020년 73.7%로 확인되었다. 2020학년도 학업중단율은 초등학교는 0.4%, 중학교는 0.5%, 고등학교는 1.1%로 나타났으며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0년에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예산은 2021년을 기준으로 약 75조 4,684억 원으로 2021년 전체 정부 예산의 16.0%에 해당하는 예산액이다.

다음으로 2020년 기준 청소년의 학업성취도는 중학교 3학년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 학생의 비율은 국어교과 75.3%, 수학교과 57.8%, 영어교과 63.9%로 나타났고, 고등학교 2학년은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국어교과 69.7%, 수학교과 60.8%, 영어교과 76.7%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학생들의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 만족도', '교육내용 만족도', 그리고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주변환경 만족도'는 모두 전체 학생의 50% 이상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방과후학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에는 교육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범서비스를 실시하였고, 2020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지원 금액도 2019년 대비 증가하였다.

또한, 농산어촌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탈북학생 등에 대해서는 대상별 맞춤형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학생들에게 학습을 지원해주고자 농어촌 학생 대상으로는 스마트 기기를 대여 등을 실시하였고,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으로는 한국어 학급을 확대하였다. 탈북학생에게는 비대면(온라인)으로 취업 준비 등을 지원하며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였다.

제7부 청소년의 교육

제1장 학교교육 현황

제2장 교육복지정책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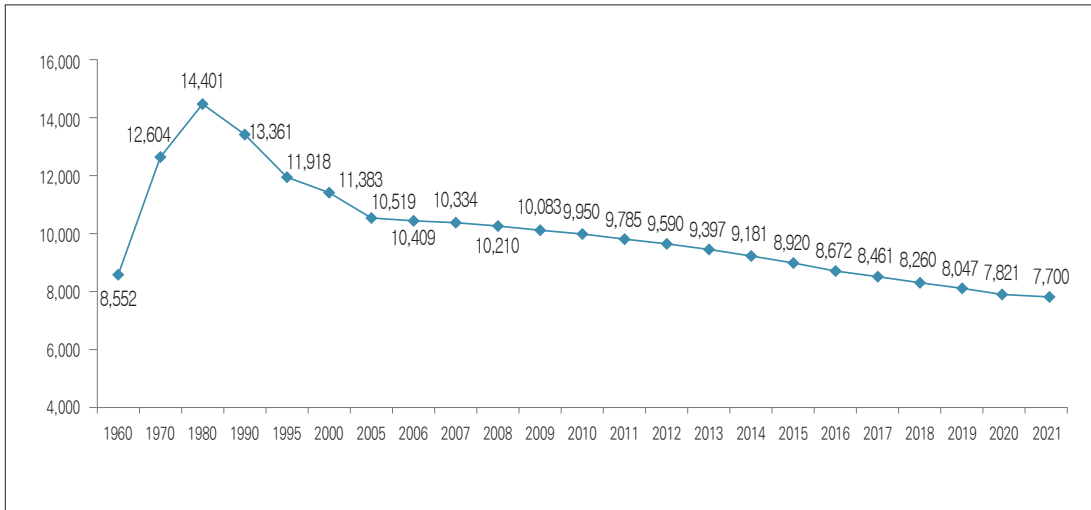
제1장 학교교육 현황

1. 학령인구

2021년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해당하는 학령인구(6~21세)는 7,700천 명이다. 2021년을 기준으로 연령대별 학령인구를 살펴보면, 6~11세(초등학교)가 2,718천 명, 12~14세(중학교)가 1,379천 명, 15~17세(고등학교)가 1,344천 명, 18~21세(대학교)는 2,258천 명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학령인구는 1980년 1만 4,401천 명을 정점으로 이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저출산 현상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7-1-1] 연도별 학령인구

(단위: 천 명)



주 : 6~21세 기준.

자료 : 통계청(2021). 장래인구추계.

〈표 7-1-1〉연도별 학령인구

(단위 : 천 명)

연도	계 (6~21세)	학교급별			
		6~11세 (초등학교)	12~14세 (중학교)	15~17세 (고등학교)	18~21세 (대학교)
1960	8,552	3,629	1,566	1,417	1,941
1970	12,604	5,711	2,574	2,101	2,218
1980	14,401	5,499	2,599	2,671	3,632
1990	13,361	4,786	2,317	2,595	3,663
1995	11,918	3,901	2,443	2,349	3,225
2000	11,383	4,073	1,869	2,166	3,275
2005	10,519	4,018	2,064	1,841	2,596
2006	10,409	3,919	2,104	1,888	2,497
2007	10,334	3,808	2,095	1,966	2,465
2008	10,210	3,631	2,070	2,039	2,471
2009	10,083	3,446	2,034	2,089	2,514
2010	9,950	3,280	1,985	2,084	2,601
2011	9,785	3,109	1,914	2,062	2,700
2012	9,590	2,926	1,867	2,028	2,769
2013	9,397	2,783	1,818	1,985	2,811
2014	9,181	2,751	1,719	1,912	2,799
2015	8,920	2,720	1,578	1,868	2,755
2016	8,672	2,688	1,458	1,816	2,710
2017	8,461	2,719	1,385	1,715	2,642
2018	8,260	2,757	1,340	1,574	2,589
2019	8,047	2,765	1,318	1,454	2,511
2020	7,821	2,717	1,358	1,382	2,364
2021	7,700	2,718	1,379	1,344	2,258

주 : 학령인구 수는 원자료 값의 백의자리에서 각각 반올림하였으므로 학령인구 합계는 학교급별 학령인구 수의 합계와 불일치 할 수 있음.

자료 : 통계청(2021). 장래인구추계.

2. 학생 인구 및 학교 수

2021년 학교급별 재학생 수는 초등학생이 2,672,340명, 중학생은 1,350,770명, 고등학생은 1,101,501명이다. 고등학생 수의 경우 고등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고 학생 수는 961,275명, 특성화고 학생 수는 198,663명이며, 특수목적고 학생 수는 63,181명, 자율고 학생 수는 76,846명이다.

초등학교 재학생 수는 1980년 565만여 명에서 1990년 486만여 명, 2000년 402만여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부터 2016년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8년에는 약 271만 명이었고, 2019년에는 약 275만 명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2020년에는 269만 명으로 다소 감소하였고, 2021년에는 267만 명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중학교 재학생의 경우에는 1980년 247만여 명에서 2000년 186만여 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10년에 접어들면서 약 197만 명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29만여 명이 되었다가, 2020년에 132만여 명으로 소폭 증가하였고, 2021년에는 135만여 명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고등학교 재학생 수는 1980년 169만여 명에서 1990년 228만여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00년에는 약 207만 명, 2010년에는 196만여 명으로 2000년 대비 2010년에는 고등학교 재학생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고등학교 재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고등학교 유형별로 재학생 수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면, 일반고 재학생 수는 2011년 143만여 명에서 2021년 95만여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특성화고 재학생 수는 2011년 34만여 명에서 2021년 19만여 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목고의 경우에는 2011년 6만 3천여 명에서 2021년 6만 4천여 명으로 소폭 증감을 반복하였다. 자율고의 경우에는 2011년 11만 3천여 명에서 2013년 15만여 명으로 증가했다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 7만 6천여 명으로 확인되었다.

2021년 기준 4년제 일반대학 학생 수는 1,938,254명이고, 전문대 학생 수는 576,041명, 대학원생은 327,415명이다. 대학생 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재학생 수는 1980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2015년부터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접어들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대학생 수(2,130,046명)는 1980년(402,979명)에 비해 약 5배 증가하였고, 1990년(1,040,166명)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재학생의 경우, 1980년 16만 5천여 명에서 2000년 91만 3천여 명으로 약 5배 증가 하였으나,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 57만 6천여 명으로 확인되었다.

〈표 7-1-2〉 학교급별 학생 수

(단위: 명)

구분	성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교육대학	전문대학	
				계	일반계고	전문계고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1980	계	5,658,002	2,471,997	1,696,792	932,605	764,187	-	-	-	-	402,979	33,939	9,425	165,051
	여	2,745,382	1,161,351	722,394	400,316	322,078	-	-	-	-	90,534	5,786	7,723	39,883
1990	계	4,868,520	2,275,751	2,283,806	1,473,155	810,651	-	-	-	-	1,040,166	86,911	15,960	323,825
	여	2,362,050	1,103,222	1,073,179	645,092	428,087	-	-	-	-	296,129	19,560	10,290	119,345
2000	계	4,019,991	1,860,539	2,071,468	1,324,482	746,986	-	-	-	-	1,665,398	229,437	20,907	913,273
	여	1,890,575	888,709	993,328	627,279	366,049	-	-	-	-	596,389	80,072	15,032	339,233
2010	계	3,299,094	1,974,798	1,962,356	1,496,227	466,129	-	-	-	-	2,028,841	316,633	21,618	767,087
	여	1,575,200	937,760	918,719	707,996	210,723	-	-	-	-	778,186	152,367	14,712	304,846
2011	계	3,132,477	1,910,572	1,943,798	-	-	1,425,882	340,227	63,727	113,962	2,065,451	329,933	20,241	776,738
	여	1,497,652	910,783	910,258	-	-	690,453	147,455	33,679	38,671	802,075	158,523	13,765	310,247
2012	계	2,951,995	1,849,094	1,920,087	-	-	1,381,130	330,797	64,468	143,692	2,103,958	329,544	18,789	769,888
	여	1,413,356	883,808	904,153	-	-	673,361	144,386	34,417	51,989	821,875	159,032	12,751	307,350
2013	계	2,784,000	1,804,189	1,893,303	-	-	1,356,070	320,374	67,099	149,760	2,120,296	329,822	17,500	757,721
	여	1,335,941	859,506	900,713	-	-	668,341	143,309	34,977	54,086	835,703	158,952	11,828	303,169
2014	계	2,728,509	1,717,911	1,839,372	-	-	1,314,073	313,449	66,928	144,922	2,130,046	330,872	16,566	740,801
	여	1,312,526	819,331	878,843	-	-	651,989	139,212	35,185	52,457	846,971	159,894	11,201	296,987
2015	계	2,714,610	1,585,951	1,788,266	-	-	1,278,008	302,021	67,529	140,708	2,113,293	333,478	15,967	720,466
	여	1,310,066	756,033	856,046	-	-	636,169	133,335	34,953	51,589	848,423	162,374	10,892	290,941
2016	계	2,672,843	1,457,490	1,752,457	-	-	1,256,108	290,632	67,607	138,110	2,084,807	332,768	15,903	697,214
	여	1,292,430	696,393	836,508	-	-	625,300	125,966	34,823	50,419	846,344	163,179	10,970	284,738

구분	성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교육대학	전문대학
				계	일반계고	전문계고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2017	계	2,674,227	1,381,334	1,669,699	-	-	1,193,562	274,281	67,960	133,896	2,050,619	326,315	15,839	677,721
	여	1,294,670	661,045	797,705	-	-	595,811	118,237	34,932	48,725	839,929	162,008	10,988	278,246
2018	계	2,711,385	1,334,288	1,538,576	-	-	1,096,331	252,260	66,693	123,292	2,030,033	322,232	15,788	659,232
	여	1,315,080	640,686	733,769	-	-	546,101	108,561	33,939	45,168	841,808	161,393	10,948	273,328
2019	계	2,747,219	1,294,559	1,411,027	-	-	1,001,756	230,098	65,244	113,929	1,988,458	319,240	15,697	643,762
	여	1,334,340	623,115	673,802	-	-	499,335	99,758	32,645	42,064	834,052	161,381	10,726	271,283
2020	계	2,693,716	1,315,846	1,337,312	-	-	958,108	212,294	64,493	102,417	1,964,358	320,595	15,626	621,509
	여	1,309,376	635,421	639,232	-	-	477,366	93,023	31,867	36,976	830,456	164,151	10,476	267,409
2021	계	2,672,340	1,350,770	1,101,501	-	-	961,275	198,663	63,181	76,846	1,938,254	327,415	15,409	576,041
	여	1,300,128	654,046	624,355	-	-	479,387	87,604	31,281	26,083	826,880	168,983	10,129	251,829

주 : 1) 2011년부터 고등학교 유형이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로 분류됨.

2) 대학은 4년제 일반대학임.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2021년 현재, 학교급별 학교 수는 초등학교 6,157개교, 중학교 3,245개교, 고등학교 2,375개교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고 1,616개교, 특성화고 488개교, 특목고 161개교, 자율고 110개교이다. 2021년 초등학교 수는 1980년 6,487개교보다 330개교가 줄어들었지만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학교는 1980년 2,100개교보다 1,145개교가 늘어났으며, 고등학교의 수 역시 1980년 1,353개교보다 1,022개교 늘었고 중·고등학교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고등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1년 이후 일반고는 그 수가 2014년까지 줄어들다가 2015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21년은 전년대비 8개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의 경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499개교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7년부터 소폭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목고의 경우 2011년 120개교에서 2021년 161개교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율고의 경우에는 2011년 109개교에서 2016년 159개교로 증가하였다가 2019년에는 154개교, 2020년에는 145개교, 2021년에는 110개교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대학은 1980년에 96개교에서 2021년 190개교로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대학원은 1980년 121개교에서 2021년 1,174개교로 약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교육대학은 1980년 11개교에서

2021년 10개교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대학은 2005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부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7-1-3〉 학교급별 학교 수

(단위 : 개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교육대학	전문대학
			계	일반계고	전문계고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1980	6,487	2,100	1,353	748	605	-	-	-	-	96	121	11	128
1990	6,335	2,474	1,683	1,096	587	-	-	-	-	118	298	11	117
1995	5,772	2,683	1,830	1,068	762	-	-	-	-	142	421	11	145
2000	5,267	2,731	1,957	1,193	764	-	-	-	-	172	829	11	158
2005	5,646	2,935	2,095	1,382	713	-	-	-	-	184	1,051	11	158
2006	5,733	2,999	2,144	1,437	707	-	-	-	-	186	1,051	11	152
2007	5,756	3,032	2,159	1,457	702	-	-	-	-	186	1,042	11	148
2008	5,813	3,077	2,190	1,493	697	-	-	-	-	185	1,055	10	147
2009	5,829	3,106	2,225	1,534	691	-	-	-	-	188	1,115	10	146
2010	5,854	3,130	2,253	1,561	692	-	-	-	-	179	1,138	10	145
2011	5,882	3,153	2,282	-	-	1,554	499	120	109	183	1,167	10	147
2012	5,895	3,162	2,303	-	-	1,529	499	128	147	189	1,177	10	142
2013	5,913	3,173	2,322	-	-	1,525	494	138	165	188	1,200	10	140
2014	5,934	3,186	2,326	-	-	1,520	499	143	164	189	1,209	10	139
2015	5,978	3,204	2,344	-	-	1,537	498	148	161	189	1,197	10	138
2016	6,001	3,209	2,353	-	-	1,545	497	152	159	189	1,195	10	138
2017	6,040	3,213	2,360	-	-	1,556	491	155	158	189	1,153	10	138
2018	6,064	3,214	2,358	-	-	1,556	490	157	155	191	1,198	10	137
2019	6,087	3,214	2,356	-	-	1,555	489	158	154	191	1,183	10	137
2020	6,120	3,223	2,367	-	-	1,573	489	160	145	191	1,169	10	136
2021	6,157	3,245	2,375	-	-	1,616	488	161	110	190	1,174	10	134

주 : 2011년부터 고등학교 유형이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로 분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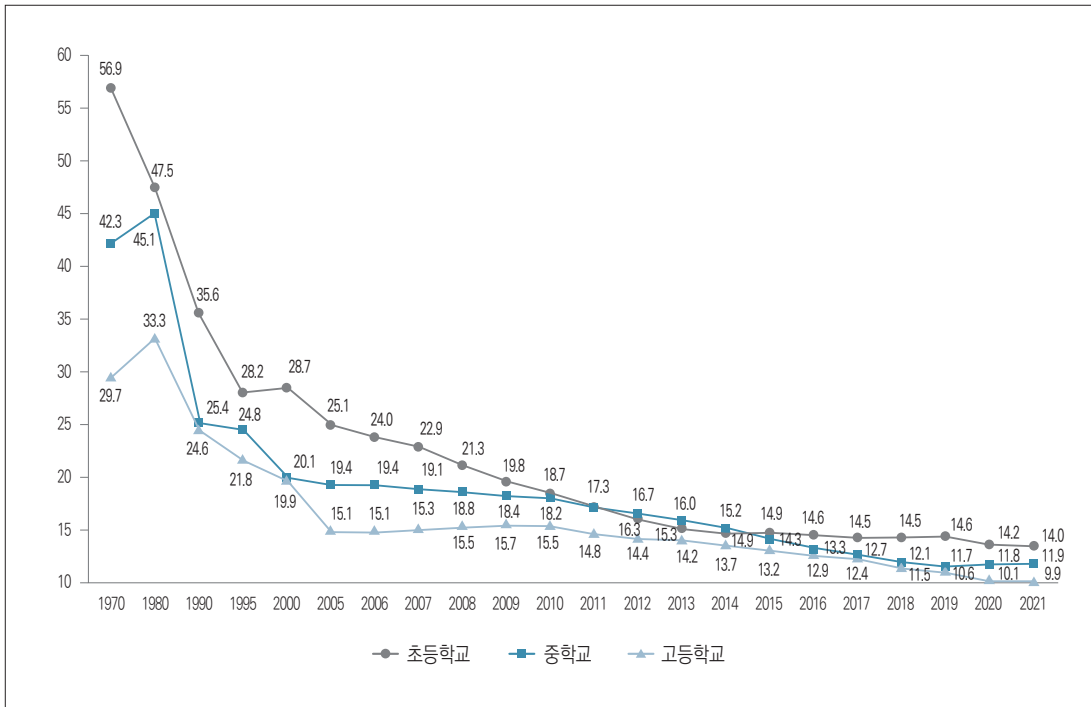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학교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재적학생 수를 교원 수로 나누어 산출한 것이다. 학교급별로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2021년 현재 초등학교 14.0명, 중학교 11.9명, 고등학교 9.9명이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70년 이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급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2021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00년 대비 초등학교 14.7명, 중학교 8.2명, 고등학교 10명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고등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유형별로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자율고 11.2명, 일반고 10.5, 특성화고 8.0명, 특목고 7.9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7-1-2] 교원 1인당 학생 수

(단위 : 명)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표 7-1-4〉 교원 1인당 학생 수

(단위 : 명)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일반계고	전문계고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1970	56.9	42.3	29.7	32.0	27.5	-	-	-	-
1980	47.5	45.1	33.3	33.9	32.6	-	-	-	-
1990	35.6	25.4	24.6	25.4	23.4	-	-	-	-
1995	28.2	24.8	21.8	22.1	21.4	-	-	-	-
2000	28.7	20.1	19.9	20.9	18.2	-	-	-	-
2005	25.1	19.4	15.1	15.9	13.5	-	-	-	-
2006	24.0	19.4	15.1	15.8	13.5	-	-	-	-
2007	22.9	19.1	15.3	16.1	13.5	-	-	-	-
2008	21.3	18.8	15.5	16.4	13.4	-	-	-	-
2009	19.8	18.4	15.7	16.7	13.3	-	-	-	-
2010	18.7	18.2	15.5	16.5	13.1	-	-	-	-
2011	17.3	17.3	14.8	-	-	15.8	11.0	12.5	15.2
2012	16.3	16.7	14.4	-	-	15.4	10.3	12.1	14.6
2013	15.3	16.0	14.2	-	-	15.2	10.0	12.0	14.3
2014	14.9	15.2	13.7	-	-	14.6	11.6	9.7	13.7
2015	14.9	14.3	13.2	-	-	14.1	11.4	9.3	13.7
2016	14.6	13.3	12.9	-	-	13.7	11.0	9.1	13.5
2017	14.5	12.7	12.4	-	-	13.1	10.6	8.9	13.2
2018	14.5	12.1	11.5	-	-	12.1	9.8	8.6	12.4
2019	14.6	11.7	10.6	-	-	11.1	9.1	8.3	11.5
2020	14.2	11.8	10.1	-	-	10.7	8.4	8.0	11.1
2021	14.0	11.9	9.9	-	-	10.5	8.0	7.9	11.2

주 : 1) 교원 1인당 학생 수 = 학생 수/교원 수.

2) 교원은 정규교원(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사서·실기·보건·영양교사) 및 기간제교원 포함(휴직교원 포함/강사 및 퇴직교원 제외).

3) 2011년부터 고등학교 유형이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로 분류됨.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3. 조기유학 현황

2020학년도(2020. 3. 1.~2021. 2. 29.) 조기유학 현황을 살펴보면, 해외 교육기관에서 수학할 목적으로 출국한 초·중등 학생 수는 총 8,458명으로 2019학년도 8,961명보다 503명 감소한 수치이다.

조기 유학생 현황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5,705명(67.5%), 중학생 2,079명(24.6%), 고등학생 674명(8.0%)으로 나타나 초등학생의 조기유학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조기 유학생은 2006학년도 이후부터 2016학년도까지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9학년도까지 소폭 증가하였고, 2020학년도 다시 감소한 양상을 보였다.

〈표 7-1-5〉 연도별·학교급별 유학 현황

(단위: 명)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2005	8,148	6,670	5,582	20,400
2006	13,814	9,246	6,451	29,511
2007	12,341	9,201	6,126	27,668
2008	12,531	8,888	5,930	27,349
2009	8,369	5,723	4,026	18,118
2010	8,794	5,870	4,077	18,741
2011	7,477	5,468	3,570	16,515
2012	6,061	4,977	3,302	14,340
2013	5,154	4,377	2,843	12,374
2014	4,455	3,729	2,723	10,907
2015	4,271	3,226	2,428	9,925
2016	3,796	2,700	2,247	8,743
2017	4,103	2,761	2,028	8,892
2018	4,399	2,893	1,785	9,077
2019	4,693	2,752	1,516	8,961
2020	5,705	2,079	674	8,458

주 : 1) 연도는 학년도를 의미하며 2020학년도의 경우 2019년도에 조사된 자료임. 2020학년도(2021년도) 자료기준일은 2020. 3. 1.~2021. 2. 29.임.

2) 고등학교에는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학교, 자율고가 포함됨.

3) 해외이주 및 부모의 해외파견으로 인한 동행은 제외하였음.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4. 대안교육 학교

2021년 현재, 대안교육 학교는 고등학교 25개교, 중학교 18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2021년 대안교육 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고등학생 2,470명, 중학생 1,775명으로 총 4,245명이었으며 2021년 대안교육 학교의 교원 수는 857명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대안교육 학교의 수는 중학교가 1개 증가하였고, 고등학교는 증감이 없이 동일한 수준을 보인 반면, 대안교육 학교의 학생 수 및 교원 수는 중학교의 경우 학생 수와 교원의 수 모두 증가하였지만,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생 수는 감소하였고 교원의 수는 증가하였다.

〈표 7-1-6〉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현황

(단위 : 개교, 명)

연도	계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2007	29	2,823	392	8	669	86	21	2,154	306
2008	29	2,984	419	8	766	95	21	2,218	324
2009	29	3,410	416	8	974	94	21	2,436	322
2010	32	3,565	465	9	1,007	109	23	2,558	356
2011	33	3,829	519	10	1,101	131	23	2,728	388
2012	34	4,034	564	10	1,145	141	24	2,889	423
2013	34	4,060	573	10	1,131	142	24	2,929	431
2014	36	4,115	623	12	1,265	183	24	2,850	440
2015	38	4,179	660	13	1,381	210	25	2,798	450
2016	38	4,241	649	13	1,381	197	25	2,860	452
2017	39	4,244	660	14	1,409	212	25	2,835	448
2018	43	4,424	749	17	1,594	258	26	2,830	491
2019	43	4,438	786	17	1,671	286	26	2,767	500
2020	43	4,440	804	17	1,723	299	25	2,717	505
2021	43	4,245	857	18	1,775	320	25	2,470	537

- 주 : 1) 조사기준일: 해당 연도별 4월 1일.
- 2) 학교 수는 폐교 제외, 휴교 포함됨.
- 3) 교원 수는 기간제 교원 및 휴직자 포함. 시간강사 및 퇴직자 제외.

자료 : 1) 교육부(2021). 2021년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중고등학교 현황.
2) 학교알리미(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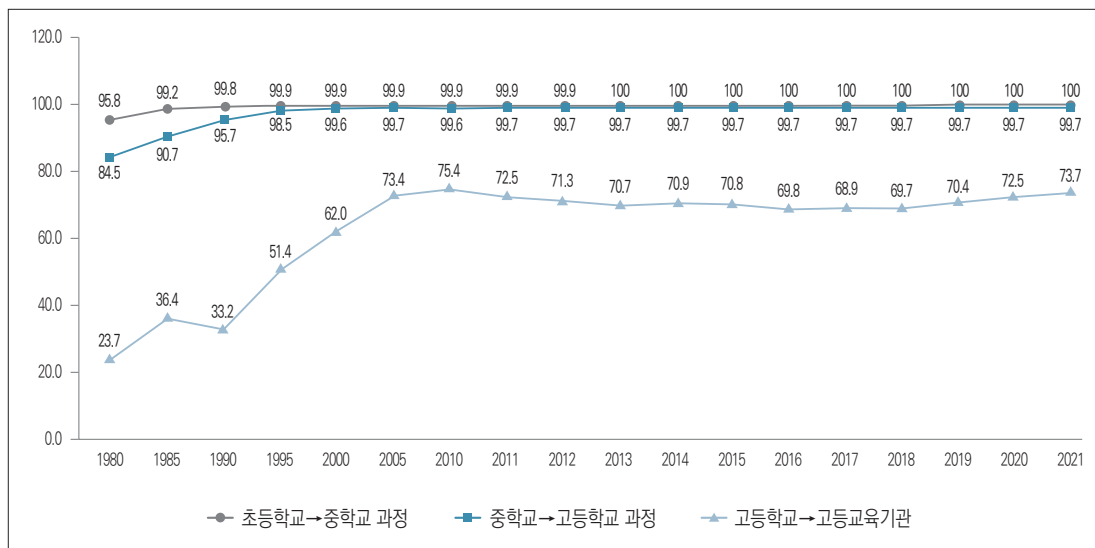
5. 진학률

2020년도 졸업자 기준(2021년도 진학자), 초등학교 졸업자의 중학교 과정 진학률은 100.0%이며,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과정 진학률은 99.7%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72.5%로, 2010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도부터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1990년의 33.2%와 비교했을 때 2020년도 졸업자의 진학률은 40.5%p 증가한 것으로 이는 과거에 비해 고등교육의 기회가 크게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고등학교 유형별로 대학 진학률을 살펴보면, 일반계고는 2005년(88.3%) 이후 2010년(81.5%)까지 감소하는 경향인 반면, 전문계고는 2005년(67.6%)부터 2010년(71.1%)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1년 이후에는 일반고와 자율고의 진학률은 2015년까지 증가하다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 일반고와 자율고의 진학률은 소폭 증가하였고, 2021년에는 일반고의 진학률은 소폭 증가하였지만 자율고의 진학률은 소폭 감소하였다. 특성화고와 특목고 학생들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2016년까지 공통적으로 감소하였다. 2021년의 경우에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2020년 44.8% 대비 3%p 증가하였고, 특목고의 진학률은 2020년 58.1% 대비 0.2%p 증가한 58.3%로 나타났다.

[그림 7-1-3] 학교급별 진학률

(단위 : %)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표 7-1-7〉 학교급별 진학률

연도	초등학교 → 중학교 과정	중학교 → 고등학교 과정	고등학교 → 고등교육기관						
	계	계	계	일반계고	전문계고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1980	95.8	84.5	23.7	39.2	5.0	-	-	-	-
1985	99.2	90.7	36.4	53.8	9.9	-	-	-	-
1990	99.8	95.7	33.2	47.2	6.3	-	-	-	-
1995	99.9	98.5	51.4	72.8	17.2	-	-	-	-
2000	100.0	99.6	62.0	83.9	42.0	-	-	-	-
2005	100.0	99.7	73.4	88.3	67.6	-	-	-	-
2010	100.0	99.6	75.4	81.5	71.1	-	-	-	-
2011	100.0	99.7	72.5	-	-	75.8	61.0	67.4	69.3
2012	100.0	99.7	71.3	-	-	76.6	50.0	64.2	72.6
2013	100.0	99.7	70.7	-	-	77.7	41.7	60.0	74.7
2014	100.0	99.7	70.9	-	-	78.7	37.9	59.6	75.7
2015	100.0	99.7	70.8	-	-	78.9	36.1	58.4	75.8
2016	100.0	99.7	69.8	-	-	78.0	35.0	55.9	74.9
2017	100.0	99.7	68.9	-	-	77.3	32.8	56.9	73.5
2018	100.0	99.7	69.7	-	-	77.6	35.9	57.6	72.6
2019	100.0	99.7	70.4	-	-	77.0	42.5	57.5	71.7
2020	100.0	99.7	72.5	-	-	79.4	44.8	58.1	74.3
2021	100.0	99.7	73.7	-	-	80.3	47.8	58.3	74.2

주 : 1) 진학률(%) = (해당연도 졸업자 중 진학자/해당연도 졸업자)×100.

2) 2011년 고등학교 유형이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로 개정되어 기존 유형 졸업자는 2013년까지 발생함. 2014년 이후 개정된 고등학교 유형 졸업자임.

3) 고등교육기관 진학자는 전문대학,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진학자 포함(2005년부터 국외진학자 포함).

4) 중학교 과정 : 중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기타학교.

5) 고등학교 과정 :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기타학교.

6) 대학 진학자 기준 : 2010년까지 대학 합격자 기준이었으나, 2011년부터 등록자 기준으로 변경됨.

7)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00이 넘으므로 절사하였음.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6. 학업중단율

2020학년도 학업중단율을 살펴보면, 고등학교는 1.1%, 중학교는 0.5%, 초등학교는 0.4%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자의 개념은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의무교육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예 및 면제자를 학업중단자로 정의하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자퇴와 퇴학한 자를 학업중단자로 보고 있다.

학업중단율은 2000학년도 이후 초등학교는 소폭 상승하다가 2020년에는 다소 감소하여 0.4%를 보이고 있고, 중학교도 전년대비 0.3% 감소한 0.5%를 보이고 있다. 고등학교는 2007학년도부터 2012학년도까지 1.8% 내외를 유지하다가 이후 증감을 반복하였고 2019학년도 다시 1.8% 수준으로 나타났고, 2020년에는 다소 감소한 1.1%로 나타났다.

〈표 7-1-8〉 학교급별 학업중단율

(단위 : %)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980	0.1	1.2	2.5
1985	0.0	1.1	3.0
1990	0.0	1.0	1.9
1995	0.0	1.0	2.5
2000	0.4	1.0	2.5
2005	0.5	0.8	1.3
2006	0.6	0.9	1.6
2007	0.5	1.0	1.8
2008	0.5	1.0	1.8
2009	0.3	0.8	1.8
2010	0.6	1.0	2.0
2011	0.6	0.9	1.9
2012	0.6	0.9	1.8
2013	0.6	0.8	1.6
2014	0.6	0.7	1.4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5	0.5	0.6	1.3
2016	0.6	0.6	1.4
2017	0.6	0.7	1.5
2018	0.7	0.7	1.6
2019	0.7	0.8	1.8
2020	0.4	0.5	1.1

주 : 1) 연도는 학년도임.
 2) 학업중단율(%) = 학업중단자 수 / 전년도 재적학생 수 × 100.
 3) 학업중단자란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자퇴, 퇴학한 자들을 말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업중단자는 유예 및 면제자로 정의함.
 4) 2010학년도부터 인정유학, 해외이주, 파견동행이 학업중단자에 포함됨.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7. 교육재정

가. 중앙정부 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

2021년도 교육부 예산은 약 75조 4,684억 원으로 1980년의 약 1조 992억 원, 1990년의 약 5조 624억 원에 이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가 2020년에 비하여는 약 15억 원 감소하였다. 2021년 전체 정부 예산 중 교육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6.0%로 2005년 이후 2016년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7년 18.2%로 증가한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1년에는 전년대비 2% 가량 감소하였다.

〈표 7-1-9〉 연도별 중앙정부 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

(단위 : 천 원, %)

연도	정부 예산	교육부 예산	비율
1970	446,273,301	78,478,212	17.6
1980	5,804,061,441	1,099,159,170	18.9
1990	22,689,432,968	5,062,431,258	22.3

연도	정부 예산	교육부 예산	비율
2000	93,937,057,000	19,172,027,920	20.4
2001	102,528,518,000	20,034,364,710	19.5
2002	113,898,884,000	22,278,357,817	19.6
2003	120,477,623,000	24,404,401,310	20.3
2004	126,991,802,000	26,399,680,082	20.8
2005	134,370,378,000	27,982,002,000	20.8
2006	144,807,610,439	29,127,258,513	20.1
2007	200,951,945,139	31,044,747,984	15.4
2008	219,940,529,553	35,897,425,012	16.3
2009	247,953,607,658	41,215,064,889	16.6
2010	255,334,387,481	41,741,895,353	16.3
2011	264,092,862,471	45,116,643,669	17.1
2012	282,687,336,883	49,644,828,392	17.6
2013	298,405,676,810	50,303,968,503	16.9
2014	309,692,464,444	50,835,376,904	16.4
2015	322,787,071,554	51,224,093,676	15.9
2016	330,671,628,374	52,082,779,330	15.8
2017	339,661,568,102	61,832,103,743	18.2
2018	368,646,277,167	68,549,213,485	18.6
2019	399,769,097,900	74,947,793,000	18.7
2020	427,109,369,739	76,995,734,000	18.0
2021	459,880,082,000	75,468,432,000	16.0

주 : 1) 정부 예산(~2004) = 일반회계 +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

2) 정부 예산(2005~) = 일반회계 + 특별회계.

3) 교육부 예산 = 일반회계 + 특별회계(본예산 기준).

4) 2009~2012년 (구)교육과학기술부 예산.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나. GDP 대비 교육재정

2020년도 교육부 예산¹⁾ 중 교육 분야 예산은 약 72조 원이며 이 중 유아 및 초·중등 교육예산이 약 60조 원(83.5%)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다음으로 고등교육예산은 약 11조 원으로 교육 예산의 약 15.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GDP 대비 교육예산을 살펴보면, 2010년과 2011년은 2.9%, 2012년 3.1%, 2013년 3.3%, 2014년 3.2%, 2015년과 2016년은 3.0%, 2017년은 3.1%, 2018년은 3.4%, 2019년은 3.1%, 2020년은 3.7% 수준으로 나타난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GDP 대비 교육예산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후 2016년까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소폭 증가하였다가, 2019년 다시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전년과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표 7-1-10〉 GDP 대비 교육재정

(단위 : 조 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교육	유아 및 초·중등	38.6	41.2	41.1	39.6	41.4	47.1	53.7	59.4	60.4
	고등교육	6.0	7.6	8.7	9.0	9.3	9.3	9.5	10.1	10.8
	평생·직업교육	0.6	0.7	0.5	0.6	0.6	0.7	0.6	0.7	0.9
	교육일반	0.1	0.1	0.1	0.1	0.1	0.1	0.1	0.1	0.1
	소계	45.2	49.6	50.4	49.2	51.4	57.2	63.9	70.3	72.3
GDP 규모		1,440.1	1,500.8	1,562.9	1,658.0	1,740.8	1,835.7	1,898.2	1,924.5	1,933.2
GDP 대비 비율		3.1%	3.3%	3.2%	3.0%	3.0%	3.1%	3.4%	3.7%	3.7%

주 : 1) 위 값은 반올림한 값으로 소계와 각 값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GDP 규모의 기준연도는 2015년임.

자료 : 1) 교육부(2020). 2020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 통계청(2021).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6)에서 2021년 12월 30일 인출.

1) 교육부 예산은 분야(부문)별로 교육분야(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와 사회복지분야(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공적연금)로 구분함.

다. 국가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

OECD가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1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8년 기준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OECD 국가 평균 4.9% 보다 0.2%p 높은 5.1% 수준이다.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구성 비율은 3.8%로 OECD 국가 전체 평균인 4.1% 보다 0.3%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민간재원 비율은 OECD 국가 전체 평균인 0.8% 보다 0.5%p 높은 1.3%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7-1-11〉 국가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2018)

(단위 : %)

구분	OECD 평균	한국	미국	프랑스	핀란드	영국	일본
GDP 대비 공교육비	4.9	5.1	6.0	5.2	5.1	6.1	4.0
정부재원	4.1	3.8	4.1	4.5	5	3.9	2.8
민간재원	0.8	1.3	1.9	0.7	0.1	2.1	1.1

주 : 1) 위 값은 반올림한 값으로 소계와 각 값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정부부담 = (정부에서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총액 + 정부가 가계/학생에게 지원한 납입금 + 기타민간이전금)/GDP×100.

3) 민간부담 = (민간부담금(등록금 등) + 기타 민간 교육부담금(학교법인 등) - 정부가 가계/학생에게 지원한 납입금 및 기타민간이전금)/GDP×100.

4) GDP 대비 공교육비 = (정부부담 금액 + 민간부담 금액 + 해외부담 금액)/GDP×100.

5)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포함한 전체 교육단계(유아교육단계 제외).

자료 : OECD(2021). 2021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EAG).

라. 사교육 참여율 및 월평균 사교육비

2020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8.9만 원으로 2019년 대비 3.2만 원(10.0%p) 감소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년보다 6.9만 원(23.8%p) 감소하였고, 중학교의 경우에도 전년대비 1.0만 원(3.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8.8만 원으로 전년대비 2.3만 원(6.3%p) 증가하였다. 고등학교 유형 가운데 일반고의 경우에는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4.8만 원으로 전년대비 2.3만 원(5.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평균 66.5%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대비 8.3%p 감소한 수치이고, 초등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은 69.2%로 초·중·고 학교급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은 66.7%로 나타났고, 고등학교는 60.7%로 전년대비 0.3%p 감소하였다. 일반고는 67.6%로 2019년 67.9% 대비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12〉 학교급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구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 원, %)					사교육 참여율(%)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증감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27.2	29.1	32.1	28.9	10.0	71.2	72.8	74.8	66.5	11.1
초등학교	25.3	26.3	29.0	22.1	23.8	82.7	82.5	83.5	69.2	17.1
중학교	29.1	31.2	33.8	32.8	3.0	67.4	69.6	71.4	66.7	6.6
고등학교	28.5	32.1	36.5	38.8	6.3	55.9	58.5	61.0	60.7	0.5
일반고	33.2	37.6	42.5	44.8	5.4	62.2	65.2	67.9	67.6	0.4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044-415-2161

8. 청소년의 학업성취도²⁾

우리나라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크게 네 가지의 목적을 갖는다. 첫째, 우리나라 학생들의 교과별 학업성취의 추이를 파악하여 교육과정의 교육목표도달 정도와 함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학업성취도와 교육맥락변인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탐색하고 학생, 교사, 학교의 구성 요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여 보정 교육으로 연계하기 위함이다. 넷째, 질 높은 평가 도구의 개발을 통하여 단위 학교의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평가 방법을 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서민희 외, 202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1998년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 기본 계획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변화·발전되어 왔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생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일정 크기의 표본을 추출하여 시행하다가 2009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도에 평가대상 중 고등학교 1학년은 고등학교

2) 청소년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학교급별(중학교, 고등학교)로 작성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보고서(구남욱 외, 2021)를 정리·요약한 것이다.

2학년으로 전환되었으며, 평가범위는 동일하게 고1 전 과정을 유지하였다. 2012년부터는 특성화 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대신 ‘직업 기초 능력평가’를 시행하며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제외되었다. 2013년부터는 초등학생들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학교 3학년과 일반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2학년의 평가 교과 중 국어, 수학, 영어는 전수평가를 실시하였고, 중학교 3학년의 경우 사회와 과학 교과는 표집학교만 시행되었다. 이후 2017년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국·영·수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표본을 통해 얻어진 모집단에 대한 추정치라는 점을 주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준거참조평가(criterion-referenced assessment)로 학생의 성취는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과 이에 도달하지 못한 ‘기초학력 미달’의 성취수준으로 구분된다(서민희 외, 2020).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교의 국·영·수 학업성취 학생 비율로 평균을 계산할 경우, 2020년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65.7%로 2017년 75.0%로 전년대비 감소하고 2018년에 69.8%로 감소하였다가 2019년 2.5%p 증가하였고, 2020년 6.6%p 감소하였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국어교과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2017년 84.8%, 2018년 81.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9년에는 82.8%로 소폭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75.3%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학력’ 학생 비율의 경우에는 2017년 12.6%, 2018년 14.3%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9년에는 13.0%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2020년 18.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의 경우에는 2017년 2.6%, 2018년 4.4%까지 증가하였다가 2019년에는 4.1%수준으로 소폭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6.4%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교과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2017년 67.6%, 2018년 62.3%, 2019년 61.3%, 2020년 57.8%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수학교과 ‘기초학력’ 학생 비율의 경우에는 2016년 26.8%에서 2017년 25.3%로 소폭 감소하다가 2018년과 2019년에는 26% 수준을 유지하였고, 2020년에는 28.9%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 7.1%, 2018년 11.1%, 2019년 11.8%, 2020년 13.4%로 점차 증가하였다.

영어교과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2017년 72.6%로 감소하고, 2018년 65.7%로 감소하였다가 2019년에는 72.7%로 2017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63.9%로 다소 감소하였다. ‘기초학력’ 학생 비율의 경우에는 2017년 24.2%에 비하여 2018년 28.9%로 다소

증가하였다가 2019년 24.1%로 소폭 감소하였고 2020년 28.9%로 증가하였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의 경우에는 2017년 3.2% , 2018년 5.3%, 2019년 3.3%였고, 2020년에는 7.1%으로 전년대비 다소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20년 기준, 성별에 따라서는 ‘보통학력 이상’ 학생비율은 국어, 수학, 영어교과 모두에서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초학력’ 학생 비율은 국어, 영어교과에서는 남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학 교과에서는 여학생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의 경우에는 남학생의 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표 7-1-13〉 중학교 3학년 성취수준별 비율

(단위 : %)

과목	성취수준	연도											
		2017			2018			2019			2020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국어	보통학력 이상	84.8	79.8	90.5	81.3	75.6	87.4	82.8	76.6	89.6	75.3	68.2	83.2
	기초학력	12.6	16.2	8.5	14.3	17.9	10.4	13.0	17.1	8.5	18.2	22.0	14.0
	기초학력 미달	2.6	4.0	1.0	4.4	6.5	2.2	4.1	6.2	1.9	6.4	9.8	2.9
수학	보통학력 이상	67.6	66.5	68.8	62.3	62.2	62.5	61.3	60.3	62.5	57.8	55.9	59.8
	기초학력	25.3	25.3	25.2	26.6	25.3	28.0	26.9	26.2	27.8	28.9	28.0	29.8
	기초학력 미달	7.1	8.2	6.0	11.1	12.5	9.5	11.8	13.6	9.7	13.4	16.0	10.5
영어	보통학력 이상	72.6	68.1	77.6	65.7	60.4	71.6	72.7	67.4	78.3	63.9	59.1	69.1
	기초학력	24.2	27.5	20.5	28.9	32.4	25.2	24.1	27.9	20.0	28.9	30.8	26.9
	기초학력 미달	3.2	4.4	1.9	5.3	7.2	3.3	3.3	4.7	1.7	7.1	10.1	4.0
평균	보통학력 이상	75.0	71.5	79.0	69.8	66.1	73.8	72.3	68.1	76.8	65.7	61.1	70.7
	기초학력	20.7	23.0	18.1	23.3	25.2	21.2	21.3	23.7	18.8	25.3	26.9	23.6
	기초학력 미달	4.3	5.5	3.0	6.9	8.7	5.0	6.4	8.2	4.4	9.0	12.0	5.8

주 : 평균은 국어, 수학, 영어의 평균. ‘보통학력 이상’은 ‘우수학력’+‘보통학력’을 의미함.

자료 : 김희경 외(2019). 201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 중학교.
 서민희 외(2020).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 중학교.
 구남욱 외(2021).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 중학교.

고등학교의 2020년 국·영·수 학업성취 학생 비율의 평균은,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69.1%로 2019년 73.9% 보다 4.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과목별로 살펴보면, 국어교과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69.7%로 전년대비 7.8%p 감소하였다. ‘기초학력’ 학생 비율은 23.4%로 전년대비 4.9%p 증가하였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전년대비 2.8%p 증가하였다.

수학교과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60.8%로 2019년 대비 4.7%p 감소하였고, ‘기초학력’ 학생 비율은 2020년 25.7%로 전년대비 0.2%p 증가하였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의 경우는 2020년 13.5%로 전년대비 4.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교과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2017년 81.5%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는 76.7%로 나타났고, ‘기초학력’ 학생 비율은 2017년 14.4%, 2018년 13.4%, 2019년 17.6%이었고, 2020년에는 14.7%로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2017년 4.1%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 3.6%로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8.6%로 다소 증가하였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국어와 수학, 영어 교과 모두에서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초학력’ 학생 비율은 국어와 영어교과에서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수학교과에서는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의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교과 전 과목에서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14〉 고등학교 2학년 성취수준별 비율

(단위 : %)

과목	성취수준	연도											
		2017			2018			2019			2020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국어	보통학력 이상	75.2	67.9	82.9	81.6	76.0	87.5	77.5	71.4	84.0	69.7	60.7	79.5
	기초학력	19.8	24.9	14.4	15.0	18.9	10.9	18.5	22.8	14.0	23.4	28.6	17.9
	기초학력 미달	5.0	7.2	2.7	3.4	5.2	1.5	4.0	5.8	2.0	6.8	10.8	2.6
수학	보통학력 이상	75.8	74.2	77.4	70.4	71.2	69.5	65.5	66.8	64.0	60.8	59.5	62.1
	기초학력	14.3	14.0	14.7	19.2	17.1	21.5	25.5	23.6	27.6	25.7	24.2	27.3
	기초학력 미달	9.9	11.8	7.9	10.4	11.7	9.0	9.0	9.6	8.4	13.5	16.3	10.6

과목	성취수준	연도											
		2017			2018			2019			2020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영어	보통학력 이상	81.5	77.3	86.0	80.3	75.4	85.6	78.8	75.5	82.3	76.7	70.4	83.4
	기초학력	14.4	17.1	11.5	13.4	15.7	11.1	17.6	19.5	15.5	14.7	16.9	12.5
	기초학력 미달	4.1	5.6	2.5	6.2	8.9	3.3	3.6	5.0	2.1	8.6	12.8	4.1
평균	보통학력 이상	77.5	73.1	82.1	77.4	74.2	80.9	73.9	71.2	76.8	69.1	63.5	75.0
	기초학력	16.2	18.7	13.5	15.9	17.2	14.5	20.5	22.0	19.0	21.3	23.2	19.2
	기초학력 미달	6.3	8.2	4.4	6.7	8.6	4.3	5.5	6.8	4.2	9.6	13.3	5.8

주 : 평균은 국어, 수학, 영어의 평균. '보통학력 이상'은 '우수학력'+'보통학력'을 의미함.

자료 : 김희경 외(2019). 201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 고등학교.

서민희 외(2020).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 고등학교.

구남욱 외(2021).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 고등학교.

지역규모에 따른 성취수준별 비율을 살펴보면, 중학교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의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의 전체 평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읍면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0년을 기준으로 대도시의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평균 70.8%였으며, 중소도시는 65.0%, 읍면지역은 55.3%였다. 대도시와 읍면지역 간 '보통학력 이상' 학생의 비율 격차는 2017년 10.4%p, 2018년 7.9%p, 2019년 9.3%p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0년에는 15.5%p로 격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과목별로는 2020년 국어교과의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대도시 78.8%, 중소도시 74.9%, 읍면지역 68.5%이었다. 수학교과의 경우는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대도시 63.6%, 중소도시 56.8%, 읍면지역 46.2%였으며, 영어교과의 경우에는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대도시 69.9%, 중소도시 63.2%, 읍면지역 51.1%였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2020년 기준으로 대도시는 7.6%, 중소도시 8.9%, 읍면지역 12.5%로 나타났다. 과목별로는 국어교과는 대도시 5.4%, 중소도시 6.2%, 읍면지역 9.6%였으며, 수학교과는 대도시 11.2%, 중소도시 13.4%, 읍면지역 18.5%, 영어교과는 대도시 6.1%, 중소도시 7.2%, 읍면지역 9.5%로 나타났다.

〈표 7-1-15〉 중학교 3학년 지역규모별 성취수준별 비율

(단위 : %)

과목	성취수준	연도											
		2017			2018			2019			2020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국어	보통학력 이상	86.2	84.9	81.5	82.5	80.8	79.7	84.9	82.2	79.6	78.8	74.9	68.5
	기초학력	11.1	13.0	15.3	13.2	14.8	16.1	11.3	13.6	15.5	15.8	18.9	21.9
	기초학력 미달	2.7	2.2	3.2	4.4	4.5	4.3	3.8	4.2	4.9	5.4	6.2	9.6
수학	보통학력 이상	71.9	67.1	57.8	66.9	60.3	55.7	64.9	61.4	51.9	63.6	56.8	46.2
	기초학력	21.6	25.4	34.5	22.9	28.4	31.6	24.8	26.8	33.0	25.3	29.8	35.2
	기초학력 미달	6.5	7.5	7.7	10.3	11.3	12.7	10.3	11.9	15.2	11.2	13.4	18.5
영어	보통학력 이상	76.4	72.0	64.2	70.1	63.5	60.4	75.4	72.4	66.0	69.9	63.2	51.1
	기초학력	20.7	24.7	32.0	24.6	31.0	34.4	21.2	24.4	30.5	24.0	29.6	39.4
	기초학력 미달	2.9	3.3	3.8	5.3	5.4	5.2	3.4	3.1	3.6	6.1	7.2	9.5
평균	보통학력 이상	78.2	74.7	67.8	73.2	68.2	65.3	75.1	72.0	65.8	70.8	65.0	55.3
	기초학력	17.8	21.0	27.3	20.2	24.7	27.4	19.1	21.6	26.3	21.7	26.1	32.2
	기초학력 미달	4.0	4.3	4.9	6.7	7.1	7.4	5.8	6.4	7.9	7.6	8.9	12.5

주 : 평균은 국어, 수학, 영어의 평균. '보통학력 이상'은 '우수학력'+'보통학력'을 의미함.

자료 : 김희경 외(2019). 201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 중학교.
 서민희 외(2020).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 중학교.
 구남욱 외(2021).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의 지역규모에 따른 2020년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도 평균적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평균적으로 대도시, 읍면지역, 중소도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0년을 기준으로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대도시 69.9%, 중소도시 69.4%, 읍면지역 66.0%였으며, 과목별로는 국어교과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대도시 70.2%, 중소도시 70.1%, 읍면지역 67.6%였으며, 수학교과는 대도시 62.9%, 중소도시 60.3%, 읍면지역 56.8%, 영어교과는 대도시 76.7%, 중소도시 77.7%, 읍면지역 73.7%로 나타났다. 한편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의 경우에는 2020년 기준으로, 대도시 10.4%, 중소도시 9.0%, 읍면지역이 9.5%로 나타났다. 과목별로는 국어교과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대도시 7.9%, 중소도시 5.9%,



읍면지역 6.6%로 나타났고, 수학교과와 영어교과의 경우에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대도시 13.7%, 중소도시 13.3%, 읍면지역은 13.7%, 영어교과의 경우에는 대도시 9.6%, 중소도시 7.8%, 읍면지역 8.1%로 나타났다.

〈표 7-1-16〉 고등학교 2학년 지역규모별 성취수준별 비율

(단위 : %)

과목	성취수준	연도											
		2017			2018			2019			2020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국어	보통학력 이상	77.2	75.3	68.7	82.5	81.6	78.8	77.7	78.1	74.9	70.2	70.1	67.6
	기초학력	17.7	20.4	24.2	13.4	15.4	18.1	18.4	17.5	22.0	21.9	23.9	25.8
	기초학력 미달	5.1	4.3	7.1	4.0	2.9	3.2	3.9	4.3	3.1	7.9	5.9	6.6
수학	보통학력 이상	78.4	75.1	70.4	73.4	69.7	64.4	68.2	64.5	61.1	62.9	60.3	56.8
	기초학력	12.6	15.3	16.4	17.2	19.7	23.1	24.2	25.3	29.6	23.4	26.4	29.5
	기초학력 미달	9.0	9.6	13.2	9.4	10.7	12.5	7.6	10.1	9.3	13.7	13.3	13.7
영어	보통학력 이상	83.9	81.3	75.2	83.6	79.5	74.2	80.0	78.9	75.3	76.7	77.7	73.7
	기초학력	12.4	14.9	18.5	10.9	13.9	19.0	16.5	17.2	21.6	13.7	14.5	18.2
	기초학력 미달	3.7	3.8	6.3	5.5	6.6	6.8	3.6	3.9	3.0	9.6	7.8	8.1
평균	보통학력 이상	79.8	77.2	71.4	79.8	76.9	72.5	75.3	73.8	70.4	69.9	69.4	66.0
	기초학력	14.2	16.9	19.7	13.8	16.3	20.1	19.7	20.0	24.4	19.7	21.6	24.5
	기초학력 미달	5.9	5.9	8.9	6.3	6.7	7.5	5.0	6.1	5.1	10.4	9.0	9.5

주 : 평균은 국어, 수학, 영어의 평균. '보통학력 이상'은 '우수학력'+ '보통학력'을 의미함.

자료 : 김희경 외(2019), 201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 고등학교.
서민희 외(2020),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 고등학교.
구남욱 외(2021),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 고등학교.

9.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4년 49.7%로 나타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59.3%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만족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4년 47.7%, 2016년 48.6%, 2018년 53.1%, 2020년 57.2% 수준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교육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의 경우에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4년 44.0%에서 2016년에는 42.9%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2018년에는 44.7%, 2020년에는 48.9%으로 전년대비 4.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우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2014년 69.5%, 2016년에 68.8%, 2018년 76.6%, 2020년 73.3%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4년 50.8%, 2016년 53.1%, 2018년 61.1%, 2020년 64.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교 시설 및 설비 만족도의 경우에도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4년 38.7%, 2016년 41.0%, 2018년 47.4%, 2020년 55.7%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학교 주변 환경 만족도를 보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4년 37.5%, 2016년 39.8%로 소폭 증가하다가 2018년에는 47.1%, 2020년에는 55.1%로 전년대비 8.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학교생활, 교육내용, 교사와의 관계, 학교시설 및 설비, 학교주변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소폭 감소하였다가 2018년부터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연도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중 2020년 기준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항목은 교우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17〉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단위 : %)

구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전반적인 학교생활	49.7	43.8	6.4	52.3	41.8	6.0	58.0	37.3	4.6	59.3	36.2	4.5
교육 내용	47.7	42.5	9.8	48.6	42.3	9.1	53.1	38.7	8.2	57.2	34.7	8.2
교육 방법	44.0	41.6	14.4	42.9	43.3	13.8	44.7	41.9	13.4	48.9	35.9	15.2
교우 관계	69.5	26.8	4.6	68.8	27.1	4.1	76.6	21.3	2.0	73.3	23.7	3.0
교사와의 관계	50.8	42.1	7.1	53.1	40.4	6.5	61.1	34.0	4.9	64.8	31.6	3.6
학교시설 및 설비	38.7	43.3	18.0	41.0	43.1	15.9	47.4	40.8	11.9	55.7	35.2	9.1
학교주변 환경	37.5	44.7	17.7	39.8	42.8	17.4	47.1	41.9	11.0	55.1	35.7	9.2

주 : 1) 통계청 "사회조사"의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2012~2016년까지는 13세 이상 재학생을 조사하였고, 2018년부터는 중·고등학교 재학생이 조사대상임.

2) 만족은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한 것이고, 불만족은 '약간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한 것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044-415-2161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제2장 교육복지정책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가. 추진 배경 및 경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취약한 여건에 있는 학생에게 교육, 복지, 문화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예컨대 학습 결손 학생에게는 보충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습 결손을 치유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문화적 욕구 결핍을 느끼는 학생에게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성취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삶의 질적 수준까지 제고하는 것이다. 즉,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핵심 원리는 교육 취약 계층 학생의 개별 여건을 진단하여 그에 맞게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인해 사업 운영 과정에 있어서도 시·도교육청, 학교, 지역사회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 되도록 설계된 것이 큰 특징이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11년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으로, 우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 사업의 경과를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은 2003년에 서울, 부산 2곳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일종의 시범사업 형태로 출발하였다. 시범사업 2년 후인 2005년부터는 공모제를 도입하고, 사업대상지역을 광역시로 확대하는 등 총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6년에는 인구 25만 명 이상의 중소도시로 사업 대상지를 확대하여 16개 시·도에 걸친 총 30개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8년 말에는 모든 시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2010년까지 전국의 534개 초·중·고에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10년 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2011년에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하여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으로

개칭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재원의 성격은 특별교부금에서 보통 교부금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업 대상은 기존의 지역 단위에서 개별 학교로 변경되었다.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수는 총 3,475교이고 사업 대상학생 수는 총 301,442명으로 집계되었다(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 2021). 그러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생 중 약 60%에 해당하는 179,554명만이 교육복지사 배치교(1,537교)에 소속되어 교내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약 40%에 해당하는 121,888명은 교육복지사 미배치교(1,938교) 학생으로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비사업학교도 있어 학교 유형에 따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생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양과 질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나. 추진 체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추진 체계는 크게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교육부에서는 교육복지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정책연구 및 정책자문, 사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연수 등을 위해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가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사업학교 선정기준, 학교별 예산 배부 기준 등이 포함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시·도의 기본 계획에 따라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에 배포하기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과의 연계를 활성화한다. 또한 자체적으로 교육청 내 담당자 연수, 우수사례 발굴,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등을 실시하여 시·도의 자체적인 교육 복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

교육지원청은 지역 단위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관내 사업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복지 프로그램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학교의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지원청 내 담당부서에 프로젝트 조정자와 같은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선 현장인 단위 학교에서는 교육복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교원 이외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한다. 배치된 교육복지사는 교내 담임교사, 부장교사 등과 협력하여 지원 대상 학생을 발굴하게 된다. 지원 대상 학생에게는 학생 개인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학습, 문화체험, 심리치료 등)이 제공된다. 또한 교육복지사와 담임교사의 판단을 통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외적으로 현물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한편,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이외에도 각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연구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단위의 사업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 현장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 관련 담당자 연수,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교육복지협의회를 구축하여 지역 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 사업 운영 방안을 논의하며, 교육지원청 단위의 교육복지협의회, 학교 단위의 교육복지위원회를 설치한다.

다. 사업 내용 및 효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대상 학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중 사업 학교의 장이 상담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학생에게 필요에 맞는 학습, 문화체험, 심리치료, 복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추진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사업학교 선정, 사업대상학생 선정 등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학교에서 교육복지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 형태로 운영되는데, 특기적성 프로그램과 같은 기존의 프로그램, 개별 학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현물 서비스로 분류된다. 우선 학교는 지원 대상 학생에게 특기적성, 체험활동,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과 같은 기존의 일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개별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맞춤형 프로그램의 예시로 학습결손 학생을 위한 1:1 보충학습 프로그램,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이 있다. 다만 특정 학생에게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학생이 노출될 수 있어 필요한 경우 일반학생도 함께 참여하여 그룹 활동의 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학생에게는 프로그램 참여 비용의 전부가 지원되나, 일반학생에게는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참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사업 시행 초기에는 일부 학교에서 특별 프로그램 안내의 편의성을 위하여 학습영역, 문화영역, 정서·심리 발달영역, 복지 프로그램 영역 등으로 구분 지은 경우가 있었으나, 복지 프로그램 영역을 임의로 구분 짓게 되면 학생 개개인의 수요 파악에 충실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별 학생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이라는 기본적인 사업 방향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의 운영방식을 개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일반 프로그램, 맞춤형 프로그램 이외에도 사업학교의 장은 의·식·주, 보건, 위생, 건강 등 학생의 기본적인 욕구 개선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현물서비스를 직접 지원할 수 있다. 단, 현금 지원은 불가하다. 예컨대 담임교사와 교육복지사가 사업대상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여 쌀을 전달할 수 있으며, 교육복지사가 학생을 데리고 치과에 동행해서 치과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효과성에 관해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도, 수업태도, 학업 효능감, 사회성, 자존감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교육적 효과에 긍정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송지훈 외, 2018). 실제, ‘한국교육개발원’의 2015년 연구(교육복지 콘서트)에 따르면, 많은 시·도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생의 학습태도, 기초학력, 자아존중감 등이 향상 되었으며, ‘서울시교육청’의 자체조사(2016년도 운영성과) 결과 교육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중·고 학생의 무단결석 비율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2014년 연구에서도 사업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역량(수업참여, 독서, 진로설계)이 비 사업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부수적으로 사업학교 내부의 교육복지 체계가 강화되었다. 2012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업 실시 이후 사업학교(초·중학교)의 교육복지 전달 부서 설치율은 9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교내 교육복지위원회 설치율은 두 학교급 모두 98% 이상으로 학교 자체의 교육복지 체계가 매우 발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은 학습, 문화, 심리, 의료 등 다양한 방면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수업료, 급식비 지원 등으로 이루어지던 교육복지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라. 교육복지안전망 시범사업 운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생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복지사가 모든 단위학교에 배치 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2020년 기준으로 1,545명의 교육복지사가 전국 1,537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는 전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의 약 44%에만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교육복지사 1인당 담당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생은 평균 195.1명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단위학교 전문 인력 부족은 교육복지사의 소진과 높은 이직률, 그리고 교육 복지우선지원사업의 질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021년도부터 교육복지 안전망 시범운영사업을 시작하였다. 교육복지안전망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교육복지 지원 강화사업계획 안내’(교육복지정책과-3276)와 관련된다.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는 개별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전면 배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교육지원청의 역할 강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교육지원청 수준에서 촘촘한 안전망에 근거한 통합적인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추진 배경과 목적은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2021년 전국 교육복지안전망은 13개 시·도에서 총 45개가 구축되어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 자치시와 같은 시(市)단위 교육지원청에서 15개가 운영되고 있고,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 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도(道)단위 교육지원청에서 30개가 운영되고 있다. 각 시·도별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7-2-1〉 시·도별 교육복지안전망 수 및 교육지원청명

순	시·도명	교육복지 안전망 수	교육지원청명	순	시·도명	교육복지 안전망 수	교육지원청명
1	서울	4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중부교육지원청	7	경기	5개	광명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부천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2	부산	1개	북부교육지원청	8	충북	7개	괴산증평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3	인천	5개	강화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9	충남	6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당진교육지원청 아산교육지원청 예산교육지원청 청양교육지원청 천안교육지원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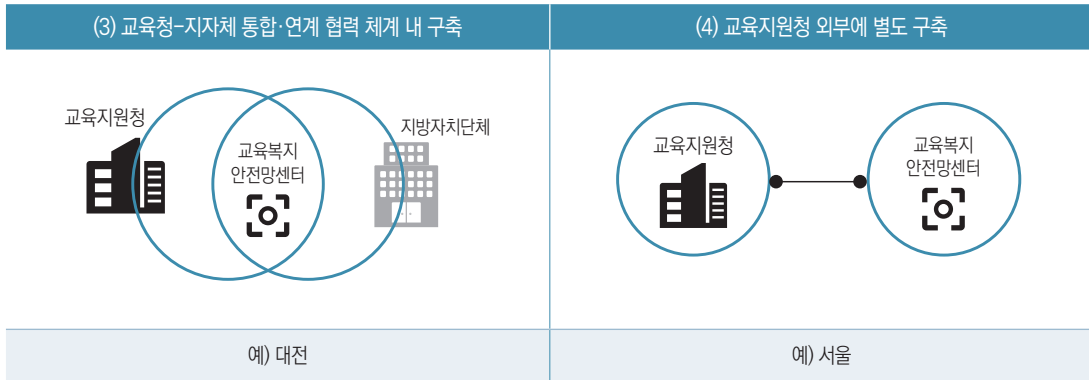


순	시·도명	교육복지 안전망 수	교육지원청명	순	시·도명	교육복지 안전망 수	교육지원청명
4	대전	1개	동구청	10	전남	3개	목포교육지원청 여수교육지원청 화순교육지원청
5	울산	2개	강남교육지원청	11	경북	4개	경산교육지원청 구미교육지원청 안동교육지원청 포항교육지원청
6	세종	2개	남부학교지원센터 북부학교지원센터	12	경남	3개	거창교육지원청 밀양교육지원청 사천교육지원청
				13	제주	2개	서귀포교육지원청 제주교육지원청
시(15개)				도(30개)			

각 교육지원청의 사업 운영 전략에 따라 교육복지안전망을 위한 조직체계 구성도 다양했다. 구성의 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1) 기존 교육지원청 내의 조직을 활용하여 교육복지안전망을 운영하는 형태, (2) 교육지원청 내에 교육복지안전망센터를 별도로 구축한 형태, (3) 교육청과 지자체 통합·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그 안에 교육복지안전망센터를 배치한 형태, 그리고 (4) 교육지원청 외부에 별도의 교육복지안전망센터를 구축한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그림 7-2-1] 시·도별 교육복지안전망을 위한 조직체계 구성 유형





마. 향후 발전방향

교육 취약 계층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꾸준히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기존 사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취약계층 학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복지사가 미배치된 학교의 취약계층 학생을 발굴·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복지사가 미배치된 학교에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의 복지서비스 역할을 강화하여 2021년도부터 교육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안전망 구축은 (1) 기존사업과의 통합 및 연계적 접근, (2)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 강화, (3) 사례관리 강화 등 크게 3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현재 각 시·도마다 상대적 강조점이 다르기도 하고, 또 다양한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안전망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 처음 시작한 교육복지안전망은 내년 2022년에는 올해 45개에서 2배 이상 증가한 110개가 운영될 예정이며, 이는 점진적으로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도록 교육지원청이 지원하는 일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교육복지안전망이 올해 2021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의미 있는 정책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규범과 제도가 하나씩 점검되고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방과후학교

가. 방과후학교 개요

1) 개념 및 추진 근거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교육활동이다(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2021).

방과후학교의 운영은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3-7호, 제2015-74호)을 근거로 수요자 선택 중심, 수익자 부담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모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생의 수요 조사를 토대로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설·운영되며, 학생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어려운 여건의 학생들에게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형태로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2) 비전 및 목표

2019년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 발표 이후 방과후학교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학생 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과후학교 운영”을 추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방과후학교는 도시 저소득층과 농어촌 소재 학생에 대한 방과후학교 수강지원 확대를 통한 교육격차 완화,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교과외 심화·보충 등 다양한 사교육 수요 흡수 노력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지역사회·교육기부 연계를 통한 운영주체의 다양화 및 연계협력 활성화를 세부 추진 목표로 두었다.

방과후학교는 특히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생태계 구축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학생성장 프로그램 활성화,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및 소외계층 방과후학교 지원 강화, 지역사회·교육기부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다양화, 방과후학교 운영 행·재정 지원 강화를 주요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추진하고 있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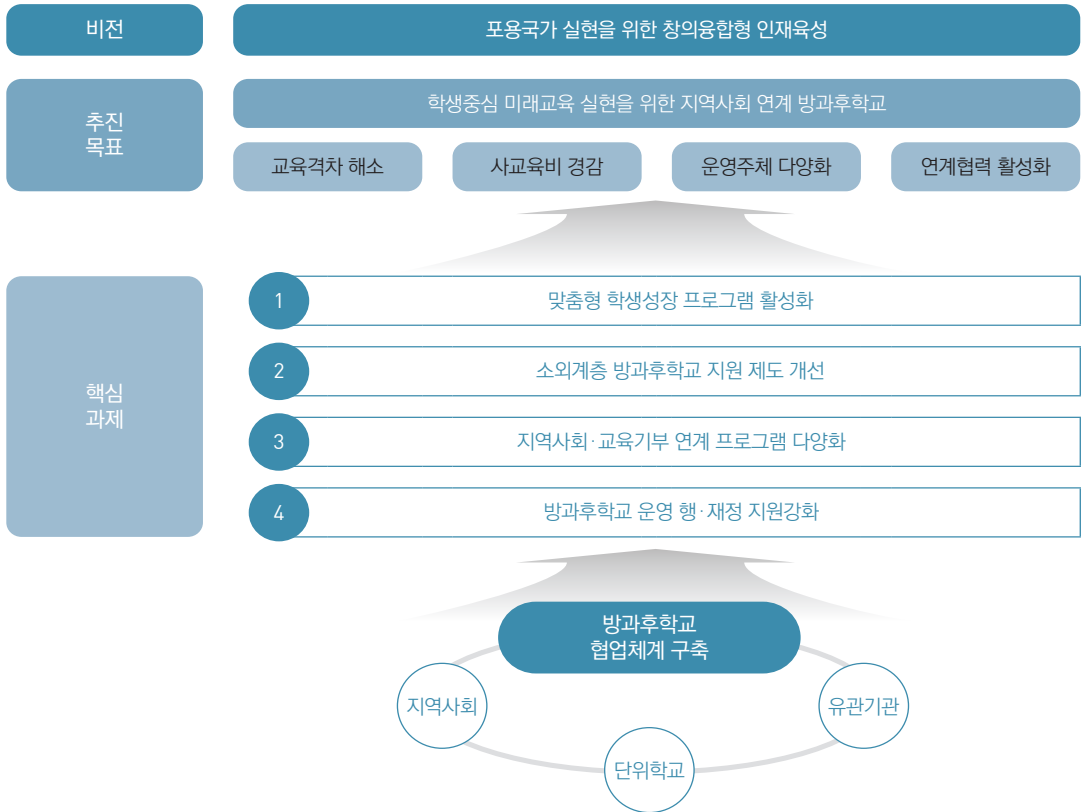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그림 7-2-2] 방과후학교 비전·목표·전략



자료 : 2021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3) 방과후학교 운영 체제

방과후학교 정책의 주요 추진 주체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학교이며, 행정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도 참여한다.

각 운영 주체별 역할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시·도교육청에 방과후학교 사업 예산을 지원하며, 관련 정책의 총괄 조정 및 관리 역할을 담당한다. 2008년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 방과후학교 사업이 지방 사무로 이양되면서 시·도교육청의 역할은 확대되었는데,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자체 예산을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한다. 단위학교는 학부모 및 학생 수요 조사를 토대로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는 주요 주체이다. 방과후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학교장과 방과후학교 업무담당 부장교사 또는 담당교사에 의해 운영된다. 또한



단위학교는 학교운영비(방과후학교 사업 지원 예산) 또는 수용비 범위 내에서 방과후학교 업무 지원을 위한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와 보조 인력을 계약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나. 방과후학교 정책 변천

방과후학교 정책의 전신은 1995년 5월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안된 ‘특기·적성교육’이며, 1996년 2월 ‘방과후 교육활동’이란 명칭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였다. 1998년 10월 ‘교육비전 2002’에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의 탈피를 통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계발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1999년 2월 방과후 교육활동의 명칭을 ‘특기·적성 교육 활동’으로 변경하여 입시 중심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의 연차적 폐지를 목표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발굴하고, 취미와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동아리 중심의 학생 문화를 만들고자 하였다. 2004년 공교육의 사교육 흡수, 경쟁력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외부강사 활용,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등 방과후 학교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특기적성, 보충 수업 등 다양한 방과후 활동의 명칭을 ‘방과후 학교’로 명명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에 학교에서 방과 후 교과, 특기적성, 보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였다.

2006년에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제도’ 도입, ‘대학생 멘토링’ 지원, ‘초등 방과후 보육’ 지원 등의 방과후학교 지원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2007년 전국 확산을 위해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다. 2008년 학교자율화 추진에 따라 방과후학교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였으며, 방과후학교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차원에서 2009년 제1회 ‘방과후학교 대상’을 개최하였다. 2011년 발표된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방안에는 대학의 사회적 기업 설립과 방과후학교 우선위탁 장려 등을 통한 대학 주도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담고 있다. 이어 2016년 5월에는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질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완화, 초등 돌봄교실 강화, 방과후학교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방법과 영역 확대를 통하여 방과후학교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2019년 11월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방과후학교 운영 방식을 제안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의 핵심과제와 그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는 <표 7-2-2>와 같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표 7-2-2〉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

핵심과제	세부추진과제
1. 맞춤형 학생성장 프로그램 활성화	1. 학교급 및 학생발달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설 유도 2.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체제 구축·지원 3. 프로그램 운영의 질 제고 및 관리 강화
2. 소외계층 방과후학교 지원 제도 개선	1.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2. 차별화된 방과후학교 소외계층 지원 강화 3. 소외지역 중심 초·중·고 단계 문화·예술 콘텐츠 지원 확대
3. 지역사회·교육기부 연계 프로그램 다양화	1. 지역사회 연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2. 방과후학교 운영 주체 간 연계 시스템 강화 3. 교육기부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
4. 방과후학교 운영 행·재정 지원 강화	1.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역할 강화 2. 교직원의 업무부담 감소 및 업무 편의성 제고 3. 방과후학교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강화 4. 시·도교육청의 책무성 강화

자료 : 교육부(2019).

다. 취약계층의 지원 확대

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취약계층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가정 학생들에게 연간 60만 원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유수강권을 지급받는 학생 수와 연간 지원액은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2013년 이후에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연간 지원액은 지역마다 편차는 있으나 60만 원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만 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지원금액	127,116	141,021	176,581	289,188	340,745	371,960	173,790	346,116	323,876	336,968	157,437	163,412
지원학생 수	353,445	392,070	482,070	602,480	567,907	622,933	362,062	721,077	698,761	624,015	601,652	591,230
연간지원액	30	36	36	48	60	60	60	60	60	60	60	60

자료 : 교육부.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각년도.

2)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도시보다 많이 지원하는 등 농산어촌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과 수강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표 7-2-4〉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현황

(단위 : 억 원, 개)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지원금액	382	421	515	657	973	975	782	923	876	915	742	789	873
지원학급 수	14,605	16,210	17,162	46,948	46,323	46,401	46,508	46,660	47,513	46,952	47,377	47,833	48,120

자료 : 교육부,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각 년도.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044-203-6413

3. 농산어촌 지역 교육

가. 농산어촌 지역 교육환경적 특성

1) 학생 수의 지속적 감소

전국적으로 초·중등 학생 수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농산어촌 지역 역시 큰 폭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읍지역의 경우 2005년 67만 명을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55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면지역의 경우 2000년 57만 명을 기록한 이후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32만 명 수준까지 낮아졌다. 도서벽지 지역은 가장 급격한 감소 추세를 나타내서 학생 수가 2000년 9.4만 명에서 2019년 3.4만 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읍지역은 전국 수준보다 감소 비율이 낮은 수준인 반면에 면지역과 도서벽지에서의 현저한 학생 수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읍지역에서의 학생 수 감소 완화추세에 힘입어 전국 학생 수에서 농산어촌 지역 학생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이후 미세하나마 조금 높아졌다.

〈표 7-2-5〉 2000년 이후 초·중등 학생 수 감소 추이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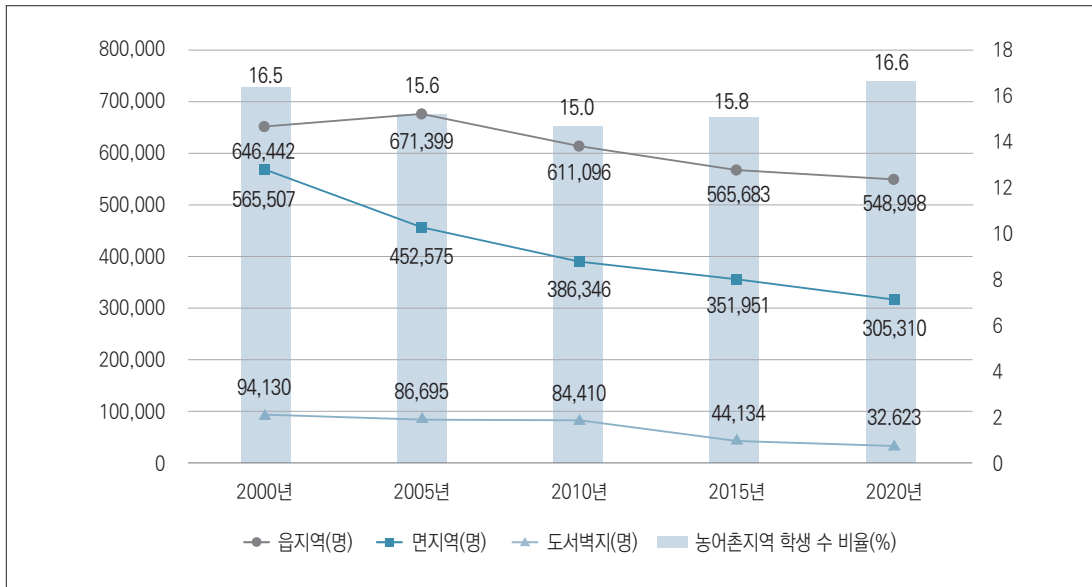
행정구역별	연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전국(A)	7,931,600 (18,632)	7,782,67 (10,066)	7,227,693 (5,535)	6,085,508 (3,319)	5,344,42 (2,453)	
농 산 어 촌	계(B)	1,306,079 (17,662)	1,210,669 (9,546)	1,081,852 (4,958)	961,768 (3,013)	886,93 (2,228)
	읍지역	646,442 (1,173)	671,399(729)	611,096 (359)	565,683 (310)	548,998 (269)
	면지역	565,507 (7,118)	452,575 (4,113)	386,346 (1,959)	351,951 (1,082)	305,310 (851)
	도서벽지	94,130 (9,371)	86,695 (4,704)	84,410 (2,640)	44,134 (1,621)	32,623 (1,108)
구성비(B/A)	16.5	15.6	15.0	15.8	16.6	

주 : 폐교 및 휴교는 현황에 포함하지 않음. () 안의 수치는 분교 현황이며, 본교 현황에는 포함하지 않음.

자료 :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공시자료 활용.

임연기(2021). 딜레마와 교육정책: 한국 농촌학교의 딜레마 상황과 정책대응. 서울: 학지사. 113면.

[그림 7-2-3] 농어촌 지역 학생 수 변화(본교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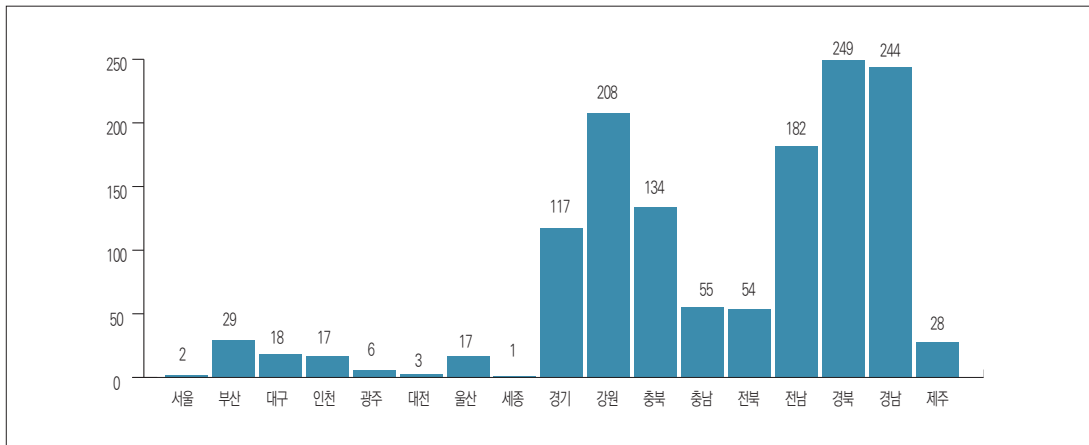


자료 : 임연기(2021). 딜레마와 교육정책: 한국 농촌학교의 딜레마 상황과 정책대응. 서울: 학지사. 113면.

2) 시·도별 폐교학교 현황

학생 수 감소는 소규모학교의 폐교로 이어져 2021년도 기준으로 2020년도 한해 전국적으로 1,364교가 폐교 되었으며 그 중 초등학교 1,183교, 중학교 143교, 고등학교 38교등 주로 초등학교의 폐교가 86.7%로 나타나 향후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폐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도시 지역은 폐교학교가 소수인데 반하여 농어촌 인구가 대부분인 지역의 폐교학교의 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인구 감소가 심각한 강원, 전남, 경북, 경남 등의 폐교학교 수가 많은 점은 인구 소멸에 대한 우려가 학생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그림 7-2-4] 시·도별 폐교학교 수(2020년도)



주 : 2021년 4월 1일 기준 자료.
 자료 : 학교알리미 시스템(2021).

3) 코로나19 사태와 학생등교 중단조치

2020학년도는 코로나19 사태가 불특정 지역 또는 전국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모든 유·초·중·고 개학이 연기되고, 학생들의 등교를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추세 속에서 결국 초등학교는 4월 16일부터, 중·고등학교는 4월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통하여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대학수학능력 시험도 당초 11월 19일에서 12월 3일로 2주 연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교육부는 2020년 4월 7일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원활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학교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하고, 단위학교별 처리 원칙과 방법을 담은 원격수업 시 출결, 평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 지침을 마련하여 발표하였고, 4월 25일에는 등교 및

학교를 포함한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교직원 및 학교, 학원등 교육계 전반에 걸친 코로나19 예방 지침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 사태의 완화 추이에 따라 5월 13일부터 고3부터 순차적인 등교를 시작하였으나 이태원 감염확산으로 등교수업을 1주일 연기하고, 5월 27일 1단계 등교수업 개시에 따른 학교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방안을 발표하였다. 시도교육청의 자율에 따라서 방학 전까지 등교수업을 추진하였으나 등교 중단 사태가 반복되고 결국 2학기를 맞이하였으나 학생들의 전면 등교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분 등교 상태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21학년도에도 지속되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들쭉날쭉하는 상황속에 학교와 지역별로 부분 등교가 시행되다가 2021. 11. 22.일을 기해 전면 등교가 시행되었다.

〈표 7-2-6〉 학교별 등교수업 시기

단계	일정	등교대상			비고
		고등학생	중학생	유·초등학생	
우선단계	5. 20.(수)	고3			* 당초계획 * 이태원감염 확산으로 1주일 연기
1단계	5. 27.(수)	고2	중3	초1, 2 + 유치원	
2단계	6. 3.(수)	고1	중2	초3 ~ 4	
3단계	6. 8.(월)		중1	초5 ~ 6	

이에 따라 학교현장의 교육과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속출했고, 특히 학생들이 수업집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예체능 교육, 각종 실험·실습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또한, 현장체험, 소풍, 수학여행, 축제 등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각종 교육활동 등을 중단하거나 원격활동으로 대체 하는 상황을 빚었다.

다행인 점은 코로나 환자 수의 급속한 증가 추세 속에서도 학생과 교직원의 감염은 상대적으로 적게나타났는데, 질병관리본부의 자료(2020. 10. 22. 0시 기준)에 따르면 전국의 환자수는 25,543명 이고 그중 학생은 645명으로 2.53%, 교직원은 133명으로 0.52%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은 일반인이나 학생 모두 감염 비율이 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10월 22일 현재 전체 확진자 25,543명중 수도권이 11,748명(45.99%)이고,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광역시가 8,658명(33.9%)으로 수도권과 광역시 환자를 합치면 감염비율이 80%에 육박하고 있다. 농산어촌 지역의 감염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도시지역은 인구 밀집화 현상과 협소한 공간적 제약 등이 있는 반면에 농산어촌 지역은 소규모 학생, 넓은 자연 공간 및 학습 공간 등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이는 농산어촌 학교의 장점이기도 하다. 학생등교를 시작한 이후에도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함에 따라 도시지역의 경우 등교 중단 조치가 반복적으로 취해졌으나 농산어촌 학교는 소인수 학교의 장점을 살려 학생등교가 이루어져 왔고, 제한적이거나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교육부는 10월 11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1단계 조치에 따라 모든 학교들이 기존의 지침대로 전교생의 2/3 이내에서 등교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지역별, 학교별 여건에 맞게 조정하며,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의 경우 전면 등교가능 방침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교총, 학부모 단체 등을 중심으로 1학년의 등교를 늘려 달라는 요구가 있어, 초등학교 1학년은 1주에 3일 이상 등교를 하도록 권고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예를 들면 초등학교의 경우 오전/오후반 혹은 오전/오후 학년제 등을 실시하는 것도 적극 권장했다.

나. 농산어촌 교육 지원

농산어촌 교육 재정지원 사업으로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과 도서벽지 화상교실 구축 및 운영사업을 추진하였다.³⁾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제약 속에서 사업을 추진하였다.

1)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그동안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여건을 부정적인 차원에서만 파악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았으나, 농산어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도시학교를 뒤따라가는 것보다 도시학교에서 찾기 어려운 농산어촌 학교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농산어촌 학교의 강점으로는 청정 자연환경과의 근접성,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식품 생산의 기지이자, 면면히 지켜오고 있는 전통 문화 등 도시와 대비되는 농산어촌 교육자원의 특색이 있다. 또한, 도시 학교에 비해 학교에 대한 신뢰감과 의존성이 높고, 학력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점, 학교 구성원 간 긴밀한 인간관계가 상존하며, 가정·학교·지역사회의 교육적 연계가 강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농산어촌 학교는 소규모 학교로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의 개별화가 가능하다는 점, 학생들의 학교활동 참여 및 상호 협동적 학습 기회가 많다는 점, 학교 구성원 간, 특히 교직원과 학생 간

3) 상세한 내용은 임연기 외(2020). 2019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운영사례. 공주대학교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 참조.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학생 수 대비 학습 환경 및 공간이 충분하다는 점, 학교운영의 탈 관료화, 인간화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농산어촌 학교는 교육력 향상을 위해 극복해야 할 여러 취약점이 있다. 농산어촌은 도시와 비교하여 사회적 고립성, 문화적 지체성, 경제적 빈곤성, 공공서비스 질의 낙후성 등 교육환경으로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인구구조의 고령화, 우수학생의 도시로의 이탈 지속화, 결손 가정 학생의 증가와 학습집단의 이질화, 교사들의 근무의욕 저하와 자녀 교육 문제로 학교소재 지역 거주 기피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농산어촌 학교는 소규모 학교로서 학습자의 등 상호 발전을 자극하는 심리적 학습환경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 인간관계의 고정화 등으로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도모에 취약하다는 점, 다양한 교과 개설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특별 교실의 확충에 한계가 있다는 점, 다방면의 재능을 가진 교원 확보가 곤란하다는 점, 교사 의존성이 과다하고, 교사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점 등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농산어촌 학교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학교 특색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추진하였다. 주요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과 농산어촌의 가치를 반영한 교육과정 특성화, 둘째, 농산어촌 학교의 소규모화에 따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학교, 학교와 지역 간의 연계 협력 활동 강화, 셋째,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규모화 위협요인에 공동으로 대응 등이다.

아울러 그간의 단위학교 중심 농산어촌 학교 특색사업은 학교별로 성과 차원에서 편차가 크고,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이나 지역사회 연계, 마을 교육공동체 운영 등 사업의 확산성 차원에서 한계가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하여 단위학교 수준에서 독자적으로 특색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농산어촌 여러 소규모학교의 육성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통합적 지원체제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어 교육지원청형 사업을 2019년도부터 시행하였다.

농어촌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2018년 단위학교 사업으로 출발하였으며, 2019년에는 단위학교형과 교육지원청형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각 유형별 사업목적은 다음과 같다.

〈표 7-2-7〉 농어촌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단위학교형	교육지원청형
단위학교 수준에서 농촌학교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특색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교육지원청 수준에서 관내 작은 학교 간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연계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원

2018년도에는 읍·면·도서벽지 소재 초·중·고등학교 281교를 지원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단위 학교형을 83개로 축소하고 교육지원청 사업을 추가하여 11개 교육지원청을 지원하였다. 2020년에는 교육지원청형 9개, 단위학교형 65교로 축소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9개 교육지원청, 54개교 단위학교형 사업을 지원하여 매년 지원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7-2-8〉 농어촌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지원 현황

구분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단위 학교	2018년	2	4	4	1	44	30	18	32	24	42	36	38	6	281
	2019년	2	4	4	2	10	0	12	5	15	6	10	10	3	83
	2020년	0	6	3	0	0	0	16	9	0	5	6	12	8	65
	2021년	0	0	2	0	0	0	8	22	0	5	3	10	4	54
교육 지원청	2019년	0	1	0	0	1	0	1	1	2	1	1	1	2	11
	2020년	0	1	0	0	1	0	1	1	2	1	1	1	0	9
	2021년	0	1	0	0	1	0	1	1	2	1	1	1	0	9

자료 : 교육부(2021).

2) 도서벽지 화상교실 구축·운영 사업(2020년 사업완료)

본 사업의 목적은 첫째, 학생 수 급감으로 복식학급, 상치교사 운영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도서·벽지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화상교실 구축 및 지원, 둘째, 복식학급 및 상치교사 문제 등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사의 업무경감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학습능력 향상 도모, 셋째, 도서·벽지 극소규모 학교의 새로운 교육과정운영 모델 창출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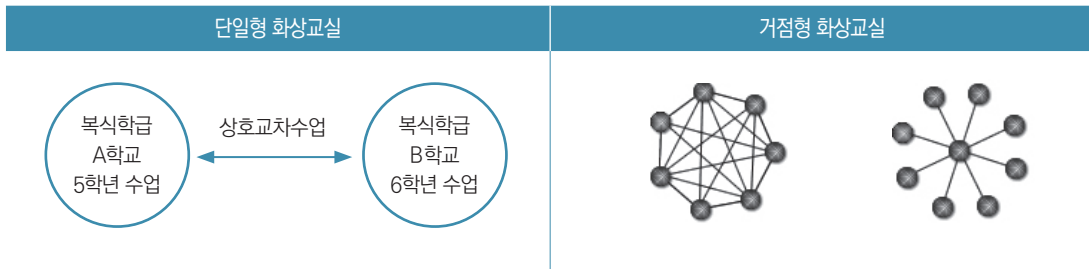
화상교실 운영 유형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단일형(1 : 1) 화상교실은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2개의 학교가 각기 다른 학년의 수업을 교차하여 상호 공유 운영할 수 있도록 화상교실을 구축한다.

둘째, 복수형(N : N) 화상교실은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3~5개 학교가 복식학급 수업을 교차 공유할 수 있도록 화상교실을 구축한다. 다수의 도서벽지 소규모학교를 화상교실로 연계하여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셋째, 거점형(1 : N) 화상교실은 중심학교 수업을 2~4개 학교가 공유한다. 중점학교(본교)에서 운영하는 수업을 도서·벽지학교(분교)가 화상으로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참여한다.

[그림 7-2-5] 도서벽지 화상교실 운영 유형(단일형, 거점형)



도서·벽지 학교가 많은 인천, 전남, 경북 등 3개 시·도교육청 관내 도서·벽지학교를 지원하였다 (16+1학교⁴⁾). 2019년 화상교실 운영학교는 아래와 같다(인천: 4교, 전남: 6교, 경북: 6교). 2020년에는 안좌초등학교를 대신하여 청계남초, 해남고가 가거도 초등학교 연결학교로 참여하였다.

<표 7-2-9> 2019년 화상교실 운영학교 현황

지역	학교 수	학교명	연결 학교
인천	4	인천 남구 용현남초등학교	인천 응진 용현남초(자월분교)
		인천 중구 송도중학교	인천 응진 연평중학교
전남	7	전남 진도 의신초등학교	전남 진도 의신초(접도분교, 모도분교)
		전남 신안 가거도초등학교	2019: 안좌초등학교/2020: 청계남초, 해남고
		전남 신안 안좌중학교	전남 고흥 대서중학교
경북	6	경북 칠곡 북삼초등학교	북삼초 오평분교
		경북 울진 삼근초등학교	삼근초 옥방분교
		경북 봉화 봉성초등학교	경부 예천 감천초등학교

2019년 화상교실 구축 이후 2학기에 정규교과에서 8개 교과목, 17개 학교, 21개 강좌를 운영하였다. 아울러 11개 비교과유형, 14개 비교과활동을 운영하였다. 참여교사들로부터 화상교실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 총 17교 가운데 16교는 화상교실 구축 지원 대상 학교이며, 1교(전남 안좌초등학교)는 기존에 구축된 화상교실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한 학교임.

〈표 7-2-10〉 화상교실의 교육적 효과 조사 결과

교육적 효과	세부 내용	빈도(총 17)
전문교사로 인한 수업 만족도 제고	SW 전문교사에 의한 컴퓨터수업 가능(지역격차 해소 기여)	12
	원어민교사에 의한 영어수업으로 영어회화능력 신장 및 원어민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	
	전문교사 수업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향상	
	예체능 전문 수업 가능	
의사소통·협업역량 향상	발표 및 토의토론수업으로 인한 의사소통 역량 향상	10
	협력학습 및 프로젝트로 인한 협업경험	
체험학습 가능	과학관, 미술관 등 화상체험학습으로 인한 지역격차 해소	4
학습내용 심화	디지털교과서를 통한 내용이해 심화	2
	토의토론수업으로 인한 내용이해 심화	
심리상담 가능	개별/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 기여	1
동기유발	화상교실 수업이 주는 흥미 유발 효과	1
기타	교사의 수업운영 부담 해소에 기여	1

다. 농산어촌 학교 코로나19 사태 대응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 농산어촌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가장 주목한 점은 방역이나 학생들의 건강 보호는 물론 도시학생들이 학원 등에서 학력을 키우는 동안 농어촌 학생들은 손을 놓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었다. 따라서 정상적인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의 질을 높여가는 원격운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이 당면 과제였으나 긴급하게 추진한 원격수업은 시스템 불안정, PC 부족, 콘텐츠 부족 등 여러 측면에서 제약이 많았다. 다음의 언론보도를 보면 그 실상을 그대로 읽을 수 있다.

교실에 와이파이드 없는데...원격수업 준비에 학교들 '진땀'
 초등학교 교실엔 웹캠 없는 데스크톱뿐...학교 간 디지털 격차 '확연'
 학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학교 수업 대안으로 나온 '원격수업(온라인수업)' 준비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쌍방향 수업을 하려면 매 교시 교사들이 각자 교실에 들어가 온라인에 접속해 수업해야 하는데, 교실 내 무선망이 없는 학교가 수도룩하기 때문이다. 학교 간 디지털 격차(디지털을 잘 활용하는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 간 발생하는 지식·소득 등의 격차)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2020. 3. 29.〉에서

특히 초등 저학년일수록 교육 콘텐츠 부족과 장기간 긴급 돌봄에 따른 문제, 온라인 인프라 구축 문제점 등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청에서는 PC와 패드 등을 긴급히 보급하고 원격수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온라인 개학 1주일 만에 전국 어디서나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지역별, 학교 급별 특색 있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역설적으로 학교에 가지 않아도 배움이 이어지고, 배움의 형태는 더욱 다양하게 펼쳐졌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과 온라인 개학 준비를 위해 학생·학부모와의 상시 소통채널 운영, 원격수업을 위한 기반 구축,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지원 등, 모든 학교는 원격 수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원격 수업을 위한 학습관리시스템(LMS)을 설정하고, 원격수업 교육과정과 수업운영 방식을 결정해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 내용을 재구성하기 위해 교원 대상 학습관리시스템 활용법 연수를 지원하였으며, 예비비를 지원해 원격 수업용 도구와 장비 구축을 완료하였다. 원격 수업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 통신료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지원이 필요한 모든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대여하며 통신료 역시 무료로 지원하였다.

원격수업은 실시간 쌍방향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수행중심수업, 기타 학교 여건에 따른 다양한 수업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결손 부분은 등교수업 이후에 교사가 더 촘촘히 살펴봐야 하고, 학습클리닉 보조교사를 확대 배치하여 학습결손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온라인 개학 관련 질의응답 커뮤니티’를 개설,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원격 수업 등 다양한 질문 사항에 실시간으로 직접 응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장애의 특성이나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원격수업이 어려운 학생에게 감염예방수칙 준수와 함께 교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방문수업’을 진행하였다. 충남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 정보 소외계층,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원격수업 진행이 어려운 학생에게 학교와 학급 담임교사가 준비하는 원격수업 콘텐츠 및 과제 부여, 학습지와 학습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원격 수업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학교에서는 5월 20일부터 학교공간을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어 방역 등 감염병 매뉴얼을 철저히 지키면서 안전하게 등교수업을 진행하였으며 모든 학교들이 6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등교개학을 진행하여 원격수업으로 위축되었던 여러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⁵⁾

5) 공주대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2020. 5.)가 개최한 2020 제1차 농어촌 작은학교 희망포럼 자료집 「코로나시대 농어촌 교육지원청의 역할」 참조.

4. 다문화학생 교육

가. 다문화학생 현황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정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다양화되고 있다. 이주배경을 지닌 사회 구성원이 증가하면서 학교에도 다문화학생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다문화학생이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다. 2021년 다문화학생은 전년대비 8.6% 증가한 160,056명이다. 다문화가정의 6세 미만 유아 수를 고려하면 향후 초·중·고 학교에 재학하는 다문화학생 수와 전체 학생 중 다문화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7-2-11〉 최근 5년간 다문화학생 현황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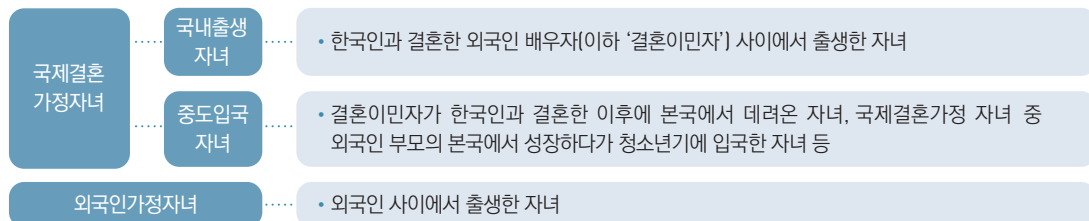
연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다문화학생 수(A)	109,387	122,212	137,225	147,378	160,056
	전체 학생 수(B)	5,733,132	5,592,792	5,461,614	5,355,483	5,332,044
	다문화학생 비율(A/B×100)	1.91	2.19	2.51	2.75	3.00

주 : 매년 4월 1일 기준.

자료 :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초기 다문화교육 정책은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다문화가정 학생의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2010년부터는 중도입국 자녀도 정책 대상에 포함되었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가 발표한 「다문화 학생 교육 선진화방안」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학생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그림 7-2-6] 다문화가정 학생 구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2).

이 분류에 따라 2021년 다문화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출생자녀가 약 76.3%, 중도입국자녀가 약 5.9%, 외국인가정자녀가 약 17.8% 정도이다. 학교급별로는 전체 다문화학생의 약 69.6%가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고, 약 21.3%가 중학교에, 약 9.1%가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초등학생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중·고등학생 수가 전년대비 9,018명 증가하는 등 청소년기 다문화학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7-2-12〉 다문화학생 유형별·학교급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0년				2021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국내출생	85,101	19,556	9,117	113,774	86,410	25,429	10,254	122,093
중도입국	5,088	2,488	1,575	9,151	4,969	2,801	1,657	9,427
외국인가정	17,581	4,791	2,081	24,453	20,051	5,817	2,668	28,536
계	107,770	26,835	12,773	147,378	111,430	34,047	14,579	160,056
비율	73.12	18.21	8.67	100.00	69.62	21.27	9.11	100.00

주: 매년 4월 1일 기준.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나. 다문화학생을 위한 정책 추진 경과

학교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인 다문화학생 교육을 위해 2006년부터 교육부에서는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범교과 학습 주제로 ‘다문화교육’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을 통한 학교 내 다문화교육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2012년부터 한국어가 서툰 중도입국·외국인가정 자녀의 공교육 적응지원을 위해 일반 학교 내 특별학급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집중 교육하는 ‘한국어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어(KSL) 교육 과정’을 도입(2012. 7.)함으로써 한국어를 한국어학급의 정규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한국어(KSL) 교육과정의 보완 필요에 따라 한국어(KSL) 교육과정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내용 체계 및 문화교육 내용을 보완한 ‘개정 한국어(KSL) 교육과정’을 개정·고시하였다.(’17. 7월 고시, ’19. 3월 적용)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이외에도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지 증명만으로도 초·중학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2008년, 2010년). 이에 더해 외국 학교를 다니다가 국내 학교에 편입학하려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학력 증빙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학력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학력심의위원회’를 통해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2013년). 뿐만 아니라, 다문화학생의 중학교 입학·전학·편입학 절차를 교육장 배정 방식으로 변경하여 다문화학생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을 도모하였다.(’20. 8. 15. 시행)

이 외에도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모든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는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우수사례 공모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 2021년 주요 정책 내용

1)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내실화

교육부는 유치원 단계부터 조기에 개입하여 언어 및 기초학습 등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다문화 유아에게 동등한 출발점을 보장하기 위해 2015년부터 ‘다문화 유치원’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에는 사업 개편으로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로 사업명이 변경되었다.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반 유아와 다문화 유아를 통합하여 교육하되, 필요할 경우 다문화 유아의 발달 단계 및 특성을 고려한 추가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다문화 유아 추가지도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는 2015년 5개 시·도 30개원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어, 2021년에는 전국 162개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OO 유치원 다문화가정 학부모) 학기 초에 제가 한국어를 잘 모르니까 아이에게 한국어를 잘 가르쳐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유치원에서 도움을 주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내년에도 계속 가르쳐주셨으면 좋겠어요.
- (OO 유치원 교사) 다문화 유치원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학생들에게 언어 교육을 실시하니, 언어 발달도 좋아지고 기본생활습관과 사회성도 좋아졌어요.

다문화학생의 학교 적응과 기초학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문화학생 대학생 멘토링(4,000여 명)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생 멘토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다문화학생과 대학생을 1:1 매칭하여 진행되는데, 신청 다문화학생 중 저소득층, 기초학력 미달 학생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순위로 매칭한다. 2017년부터는 외국어에 능통한 대학생이 멘토가 되어 한국어 구사가 어려운 중도입국·외국인가정 학생의 부(모)국 언어로 직접 멘토링을 실시하는 ‘모국어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학생의 이중언어 학습을 장려하고 이중언어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전자책 형태의 이중언어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일본어·중국어·필리핀어·베트남어·러시아어·몽골어·태국어·캄보디아어·인도네시아어). 이와 함께 매년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도 개최하고 있으며 2021년 11월에는 제9회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가 개최되었다.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입상 다문화학생은 2018년 6월에 체결된 교육부-LG연암문화재단-한국외국어대학교 업무협약에 따라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체 학급이 함께 다문화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원격영상으로 진로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어울림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2) 중도입국·외국인학생 교육 사각지대 해소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학생도 「유엔아동권리협약」(우리나라 1991년 비준)에 따라 의무교육기회를 보장받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거주지 증명만으로도 국내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는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한국 교육제도, 입학절차, 교육기관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우리아이 학교 보내기’ 책자를 14개 언어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법무부와 정보연계를 통해 중도입국·난민 자녀에게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를 연2회 실시하고 있고, 2020년에는 보다 많은 학부모에게 교육제도 안내가 실시될 수 있도록 국문-외국어 양면 1매로 구성된 리플릿(13개 언어)을 추가로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2021년에는 한국 교육제도, 입학절차 등의 학교 입학 안내 영상을 다국어(13개 언어)로 제작·보급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의 공교육 진입 안내 형태를 다양화하였다.

일반 학교 내 특별학급 형태로 운영되는 ‘한국어학급’에서는 한국어가 서툰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자녀 등이 정규 학교수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한국어 학급은 2020년에 245교(총 372학급)가 참여하였고, 2021년에는 274교(총 408학급)로 더욱 확대되었다. 또한, 중도입국자녀 등이 한국어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 편입학하는 경우에도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은 교육청(또는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해당 학교에 한국어 강사를 지원하거나, 인근 한국어학급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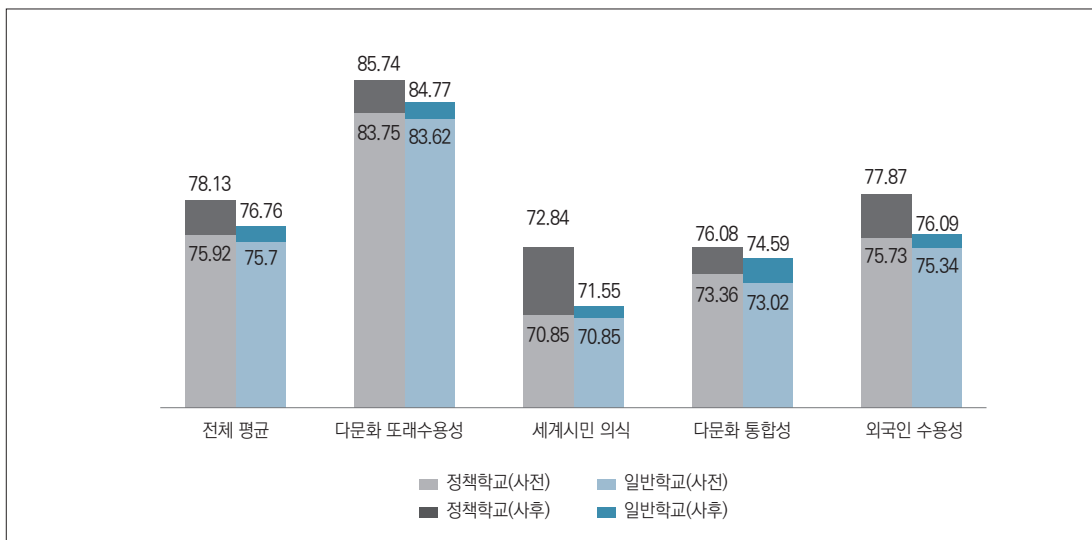
있는 한국어 강사가 순회 지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3)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교육 참여 확대

교육부는 다문화학생 교육지원을 통해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전체 학교 구성원이 다문화 교육에 참여하여 학교현장의 다문화 감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지정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다문화 이해, 차별해소, 반(反)편견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는 기존 다문화 유치원, 다문화 중점학교, 예비 학교로 운영되던 사업을 통합하여 개편한 것이다. 2018년부터는 각 학교에 우수한 다문화교육 교육과정 운영 사례가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수업모형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2019년 다문화교육정책학교 및 일반학교의 다문화 수용성을 조사한 결과, 다문화교육 정책학교가 일반학교보다 다문화 수용성 각 영역에서 뚜렷하게 증가하여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교과 및 비교과와 연계한 다문화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중앙 및 각 시·도에서 다문화교육 관련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현재 다문화교육정책 학교는 2021년 713개교, 408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그림 7-2-7] 2019년 다문화교육정책학교 및 일반학교 다문화 수용성 변화 비교

(단위: 점)



자료 : 교육부(2020).

다문화교육의 경우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의 다문화교육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되어 교원 대상 다문화 이해 연수가 의무화되었다. 교육부는 중앙교육연수원 및 시·도별 교육연수원을 통해 기초 연수(15시간) 3개 과정, 심화연수(30시간) 1개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원들이 3년 동안 15시간 이상 다문화관련 연수를 이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더불어, 다문화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진학상담, 위기학생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진로진학상담교사와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 ‘다문화학생 진로·진학상담의 이해’ 교원 원격연수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였다.

현장에서 수업을 통해 다문화교육을 지도하거나 다문화학생을 지원한 교사, 현장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2009년부터 전국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을 진행하여 우수한 교육 자료를 현장에 안내하고 있으며, 2018년 제10회 공모전부터는 ‘다문화 상담사례’ 부문을 신설하여 다문화학생 정서·심리·진로상담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개편하였다.

4)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확립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다문화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중앙다문화교육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앙다문화교육센터는 다문화교육 관련 통계 수집 및 분석, 사업 성과의 평가, 시·도 다문화교육 지원, 관계자 워크숍 개최, 자료개발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 여건에 맞는 다문화교육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2015년부터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각 시·도 단위에서 해당 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역 내 다양한 다문화교육 자원을 연계·활용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다문화교육 정책을 개발·추진하고, 그 결과를 관내 학교에 공유 및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2015년 5개 지역으로 시작하여, 2020년에는 17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모두 운영되고 있다.

5. 탈북학생 교육 지원

가. 탈북학생 개념 및 현황

탈북학생이란 북한 또는 중국 등에서 태어나 한국에 입국한 후 한국 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 이탈 주민⁶⁾의 자녀이다. 최근에는 북한 외에 중국 등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한국 입국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착 지원에 있어서는 제한적이지만, 교육부에서는 이들이 부모의 탈북과정 중 외국에서 태어나 학습 결손이 크므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탈북학생 범주에 포함하여 교육 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늘어나면서 국내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원칙적으로 통일부 정착지원 및 교육부 탈북학생 교육지원 대상은 아니다.

〈표 7-2-13〉 탈북학생 출생지별 지원 비교

구분	북한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한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대학특례입학	가능(정원 외)	가능(정원 내)	해당 없음
학비지원	가능	일부 지원 가능	해당 없음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지원 사업 참여 여부	가능	가능	교육청마다 다름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21). 2021 탈북학생 멘토링 매뉴얼(10쪽).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현황을 보면 1948년부터 1990년대 말까지 누적 집계로 1천여 명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 들어 한국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2010년 말 2만 명에 이르렀고, 2021년 9월에는 잠정 통계치로 33,788명에 달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탈북학생의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규모는 줄어들고 있지만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남한 입국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전체 탈북학생의 규모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6)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으로 온 북한주민을 의미함. 법령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임.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표 7-2-14〉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남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여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합계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여성비율	45.8	55.3	63.1	67.0	69.4	74.6	77.6	78.3	77.3	75.4	70.6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잠정)	합계
남	404	369	305	251	302	188	168	202	72	20	9,455
여	1,098	1,145	1,092	1,024	1,116	939	969	845	157	16	24,333
합계	1,502	1,514	1,397	1,275	1,418	1,127	1,137	1,047	229	36	33,788
여성비율	73.1	75.6	78.2	80.3	78.7	83.3	85.2	80.7	68.6	44.4	72.0

자료 : 통일부(2021). 북한이탈주민통계.

교육부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탈북학생의 재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탈북학생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1년 4월 조사결과, 총 2,546명의 탈북청소년이 학교 안팎의 교육 기관에 재학하고 있다. 이 가운데 2,287명(전체의 89.8%)은 정규 초·중·고등학교 및 기타학교(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고 있으며, 259명(전체의 10.2%)의 청소년이 정규학교가 아닌 전일제 대안교육시설에서 수학 중이다. 이 밖에 정규학교나 대안교육시설에서 수학하지 않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탈북청소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탈북학생의 정규학교 급별 재학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재학생이 654명으로 28.6%를 차지하고 있고, 중학교 재학생은 740명(32.4%), 고등학교 재학생은 739명(32.3%), 기타학교 재학생은 154명(6.7%)으로 집계되었다.

〈표 7-2-15〉 탈북청소년 학교 유형별 재학 현황

(단위 : 명)

구분	정규학교								대안교육시설 (전일제)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재학 현황	333	321	385	355	359	380	72	82	259	2,546
	654		740		739		154			
	2,287									

주 : 1) 기타학교는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등을 포함함.

2) 대안교육시설(전일제) 재학생 현황은 2021. 8. 기준임(통일부 제공).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21). 2021년 교육부 탈북학생 통계 현황.

지역별 탈북학생 재학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재학 중인 학생이 31.2%로 가장 많고, 서울이 21%, 인천 9.1%로 나타나 전체 학생의 61.3% 가량이 수도권 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표 7-2-16〉 지역별 탈북학생 재학 현황

(단위 : 개교, 명, %)

구분	재학 학교 수	학생수					비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서울	200	137	134	154	56	481	21.0
부산	57	32	29	30	4	95	4.2
대구	32	23	9	15	0	47	2.1
인천	78	63	62	80	2	207	9.1
광주	42	14	22	19	0	55	2.4
대전	38	22	17	11	1	51	2.2
울산	25	13	20	7	0	40	1.8
세종	7	3	3	2	0	8	0.3
경기	319	178	247	231	58	714	31.2
강원	40	17	18	23	0	58	2.5
충북	61	39	33	31	3	106	4.6
충남	86	38	45	44	26	153	6.7
전북	31	9	13	13	0	35	1.5
전남	30	9	15	13	1	38	1.7
경북	66	22	31	25	2	80	3.5
경남	72	27	34	32	1	94	4.1
제주	19	8	8	9	0	25	1.1
계	1,203	654	740	739	154	2,287	100.0

주 : 2021. 4월 기준 재학 현황.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21). 2021년 교육부 탈북학생 통계 현황.

탈북학생 중에서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제3국 배경 학생의 규모는 2011년에는 36.2%에 불과했지만, 2021년은 65.5%로 증가했고,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재학 탈북학생의 순차적인 상급학교 진학에 따라 고등학교에 재학하게 될 제3국 출생 학생 비율도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7-2-17〉 정규학교 재학 탈북학생 출생지별 재학 현황

(단위 : 명,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북한출생	127	19.4	238	32.2	355	48	69	44.8	789	34.5
중국 등 제3국 출생	527	80.6	502	67.8	384	52	85	55.2	1,498	65.5
계	654	100.0	740	100.0	739	100.0	154	100.0	2,287	100.0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21). 2021년 교육부 탈북학생 통계 현황.

〈표 7-2-18〉 탈북학생 연도별 재학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정규 학교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2005. 4.	247(58.7)	131(31.1)	43(10.2)	-	421
2006. 4.	248(52.3)	166(35.0)	60(12.7)	-	474
2007. 4.	341(49.6)	232(33.8)	114(16.6)	-	687
2008. 4.	495(51.2)	288(29.8)	183(19.0)	-	966
2009. 4.	562(49.2)	305(26.7)	276(24.1)	-	1,143
2010. 4.	773(54.5)	297(21.0)	347(24.5)	-	1,417
2011. 4.	1,020(60.7)	288(17.1)	373(22.2)	-	1,681
2012. 4.	1,204(60.4)	351(17.6)	437(21.9)	-	1,992
2013. 4.	1,159(57.3)	478(23.6)	385(19.0)	-	2,022
2014. 4.	1,128(51.7)	684(31.3)	371(17.0)	-	2,183
2015. 4.	1,224(49.5)	824(33.3)	427(17.2)	-	2,475
2016. 4.	1,143(45.4)	773(30.7)	601(23.9)	-	2,517
2017. 4.	1,027(40.5)	726(28.6)	785(30.9)	-	2,538
2018. 4.	932(36.7)	682(26.9)	751(29.6)	173(6.8)	2,538
2019. 4.	877(34.6)	738(29.2)	752(29.7)	164(6.5)	2,531
2020. 4.	741(30.4)	782(32.1)	738(30.3)	176(7.2)	2,437
2021. 4.	654(28.6)	740(32.4)	739(32.3)	154(6.7)	2,287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21). 2021년 교육부 탈북학생 통계 현황.

나. 탈북학생 배경·특성 이해

탈북학생들이 북한이나 제3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과정은 많은 위험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은둔 생활을 하다가 신분이 노출되어 중국의 공안에 잡히거나 심지어는 북한으로 송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안한 생활을 겪은 경우 남한 입국 후에도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기도 한다. 일부 탈북 학생은 탈북 과정에서 가족을 잃거나 북한에 남겨두고 온 경험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또한 부모와 장기간 떨어져 생활하다가 재결합한 경우 부모에게 친근함보다 불편함을 느끼며, 간혹 부모가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린 경우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심하게 겪기도 한다. 중국에서 출생한 학생들의 경우 한국어 구사능력이 미흡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탈북학생마다 북한에서의 교육 경험, 탈북과정에서의 교육 공백이나 심리적 상처, 복잡한 가정환경 등에 따라 개인적인 어려움이 다양하며 따라서 학습 수준이나 적응 양상도 천차만별이다. 이는 모든 탈북학생에게 적용되는 ‘일관된 특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탈북학생별 맞춤형 교육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탈북학생의 특성을 규정할 수는 없지만, 남북한 학교 교육의 차이, 탈북 학생임을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 부모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 등에 의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다. 탈북학생 교육의 목적 및 지원 체계

탈북학생 교육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통합된 일원으로 적응·성장시키고 통일 미래의 맞춤형 인재로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탈북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온 입국 초기 단계부터 지역 사회 정착에 이르는 정착기 단계까지를 포괄하여 통합적인 교육을 통해 이들이 한국 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하고 한국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탈북학생의 학교 및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입국 초기 교육’, ‘전환기 교육’, ‘정착기 교육’ 순으로 교육경로를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교육지원을 한다. 정규 학교의 교육을 기본 토대로 하는 가운데 대안교육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탈북학생이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및 통일부는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각종 교육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통일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금년에 정부합동 제3차(2021~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기본 계획(‘21. 5.)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한국교육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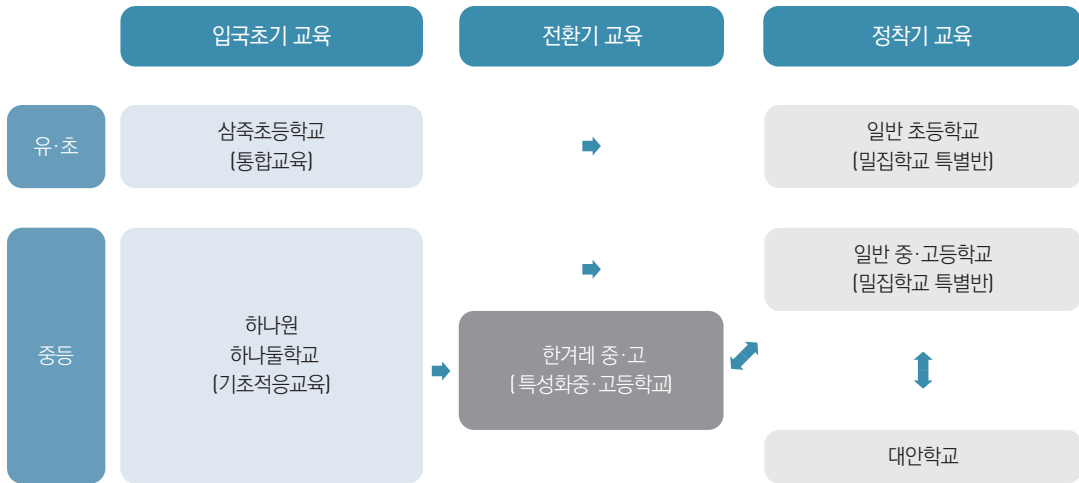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와 함께 「탈북학생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지역 단위의 유기적 연계를 토대로 학교 내 탈북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지역 기관과 연계하여 ‘학교 밖’ 탈북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7-2-8] 탈북학생 단계별 교육지원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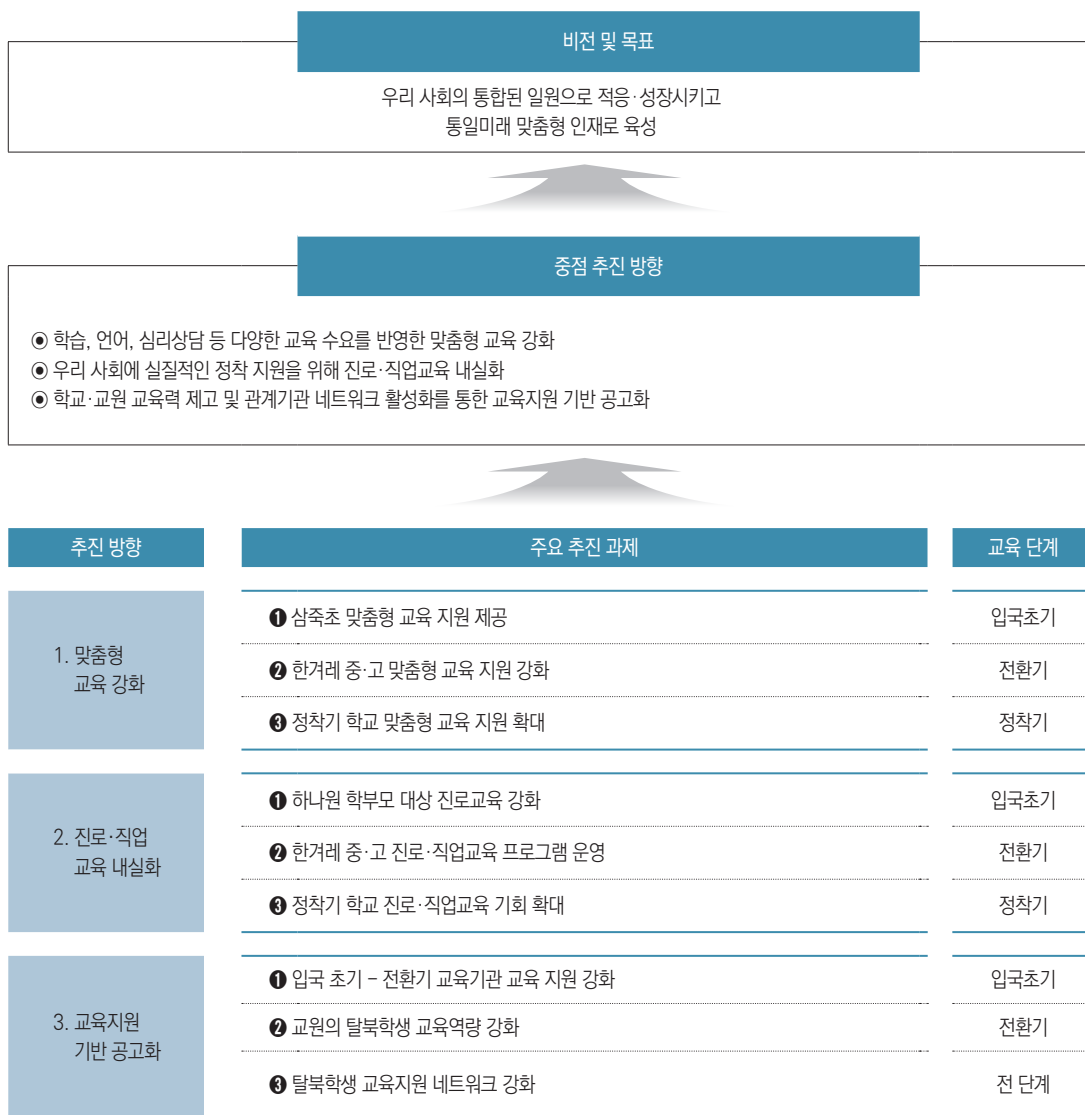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21).

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현황

2021년 교육부에서 실시한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은 ① 맞춤형 교육 강화, ②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③ 교육지원 기반 공고화의 총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별 지원 개요는 다음과 같다.



[그림 7-2-9] 2020년 교육부 탈북학생 교육지원 목표 및 중점 추진 방향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21).

1)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영역은 하나원(하나둘학교)에서 시작하여 정규학교에 이르는 교육 경로별 적응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세부 사업으로 첫째, 삼죽초 맞춤형 교육 지원 제공(입국 초기), 둘째, 한겨레중·고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전환기), 셋째,

정착기 학교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사업을 실시하였다.

각 사업별 개요를 살펴보면 첫째, 삼죽초 맞춤형 교육 사업은 입국 초기 하나원에서 생활하며 삼죽초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탈북학생들에게 심리 상담을 실시하고, 특별학급을 운영하여 학업과 사회적응을 지원한다. 즉, 제3국에서의 은신, 부모와의 격리, 기타 탈북과정의 경험 등으로 인해 심리·정서적으로 불안한 탈북학생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삼죽초 재학 탈북학생의 학습, 체험활동 등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삼죽초등학교의 탈북학생들은 오전에는 일반학급에서 한국 학생들과 통합교육을 받고 오후에는 특별학급에서 맞춤형 교육을 받으면서 생활한다. 이와 함께 삼죽초에서는 중국 등 제3국 출생 학생들을 위해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한국어 강사를 채용하여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전환기 맞춤형 교육’ 사업은 한겨레 중·고와 정착기 일반 학교간의 협력사업 실시, 한국어 교육 강화를 위해 이중언어 강사 및 전문심리상담사 배치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먼저 협력학교 운영 사업에서는 한겨레 중·고등학교와 일반 중·고등학교가 참여하는 협력학교 운영을 통해 한겨레 중·고등학교 학생의 정착기 정규학교의 통합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중국배경 탈북학생의 한겨레 중·고등학교 입학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어 구사능력이 낮은 제3국 배경 학생이 원만하게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학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강사가 배치되었고, 입국초기 교육 기관에서의 심리상담 결과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사가 배치되었다.

‘정착기 학교 맞춤형 교육’ 사업에서는 정규학교를 중심으로 탈북학생이 정착지 학교에서 원만하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우선 정착기 초기에 탈북학생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리상담 지원 사업이 실시되었다. 또한 탈북학생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교사(담임, 교과)의 실질적인 맞춤형 교육지원인 ‘탈북학생 맞춤형 1:1 멘토링’과 2년 이상 탈북학생의 생활영역 전반에 대한 멘토링을 지속하는 ‘성장 멘토링’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탈북학생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학습, 문화체험 등의 다양한 활동이 실시되었다. 또한 탈북학생 잠재역량강화 프로그램(HOPE)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잠재능력을 갖추고 있는 탈북학생을 선발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와의 1:1 결연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였다. 즉, 인문, 과학, 수학,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의 잠재능력을 갖춘 탈북학생을 선발한 후 각 분야의 전문가(대학교수, 연극배우, 화가 등)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지도를 실시하는 등 학생의 잠재능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였다.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해 탈북학생 밀집지역의 초·중학교에서 탈북학생의 학습 부진을 보충하고



사회문화 적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탈북학생 밀집학교 특별반(인천, 경기)’을 운영하였다. 탈북학생 밀집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학습, 진로, 상담 등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토요거점 방과후 학교(서울)’를 운영하였다. 또한 ‘제3국 출생 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이중언어 강사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지원 등은 다문화학생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학생 및 학부모의 상호 교류를 통한 가정·학교·사회의 상호이해·협력 강화를 위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남북한 상호이해 교육’ 사업도 실시하였다.

2) 탈북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탈북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에서는 탈북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원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둘째, 한겨레중·고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셋째, 정착기 학교 진로·직업교육 사업을 추진하였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예비교육기관인 하나원 진로교육은 입국초기 하나원 재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교육을 실시하였다. 즉, 남북한 학교제도 비교, 취학, 전학, 편입학 관련 행정 절차, 한국 학교에서 학부모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학부모의 학교교육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하나원 퇴소 후 자녀의 학교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정착기 학교 적응을 지원하였다. 둘째, 한겨레중·고등학교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전환기 교육 단계인 한겨레 중·고등학교의 고교 진학 및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직업 교육과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즉, 중장비, 바리스타, 피부미용 등의 다양한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진로설정을 지원하였다. 셋째, 정착기 학교 진로·직업교육에서는 정착기 단계 학생의 진로·직업 캠프, 찾아가는 진로상담단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였다. 먼저 정착기 학교 진로·직업교육 캠프 운영에서는 정책연구학교, 교육연구회, 지역 하나센터 등과 연계하여 탈북학생의 희망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 직업교육 캠프를 실시하였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존 대면방식으로 실시되던 행사를 유튜브 등 실시간 비대면(온라인) 소통을 기반으로 ‘선배와의 토크콘서트’ 등을 진행하여 취업 준비 등 경험 공유를 통하여 학생의 흥미와 소질을 찾고, 적성에 기반을 둔 체계적인 진로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탈북학생 진로·진학 지도 경험이 부족한 일반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탈북학생 상담 전문가로 꾸려진 ‘찾아가는 진로·진학상담단’을 운영하였다. 마지막으로 탈북학생의 일반학교 적응을 돕기 위하여 북한에서 교사 경력자를 대상으로 선발된 통일전담교육사를 탈북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학교(5명 이상) 또는 시·도교육청 단위에 배치(21. 22명)하여 학생 상담 및 ‘정착기 학교 학부모 대상 자녀 진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도교사와 학부모 간 상호 이해도 제고 및 소통을 강화하였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3) 탈북학생 교육 지원 기반 공고화

‘탈북학생 교육지원 기반 공고화’ 영역에서는 탈북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첫째, 입국초기 - 전환기 교육 기관 교육지원 강화, 둘째, 교원의 탈북학생 교육역량 강화, 셋째, 탈북학생 교육지원 네트워크 강화 사업이 실시되었다. 먼저 ‘탈북학생 교육지원 기반 공고화’ 영역의 첫 번째 사업으로 입국초기 교육 기관인 하나둘학교 재학 학생의 중등학교 취·편입학을 원활하게 하는데 필요한 학력심의를 하나원 퇴소 전에 실시하였다. 또한, 하나원 내 예비학교인 하나둘학교에 중등교사(국어, 수학, 사회, 영어, 역사, 과학, 중국어 등 9명)와 초등교사(1명), 유치원 교사(1명)를 파견(총 11명, '21년)하여 교과 학습 지도 및 진로진학 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실질적인 정착기 학교 적응 준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하나둘학교 파견교사의 직무 전문성 제고와 정착기 학교 연계지도 강화를 위해 정례 연수 및 사례 공유 협의회를 운영. 또한, 한겨레 중·고 협의회 운영으로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등 연계·협력을 강화하였다.

둘째, 교원의 탈북학생 교육역량 강화 사업에서는 맞춤형 멘토링 연수와 원격 연수 지원, 탈북학생 밀집학교 워크숍, 우수사례 보급을 추진하였다. 멘토링 담당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멘토링 연수’를 통해 탈북학생 멘토링 역량 제고를 지원하였고,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의 실제(15차시)’ 원격 연수 콘텐츠를 개발·제공('20. 1.~)하여 일반 교원을 대상으로 원격 연수를 제공하였다. 5인 이상의 탈북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를 밀집학교로 지정하여 관리자, 담당 교원 대상 워크숍을 통해 탈북학생의 이해 및 관리자·교사 역할의 인식 제고, 맞춤형 교육지원 사례 공유, 입국초기교육기관 탐방 등 탈북학생 이해 및 지도역량을 제고하였다. 또한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한 사례 발굴 및 사례집을 발간·보급하고 있다.

셋째, 탈북학생 교육지원 네트워크 강화 사업에서는 유관 기관 간의 협력 강화 및 정보 공유를 통한 탈북학생 교육의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교육자료 개발, 교원연수, 관계기관 협력 및 현장지원 등 탈북학생 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와 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정착사무소) 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상시 협의체를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탈북학생 교육지원 정책의 착근을 위해 필요한 체계적 협의를 추진하였다.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서는 탈북학생 교육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였다. 더불어 심리·신체적 건강, 가정배경, 학교 부적응 등 긴급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탈북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안팎의 종합적인 학생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돋움지원팀'을 구성·운영('21.~)하였다. 사례 접수는 학교, 교육청, 탈북 청소년교육지원센터 콜 센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하여 적합성 검토를 거친 후 긴급 교육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례마다 지역별, 분야별 전문가(학교, 유관기관, 탈북민 네트워크 등)로 지원팀을 구성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전문기관(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탈북학생의 남한사회 적응 기반을 확대하는 동시에 통일 후 교육통합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하는 등 탈북학생 교육지원 기반의 공고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입체적으로 추진하였다.

 **교육부 기회보장과** 044-203-6522

제
1
부제
2
부제
3
부제
4
부제
5
부제
6
부제
7
부제
8
부제
9
부제
10
부부
록

제8부 요약

제8부는 '청소년의 노동'에 대해 다룬다. 청소년의 고용 및 취업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의 고용 및 진로 관련 정책의 내용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참가율(2020년 기준)은 28.2%로, 코로나19 확산 후 다른 국가보다 감소폭이 적지만 여전히 OECD 국가 평균(45.9%)보다 낮으며 그리스, 이탈리아 등과 함께 최하위 국가군에 속한다. 이처럼 청소년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은 고등학교 졸업자 중 70%에 달하는 높은 대학진학률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 청소년의 실업률(2020년 기준)은 10.5%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4.5%p 낮은 편이지만,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낮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고용률은 25.2%이며, 전체 취업자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취업자 비중은 5.0%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9.2%에서 2020년 11.9%로 줄어들고 있다. 한편 2020년 15~24세의 졸업자 및 중퇴자 중에서 임금근로자로 취업 중인 청(소)년 취업자가 첫 취업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7.2개월이 소요되어 학교-노동시장 이행기간이 다소 짧아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근로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12년 11월 「청소년 근로환경개선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2018년부터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처우를 당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해 현장에 근로현장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을 수도권과 경상권, 전라권에서 실시하였고, 2019년에는 충청권까지 확대하였다. 2022년도에는 사업 방식을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보조를 통한 지원으로 변경하여, 전국 시·도로 지역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2020년 1월, 전국 25개 지역 2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권익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총 229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였다. 위반사례로는 근로계약 미작성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감독관이 업주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하였다.

정부는 청소년근로 보호대책 외에 청소년의 창업지원과 고용촉진을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창업지원을 위해 '청년 전용 창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 '청소년 창업 경진대회' 프로그램과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년 창업지원사업 규모는 2019년 대비 29.8% 증가한 1조 4,517억 원으로 창업지원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8부 청소년 노동

제1장 청소년 고용 상황 및 노동조건

제2장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제3장 청소년의 고용·노동정책

제1장 청소년 고용 상황 및 노동조건

1.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생산가능인구 규모는 2014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인 에코붐 세대가 생산가능 연령대에 진입한 2010년대 전반기를 제외하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전체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청소년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했다.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증가는 주로 고령인구 증대에서 기인하며 65세 미만 생산가능인구 규모는 2017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다.

2020년 연평균 청소년 생산가능인구는 532만 9천 명으로 2019년보다 21만 4천 명 감소하였다. 2020년의 감소율은 2018년과 같은 수준인 -3.8%다.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역시 2019년 164만 1천 명에서 14만 1천 명 감소한 150만 1천 명이다.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후 다른 연령대에서 나타난 변화가 청소년에게서도 발견된다.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9년 29.6%에서 2020년 28.2%로 크게 하락했다.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의 추이를 나타낸 <표 8-1-1>에서 보듯이 2020년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대보다 낮지만 2010년대 초반보다 높은 수준이다. 2006년까지 30%를 상회하였던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은 2007년부터 30%를 하회하게 되었으며 2009년에 25.1%로 저점을 찍고 회복했으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다시 하락했다. 여자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과 남자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각각 1.4%p 하락하였으므로 격차는 유지되었다.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별 격차는 2018년에 9.3%p까지 커졌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6.9%p로 줄었다.

〈표 8-1-1〉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추이

(단위 : 천 명, %)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생산가능인구 ¹⁾	6,949	6,164	5,953	6,053	6,113	6,165	6,180	6,163	6,110	5,946	5,717	5,543	5,329
경제활동인구 ¹⁾	2,295	2,074	1,503	1,544	1,617	1,628	1,758	1,841	1,843	1,801	1,672	1,641	1,501
경제활동참가율 ²⁾	33.0	33.7	25.2	25.5	26.5	26.4	28.5	29.9	30.2	30.3	29.3	29.6	28.2
남자	28.5	27.3	20.0	21.0	21.9	22.2	24.4	25.7	25.8	26.1	24.4	26.0	24.6
여자	37.0	39.2	30.1	29.8	30.7	30.3	32.3	33.8	34.3	34.3	33.7	32.9	31.5

주 : 1) 15~24세 이상 인구 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은 제외.

2)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 실업자) / 15세 이상 청소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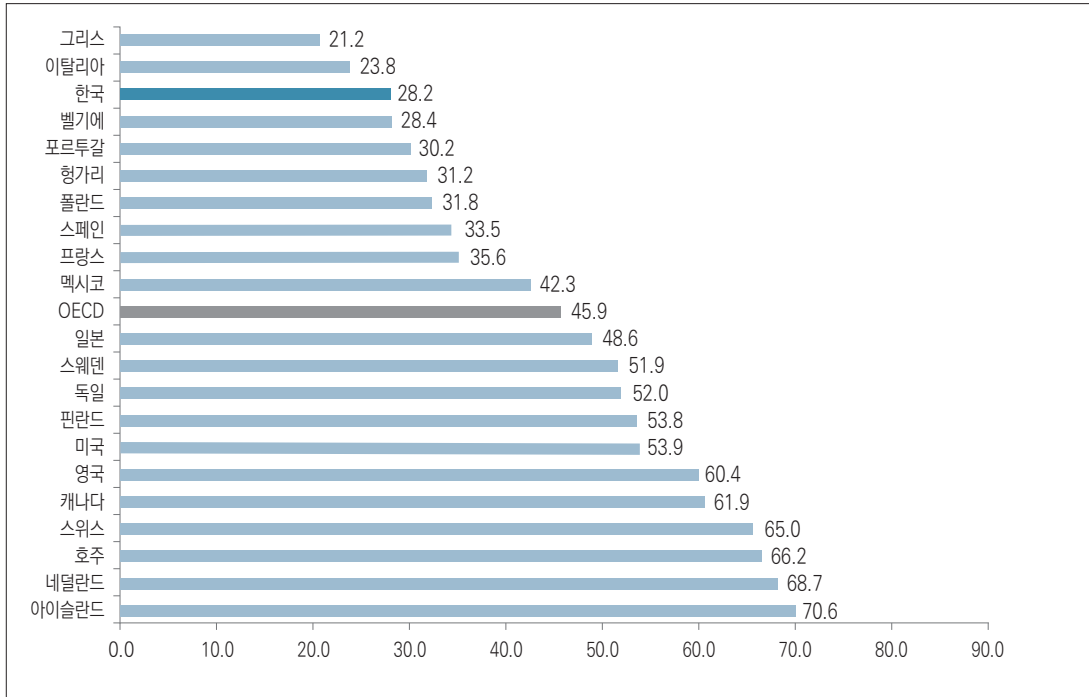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년도.

OECD 회원 국가 중 한국의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은 2020년에도 여전히 하위권이다. 2020년에 OECD 평균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2.2%p 하락하였으며 한국과 차이는 17.8%p로 약간 좁아졌다.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한국보다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국가는 그리스와 이탈리아뿐이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권의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이 5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고, 청소년의 70.6%가 경제활동을 하는 아이슬란드와 68.7%를 기록한 네덜란드는 OECD 회원 국가 중 순위가 가장 높다. 이와 같이 낮은 한국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0% 전후 수준의 높은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및 낮은 직업교육훈련 등록률¹⁾과 관계가 있다.

1) OECD 국가의 평균 직업교육훈련 등록률은 15~19세 36.7%, 20~24세 61.6%이며 한국은 각각 17.5%와 22.3% 수준이다.(OECD (2020), 「Education at a Glance 2020: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그림 8-1-1] 2020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국제 비교

(단위 : %)



자료 : OECD Data(2021).

국가별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상이하지만 주로 한국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낮은 직업교육훈련 등록률은 <표 8-1-2>의 연령 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에서 15~19세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0%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OECD 회원 국가 평균 직업교육훈련 등록자의 약 3분의 2는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다. 그러나 한국의 낮은 15~19세 경제활동참가율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직업교육훈련이 잘 작동하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2020년에 15~19세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9년보다 1.1%p 하락한 7.2%이다.

20~24세 청소년 중 일부는 고등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나오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은 50% 전후 수준이다. 20~24세 여자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은 이유는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 남자 청소년이 학업 중 병역의무 기간을 거치므로 졸업이 더 늦다는 데 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OECD 회원 국가와 달리 한국은 여자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다. 한국보다 남자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더 낮은 국가는 그리스뿐이지만 여자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 순위는 프랑스 바로 아래다. OECD 평균과 비교하여 한국의 남자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4.9%p 낮고 여자 청소년은 10.8%p 낮다. 이러한 격차는 2019년보다는 줄었다.

〈표 8-1-2〉 연령 계층별·성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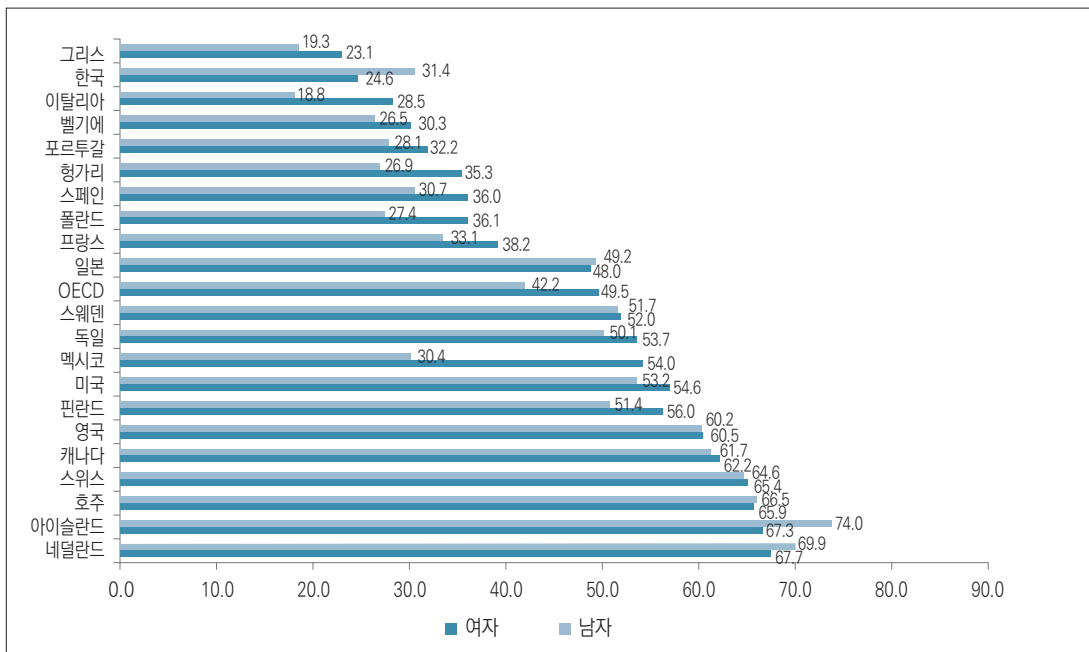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5~24세	33.0	33.7	25.2	25.5	26.5	26.4	28.5	29.9	30.2	30.3	29.3	29.6	28.2
남자	28.5	27.3	20.0	21.0	21.9	22.2	24.4	25.7	25.8	26.1	24.4	26.0	24.6
여자	37.0	39.2	30.1	29.8	30.7	30.3	32.3	33.8	34.3	34.3	33.7	32.9	31.5
15~19세	12.0	9.1	7.0	7.6	7.7	7.7	8.5	8.8	8.8	9.2	8.2	8.3	7.2
남자	11.6	8.1	5.5	6.3	6.3	6.6	7.5	7.7	8.1	8.5	7.2	7.6	6.5
여자	12.5	10.2	8.5	9.0	9.1	8.7	9.4	9.9	9.6	10.1	9.2	9.0	8.0
20~24세	57.9	57.3	48.9	47.9	49.0	47.6	49.9	51.6	51.6	50.6	48.9	48.7	46.0
남자	53.1	50.1	42.8	42.3	43.4	42.2	44.4	46.0	45.8	45.1	42.6	44.6	42.0
여자	61.2	62.6	53.5	52.3	53.5	52.2	54.5	56.3	56.6	55.3	54.1	52.1	49.3

주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 실업자) / 15세 이상 청소년 × 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년도.

[그림 8-1-2] 2020년 청소년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국제 비교

(단위 : %)



자료 : OECD Data(2021).

2.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

2020년에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규모와 생산가능인구 규모가 모두 감소하였고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도 감소하였다.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는 2014년부터 계속 감소하였으며 2017년부터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함께 감소하였다.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규 교육기관 통학자(재학)의 감소가 가장 두드러진다.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는 2019년보다 7만 3천 명 감소한 382만 8천 명인데 재학 인구의 감소폭이 6만 8천 명이다. 입학학원에 통학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진학을 준비하는 비경제활동인구도 2019년보다 1만 2천 명 감소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취업을 위해 학원·기관에 통학하는 등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도 2019년보다 4천 명 감소한 22만 8천 명이다. 취업준비생은 15~24세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재학 인구를 제외하고 6.0%로 비중이 가장 크다. 이들 중 다수는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한 잠재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다른 사유 없이 쉬었다고 응답한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의 규모는 오히려 2019년보다 1만 7천 명 늘어난 21만 7천 명이다. 육아 또는 가사 사유의 비경제활동인구 규모는 1만 명 감소하였다. 청소년 생산가능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모두 감소하는 가운데 경제활동인구의 감소폭이 더 크므로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했다. 다른 사유의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동안 '쉬었음' 인구만은 늘었다는 점에서 팬데믹이 선포된 2020년에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가 다른 해보다 더 어려웠다고 추측할 수 있다.

〈표 8-1-3〉 청소년(15~24세)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별 현황 추이

(단위: 천 명, %)

연도	비경제 활동인구		육아 및 가사		재학		입시 및 진학		취업 준비생		쉬었음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2005	4,090	100.0	93	2.3	3,307	80.9	190	4.7	173	4.2	190	4.6
2010	4,451	100.0	78	1.8	3,726	83.7	211	4.7	194	4.4	152	3.4
2011	4,508	100.0	83	1.8	3,754	83.3	219	4.9	183	4.1	183	4.1
2012	4,496	100.0	79	1.8	3,770	83.8	193	4.3	177	3.9	184	4.1
2013	4,538	100.0	72	1.6	3,827	84.3	168	3.7	192	4.2	186	4.1

연도	비경제 활동인구		육아 및 가사		재학		입시 및 진학		취업 준비생		쉬었음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2014	4,422	100.0	67	1.5	3,735	84.5	162	3.7	192	4.4	169	3.8
2015	4,322	100.0	68	1.6	3,560	82.4	168	3.9	225	5.2	188	4.4
2016	4,268	100.0	67	1.6	3,532	82.8	191	4.5	213	5.0	159	3.7
2017	4,145	100.0	57	1.4	3,414	82.4	160	3.9	218	5.3	184	4.4
2018	4,044	100.0	49	1.2	3,321	82.1	162	4.0	217	5.4	188	4.6
2019	3,902	100.0	49	1.3	3,172	81.3	153	3.9	232	5.9	200	5.1
2020	3,828	100.0	39	1.0	3,104	81.1	141	3.7	228	6.0	217	5.7

- 주 : 1) 육아 및 가사 : 육아, 가사 포함.
 2) 재학 : 정규교육기관 통학.
 3) 입시 및 진학 : 입시학원 통학, 진학준비 포함.
 4) 취업준비생 :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통학, 취업준비 포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년도.

3. 청소년의 취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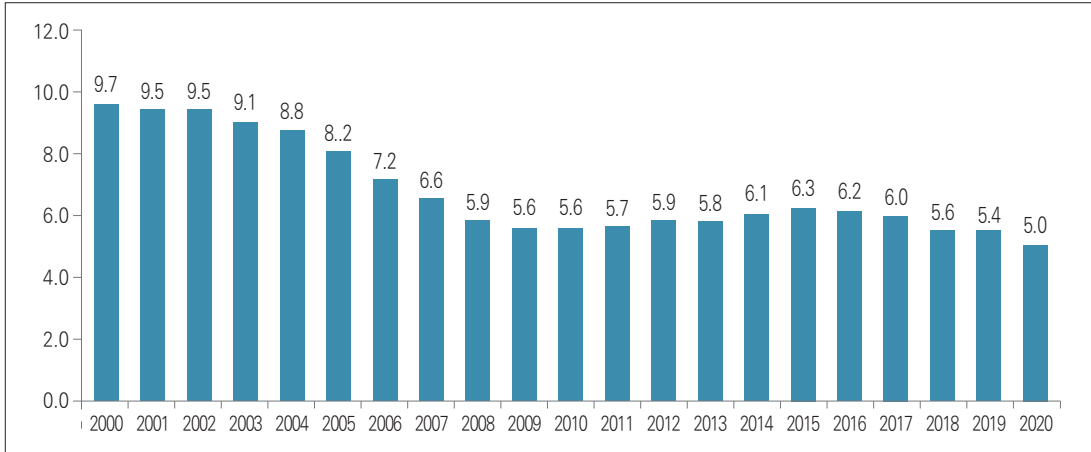
청소년 생산가능인구 규모의 축소가 지속되므로 취업자 수 감소 없이도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곤 했으나 2020년에는 경제활동참가율마저 하락했다. 2020년에 15~24세 청소년 취업자 수는 134만 3천 명으로 2019년 보다 12만 7천 명 감소했다. 청소년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중으로 계산되는 고용률은 25.2%이며 이는 2019년 26.5%보다 1.3%p 하락한 수치이다. 전체 취업자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5.4%에서 2020년 5.0%로 0.4%p 줄었다. 청소년 인구의 감소에서 비롯한 인구효과와 더불어 감염병 확산으로 위축된 노동시장에서 청소년 취업자의 감소의 영향이 증첩되어 나타났다.

15세 이상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9.2%에서 2020년 11.9%로 계속 줄고 있다. 2000년에 취업자 중 청소년 비중은 9.7%였으나 2009년에 5.6%로 하락하였고 2020년에는 5.0%로 역대 최저치다. 2009년 이후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청소년 비중이 감소하는 동안에도 취업자 중 비중이 유지된 이유는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상승폭이 전체 생산

가능인구의 그것보다 컸던 까닭이다. 그러나 팬데믹은 청소년이 노동시장에 더 참여하기 어려운 환경을 구성했다.

[그림 8-1-3] 취업자 중 청소년 비중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년도.

연령 계층별·성별 청소년 취업자 추이를 나타낸 <표 8-1-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5~24세 전체 청소년 취업자 중에서 15~19세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8.9%에서 2010년에 15.2%로, 2020년에는 12.1%로 하락했다. <표 8-1-2>의 연령 계층별·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와 비교하면 최근 출생자의 인구 규모가 더 크게 축소된 결과로 해석된다. 20~24세 취업자의 비중은 반대로 늘었다. 이 연령대의 취업자 중 대략 여섯 명이 여자이며, 전체 청소년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에 여자는 88.6%, 남자는 87.1%로 여자가 더 높다. 남자 청소년의 병역의무가 주된 사유이다.

<표 8-1-4> 연령 계층별·성별 청소년 취업자 추이

(단위: 천 명,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천 명	구성비	천 명	구성비	천 명	구성비	천 명	구성비	천 명	구성비	천 명	구성비	천 명	구성비	천 명	구성비	천 명	구성비
15~24세	2,046	100.0	1,864	100.0	1,356	100.0	1,647	100.0	1,646	100.0	1,615	100.0	1,496	100.0	1,470	100.0	1,343	100.0
남자	796	38.9	693	37.2	508	37.4	684	41.5	680	41.3	665	41.2	595	39.8	616	41.9	556	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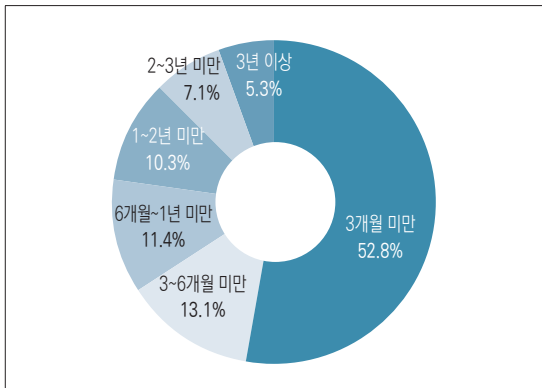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여자	1,251	61.1	1,171	62.8	849	62.6	963	58.5	965	58.7	950	58.8	901	60.2	854	58.1	787	58.6
15~19세	387	100.0	241	100.0	206	100.0	245	100.0	244	100.0	247	100.0	205	100.0	198	100.0	162	100.0
남자	188	48.4	110	45.4	82	39.9	110	44.8	113	46.3	114	46.3	91	44.3	91	45.9	72	44.5
여자	200	51.6	132	54.6	124	60.1	135	55.2	131	53.7	132	53.7	114	55.7	107	54.1	90	55.5
20~24세	1,659	100.0	1,623	100.0	1,150	100.0	1,402	100.0	1,402	100.0	1,368	100.0	1,292	100.0	1,272	100.0	1,181	100.0
남자	608	36.6	583	36.0	425	37.0	574	40.9	567	40.5	551	40.3	505	39.1	525	41.3	484	41.0
여자	1,051	63.4	1,039	64.0	725	63.0	828	59.1	834	59.5	817	59.7	787	60.9	747	58.7	697	59.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년도.

[그림 8-1-4] 청소년 취업자의 첫 취업 소요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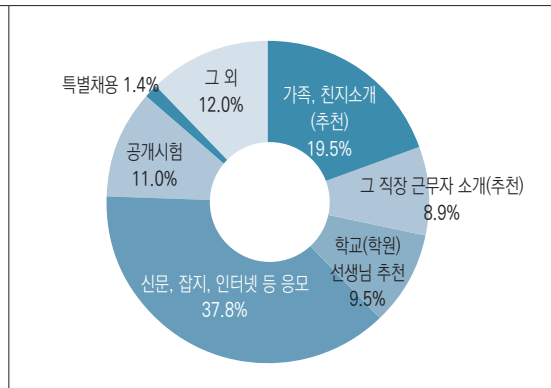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2021년 5월.

[그림 8-1-5] 청소년 취업자의 취업경로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2021년 5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2021년 5월 청년층 부가조사에서 조사 시점 기준 15~24세 청소년이 최종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하고 임금근로자로 취업한 경우에 52.8%는 첫 일자리에 취업하기까지 소요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 평균적인 첫 취업 소요기간은 7.2개월이다. 짧은 구직 기간은 노동시장의 매칭이 원활함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임시적인 일자리로 입직하였음을 신호하기도 한다. 첫 취업 소요기간이 3~6개월 미만인 청소년의 비중은 13.1%, 6개월~1년 미만 11.4%, 1~2년 미만 10.3%, 2~3년 미만 7.1%, 3년 이상이 5.3%이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청소년 취업자의 취업 경로는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한 응모이며

37.8%를 차지한다. 가족과 친지나 취업한 직장의 근무자, 학교나 학원의 선생님 등의 추천을 ‘연고 취업’ 범주로 묶었을 때 비중은 37.9%이며 각각의 비중은 19.5%, 8.9%, 9.5%이다. 높은 연고취업 비중은 청소년 취업자의 짧은 취업 소요 기간을 설명한다.

4. 청소년의 실업 현황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은 2014년부터 계속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 청소년 실업률은 10.5%로 2019년보다 0.1%p 상승하였으나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실업률 4.0%와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높다. 일자리 경험이 없어 숙련이 수준이 낮은 청소년이 노동시장 참여를 결정하여도 취업은 쉽지 않다. 연령 범위를 확대한 15~29세의 2020년 실업률 9.0%와 비교하면 저연령층인 청소년의 실업 확률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8-1-5〉 연도별 청소년 실업률 추이

(단위: 천 명, %)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실업자	249	211	146	149	146	152	176	194	197	186	176	171	158
남자	124	96	64	74	63	65	82	87	84	84	74	77	69
여자	125	115	83	75	82	87	94	107	113	102	102	94	88
실업률	10.8	10	9.7	9.7	9	9	10	10.5	10.7	10.3	10.5	10.4	10.5
남자	13.5	12	11.1	12	9.7	10	11.2	11.3	11	11.2	11.1	11.1	11.1
여자	9.1	9	8.9	8.1	8.5	9	9.2	10	10.5	9.7	10.1	9.9	10.1

주 : 1) 15~24세 이상 인구 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은 제외.

2) 청소년 실업률 = 청소년 실업자 /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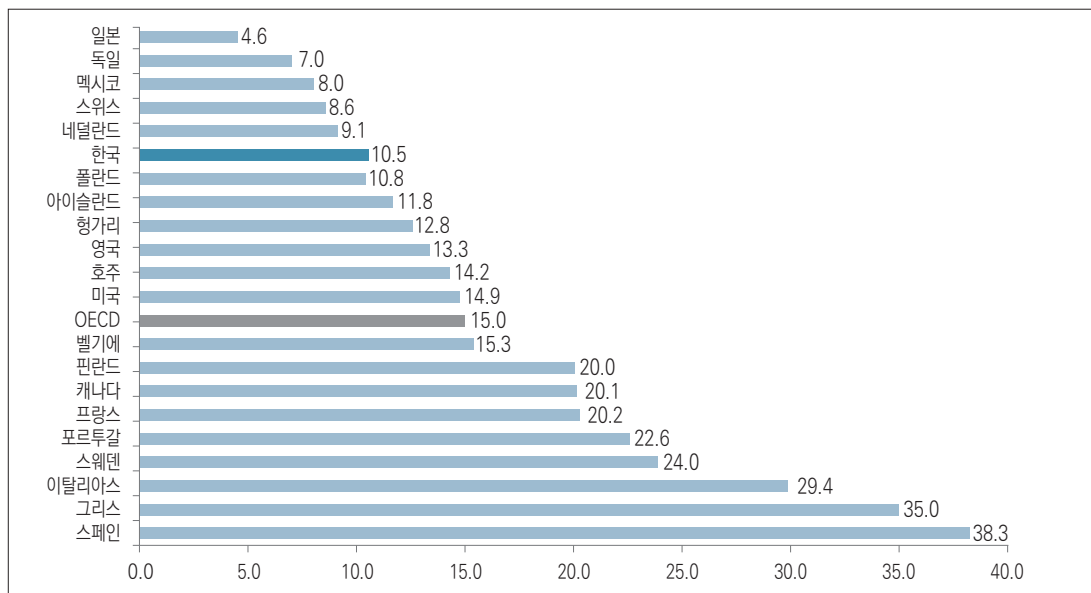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년도.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실업률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인 한국의 청소년 실업률은 OECD 회원 국가 중에서는 높은 편이 아니다. 한국의 청소년 실업률은 2020년의 OECD 평균 청소년 실업률 15.0%보다 약 4.5%p 낮다. 팬데믹으로 OECD 평균 청소년 실업률이 크게 높아진 것과 비교하면 한국은 양호한 수치다.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청소년 실업률은 각각 35.0%와 24.0%로 순위가 역전되었다. 반면 청소년 실업률이 낮은

일본, 독일은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평균을 상회하며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아이슬란드, 네덜란드도 청소년 실업률이 낮은 편이다. 언뜻 보면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 간에 역의 관계가 성립하는 듯하지만 한국은 청소년의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모두 상대적으로 낮다.

한국의 청소년 실업률은 여전히 OECD 회원 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다. 다소 부침은 있으나 2010년 9.7%에서 현재 10%대로 높아졌다. 성별로 구분하면 특히 남자 청소년의 실업률이 여자 청소년의 실업률보다 1%p 이상 높다. 다만 여자 청소년과 남자 청소년의 실업률 차이는 과거보다 작아졌다. 청소년 실업률의 성별 차이는 2000년에 4.4%p, 2005년에는 3.2%p였으나 2010년에는 2.2%p, 2020년에는 1.0%p로 줄었다. 청소년 실업률의 성별 차이가 줄어든 이유는 여자 청소년 실업률의 상승에 있다. 남자 청소년의 실업률은 2020년 11.1%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한국은 남자 청소년의 실업률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지만, OECD 회원 국가 평균적으로 여자 청소년의 실업률이 남자보다 높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의 여자 청소년 실업률이 특히 높고, 그리스의 경우에는 청소년 실업률의 성별 차이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크다.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고 실업률은 높으며 특히 여자 청소년의 실업률이 높다는 사실이 유럽 남부 국가의 청소년 노동시장 특징으로 요약된다.

[그림 8-1-6] 2020년 청소년 실업률 국제 비교



자료 : OECD Data(2021).

〈표 8-1-6〉 연령 계층별·성별 청소년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단위: 천 명,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인구	실업률	인구	실업률	인구	실업률	인구	실업률	인구	실업률	인구	실업률	인구	실업률	인구	실업률	인구	실업률
15~24세	249	10.8	211	10.2	146	9.7	194	10.5	197	10.7	186	10.3	176	10.5	171	10.4	158	10.5
남자	124	13.5	96	12.1	64	11.1	87	11.3	84	11.0	84	11.2	74	11.1	77	11.1	69	11.1
여자	125	9.1	115	8.9	83	8.9	107	10.0	113	10.5	102	9.7	102	10.1	94	9.9	88	10.1
15~19세	66	14.5	34	12.3	28	11.9	29	10.6	27	10.0	23	8.7	21	9.3	19	8.6	16	8.8
남자	34	15.2	16	13.0	15	15.0	13	10.4	14	10.9	12	9.8	11	10.4	11	10.8	9	10.7
여자	32	13.9	18	11.7	13	9.6	16	10.7	13	9.2	11	7.7	10	8.3	8	6.6	7	7.1
20~24세	183	9.9	177	9.8	119	9.4	165	10.5	170	10.8	163	10.6	155	10.7	153	10.7	142	10.7
남자	90	12.9	79	12.0	49	10.3	74	11.5	70	11.0	72	11.5	64	11.2	66	11.2	61	11.1
여자	93	8.1	97	8.6	70	8.8	90	9.8	100	10.7	91	10.0	91	10.4	87	10.4	82	10.5

주 : 1) 15~24세 이상 인구 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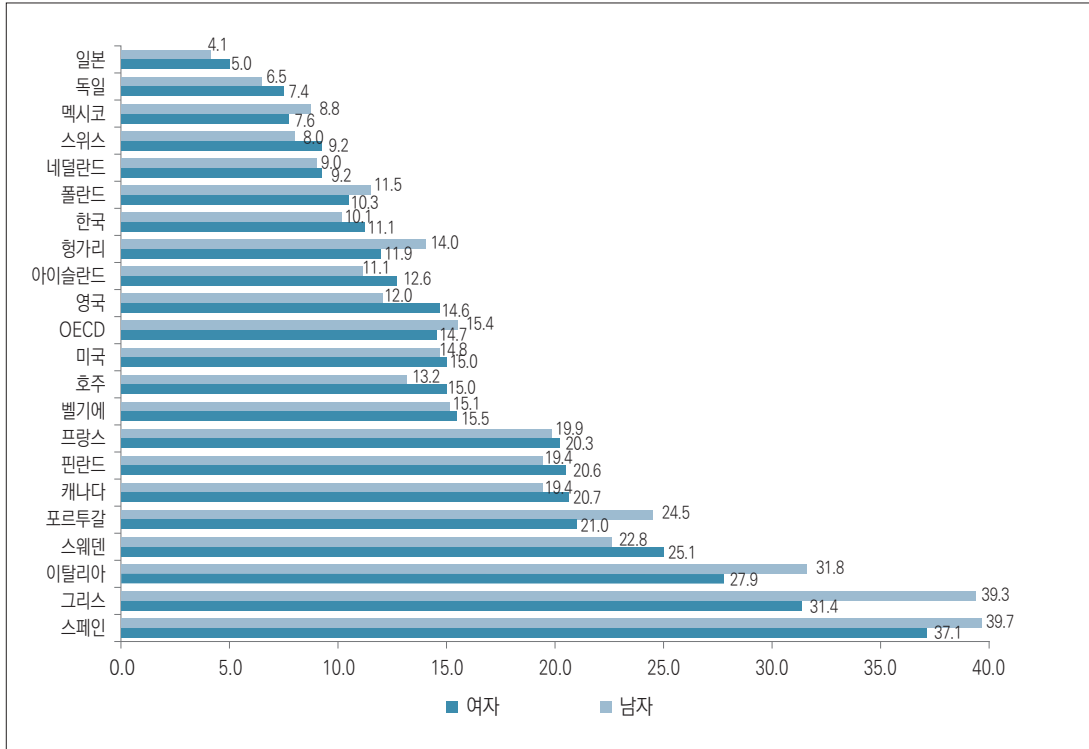
2) 청소년 실업률 = 청소년 실업자 /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 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년도.

연령 계층별 청소년 중 20~2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5~19세보다 네 배 이상 높지만 실업률의 차이는 훨씬 적다. 15~19세 청소년의 실업률은 2010년 약 12% 수준으로 20~24세 청소년 실업률을 크게 상회하였다. 2012년부터 15~19세 청소년의 실업률은 유지되거나 약간 감소한 반면 20~24세 청소년의 실업률은 상승하여 2016년부터 역전하였다. 이는 연령 계층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와 상반된 경향이다. 청소년 실업률의 국제 비교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실업률이 높은 국가 집단의 존재는 한국의 20~24세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경향을 간과하기 어렵게 한다.

[그림 8-1-7] 2020년 청소년의 성별 실업률 국제 비교

(단위 : %)



자료 : OECD Data(2021).

5. 임금 및 노동시간

상용직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15~24세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수준은 상승해 오다가 2020년에 하락하였다. 20~24세 청소년의 정액급여와 초과급여를 합산한 월급여액은 2010년대에 계속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2019년보다 -2.3% 하락한 160만 3천 원이다. 15~19세 청소년의 월급여액은 2019년보다 무려 -13.1% 하락하였다. 2012년과 2014년, 그리고 2015년에도 15~19세 청소년의 평균 월급여액이 감소하였으며 20~24세의 평균 월급여액은 증가하였으나 실질 가치가 상승한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경향은 고용형태 중 높은 단시간 근로자 비중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은 2019년에 전체 근로자 중에서는 8.1%에

불과하지만 15~19세 청소년 중에서는 49.3%, 20~24세 청소년 중에서는 24.0%이다.

20~24세 청소년의 최종 학력에 따른 평균 월급여액은 2020년에 고등학교 졸업자 138만 2천 원, 전문대 졸업자 177만 1천 원, 대학교 이상 졸업자 202만 6천 원 순이다. 최종 학력 수준이 높아질 수록 임금 수준이 높아지는 관계에서 변화는 없으나 격차에서 변화를 보인다. 2010년에 대졸 이상의 평균 월급여액 대비 고졸과 전문대졸의 평균 월급여액 비율은 각각 73.0%와 88.8%였으나 2020년에는 68.2%와 87.4%이다. 2019년까지 대졸 이상 학력자의 임금 수준은 꾸준히 상승하고 고졸과 전문대졸 학력자의 평균 월급여액은 감소한 해가 있었으나, 2020년에는 모든 학력 수준에서 임금수준이 하락했다. 그러나 대졸 이상 학력자에 비해 고졸과 전문대졸 학력자의 임금이 평균적으로 더 크게 감소했다.

〈표 8-1-7〉 청소년 근로자의 연령 계층별 임금수준 추이: 정액 및 초과급여

(단위: 천 원, %)

구분	임금수준		증감률	
	15~19세	20~24세	15~19세	20~24세
2010	677	1,162	9.3	1.4
2011	785	1,255	15.9	8.0
2012	763	1,298	-2.7	3.4
2013	830	1,319	8.7	1.6
2014	797	1,357	-4.0	2.9
2015	773	1,372	-3.1	1.1
2016	850	1,429	10.1	4.2
2017	893	1,448	5.1	1.3
2018	955	1,562	7.0	7.9
2019	987	1,641	3.3	5.1
2020	858	1,603	-13.1	-2.3

주 : 1) 임금수준은 월급여액(정액급여 + 초과급여)을 의미.

2) 고용형태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하고 계산.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각 년도.

〈표 8-1-8〉 20대 청소년 근로자의 학력별 임금수준 추이: 정책 및 초과급여

(단위: 천 원, %)

구분	임금수준			증감률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2010	1,020	1,241	1,398	-0.7	2.1	2.6
2011	1,111	1,355	1,509	8.9	9.2	8.0
2012	1,121	1,429	1,573	0.9	5.4	4.2
2013	1,147	1,463	1,600	2.3	2.4	1.7
2014	1,196	1,503	1,618	4.3	2.7	1.1
2015	1,188	1,510	1,688	-0.7	0.4	4.3
2016	1,247	1,598	1,703	4.9	5.9	0.9
2017	1,276	1,594	1,773	2.3	-0.3	4.1
2018	1,377	1,708	1,898	8.0	7.2	7.0
2019	1,422	1,875	2,053	3.3	9.7	8.2
2020	1,382	1,771	2,026	-2.8	-5.5	-1.3

주: 1) 20~24세 이하 기준.

2) 임금수준은 월급여액(정액급여 + 초과급여)을 의미.

3) 고용형태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하고 계산.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각 년도.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매년 6월을 기준으로 조사하므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의 변화에 유의하여 살펴봐야 한다. 매년 6월은 총 30일이지만 법정 공휴일인 현충일과 평일 및 주말의 구성이 달라지기도 하고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가 있기도 하다. 따라서 사실상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에 변화가 없지만 조사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소 추이가 지속 되었다면 해석의 여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형 근로의 확대이다. 연령 계층별로 15~19세 근로자의 단시간 비중은 2010년 51.6%에서 2019년 49.3%로 감소하였고 20~24세 중에서 비중은 같은 기간에 16.9%에서 24.0%로 늘었다. 따라서 〈표 8-1-9〉의 연령계층별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이 모두 감소하는 추세는 단지 단시간 비중 때문이 아니다. 두 번째는 노동일과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의 변화이다. 청소년의 일자리는 근속기간이 길게 유지된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규범 변화를 비교적 민감하게 드러낸다. 단시간 비중의 증대가 근본 원인이

아니라면 사회적 규범 변화의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경기의 영향이다. 산업별로 청소년은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높는데 경기와 내수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으므로 고용 및 일자리에 영향이 즉각 투영된다.

2020년에 15~24세 청소년 근로자의 전체 근로일수는 2019년보다 1.5일 늘어난 20.7일이고 근로시간은 11.2시간 늘어난 163.6시간이다. 15~19세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동안 20~24세 청소년의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은 늘었다. 이처럼 상반된 경향은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에서 모두 발견되지만 남자 청소년에게서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또한 남자 청소년의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여자 청소년보다 더 길다.

〈표 8-1-9〉 연령 계층별·성별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단위 : 일, 시간)

연도	연령별	전체		남자		여자	
		근로일수	근로시간	근로일수	근로시간	근로일수	근로시간
2010	전체	22.2	187.0	22.1	190.6	22.3	181.1
	15~19세	18.1	135.5	18.5	143.8	17.8	129.8
	20~24세	21.4	174.5	20.9	178.0	21.6	172.6
2011	전체	21.6	180.8	21.7	185.0	21.6	174.0
	15~19세	17.3	131.3	16.9	129.9	17.6	132.2
	20~24세	20.8	168.9	20.6	174.2	20.9	165.8
2012	전체	20.9	173.7	21.0	178.3	20.9	166.4
	15~19세	16.2	112.4	16.2	113.3	16.2	111.7
	20~24세	20.0	159.2	19.9	164.6	20.0	156.4
2013	전체	20.3	167.9	20.3	173.0	20.2	159.9
	15~19세	16.0	113.3	15.9	115.7	16.0	111.5
	20~24세	19.3	152.7	19.1	156.6	19.4	150.4
2014	전체	20.1	165.5	20.2	171.0	20.0	157.1
	15~19세	15.4	105.9	15.8	113.1	15.1	100.1
	20~24세	19.0	149.3	18.9	152.3	19.1	147.4



연도	연령별	전체		남자		여자	
		근로일수	근로시간	근로일수	근로시간	근로일수	근로시간
2015	전체	21.6	173.5	21.7	179.2	21.4	165.0
	15~19세	15.0	102.3	15.4	109.0	14.5	96.4
	20~24세	19.9	152.6	19.8	154.9	20.0	151.2
2016	전체	21.0	171.1	21.0	176.5	20.9	163.1
	15~19세	15.1	105.4	15.8	114.6	14.5	97.0
	20~24세	19.3	151.5	19.1	153.0	19.5	150.4
2017	전체	20.8	168.5	20.9	174.3	20.6	160.1
	15~19세	14.5	103.4	15.1	112.3	14.0	96.4
	20~24세	18.9	146.0	18.8	148.0	18.9	144.6
2018	전체	19.5	156.4	19.6	161.8	19.4	148.6
	15~19세	13.8	94.9	14.5	102.6	13.2	88.7
	20~24세	17.7	136.6	17.8	141.2	17.7	133.5
2019	전체	19.2	152.4	19.2	157.9	19.1	144.6
	15~19세	13.3	89.0	13.5	91.9	13.2	86.4
	20~24세	17.3	130.8	17.4	133.5	17.2	129.0
2020	전체	20.7	163.6	20.7	169.5	20.8	155.0
	15~19세	12.9	81.6	13.1	87.0	12.7	77.5
	20~24세	18.2	135.7	18.5	143.2	18.0	130.7

주 : 1) 근로일수 = 소정실근로일수 + 휴일실근로일수.

2) 근로시간 = 소정실근로시간 + 초과실근로시간.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각년도.

6. 청소년 아르바이트

통계청에서 조사한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2021년 청소년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가 32만 4천 명으로 29.6%를 차지했으며, 2015년부터 비중이 계속 늘다가 2021년 들어 주춤하게 되었다. 경제활동을 하는 청소년 10명 중 약 3명은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으며, 임금근로자 중에서 그 비중은 약간 적은 26.6% 수준이다.

〈표 8-1-10〉 근로시간 형태별 청소년 근로자 수 현황

(단위: 천명, %)

근로시간 형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일제 근로	1,032 (79.1)	1,098 (79.1)	1,087 (77.5)	952 (73.7)	880 (71.2)	795 (69.3)	770 (70.4)
시간제 근로	272 (20.9)	289 (20.9)	316 (22.5)	340 (26.3)	355 (28.8)	352 (30.7)	324 (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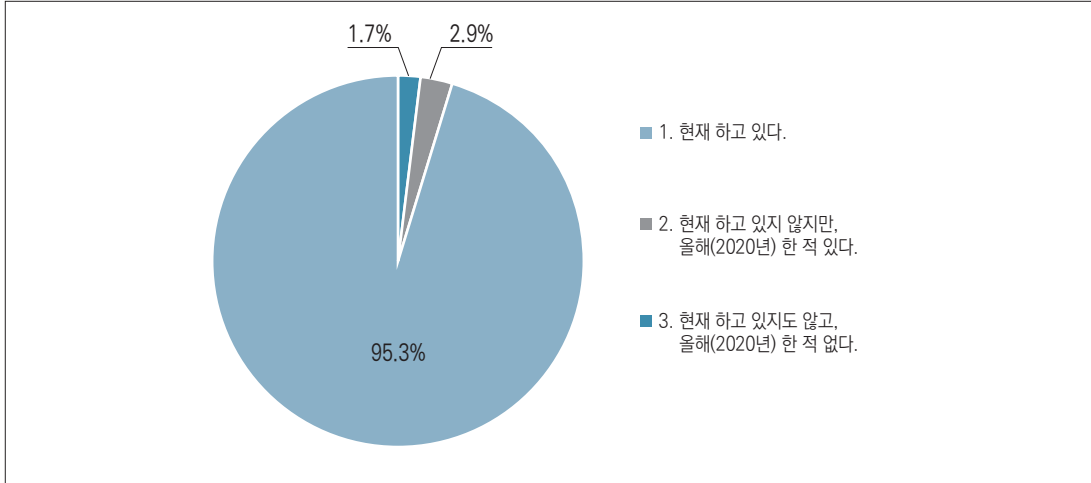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각 년도 5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학업생활과 직업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는 자료는 많지 않다.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는 2년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6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청소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2020년 조사는 14,53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매체, 행위, 약물, 업소, 근로보호 및 사회 인구학적 배경 등 총 6개 영역을 조사하였다.

본 조사에 의하면 2020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는 청소년 비율은 4.7%로 나타났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부모님(보호자)에게 용돈을 받지만, 원하는 것을 하기에는 돈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4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 ‘내가 가족의 생활비를 벌거나 보태야 하지는 않지만, 부모님(보호자)에게 용돈을 받을 형편은 아니라서(13.5%)’, ‘집안 형편이 어려워 내가 가족의 생활비를 벌거나 보태야 하기 때문에(4.4%)’ 등을 포함하면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61.6%를 차지한다. 한편 경제적 이유보다는 ‘부모님(보호자)에게 용돈을 받지만, 스스로 사회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도 전체 응답 청소년의 약 18.4%로 나타났다.

[그림 8-1-8]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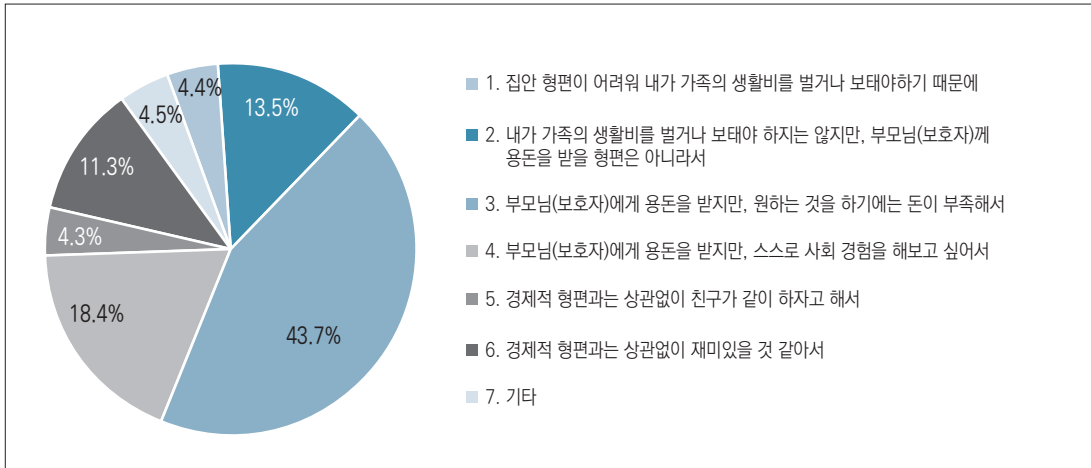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여성가족부(2021).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8-1-9]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2020년)

(단위 : %)



자료 : 여성가족부(2021).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원자료.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표 8-1-11〉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업종 및 근로조건 현황(2020년)

아르바이트 업종	매장관리		서빙, 주방		배달/운전		기타	
	12.7%		53.8%		15.2%		18.4%	
근속기간	1~6일	7일~1개월 미만	1~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26.9%	14.1%	18.5%		13.3%		27.1%	
급여기준	시급	일당	주급		월급		건당	
	70.8%	11.9%	6.7%		9.6%		1.0%	
급여금액 (시급기준)	8,590원 미만	8,590원	8,590원 초과~9,000원 미만		9,000원		9,000원 초과	
	29.9%	22.7%	9.1%		11.1%		27.3%	
근로시간 (하루기준)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4시간 이하	4시간 초과~6시간 이하		6시간 초과~8시간 이하		8시간 초과	
	5.7%	27.6%	33.4%		18.2%		15.2%	

자료 : 여성가족부(2021).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원자료.

청소년이 2020년 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 업종은 ‘음식점, 식당, 레스토랑’이 37.2%로 가장 많았고, ‘배달/운전’이 15.2%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구직은 주로 ‘친구 또는 선후배 소개(48.4%)’로 정보를 획득하고 있었으며, ‘알바천국, 알바몬 등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 또는 앱(30.1%)’, ‘부모님, 알고 지내는 어른, 형제·자매 등의 소개(18.4%)’ 순으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평균 근속기간은 ‘1~6일’ 단기 아르바이트가 26.9%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도 27.1%에 달했다. 이들의 평균 근무일수는 2.9일로 주당 ‘2일 이상~3일 미만(36.4%)’이 가장 많았으며, ‘5일 이상’ 근무하는 청소년은 19.4% 정도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하루 평균 아르바이트 근로시간은 6.0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 기준은 시급으로 받았다는 응답이 약 70.8%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급여 수준은 평균 9,073원이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인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내용, 급여, 근로시간, 휴일 등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를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중 53.1%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한 내용이 모두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29.8%에 그쳤다. 청소년 열 명 중 일곱 명이

시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2020년 법정 최저임금인 8,590원 미만을 받는 청소년이 29.9%에 달하였다. 임금을 못 받거나 약속된 금액보다 적게 받는 부당한 처우를 경험하기도 하고, 초과근무를 요구(14.7%) 받고도 초과한 만큼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5.1%)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다양한 부당대우를 경험하고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각종 부당한 처우에 대해²⁾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행위 및 처우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조사한 결과, 2020년 ‘참고 계속 일했다’는 비중이 74.1%이었고, 그 다음으로 ‘그냥 일을 그만두었다(17.6%)’, ‘나 혼자 묻고 따졌다(9.6%)’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고용지청이나 경찰에 신고하였다’한 경우는 0.6%에 불과했다. 부당한 처우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귀찮고 번거로워서(37.8%)’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일자리를 잃게 될까봐(9.5%)’, ‘신고/항의를 해도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7.5%)’ 등의 응답이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대다수가 경제적인 이유로 아르바이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의 일자리는 고용이 불안정하며 임금이나 복지 등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데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지급되는 경우 등 다양한 부당노동행위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노동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청소년들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부당처우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는 방법은 복수 응답이 가능.

제2장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1. 중학교 신규졸업자의 진로 상황

2021년도 우리나라 중학교 신규 졸업자(2021년 2월 졸업자)는 412,562명이었으며, 대부분(99.7%)이 고등학교 및 기타학교로 진학하였다. 고등학교 진학률이 100%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진학자 중 중졸 취업 인구수는 3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1,088명은 무직 혹은 미상자이다. 한편 진학자 중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한 비율이 74.3%로 2020(73.2%)년에 비해 증가하였고,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자(71.7%)에 비해 여자(76.8%)의 일반계 고교진학률이 높았다.

〈표 8-2-1〉 2021년 중학교 신규 졸업자의 진로 상황

(단위 : 명, %)

구분	졸업자 수		진학자												
			합계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기타	
	계	여자	비율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총계	412,562	198,343	99.7	411,471	197,800	305,843	152,284	65,453	28,594	19,665	9,770	18,485	6,329	2,025	823
국립	1,362	640	99.6	1,356	637	845	404	254	117	70	40	177	74	10	2
공립	342,084	165,213	99.7	341,167	164,750	254,387	127,038	53,362	23,301	16,616	8,358	15,130	5,374	1,672	679
사립	69,116	32,490	99.8	68,948	32,413	50,611	24,842	11,837	5,176	2,979	1,372	3,178	881	343	142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21). 교육통계서비스 제공.

2. 고등학교 신규졸업자의 진로 상황

2021년도 우리나라 비직업계고등학교 졸업자 수는 358,523명이었으며, 이 중 취업자는 5,776명으로 취업률은 8.1%이다.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자 수는 78,994명이었고 이 중 취업자는 22,583명, 취업률은 5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직업계고의 전체 진학률은 80.0%이며, 여자의 진학률이 82.5%로 남자의 진학률(77.6%)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업계고 진학률 또한 남자(41.3%)보다 여자(50.2%)가 높게 나타났으나, 마이스터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남자(6.7%)가 여자(5.8%)보다 진학률이 높았다. 비직업계 고등학교 중에서는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16.3%로 가장 높았고, 직업계 고등학교 중에서는 마이스터고가 74.6%로 가장 높았다.

〈표 8-2-2〉 2021년 비직업계 고등학교 신규 졸업자의 진로 상황

(단위: 명, %)

고등학교 유형	졸업자		진학자		진학률		취업자		취업률	무직 미상	입대자	특수학교 전공과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총계	358,523	175,205	286,719	144,486	80.0	82.5	5,776	2,635	8.1	65,019	592	417
일반고	315,513	156,226	254,197	129,798	80.6	83.1	5,382	2,492	8.9	55,017	529	388
특수목적고	15,007	9,321	11,716	7,271	78.1	78.0	142	71	4.3	3,132	17	0
특성화고	1,264	562	956	454	75.6	80.8	50	18	16.3	251	1	6
자율고	26,739	9,096	19,850	6,963	74.2	76.6	202	54	3.0	6,619	45	23

주: 취업률 = 취업자/(졸업자 수 - 진학자 수 - 입대자 수) x 1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21). 교육통계서비스 제공.

〈표 8-2-3〉 2021년 직업계 고등학교 신규 졸업자의 진로 상황

(단위: 명, %)

고등학교 유형	졸업자		진학자		진학률		취업자		취업률	미취업자		입대자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총계	78,994	32,544	35,529	16,343	45.0	50.2	22,583	8,920	54.2	18,211	6,985	1,809
특성화고(직업교육)	69,663	30,012	33,047	15,216	47.4	50.7	18,444	8,026	52.2	16,092	6,499	1,295
마이스터고	5,735	794	377	46	6.6	5.8	3,629	623	74.6	1,210	122	492

고등학교 유형	졸업자		진학자		진학률		취업자		취업률	미취업자		입대자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일반고 직업반	3,596	1,738	2,105	1,081	58.5	62.2	510	271	34.7	909	364	22

주 : 취업률 = 취업자/(졸업자 수 - 진학자 수 - 입대자 수) x 100.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21). 교육통계서비스 제공.

3. 특수학교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2021년도 우리나라 특수학교 졸업자 수는 2,116명이었으며, 이 중 취업자는 146명, 취업률은 4.8%이었다. 특수학교에서 직업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비직업계고등학교(8.1%) 혹은 직업계고등학교(54.2%) 취업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특수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남자(4.7%)의 취업률이 여자의 취업률(4.3%)보다 약간 높다.

〈표 8-2-4〉 2021년 특수학교(고등학교 과정) 신규 졸업자의 취업 상황과 취업률

(단위 : 명, %)

장애유형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무직자 및 미상		취업률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총계	2,116	729	146	56	94	29	94	29	4.8	4.3
시각장애	93	33	29	12	7	3	7	3	10.9	14.3
청각장애	96	42	32	16	14	3	14	3	21.9	11.5
지적장애	1,575	530	58	19	60	22	60	22	4.0	4.3
지체장애	241	102	11	5	7	1	7	1	3.0	1.0
정서장애	111	22	16	4	6	-	6	-	6.3	-

주 : 취업률 = 취업자/(졸업자 수 - 진학자 수) x 100.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21). 교육통계서비스 제공.

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상황

고등교육기관 신규졸업자의 취업상황을 살펴보면,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2020년 2월 및 2019년 8월 졸업자)는 553,521명으로, 2019년 대비 3,167명이 증가하였다. 취업대상자 48만 149명 중 31만 2,430명이 취업하여 취업률은 65.1%로 나타났다. 전문대 졸업자들의 취업률은 68.7%로 일반대학 졸업자의 취업률 61.0%보다 높았으며, 교육대학 및 산업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각각 61.4%, 70.5%로 나타났다. 2019년과 비교했을 때에는 전문대학의 취업률이 2.2%p가 감소하고, 일반 대학은 2.3%p 감소, 일반대학원 0.3%p가 증가하였다. 고등교육기관 남자 졸업자의 취업률이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성별 취업률 격차는 2019년 3.8%p에서 2020년 4.0%p로 소폭 벌어졌다.

〈표 8-2-5〉 2020년 졸업자의 취업 상황과 취업률

(단위 : 명, %)

구분	졸업자	취업대상자	취업자	취업률
고등교육기관 전체	553,521	480,149	312,430	65.1
전문대학	168,153	146,373	100,520	68.7
대학	324,019	284,994	173,932	61.0
교육대학	3,717	3,549	2,180	61.4
산업대학	2,756	2,631	1,854	70.5
각종학교	550	455	249	54.7
기능대학	7,351	6,836	5,384	78.8
일반대학원	46,975	35,311	28,311	80.2

자료 : 교육부(2021).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보도자료.

〈표 8-2-6〉 2020년 성별·학제별 취업자 및 취업률

(단위 : 명, %)

구분	고등교육기관 전체		전문대학		대학		일반대학원		
	취업자 수	취업률	취업자 수	취업률	취업자 수	취업률	취업자 수	취업률	
2020	합계	312,430	65.1	100,520	68.7	173,932	61.0	28,311	80.2
	남	157,718	67.1	44,817	68.1	89,861	63.7	16,554	85.3
	여	154,712	63.1	55,703	69.1	84,071	58.4	11,757	7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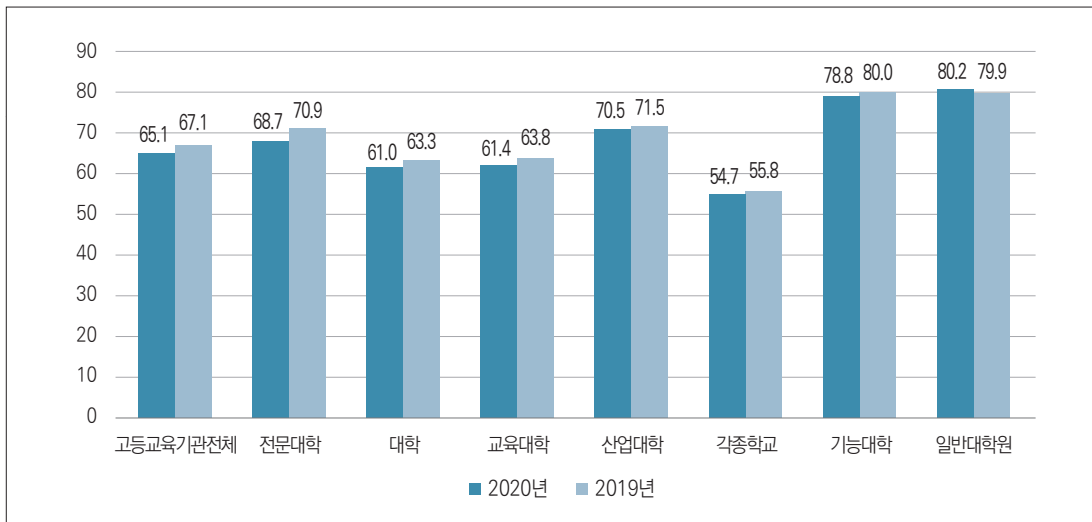
자료 : 교육부(2021).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보도자료.

일반대학원을 제외하면 2020년도 학제별 취업률은 2019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교육대학의 취업률은 2019년보다 2.4%p가 감소하였다.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계열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019년에 비해 2.0%p 감소하였다. 전체 계열 중 의약계열 졸업자의 취업률이 82.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학계열(67.7%), 자연계열(62.3%), 예체능계열(62.2%), 교육계열(62.2%), 사회계열(60.9%), 인문계열(53.5%) 순으로 높았다. 모든 계열의 2019년도 취업률보다 2020년 취업률이 조금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2-1] 고등교육기관 학제별 취업률(2020·2019년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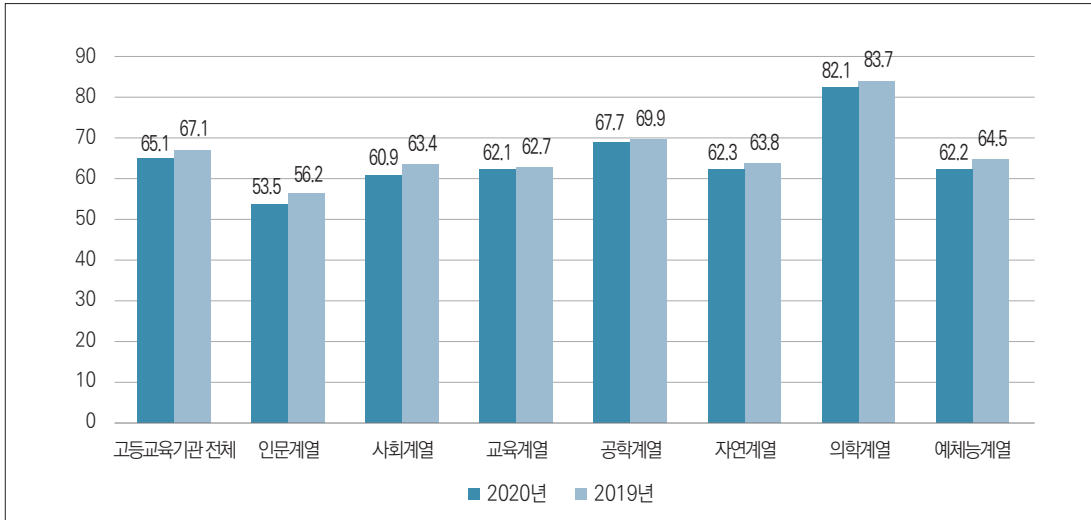


자료 : 교육부(2021).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보도자료.



[그림 8-2-2] 고등교육기관 계열별 취업률(2020·2019년 비교)

(단위 : %)



자료 : 교육부(2021).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보도자료.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제3장 청소년의 고용·노동정책

1. 청소년근로 보호대책

가. 청소년근로 보호대책

정부는 2005년 6월 20일 「청소년근로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다. 「청소년근로보호 종합대책」은 고용노동부·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 범정부적으로 마련한 종합적·체계적인 보호대책으로 청소년근로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의 강화방안, 교육 내실화를 통한 청소년근로 보호 인식의 제고방안,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추진 방안, 청소년 일자리 정보 제공 및 피해 구제 강화방안, 제도개선을 통한 연소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성과점검을 통한 평가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08년 6월 「연소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연소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피해사례 일제 신고기간 운영,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청소년 근로환경개선 종합대책(2012년 11월)」을 마련하고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으며, 청소년 권리구제를 위한 다양한 신고체계 구축,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교육홍보실시, 사업주들의 법 준수 의식 확립 및 청소년들도 노동관계법을 인지하도록 하여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4년에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방안(2014. 5.)」을 마련하였는데, 청소년 근로권익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위반제재를 강화하고 청소년의 근로권익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취업사이트 등에 제공하고, 또한 청소년이 손쉽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성가족부는 2013년부터 서울 및 수도권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사례에 대해 24시간 문자 상담(#1388) 서비스 제공 및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의 부당처우 문제가 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해 현장에 근로현장 도우미를 파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사업을 시범 실시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신규 사업으로 편성, 수도권 외에도 경상권, 전라권으로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2019년에는 충청권까지 확대하였다. 2022년도에는 사업방식을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보조를 통한 지원으로 변경하여, 전국 시·도로 지역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현장 도우미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주와 중재해결하고 있으며, 권익침해 사례 및 성희롱·폭언·폭행 등이 중재가 되지 않거나, 심각한 사안의 경우에는 노동관서나 경찰서로 신고 연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근로여건, 사유 등을 파악하여 건강·진로상담, 학업복귀, 직업교육,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구청 및 주민센터 등과 연계하고, 성희롱, 성폭력 등 젠더폭력에 대해서는 통합지원센터 등과 연계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중앙지원단 및 지역지원본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상담 107,908건, 현장지원상담 327건으로 집계되었다.

나. 청소년근로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

정부는 「청소년 근로환경개선 종합대책」에 의거해 연중 4회 이상 감독을 실시하는 등 상시적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사업장의 10%는 확인감독을 실시하여 반복적인 법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법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방학시점에 주요 프랜차이즈업체를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여 업체별 위반율을 발표함으로써 법 위반 예방 및 청소년 근로조건 개선효과를 꾀하였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합동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또한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와 청소년 리더들의 활동을 통하여 법 위반사업장을 상시 점검하고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2020년 1월, 전국 25개 지역 2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총 229건의 위반사건을 적발하였다. 적발사건을 살펴보면, 근로계약 미작성 및 근로조건명시 위반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최저임금 미고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휴게시간 미부여 등이었으며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감독관이 업주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방안(2014. 5.)」에 의거해 18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근로가 제한되며,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 및 서면근로계약 교부의무 위반,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에

- 제 1 부
- 제 2 부
- 제 3 부
- 제 4 부
- 제 5 부
- 제 6 부
- 제 7 부
- 제 8 부**
- 제 9 부
- 제 10 부
- 부 록

대한 제재강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근로자 등에 대한 서면근로계약 의무 위반 시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기준을 2014년 8월부터 강화하였다. 아울러 방학기간동안 실시되는 프랜차이즈 중심의 감독과 별개로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해 방학기간이 아닐 때도 PC방이나 주점 등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상시 계도활동을 실시하였다.

다. 교육 내실화를 통한 청소년근로 보호 인식 제고

정부는 「청소년근로보호 종합대책」을 통해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주, 각급학교 교사 및 학생 등에 대한 연소근로자 근로관련 노동관계법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중·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진로상담 교사에 대해 청소년 근로 및 직업의식 교육을 실시하고, 교사연수과정 교육프로그램에 연소자 근로조건 및 피해사례별 구제방법 등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 외의 종합대책에서는 사례별 구제방법 지정, 직업교육 연구시범학교 워크숍 시 노동관계법 교육시간을 배정하거나 전문계 고교 CEO 연수 시 노동관계법 교육시간을 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 대상 연소자 근로조건에 대한 교육은 관련 교과와 재량·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거나 전문계 고교 및 평생직업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건전한 직업의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향후 인문계 고교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아르바이트 참여 비율이 높은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해 교육청과 지방고용노동청 간의 협업을 통해 ‘찾아가는 근로권익 특강’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밖에 중·고교생 대상 일터 현장체험 프로그램인 ‘잡 스쿨(Job School)’ 운영 시 학생에 대한 직업의식 및 법정근로조건 교육을 실시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청소년교실 운영 시 취업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교실에는 경찰서장 등 경찰관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는 범죄예방교실과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성 순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랑의 교실, 문제 학생을 대상으로 1:1 집중상담이 진행되는 상담교실 등이 있다. 한편, 연소자 다수 고용 사업주에 대한 교육은 다수고용업종 대표 간담회를 통하여 연소자 근로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채용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도하는 방안 등이 제안 되었다.

2018년 여성가족부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인권 제고를 위하여 중·고등학교 외에도 청소년 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으로 근로권익 전문 강사를 파견, ‘찾아가는 노동권익 교육’을 실시·운영 중에 있으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법령, 부당처우 시 대처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2019년에는 아르바이트 청소년과 사업주가 작성하기 쉽고 보관이 용이한 모바일 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20년에는 학교별 모바일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운영하여 믿을 수 있는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21년 8월에는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노동인권 의식 교육을 위해 교육부, 서울교육청 등과 협조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교과서를 개발하였으며, 12월에는 교과서에 대한 교사용 해설서를 완성하였다.

라.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추진

「청소년근로보호 종합대책」에서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건전한 직업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정 근로조건 보호 캠페인을 실시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06년 10월부터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을 통해 유관기관, 연소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주 협회 등과 협약 체결, 온라인 사이트 운영, 지역 청소년단체와 공동 캠페인 전개, 팸플릿·포스터 제작·배포 등 중·고등학교 및 연소근로자 아르바이트 관련 법정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 매체의 효율적 활용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였다. 2006년에 구축한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관련 싸이월드 타운 홈페이지에 이어, 2008년 3월에는 네이버 블로그를 개설하고 블로그 이웃맺기 이벤트, 오행시 콘테스트 등 각종 프로모션을 통해 청소년들이 노동관계 법령 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2010년부터는 청소년 스스로가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정책프로슈머가 될 수 있도록 ‘1318 알자알자 청소년리더’를 선발하였고, 월별 홍보미션을 부여하여 청소년이 스스로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계된 노동관계법령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소근로자의 아르바이트가 성행하는 여름방학 기간에는 청소년 리더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감독관이 연계해 지역 밀착형 홍보를 전개하여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지역단위의 네트워크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알바십계명 홍보를 위한 ‘알·지·최·서·방 UCC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을 활용해 청소년 근로권익에 대한 홍보를 펼치고 있다. 2013년에는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캠페인’으로 더욱 발전시켰다. 중·고·대학생을 ‘알바지킴이 청소년 리더(45개 팀, 220명)’로 선발하여 또래 집단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전개하였으며, 블로그 개설 및 운영, 교내 홍보활동, 가두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그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참여도와 홍보 효과를 높였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2021년 12월 238개 단체, 1만 9천여 명 활동)을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활용하여 편의점, 카페, 일반음식점 등 청소년 고용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길잡이 책자를 배포하여 업주의 청소년 근로자 보호의식을 제고하고, 노동관계법·청소년 보호법 제도 및 캠페인 활동을 상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단위 민·관 협업체계(경찰청, 지자체 등)를 구축하여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등에 대한 합동 점검·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마. 청소년 일자리 정보 제공 및 피해 구제 강화

워크넷(Work-Net)에서는 청소년층의 진로·직업·진학·취업가이드, 직업심리검사, 청소년 직장 체험, 진로와 직업 관련 이러닝 학습 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잡영(jobyoung)을 통해 청년 취업준비생을 위한 워크넷의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연소근로자들이 권리 구제방법을 몰라서 보호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1318 알바신고센터'를 2011년 도입하였다. 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던 알바신고센터를 대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 추가로 설치하였다. 이는 1318 알바신고센터에 배치된 전담교사(생활지도교사 등)가 수집된 피해사례를 지방 고용노동관서(총 47개)의 전담 근로감독관에게 전달하면, 근로감독관은 센터와 긴밀히 연계하여 신속히 권리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12년 12월에는 모바일 앱(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및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를 구축하고, 전국노동관서에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48명)을 지정하는 등 청소년들이 실시간으로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였다.

최근에도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은퇴 전문 인력을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로 위촉(반기별 130명)하고, 청소년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권역별 알바신고센터(10개소)를 지정·운영해 청소년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전국 공인노무사 131명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으로 위촉하여 무료로 권리구제,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취업지원센터)에 제출된 현장실습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각 지방 고용청마다 현장실습 사업장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주기적으로 현장 실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보다 많은 청소년에 대한 근로권익침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중앙 및 4개 권역의 지역본부로 운영 중인 '청소년 근로보호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방 청소년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2. 청소년 창업지원 대책

주요 국가들이 창업 활성화를 강조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취업난에 따른 고학력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개척하는 창직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도래로 민간 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한계에 도달하였고, 따라서 창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둘째, 창업을 통해 국가 차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기업 활력 또한 저하되었는데, 기업이 정신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창업기업의 등장은 창업기업에서의 일자리창출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지난 정부는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우수한 청년 창업가 발굴양성’이나 ‘원활한 재도전 환경조성’을 추진과제로 명시하여 청년일자리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현재는 창업교육에서부터 시설 공간 제공,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지원, R&D, 판로·마케팅·해외진출, 행사·네트워크, 정책자금지원 등 다양한 유형의 창업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청년창업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청년 전용 창업자금, 창업성공 패키지, 창업보육센터가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 전용 창업자금은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 초기 운영자금과 창업에 필요한 멘토링, 컨설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2년부터 매해 운영되어온 ‘청년전용 창업 자금’ 사업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며,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기업당 1억 원 이내에서 6년간 지원한다. 일반창업기업지원과 달리 청년 전용 창업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 대출로 운영하며 자금신청, 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을 결정(용자상환금 조정형)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2년부터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을 시작해 2020년까지 누적 13,190개 사를 지원했다.

창업성공패키지(구,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예비)청년 CEO들의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예비)창업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창업 준비공간(개별·공동) 제공에서부터 전문 인력을 전담 교수로 배치하여 진도관리 및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코칭, 기술 사업화 및 전문지식 등 단계별 교육, 제품설계(CAE·역설계 등), 시제품 제작 등 제품개발 관련 기술 및 장비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정책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기술창업 One-Stop 패키지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 9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17개 지역의 20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자금에서부터 법률, 회계, 기술 등 창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지원하는데, 지역 주도로 선정된 특화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창업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부족하거나 창업 절차를 모르는 경우에는 각 대학에 마련된 창업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은 (예비)창업기업에 사무 공간 제공 및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학이나 연구소가 사업자로 지정받는데, 2021년 말 기준 262개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ion: BI)가 지정되어 있다. 창업보육센터는 이미 갖춰진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창업 관련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사한 사업으로 아이디어는 있는데 어떻게 창업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1인 기업의 창업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사업 공간 제공,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전문가의 밀착 상담 및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2016년 9월 말 기준 2,103개 사에 경영자문 870건, 교육 4,885건을 지원하였다.

2015년 정부는 「창업지원사업 효율화방안(2015. 10. 14.)」을 발표하고, 복잡한 창업지원 사업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 바 있다. 유사 목적·방식의 사업들을 통합(99개→72개)하고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K-스타트업’이라는 브랜드로 통합·연계해 수요자가 자신의 관심분야 지원 사업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9개 범주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 K-스타트업³⁾은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교육, 창업기반시설 및 공간 등 창업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요 지원내용은 정부의 성장 단계별(예비, 초기, 도약)로 주요 지원 사업정보(사업화, 시설·공간·보육,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R&D, 행사·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창업사업의 ‘신청·접수, 협약, 사업비 정산’ 등을 온라인에서 원스톱 서비스, 전국 벤처·창업 입지정보, 창업기초·창업실전·창업특화 등 창업 단계별 온라인 창업 강좌, (예비)창업자의 사업역량과 사업 아이템에서 부족한 점을 스스로 진단 및 보완할 수 있는 창업역량 자가 진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창업교육 분야로는 청소년 비즈쿨, 창업 아카데미, 대학창업교육체계구축 등이 대표적 사업이다. 청소년 비즈쿨은 열정, 도전정신 등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생을 대상

3)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으로 모의 창업 등을 활용한 기업가정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6년의 경우 448개교(초등학교 124개, 중학교 109개, 고등학교 202개, 특수학교 13개)에서 특강, 캠프 등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창업아카데미는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에게 실전형 창업교육, 멘토링 지원, 네트워킹 조성 등 창업을 위한 기초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6년 창업 강좌 115개에 3천여 명이 참여하는 실적을 달성하였다. 스마트벤처 창업학교는 앱/웹, 콘텐츠, SW, 융합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 및 사업화를 희망하는 만 39세 미만의 예비창업자(팀) 및 창업 3년 미만 기업에게 창업 아이템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창업교육, 개발 멘토링 및 마케팅 등 창업 및 사업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의 경우 전국의 4개 창업학교에서 170개 창업팀을 지원하였다. 창업에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창업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하는 창업 대학원은 2016년에 5개 대학원에 9억 원이 지원되었다. 또한, 대학의 풍부한 자원 극대화를 통해 교육, 네트워크, 연구개발을 통한 창업모델 도입·확산을 목표로 하는 대학기업가센터,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초기업을 대상으로 체험형 창업교육과 사업 아이템의 시장검증, 시제품 구체화 등 초기사업화를 지원하는 스마트 창작터도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창업가 정신과 창의적 진로 개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창업체험교육 플랫폼 YEEP(YEEP: Youth Entrepreneurship Experience Program)⁴⁾을 운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YEEP는 창업가 정신 함양을 통한 인재양성을 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아리(미션을 통한 가상 창업과정 이해)-수업(창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모듈형 수업)-가상창업체험(사용자 맞춤형 모의 창업 과정 체험)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학을 창업의 요람으로 육성하기 위한 ‘창업선도대학육성’, 성공 창업을 꿈꾸는 미래의 유망CEO 발굴과 전 국민 창업분위기 제고를 위한 ‘대한민국 창업리그’, 대학·연구소의 일정지역을 ‘신기술창업집적지역’으로 지정하여 공장 설치를 허용하고, 각종 특례제도 등을 통해 신기술창업을 촉진키 위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제도’, 도심 내 벤처기업의 입주 공간 확보가 용이하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세제감면 혜택 등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집적 시설 지원제도’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갖추고 있다.

이번 정부는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과 관련한 21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 발표했으며, 청년 관련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창업 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아이템 발굴 및 초기 창업자금 지원을 통해 기상분야 창업 저변

4) YEEP 홈페이지(www.yeep.go.kr).

확대 및 유망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 등이 있다. 2019년 창업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⁵⁾에 의하면 전체 창업자(2,030,987명) 중 20대 이하 및 30대의 비중은 15.7%를 차지했으며, 교육서비스업(26.4%) 및 전문·과학 기술업(16.8%) 등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 시 소요되는 자금 중 자기자금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향후 창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금이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2020년 사업 중 학생 창업유망팀 300은 잠재력이 높은 전국의 학생(초·중·고·대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포함) 창업팀 300개를 선발하여 체계적 교육·멘토링을 통해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각 16개 부처의 90개의 창업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한 바 있다. 전체 창업지원 예산규모는 1조 4,517억 원으로 2019년 대비 29.8%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청년층을 타겟으로 한 사업에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창업성공패키지(청년 창업 사관학교)’, ‘창업성공패키지(글로벌창업사관학교)’,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 ‘학생 창업유망팀 300’, ‘청년 등 협동조합창업지원’ 등이 있다.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 고용 창출과 지역정착 유도를 위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창업 지원(임대료, 컨설팅 등) 고용친화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0년에는 사업 개시일 기준 만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총 35,500백만 원을 약 4,500명에게 지원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에서는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와 ‘창업성공패키지(글로벌창업사관학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일반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은 우수한 제조 창업 아이템 및 4차 산업분야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초기 창업자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 융복합 업종(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등)의 만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총 93,250백만 원, 1,035개 사를 지원하였다.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사업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CEO 중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사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총 지원예산은 10,870백만 원이며, 50개 사를 지원하였다.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에서는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만 34세 이하의 1인 또는 팀단위 기상 기후분야 청년 예비창업자에게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하였다. 시제품 개발은 팀당 80백만 원, 창업자금은 팀당 60백만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에서는 ‘학생 창업유망팀 300’ 사업으로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대학(원)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경진대회를 통해 유망 창업팀을 선발하고 약 300개 팀에게 1,600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5) 전국 17개 시·도 중소기업 중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대상규모는 8,000개 기업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에도 창업지원 통합공고를 통해 총 32개 기관이 194개 사업을 실시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예산규모는 총 1조 5,179억 원으로 2020년 대비 662억 원(4.6%)이 증가하였다. 194개 사업 중 24개 사업이 청년층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 중 2021년 새로 등장한 사업으로는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넥스트로컬)’, ‘업사이클 아트 청년창업 프로젝트’, ‘1839 청년창업프로젝트’ 등이 소개되었다.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은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전통문화산업 진입 지원 및 분야 간 융합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창업 사업화 자금과 교육·멘토링을 지원한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넥스트로컬)’을 통해 지역 탐색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자원연계 아이템 발굴 지원, 사업화 단계에서 사업비 지원뿐 아니라 분야별 교육 컨설팅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업사이클 아트 청년창업 프로젝트’는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청년창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업사이클(재활용) 산업생태계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1839 청년창업프로젝트’는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역 공공데이터 활용하여 사회현안을 해결하고, 청년 주도의 지역혁신 아이디어를 발굴·육성하여 신규 고용수요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지역 생활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청소년 고용촉진 대책

가. 청년고용촉진 대책 수립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시기별 청년고용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종합대책, 부문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왔다. 2003년에는 일자리 창출, 산학협력, 해외취업 등 장단기 대책을 종합한 「청년실업종합대책」이 수립되었고, 2005년에는 학교-노동시장 간 이행 원활화에 중점을 둔 「청년고용촉진대책」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었다. 2006년에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해외취업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해외취업촉진대책」을 발표하였다. 또한 고졸 이하 학력 청년층의 실업자가 전체 청년실업자 중에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실업률도 전체 청년실업률보다 높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고졸 이하 청년층 고용촉진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2007년도에는 그간의 청년실업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검토하여 ‘청년고용 장려금 사업’을 2010년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청년학생층에 대한 직업진로지도 서비스 강화, 학교의 취업 지원 인프라 확대, 취약청년층을 위한 고용지원네트워크 구축 등의 방안을 추진하였다. 2008년에 들어서서 정부는 청년들의 취업무대를 국내노동시장에서 세계시장으로 확대하고, 청년들이 다양한 해외 경험을 쌓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국가성장을 주도할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산·학·관 협약을 통해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청년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취업으로 청년층이 증가함에 따라 청년 친화적 일자리지원, 직업체험 확대, 청년고용 인프라 확충 등을 담은 「청년고용촉진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었다.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불황으로 인해 청년고용 상황이 악화되자 청년실업 대책차원에서 「청년고용 추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09년 말 전반적인 경기회복으로 고용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안정적 일자리에 대한 실희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자 「청년·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또한, 2010년 10월에는 향후 2년간 청년친화적 일자리 7만 개 이상 창출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 내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으며, 2011년 5월에는 ‘2차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기계발과 재도약 기회를 충분히 갖도록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2013년 10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여 2014년 1월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청년 미취업자를 정원의 3%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였으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청년 나이를 만 34세로 상향조정해 30대 미취업자들의 취업기회 제한을 해소하였다. 청년고용지원정책 일환으로 ‘청년취업 인턴제도’를 확대하기도 하였다. 2014년 4월에는 「일자리단계별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청년층의 조기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에 주력하며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경기활성화, 5대 유망서비스산업 규제개혁 등을 통해 보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 7월에는 인력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구조적인 대책과 아울러 단기간에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년연장 등에 따른 단기 고용충격 완화, 현장중심의 인력양성 등 미스매치해소, 청년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라는 3가지 추진과제를 통해 2015~2017년간 20만 개 이상의 청년일자리 기회창출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6년 4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일자리 발굴 및 채용연계, 중소기업 근속을 위한 경제적 지원(청년내일

채용공제), 수요자 맞춤형 정보전달, 청년 눈높이에 맞는 진로지도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관련 정책이 포함되었다.

2018년 3월 정부는 1990년대 이후 청년고용 부진이 심화·고착화되고, 체감실업률도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청년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하였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청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한 체감도를 제고하고, 민간부문 청년 일자리 수요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 즉, 취업 청년 소득, 주거, 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창업활성화,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즉시 취업·창업 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를 통해 에코세대가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2018~2021년까지 18~22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2021년까지 청년실업률을 8%대 이하로 안정화 한다는 것이 목표이다. 청년의 소득, 주거, 자산형성을 돕고 청년을 고용한 사업체에 지원을 강화하며,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활 혁신형 창업자에게 최대 1억 원의 오픈바우처를 지원하고, 쉽게 창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 모험펀드로 투자를 유도하고, 청년 창업기업에 5년간 법인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고 있다.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2021년까지 7만 명 이상을 지원하고 현직진출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전교육 및 매칭서비스로 제대로 된 해외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며 해외 창업 청년도 지원한다.

2018년 정부는 청년에게 와 닿는 정책을 위해 청년대표,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청년 일자리대책 TF’를 마련하였다. 이 TF조직이 주체가 되어 정책을 수립하고, 청년이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청년구직자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센터를 통해 청년의 공정한 출발을 지원하려 하였다. 그리고 청년대상 훈련을 확대하고 진로지원을 강화하여 청년의 직업능력개발을 확대하고, 취업성공 패키지의 내실화·일자리 매칭 활성화를 통해 취업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였다.

2019년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청년 대상의 주요 일자리 정책은 주로 15~34세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업 등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제도이다. 둘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방식의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실제 사업을 신청한 청년의 근속률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넷째, 온라인 및 오프라인 청년센터를 제공하여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청년이 보다 쉽게 정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다. 또한 대학 내 진로지도를 통해 취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기업이 청년을 우선 채용한 후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일·학습 병행제,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업 세계 및 산업현장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노동시장으로의 조기진입을 유도하는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4월 정부는 정보통신업 및 전문·과학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청년일자리의 양과 질이 개선 되었다고 발표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할 때 1인당 9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38,330개 기업이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하여 청년 181,659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2018년 1분기(예산 집행률: 1.5%) 대비 2019년 1분기(예산 집행률: 34.7%)의 중소·중견 기업의 제도 활용률이 높았다. 또한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받지 않은 기간보다 평균 26.7% 더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한 청년의 1년 이상 근속률은 78.1%로 일반 중소기업 재직청년 근속률 48.4%보다 높아 일자리의 안정화에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는 7월 1일부터 지침내용이 일부 수정되었다. 변경 전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모두 지원 대상으로 하였으나, 변경 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으로 소규모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또한, 노동관계법 상습위반기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청년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었다. 2021년 신규 9만 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약칭 청년고용법)은 청년고용의무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청년의 고용촉진을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다. 이 법은 한시법으로써 2018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국회 논의를 거쳐 2023년 말까지로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다만, 법에 포함된 청년고용의무제는 2021년 말까지만 연장됐다. 2019년 9월에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문 인력을 연간 고용 인원의 70% 이상 채용 시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이 제외되는 요건을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연구원, 학교 등의 경쟁력 있는 연구 전문인력과 교원 인력 채용의 요구와 이 제도의 취지인 청년 고용 활성화 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2018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 따르면 2018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기관 447 개소의 82.1%인 367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적용 대상기관의 2018년 전체 정원(37만 3,416명) 가운데 신규로 고용된 청년은 2만 5,676명으로 비율은 6.9%로 나타났다. 2020년 2월 20일 발표한 ‘2019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이행비율’은 89.4%(442개소 중 395개소)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442개 적용대상기관의 2019년 청년 신규 고용인원은 28,689명으로 2018년

보다 11.7% 증가했다. 이는 공공기관 정원의 7.4%에 해당하며, 청년고용 의무제에 따른 청년 채용 인원은 2016년 1.9만 명, 2017년 1.9만 명, 2018년 2.6만 명, 2019년 2.9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기관의 비율은 2018년 82.1%에서 7.3%p, 청년신규고용 비율은 2018년 6.9%에서 0.5%p 각각 높아졌다.

2021년 고용부가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서는, 20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기관 436개소의 84.6%(369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고, 의무제 적용 대상기관의 '20년 전체 정원(387,574명) 가운데 신규로 고용된 청년(22,798명)의 비율은 5.9%로, 국정과제 목표를 5년 연속 달성하였다. 하지만 '18~'19년 청년 신규채용 실적의 상대적인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코로나19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청년 신규고용 비율, 의무이행기관 비율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청년 신규고용비율, 의무이행기관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나. 직업탐색·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워크넷⁶⁾에서는 청소년들의 근로의욕을 향상하고 올바른 직업탐색 기회 제공 및 효율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청년직업지도(CAP+)프로그램', '성취 프로그램', '취업희망 프로그램', '취업특강프로그램', '고졸청년취업지원(Hi) 프로그램', 'allA(청년진로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간략히 소개 하면, '청년직업지도(CAP+) 프로그램'은 청년 취업준비생들이 자신의 직업흥미와 특성을 충분히 이해 하고, 이를 기반으로 꿈을 설계해 나가는 가운데 합리적인 진로 및 직업 선택과 취업을 돕기 위해 개발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진로탐색과 기업탐색, 취업서류 준비, 실전 모의면접, 취업성공요소의 분석을 통한 취업준비행동 실천계획 수립 등을 통해 취업 준비를 지원한다. '성취 프로그램'은 구직 의욕과 취업자신감이 낮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직 효능감 제고 및 구직기술 습득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다. '취업희망 프로그램' 역시 구직자의 원만한 사회진출 및 적응지원을 위한 대인관계 향상 및 사회생활 적응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졸청년취업지원(Hi) 프로그램'은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고졸예정 취업준비생과 고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고졸청년층을 대상으로 개발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미래 삶을 고민해보고 일터와 채용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취업서류와 면접 요령, 그리고 취업과 직장적응을 위한 기초상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allA(청년진로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청년 중 특히 오랜 실직이나 취업

6) 워크넷 홈페이지(<https://www.work.go.kr/empSpt/empSptPgm/youngJobGuide/intro.do>).

실패로 인해 취업 의욕이 꺾이고 자신감이 낮아진 청년들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자신감을 북돋고 커리어개발을 지원하고자 한다. 더불어, 직장 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협력적 문제 해결에 관련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청년 10~15명이 소그룹을 구성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신체활동, 게임, 표현하기 등 커리큘럼을 이수하도록 한다. 진행자와 참가자 간의 밀접한 교류를 통해 구직실패로 좌절한 청년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진로 및 직업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한국잡월드’를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과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직업관 및 근로의식 형성을 유도하여 자신에게 맞는 진로 및 직업 선택을 지원하고 있다.

다. 직업진로지도 내실화

고용노동부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심리검사를 비롯한 직업진로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취업지원관, 직업상담원, 커리어코치 등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 고용센터와 워크넷을 통해 가장 최근에 표준화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개인의 능력과 흥미, 적성 등의 심리적인 특성들이 각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수준 및 특성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고 만족할만한 직업들을 탐색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 검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개발했다. 검사는 온라인과 지필검사 모두 받을 수 있고, 워크넷을 통한 온라인검사는 검사 실시 후 결과표를 즉각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에 대한 상담요청도 가능하다. 검사대상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을 위한 검사들이 있으며, 적성, 흥미, 성격 등 다양한 심리특성을 파악하여 진로 및 직업선택에 도움을 주는 검사들이 있다. 워크넷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심리검사는 실시간 검사를 통해 워크넷의 방대한 직업정보 및 구직정보 탐색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용 직업심리검사 개요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직업심리검사 수검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조사는 청소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진로발달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향후 진로결정과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직업

상담원 및 교사들로 하여금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진로지도를 가능하도록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대학생 및 성인의 진로탐색지원을 위한 직업심리검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직업심리검사는 개인별 자기탐색 및 진로방향 설정에 유용한 도움을 주고 있다.

〈표 8-3-1〉 청소년용 직업심리검사 개요

검사명	대상	검사 목적
초등학생 진로인식검사	초등학교 5-6학년	초등학생의 진로발달 수준 측정 및 자기이해
청소년직업흥미검사	중·고등학생	직업흥미에 적합한 학과/직업정보 제공
청소년 적성검사(고등학생)	고등학생	학업적성능력에 적합한 직업/학업분야 추천
청소년 진로발달검사	중2~고3	진로 성숙도 및 발달 수준을 측정하여 적합한 진로설계 지원
청소년 직업인성검사	중1~고2	성격의 5요인(민감성,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을 기초로 성격 특성 측정
대학전공(학과) 흥미검사	고등학생	흥미에 적합한 전공계열 및 학과 추천
직업가치관검사	중3~고3	가치요인별 개인의 수준을 측정하여 현직자 특성과 비교, 적합한 직종 추천
고등학생 적성검사	고등학생	학업 흥미에 따른 적합 고교계열 안내 및 진로지도

자료 : 워크넷(<http://www.work.go.kr>).

〈표 8-3-2〉 대학생 및 성인 대상의 직업심리검사 개요

검사명	대상	검사 목적
직업가치관 검사	18세 이상	가치요인별 개인의 수준을 측정하여 적합한 직종 추천
직업선호도 검사(L형)	18세 이상	직업흥미, 성격, 생활경험과 같은 심리적 특성이해 및 이를 통한 직업탐색 및 직업선택
직업선택 직업선호도 검사(S형)	18세 이상	직업흥미를 진단하고 이에 적합한 직업탐색 및 직업선택
성인용 직업적성 검사	18세 이상	적성에 따른 적합 직업탐색 및 추천
영업직무 기본역량 검사	18세 이상	영업직 직무수행관련 기초능력 진단 및 적합수준 제시
IT직무 기본역량 검사	18세 이상	IT직종 직무수행관련 기초능력 진단 및 적합수준 제시
대학생 진로준비도 검사	대학생	진로 및 취업과 관련된 진로발달 및 행동수준 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취업준비 지원
구직준비도 검사	성인	구직활동과 관련한 특성을 측정하여 실직자에게 구직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창업적성 검사	성인	창업에의 소질여부를 확인하고 성공 가능한 최적의 업종을 추천

검사명	대상	검사 목적
직업전환검사	성인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1년 이상 유지할 전환직종을 추천
이주민취업준비도검사	이주민	구직을 원하는 이주민의 취업준비도 진단을 통한 취업 상담 지원
중장년 직업역량검사	45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의 직업역량 평가를 통한 후기 경력개발 지원

자료 : 워크넷(<http://www.work.go.kr>).

청소년에게 효과적인 진로지도를 위하여 「진로와 직업」 교과서, 초·중·고·대·특성화고용 진로지도 프로그램(CDP), 사회과·과학과 진로탐색자료(중·고), 특성화고 취업지원 로드맵, 대학교 취업지원 로드맵, 직업카드, 직업동영상 활용매뉴얼, 사이버진로교육원 이러닝콘텐츠 등의 진로교육 자료와 진로지도기법이 개발·보급되고 있다. 「진로와 직업」 교과서는 초등학교용과 중학교용으로 2003년도에 개발·보급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개정(초등학교 2007년 개정, 중학교 2011년 개정)되고 있으며, 고등학교 교과서는 2010년 개발 보급되어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진로지도 프로그램(CDP)은 초·중·고·특성화고·대학 등 각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한 학기용 자료로서 총 5종으로 개발·보급되었으며, 교사용 매뉴얼과 학습자용 워크북, 수업진행용 슬라이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성화고 및 대학교 졸업 예정자들의 효과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학교급(특성화고/대학교)에 따라 학년별로 강조해야 할 구직역량과 이를 위한 활용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학교급별 취업지원 로드맵을 개발·보급한 바 있다.

이외에도 청소년 직업진로지도 및 교과통합형 진로지도를 위해 중·고등학교의 사회과·과학과 세부 과목들에 대해 단위별 진로지도를 위한 탐색자료집을 개발하여 보급했고, 학부모대상 진로특강 자료, 직업심리검사 해석을 위한 동영상과 슬라이드 등을 개발하여 단위학교로 보급하였다. 카드형태의 직업 진로교육 매체인 '직업카드' 역시 전국 고용센터와 학교에서 청소년 진로지도를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온라인 콘텐츠도 개발되어 청소년 워크넷 사이트에서 활용되고 있다. 직업 진로지도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자기주도적 진로학습이 가능한 사이버진로교육센터⁷⁾를 개원하여 이력서 작성과 면접 준비에 필요한 강좌 등 다양한 온라인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진로지도·취업지원을 위해 학년별 진로·취업지원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대학생들이 학년별로 특화된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로 지도를 체계화하고, 전담진로교수 매칭, 컨설턴트 연계, 진로실적 관련 교수평가제 도입 등 대학 내 교수·학사제도 또한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진로지도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였다. 아울러 대학 내 학생경력개발시스템과 워크넷을 연계하여 학생들이 맞춤형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직업

7) 사이버진로교육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go.kr/cyberedu/main.do>).



심리검사결과와 관심 있는 직업과 직무, 자격, 훈련 정보 등을 윈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래의 산업구조 및 직업세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래 산업 및 직업전망을 예측하고, 관련 정보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맞춰 체험형 미래직업 탐색 프로그램(3D프린팅, 로봇, 드론 등), 「근로기준법」 강의, 일터 안전보건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2020년까지 4대 유망분야 12개 신산업에서 총 17만 명(신규인력 9만 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산업 고급직업훈련과정 Test-Bed를 구축하여 고학력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업맞춤형 훈련으로 신산업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하이테크 과정을 만들어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하고, 청년의 눈높이에 맞춘 신산업 분야 학과·직종에 고급직업훈련과정을 개설하였다. 2017년 9개 학과에서 2018~2022년 총 40개 학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2017년부터 4차 산업혁명 관련 훈련분야, 즉 스마트 제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정보보안, 바이오, 핀테크, 무인이동체, 실감형 콘텐츠 등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제시하고 운영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선도훈련과정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진로교육연구본부 진로교육센터에서 또한 진로정보망 커리어넷(Career Net)⁸⁾을 운영함으로써, 진로심리검사(직업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 직업가치관검사, 진로 성숙도검사 등) 및 진로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라. 직업정보의 수집 제공

현재 워크넷 홈페이지 직업·진로 탭에서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에서 제공하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본래 한국직업정보시스템은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직업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현재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직업별 직무내용, 임금수준, 직업전망 및 직업과 관련된 학과(전공), 자격, 훈련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진로결정 및 취업 문제를 온라인으로 상담해주고 있다. 직업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종합적인 직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직업전망’, ‘한국직업사전’, ‘직종별 직업사전’, ‘진로진학 Q&A’ 등 초등학교에서 성인까지의 수요자 맞춤형 직업정보자료를 발간하여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보급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직업명이나 학과명 키워드만으로 관련 직업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 및 취업지원 동영상 제작하였다. 직업동영상은 전 산업

8) 커리어넷 홈페이지(<https://www.career.go.kr/cnet/front/main/main.do>).

분야에 걸친 다양한 직업들을 선정, 해당 직업의 생생한 현장모습 및 인터뷰를 담고, 취업지원동영상은 구직자에게 필요한 면접기법, 이력서 작성 등의 구직기술과 직장생활 적응, 비즈니스 매너, 기업직무 등 직장생활과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모든 자료는 각급 학교에 DVD로 배포되며, 방송 송출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들 매체를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기법이 소개된 직업동영상 활용 매뉴얼도 함께 제작·배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 학과정보를 축적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학과정보 동영상은 해당학과 졸업 후 진출할 수 있는 직업과 분야를 소개하고 취업을 위해 대학 생활을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교수님과 학과 선배인 멘토들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최근에는 학과의 변화양상과 관련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소개하고 다양한 진로모색의 필요성과 새롭게 등장하거나 부각되는 진출 직업 및 분야를 소개해주는 데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앞서 언급한 커리어넷에서도 직업분류별, 적성유형별 직업 정보와 맞춤형 진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직업의 연봉정보, 발전가능성, 고용평등성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더불어 진로탐험대 신청, 공개상담 내용 공유를 통해 무료 진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취업지원 확대

취업지원서비스는 1987년 5월 텍스트위주의 서비스제공으로 시작했으나 1996년 9월 국내·외 취업 알선 서비스로 발전하였다. 이후 1998년 11월 인터넷 방식의 '워크넷(Work-Net)'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용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업 업무에 활용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해 구인·구직자에게 직접 일자리정보, 직업정보 등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에는 정보화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보급에 맞춰 워크넷 시스템을 개편하여 청년층의 취업지원을 위한 온라인 고용정보서비스를 강화하였다. 이력서작성과 구직신청, 채용정보 북마크, 알선요청, 직업상담 등의 개별 온라인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맞춤 메일링 서비스'를 도입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직업·취업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워크넷에 '대기업채용정보' 항목을 신설하여 주요 대기업의 구인정보를 취합·제공하였고, '지역 고용동향' 항목의 신설을 통해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제작한 각종 지역단위 고용정보를 구인·구직자에게 제공하게 되었다. 그밖에 '구인·구직 동영상 서비스'를 실시하여 구직자 및 구인업체의 소개를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동영상 이력서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취업자료실'

항목을 별도로 제공하여 취업관련 뉴스와 가이드, 동영상, 직업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채용정보와 인재정보를 직종별, 지역·산업단지별, 역세권별, 대기업채용정보, 단시간 근로채용정보, 전공계열별, 청년인턴인재정보 등 특화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하였다. 2011년 7월부터는 민간취업포털과 지자체 일자리정보를 워크넷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3.0 공동데이터 개방과 관련하여 Open API 제공과 지역 워크넷, 정부지원 일자리, 시간선택제, 강소기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하였으며,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여 PC 외에도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워크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워크넷을 통해 개인 구직자는 지역별, 역세권별, 직종별, 기업형태별 등 다양한 일자리정보를 비롯하여 온라인 구직신청, 이메일 입사지원, 맞춤형 서비스, 구직활동 내역 조회/출력, 메일링 서비스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구인기업은 지역별, 직종별, 전공계열별 등 다양한 인재정보를 비롯하여 온라인 구인신청, 인재정보 관리, 맞춤형 서비스, 째하기, e-채용마당 등의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직업 심리검사, 직업·학과정보검색, 직업탐방, 진로상담 등 직업·진로 서비스와 Job Map, 일자리/인재 동향, 통계 간행물/연구자료 등의 고용동향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한편, 청년실업문제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자, 산재되어 있는 범부처 취업지원 사업 정보를 모아 한 번에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청년워크넷을 구축하여 2016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 취업 지원사업⁹⁾을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규모, 혜택, 지원조건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취업지원관련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추가 업로드하고 있으며, 청년고용 정책참여단을 통한 취업지원사업 모니터링, 청년친화적 안내문으로 대체하는 등 콘텐츠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도 청년 친화 강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메뉴구조 단순화, 검색기능 개선 등의 노력에 힘입어 청년 워크넷 1일 평균 방문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8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청년정책의 인지도를 높이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청년센터¹⁰⁾를 구축했다. 맞춤형 청년정책 정보검색과 청년정책 간 핵심정보를 비교해주고, 일자리·창업·주거 등 분야별로 수요에 따라 배치하여 카카오톡이나 전화를 기반으로 실시간채팅 상담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온라인청년센터에서는

9) 커리어넷 홈페이지(<https://www.career.go.kr/cnet/front/main/main.do>).

10)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https://www.youthcenter.go.kr/intro/centerIntro.do>).

구직활동을 할 때 공간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노동과 관련된 용어가 낯선 청년들을 위해 용어 풀이를 제공하는 등 다방면으로 청년에게 구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청년센터는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에 가입한 주요 기업들의 청년 고용 지원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 이 멤버십에 가입한 기업들은 청년 고용지원 프로그램, 면접 불합격자 피드백 등 청년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온라인청년센터는 각 지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비대면 면접장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구직자들이 근접한 곳에서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제9부 요약

제9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청소년 범죄의 발생 및 처분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청소년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교정하기 위해 추진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 내용도 함께 다루었다. 최근 10년간 청소년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전체 범죄자 중 청소년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10년간 전체 범죄자 대비 청소년 범죄자의 구성 비율을 보면, 2011년에는 5.8%이었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20년에 3.9%를 기록하였다. 2020년 청소년 범죄의 발생비는 재산범죄,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강력범죄(흉악)의 순으로 높았으며, 다른 범죄유형이 2010년 대비 발생비가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강력범죄(흉악)은 2010년 대비 강력범죄(흉악) 0.3% 증가하였다.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운영, 유해환경 정화활동, 선도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교육부 등 관련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수립·추진해 왔다. 검찰에서는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해 '우범소년 결연사업', '학교담당검사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법무부에서는 '청소년꿈키움센터', '대안교실', '청소년심리검사실', '보호자특별교육'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교정교육 및 사회복귀 지원은 소년원, 소년교도소, 보호관찰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기관에서는 각종 교과교육 및 취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비행청소년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

제9부 청소년 범죄

제1장 청소년 범죄의 현황

제2장 청소년 범죄 예방활동

제3장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건처리

제4장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교정교육

제1장 청소년 범죄의 현황

1. 청소년 범죄의 동향

19세 미만 청소년 범죄자는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최근 10년간 전체 범죄자 대비 청소년 범죄자의 구성 비율을 보면, 2011년에는 5.8%이었다가 2015년 3.8%(71,035명)까지 감소하였다. 2016년이후 잠시 증가하긴 하였으나, 다시 감소하여 2021년에는 3.9%를 기록하였다. 청소년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청소년 범죄자의 비율도 줄어들고 있는 것인데, 이는 최근 우려와 달리 일반 범죄에 비하여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청소년 범죄자의 절대적인 숫자 자체는 소폭 증가하여 여전히 청소년 범죄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경계가 필요하다.

〈표 9-1-1〉 연도별 청소년 범죄자 현황 및 구성비(2011~2020)

(단위 : 명, %)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범죄자	1,711,687	1,843,289	1,859,697	1,851,150	1,888,959	1,973,655	1,818,237	1,704,086	1,723,499	1,638,387
청소년 범죄자	100,032	104,780	88,731	77,594	71,035	76,000	72,759	66,142	66,247	64,480
구성비	5.8	5.7	4.8	4.2	3.8	3.9	4.0	3.9	3.8	3.9

주 : 청소년 범죄자의 기준은 18세 이하임.

자료 : 대검찰청(2012~2021). 범죄분석.

2020년 청소년 범죄 발생비를 살펴보면, 재산범죄 351.7, 강력범죄(폭력) 179.7, 교통범죄 100.7, 강력범죄(흉악) 38.2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범죄의 발생비는 2012년 442.4건으로 가장 높았던 때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감소하여 2019년과 2020년에만 약간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강력범죄(흉악)의 발생비는 2011년 38.1건에서 감소추이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38.2건을 기록하고 있다. 강력범죄(폭력)의 발생비는 2012년 310.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0년 179.7건이 발생하였고, 이는 2010년 대비 32.2% 감소한 수치이다. 교통범죄의 발생비는 2019년 100.7건으로 2010년 대비 26.1% 감소하였다. 절대적인 발생비는 재산범죄가 가장 높고, 강력범죄(홍약)가 가장 낮지만, 다른 유형의 범죄가 감소하는 것에 비해 최근 강력범죄(홍약)가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9-1-2〉 주요 범죄군별 청소년 범죄의 발생비 추이(2011~2020)

(단위 : 발생비, %)

연도	재산범죄		강력범죄(홍약)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발생비	증감률	발생비	증감률	발생비	증감률	발생비	증감률
2011	403.0	0.6	38.1	13.1	265.2	5.8	136.3	-9.7
2012	442.4	10.4	34.7	3.0	310.0	23.7	115.1	-23.7
2013	430.9	7.6	34.4	2.1	215.4	-14.0	96.2	-36.3
2014	367.4	-8.3	32.0	-5.0	196.0	-21.8	93.7	-37.9
2015	332.9	-16.9	28.2	-16.4	181.4	-27.6	89.4	-40.8
2016	352.9	-11.9	35.7	5.9	207.7	-17.1	99.4	-34.1
2017	319.3	-20.3	38.1	13.0	231.2	-7.7	105.8	-29.9
2018	300.6	-25.0	39.8	18.2	224.0	-10.6	86.7	-42.6
2019	327.6	-18.2	43.2	28.2	219.4	-12.4	88.0	-41.7
2020	351.7	-12.7	38.2	0.3	179.7	-32.2	100.7	-26.1

주 : 1) 재산범죄 :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

2) 강력범죄(홍약) :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3) 강력범죄(폭력) :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폭력행위등(손괴·강요·주거침입 등), 폭력행위등(단체등의 구성·활동).

4) 청소년 범죄 발생비는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의 18세 이하 인원 수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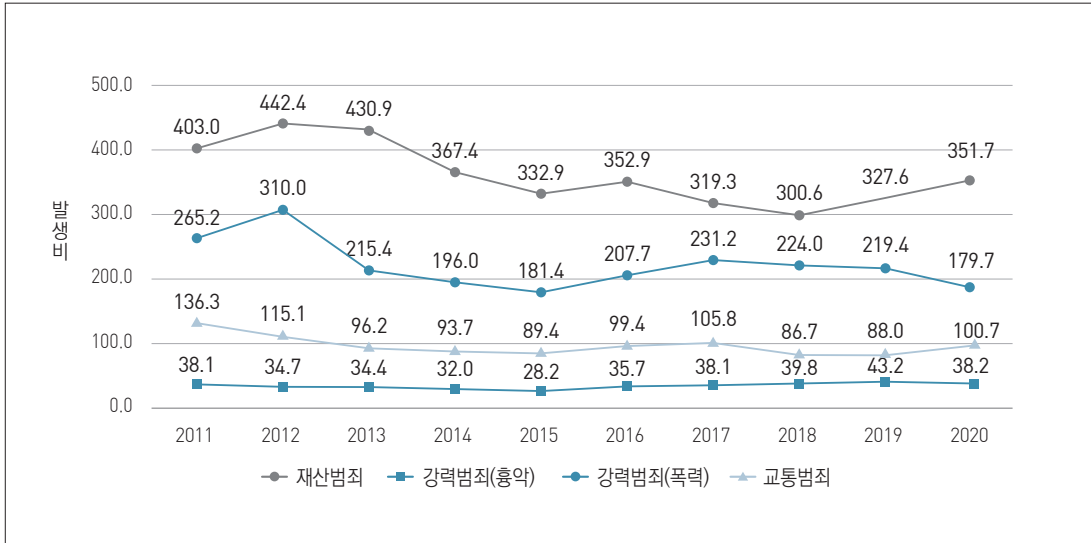
5) 발생비는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비를 나타내는 것임.

6) 증감률은 기준연도인 2010년 발생비 대비 변화율임.

자료 : 대검찰청(2021). 범죄분석.

[그림 9-1-1] 주요 범죄군별 소년범죄의 발생비 추이(2011~2020)

(단위 : 발생비)



자료 : 대검찰청(2020). 범죄분석.

2020년 전체 청소년 범죄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18세가 25.0%(16,097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어 17세 21.3%, 16세 21.1%, 15세 18.5%, 14세 14.1%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청소년 범죄자의 연령추세를 볼 때 17~18세 청소년 범죄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표 9-1-3> 청소년 범죄의 연령별 현황(2011~2020)

(단위 : 명, (%))

연령 연도	계	14세 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2011	83,068 (100.0)	360 (0.4)	5,189 (6.2)	17,084 (20.6)	21,815 (26.3)	19,936 (24.0)	18,684 (22.5)
2012	107,490 (100.0)	856 (0.8)	12,978 (12.1)	21,009 (19.5)	26,080 (24.3)	24,140 (22.5)	22,427 (20.9)
2013	91,633 (100.0)	471 (0.5)	11,338 (12.4)	16,645 (18.2)	20,463 (22.3)	21,208 (23.1)	21,508 (23.5)
2014	77,594 (100.0)	37 (0.0)	9,712 (12.5)	14,041 (18.1)	16,940 (21.8)	17,517 (22.6)	19,347 (24.9)
2015	71,035 (100.0)	64 (0.1)	7 (0.0)	14,387 (20.3)	17,624 (24.8)	18,231 (25.7)	20,722 (29.2)



연령 연도	계	14세 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2016	76,000 (100.0)	84 (0.1)	7,530 (9.9)	13,789 (18.1)	17,589 (23.1)	17,607 (23.2)	19,401 (25.5)
2017	72,759 (100.0)	93 (0.1)	7,703 (10.6)	12,376 (17.0)	16,391 (22.5)	17,358 (23.9)	18,838 (25.9)
2018	66,142 (100.0)	-	8,321 (12.6)	11,595 (17.5)	13,306 (20.1)	15,513 (23.5)	17,407 (26.3)
2019	66,247 (100.0)	-	9,053 (16.4)	11,730 (17.7)	13,548 (20.5)	14,338 (21.6)	17,578 (26.5)
2020	64,480 (100.0)	-	9,124 (14.1)	11,956 (18.5)	13,578 (21.1)	13,725 (21.3)	16,097 (25.0)

주 : 2018년 이후 14세 미만 통계에서 제외.

자료 : 대검찰청(2012~2021), 범죄분석.

최근 10년간 전과가 있는 청소년 범죄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전과를 가진 청소년 범죄자의 비율은 2011년 40.5%에서 2013년 46.1%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세로 나타나 2020년 36.5%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4범 이상 청소년 범죄자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11년 12.0%에서 2020년 15.3%로, 청소년 범죄자의 전과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4범 이상 범죄자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 이는 청소년 범죄의 상습화가 심각한 수준에 있고, 향후 재범률이 높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정교육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9-1-4〉 청소년 범죄의 전과별 현황

(단위 : 명, (%))

연령 연도	계	소계 (미상 제외)	전과 없음	1범	2범	3범	4범 이상
2011	83,068	75,658 (100.0)	45,047 (59.5)	11,391 (15.1)	6,254 (8.3)	3,900 (5.2)	9,066 (12.0)
2012	107,490	96,728 (100.0)	56,527 (58.4)	14,403 (14.9)	7,669 (7.9)	5,001 (5.2)	13,128 (13.6)
2013	91,633	82,548 (100.0)	44,502 (53.9)	12,388 (15.0)	6,782 (8.2)	4,552 (5.5)	14,324 (17.4)
2014	77,594	70,648 (100.0)	40,996 (58.0)	9,853 (13.9)	5,244 (7.4)	3,429 (4.9)	11,126 (15.7)
2015	71,035	62,705 (100.0)	35,650 (56.9)	8,636 (13.8)	4,518 (7.2)	3,110 (5.0)	10,791 (17.2)
2016	76,000	67,433 (100.0)	41,173 (61.1)	8,444 (12.5)	4,493 (6.7)	2,978 (4.4)	10,345 (15.3)

연령 연도	계	소계 (미상 제외)	전과 없음	1범	2범	3범	4범 이상
2017	72,759	64,208 (100.0)	40,168 (62.6)	8,039 (12.5)	4,191 (6.5)	2,773 (4.3)	9,037 (14.1)
2018	66,142	66,135 (100.0)	43,827 (66.3)	7,164 (10.8)	3,705 (5.6)	2,554 (3.9)	8,885 (13.4)
2019	66,247	59,729 (100.0)	38,272 (64.1)	6,681 (11.2)	3,360 (5.6)	2,517 (4.2)	8,899 (14.9)
2020	64,480	58,377 (100.0)	37,079 (63.5)	6,636 (11.4)	3,368 (5.8)	2,362 (4.0)	8,932 (15.3)

자료 : 대검찰청(2012~2021), 범죄분석.

2020년도 청소년 범죄의 남녀별 비율을 보면 남자가 83.7%, 여자가 16.3%로, 남자의 비율이 약 5배 정도 많다. 2011년 남자청소년의 범죄율이 82.8%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과 2015년 85.2%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세를 보여 2018년 81.5%를 나타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소폭 증가하였다.

〈표 9-1-5〉 청소년 범죄의 성별 현황

(단위 : 명, %)

연도	구분	계		남자		여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11		83,068		68,742	82.8	14,326	17.2
2012		107,490		89,339	83.1	18,151	16.9
2013		91,633		76,767	83.8	14,866	16.2
2014		77,594		66,114	85.2	11,480	14.8
2015		71,035		60,534	85.2	10,501	14.8
2016		76,000		63,777	83.9	12,223	16.1
2017		72,759		60,264	82.8	12,495	17.2
2018		66,142		53,879	81.5	12,263	18.5
2019		66,243		54,437	82.2	11,806	17.8
2020		64,480		53,996	83.7	10,484	16.3

자료 : 대검찰청(2012~2021), 범죄분석.

2. 청소년 마약사범류 동향

마약은 일반적으로 마약원료인 생약으로부터 추출되는 천연마약(양귀비, 아편, 헤로인, 코데인, 모르핀, 코카인 등)과 화학적으로 합성되는 합성마약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체 마약류 사범 대비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비율을 보면 최근 10년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에게 마약류가 유통되는 경로를 차단하여 청소년의 마약류 중독을 막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0년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류 사범 적발인원은 313명으로 전년대비(전년도 239명) 인원이 대폭 증가하는 등 그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표 9-1-6) 청소년 마약류 사범 연령별 현황(2011~2020)

(단위 : 명, %)

연도	구분	전체 마약류 사범	청소년 마약류 사범	
			인원	비율
2011		9,174	41	0.4
2012		9,255	38	0.4
2013		9,764	58	0.6
2014		9,984	102	1.0
2015		11,916	128	1.1
2016		14,214	121	0.9
2017		14,123	119	0.8
2018		12,613	143	1.1
2019		16,044	239	1.5
2020		18,050	313	1.7

주 : 마약류 통계에서 청소년 연령기준은 '19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자료 : 대검찰청(2012~2021). 마약류범죄백서.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오·남용시 인체에 현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써, '메스암 페라민(속칭 히로뽕)', 'MDMA(엑스터시)', 'LSD(무색·무미·무취 환각제)' 등을 가리킨다. 2020년 청소년 마약범죄 중 마약류의 종류를 살펴보면 대체로 향정신성의약품의 비중이 62.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대마의 비중은 24.9%로 대마로 인한 문제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마약류는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신체·정신발달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성인 이상으로 중독 예방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표 9-1-7〉 청소년 마약범죄의 마약류별 현황(2009~2019)

(단위 : 명, %)

연도	구분	전체	청소년 마약류			
			합계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마약
2011		9,174	41(100.0)	34(82.9)	7(17.1)	-
2012		9,255	38(100.0)	26(68.4)	12(31.6)	-
2013		9,764	58(100.0)	39(67.2)	17(29.3)	2(3.4)
2014		9,742	102(100.0)	48(47.1)	54(52.9)	-
2015		11,916	128(100.0)	78(60.9)	50(39.1)	-
2016		14,214	121(100.0)	91(75.2)	28(23.1)	2(1.7)
2017		14,123	119(100.0)	70(58.8)	49(41.2)	-
2018		12,613	143(100.0)	105(73.4)	36(25.2)	2(1.4)
2019		16,044	239(100.0)	167(69.9)	69(28.9)	3(1.2)
2020		18,050	313(100.0)	196(62.6)	78(24.9)	39(12.5)

자료 : 대검찰청(2012~2021). 마약류 범죄백서.

3. 학생 범죄의 동향

전체 청소년 범죄자 대비 학생 범죄자의 구성 비율은 2011년 57.7%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20년에는 76.9%를 기록하였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대응과 함께 여전히 학교 내에서의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9-1-8〉 연도별 학생 범죄 현황

(단위 : 명, %)

연도	전체 범죄(A)	청소년 범죄		학생 범죄	
		인원(B)	구성비(B/A × 100)	인원(C)	구성비(C/B × 100)
2011	1,711,687	100,032	5.8	57,672	57.7
2012	1,843,289	104,780	5.7	73,684	70.3
2013	1,859,697	88,731	4.8	60,438	68.1
2014	1,851,150	77,594	4.2	54,627	70.4
2015	1,888,959	71,035	3.8	57,672	81.2
2016	1,973,655	76,000	3.9	56,625	74.5
2017	1,818,237	72,759	4.0	55,074	75.7
2018	1,704,086	66,142	3.9	54,205	82.0
2019	1,723,499	66,247	3.8	49,726	75.1
2020	1,638,387	64,480	3.9	49,599	76.9

자료 : 대검찰청(2012~2021), 범죄분석.

제 1
부제 2
부제 3
부제 4
부제 5
부제 6
부제 7
부제 8
부제 9
부제 10
부부
록

제2장 청소년 범죄 예방활동

1. 경찰의 예방활동

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활동

경찰은 2005년 초부터 고교연합 폭력서클이 주도한 여중생 집단성폭력 등 학교폭력 관련 강력사건을 계기로 교육부 등 관련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왔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전국 약 12,000여 개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하여도 담당 SPO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SPO가 위기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면담관리 대상자로 지정하여 학교폭력 재발방지에 주력하고 있으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 지역별 청소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을 적극 보호하고 있다.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인원을 살펴보면, 2014년까지는 ‘폭행·상해’에 이어 ‘금품갈취’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5년 이후에는 ‘성폭력’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데에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강제추행’, ‘카메라이용촬영’ 등 ‘성폭력범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을 그 원인으로 찾아볼 수 있다. 2020년에는 11,331명이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되었는데, 그중 성폭력은 무려 2,462명을 차지하였다. 2020년 학교폭력 검거인원은 전년도 13,584명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인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 등이 운영되면서 학생간 접촉이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표 9-2-1〉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 현황(2011~2020)

(단위 : 명)

연도 \ 구분	전체	폭행·상해	금품갈취	성폭력	기타
2011	21,957	14,837	3,902	444	2,774
2012	23,877	1,4637	5,912	509	2,819
2013	17,385	11,048	2,603	1,067	2,667
2014	13,268	8,974	1,582	1,295	1,417
2015	12,495	9,188	1,153	1,253	901
2016	12,805	9,396	1,161	1,364	884
2017	14,000	10,038	1,191	1,695	1,076
2018	13,367	7,935	1,377	2,529	1,526
2019	13,584	7,485	1,328	3,060	1,711
2020	11,331	5,863	1,184	2,462	1,822

자료 : 경찰청(2012~2021), 경찰백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로 경찰단계로 들어오는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현황을 보면 불구속 비율이 높은 편이다. 2020년 학교폭력으로 입건된 가해학생 중 구속은 79명, 불구속은 7,710명이었다. 특히 사안에 따른 맞춤형 대응과 경미초범에 대한 즉심·훈방 등 선도조치로 처리되는 비율은 증감을 반복하다 최근 3년간 2018년 18.1%, 2019년 19.7%, 2020년 19.5%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표 9-2-2〉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현황(2011~2020)

(단위 : 명(%))

연도 \ 구분	계	구속	불구속	소년부송치	즉심·훈방 등
2011	21,957 (100.0)	103 (0.5)	16,228 (73.9)	1,473 (6.7)	4,153 (18.9)
2012	23,877 (100.0)	333 (1.4)	15,615 (65.4)	2,657 (11.1)	5,272 (22.1)
2013	17,385 (100.0)	294 (1.7)	11,016 (63.4)	1,824 (10.5)	4,251 (24.4)
2014	13,268 (100.0)	167 (1.3)	8,586 (64.7)	1,191 (9.0)	3,324 (25.0)
2015	12,495 (100.0)	93 (0.7)	9,157 (73.3)	1,059 (8.5)	2,186 (17.5)

연도	구분	계	구속	불구속	소년부송치	즉심·훈방 등
2016		12,805 (100.0)	62 (0.5)	9,852 (76.9)	1,097 (8.6)	1,794 (14.0)
2017		14,000 (100.0)	61 (0.4)	10,556 (75.4)	1,296 (9.3)	2,087 (14.9)
2018		13,367 (100.0)	86 (0.6)	9,546 (71.4)	1,319 (9.9)	2,416 (18.1)
2019		13,584 (100.0)	84 (0.6)	9,233 (68.0)	1,587 (11.7)	2,680 (19.7)
2020		11,381 (100.0)	79 (0.7)	7,710 (68.0)	1,332 (11.8)	2,210 (19.5)

자료 : 경찰청(2012~2021). 경찰백서.

2012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던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로 통합하고, 2012년 6월 18일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 ‘117신고센터’를 개소하여 경찰·교육부·여성가족부 합동으로 24시간 신고접수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117채팅 신고앱인 ‘117챗’을 개발하여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117신고센터로 접수된 사안에 대하여 콜백(call back)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2020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28,241건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교에서의 비대면 수업이 운영되면서 학생간 접촉이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표 9-2-3〉 학교폭력 신고 추이(2018~2020)

(단위 : 건(%))

구분 연도	계	폭행	모욕	법률 상담	왕따	협박	성폭력	공갈	교사 관련	기타
2018	61,887 (100.0)	15,702 (25.4)	18,179 (29.4)	19,995 (32.3)	2,588 (4.2)	1,821 (2.9)	1,289 (2.1)	881 (1.4)	808 (1.3)	624 (1.0)
2019	61,302 (100.0)	15,752 (25.7)	16,589 (27.1)	21,198 (34.6)	2,311 (3.8)	1,719 (2.8)	1,587 (2.6)	770 (1.3)	724 (1.2)	652 (1.0)
2020	28,241 (100.0)	6,629 (23.5)	7,926 (28.1)	9,553 (33.8)	870 (3.1)	1,157 (4.1)	968 (3.4)	449 (1.6)	150 (0.5)	538 (1.9)

자료 : 경찰청(2019~2021). 경찰백서.

경찰은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12년 6월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를 도입하였다. 학교전담 경찰관은 청소년상담 관련 학위, 자격증 소지자 및 소년업무 경력자 등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을 대상

으로 선발하며, 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교폭력의 예방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예방활동, 신고접수·처리, 보호·선도, 경찰과 학교간 긴밀한 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2년 6월부터 '학교전담경찰관제도'가 활성화되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신고접수와 사건처리는 물론이고, 가·피해학생 사후관리도 학교와 협력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전담해 왔다. 2012년 193명을 시작으로 2020년에 전국 지역별로 1,128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이 1인당 12개교를 담당하고 있다. 2017년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에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었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영역을 폭력사안 대응 및 위기청소년 집중관리 중심으로 전문화하였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주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및 교사 면담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현황을 파악하며 117 홍보 및 학교폭력 대응요령 등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사례 위주의 특별 예방교육, 폭력사안 대응, 위기청소년 선도·관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학교는 학생 생활지도와 일반적 예방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나. 유해환경 정화활동

정보통신산업의 발달로 인터넷 및 미디어에 폭력·음란성 매체물이 범람하고, 신종 풍속업소 등 유해업소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청소년 탈선과 이를 조장하는 유해환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각종 음란·폭력성 매체물과 술,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유흥주점·비디오방 등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에 대하여 연 2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 총 7,935명을 적발하였다. 이 가운데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등 유해약물 단속 위반자가 7,093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성적퇴폐나 풍기문란 등 유해행위를 한 자는 573명,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시키거나 출입하게 한 자는 229명,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를 통해 판매·대여하거나 포장 표시한 자는 40명에 이르렀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표 9-2-4〉 연도별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 단속 현황(2011~2020)

(단위 : 명)

연도	구분 계	단속내용				조치	
		유해업소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행위	구속	불구속
2011	9,575	1,690	1,039	6,337	509	6	9,569
2012	14,067	1,414	870	11,158	625	46	14,021
2013	13,438	1,707	1,287	9,980	464	8	13,430
2014	8,348	870	189	6,888	401	5	8,343
2015	9,268	327	185	8,364	392	0	9,268
2016	9,313	412	86	8,444	371	1	9,312
2017	9,750	360	70	8,927	393	-	-
2018	9,567	276	71	8,800	420	-	-
2019	8,399	299	20	7,617	463	-	-
2020	7,935	229	40	7,093	573	-	-

주 : 2017년 이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치결과가 제시되지 않음.

자료 : 경찰청(2012~2021), 경찰백서.

다. 선도프로그램 운영

경찰은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소년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경찰청별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청소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인성 교육을 통하여 소년범죄 예방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성인이 되어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232개 프로그램을 총 15,243명을 대상으로 하여 ‘사랑의 교실’ 선도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청소년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사랑의 교실’ 외에도 신경정신과 의사 및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실시되는 ‘치유선도프로그램(마음나눔교실)’과 경찰관서 SPO가 경찰시스템 및 관련 매뉴얼을 활용하여 회복적 접근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찰선도프로그램(희망동행교실)’이 있다. 2015년에는 21,789명에 대한 선도프로그램이 실시되었으나, 2020년에는 23,464명으로 참여인원이 대폭 증가하는 등 경찰에서의 선도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

소년사건에 대하여는 수사서류에 결과보고서 또는 수료증을 첨부하여 사법처리단계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9-2-5〉 연도별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운영 현황(2015~2020)

(단위 : 개소, 명)

구분 연도	참여 인원	사랑의 교실		치유선도 프로그램		경찰선도프로그램	
		운영단체	참여인원	운영병원	참여인원	운영관서	참여인원
2015	21,789	118	5,985	45	463	228	23,366
2016	20,105	126	5,861	52	254	235	15,341
2017	20,092	145	9,559	60	179	195	13,990
2018	25,714	183	12,508	51	214	185	10,354
2019	25,940	245	18,929	51	196	165	6,815
2020	23,464	232	15,243	43	56	179	8,165

자료 : 경찰청(2016~2021), 경찰백서.

라.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참여제 운영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란 청소년 범죄자의 조사과정에서 범죄심리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로, 가정·학교 환경 등 43개 비행촉발요인과 공격성·반사회성 등 344개 인성평가 항목을 심층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년범의 선도 및 재범가능성을 판단하여 전문적인 선도프로그램과 연결시켜 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2007년부터는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 운영 시, 가해학생 조사에 전문가 참여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저위험군 학생은 사랑의 교실과 연계하여 경찰단계에서 선도 교육을 받도록 하고, 고위험군 학생은 재범방지를 위해 법원·검찰이 운영하는 선도프로그램을 연결해 주고 있다. 전문가 참여비율은 2009년 4.7%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전체 청소년 범죄자의 15.2%에 해당하는 9,826명이 전문가 참여조사를 받았다.

〈표 9-2-6〉 연도별 청소년범죄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 운영 현황(2011~2020)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운영관서(개소)	100	120	137	180	251	252	254	254	255	257
전체소년범(명)	86,621	107,018	90,694	78,794	80,231	76,356	72,752	66,259	66,204	64,584
참여소년범(명)	7,639	10,258	11,548	8,968	10,401	15,312	11,879	10,501	10,847	9,826
참여비율(%)	8.8	9.6	12.7	11.4	13.0	20.1	16.3	15.8	16.4	15.2

주 : 경찰청의 전체소년범 수치와 검찰청의 전체소년범 수치가 다른 것은 검찰단계에서 촉법소년의 수치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자료 : 경찰청(2012~2021), 경찰백서.

마.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선도심사위원회는 소년범의 특성에 맞는 사건처리를 위해 죄질이 경미한 소년범을 대상으로 첩뉴 여부와 선도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결정하여 조기에 낙인효과를 제거하고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2012년 3월부터 학교폭력 자진신고 가해학생 등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훈방·즉결심판 처분을 하기 시작하였고, 2013년부터 모든 소년사건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였다. 2014년부터 선도심사위원회 외부위원에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단체, 의료 시설 등을 참여하도록 하였다. 2020년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460명을 훈방하고, 1,915명을 즉결심판 청구하였으며, 2,428명의 가·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의료·법률·상담 지원 2,641건을 실시하였다.

〈표 9-2-7〉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현황(2015~2020)

(단위 : 건, 명)

구분 \ 연도	개회 횟수	처분 결정				지원 결정							
		계	입건	훈방	즉심	지원 인원			지원 건수				
						계	가해	피해	계	생활	상담	의료	법률
2015	1,602	2,970	273	1,524	1,173	2,376	1,434	942	2,649	572	1,879	126	72
2016	1,550	2,835	205	1,395	1,235	2,310	1,297	1,013	2,581	881	1,579	47	91
2017	1,577	3,726	110	1,712	1,904	2,613	1,657	956	2,779	908	1,712	33	126
2018	1,507	3,401	97	1,474	1,830	2,151	1,221	930	2,317	915	1,277	75	50



연도	구분 개최 횟수	처분 결정				지원 결정							
		계	입건	훈방	즉심	지원 인원			지원 건수				
						계	가해	피해	계	생활	상담	의료	법률
2019	-	3,526	119	1,611	1,796	1,851	842	1,009	2,099	902	1,120	64	13
2020	-	3,501	126	1,460	1,915	2,428	1,329	1,099	2,641	1,077	1,513	35	16

주 : 경찰청의 전체소년범 수치와 검찰청의 전체소년범 수치가 다른 것은 검찰단계에서 촉법소년의 수치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자료 : 경찰청(2016~2021), 경찰백서.

바. 명예경찰소년소녀단 운영

명예경찰소년소녀단은 경찰, 학교, 선도단체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스스로가 각종범죄 및 제반 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봉사활동과 교통질서 등 기초질서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생 중에서 선발하는 제도이다. 1999년 10월 18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명예경찰 포돌이·포순이 소년단'을 발대한 것을 시작으로, 1999년 12월 3일 명예경찰소년단 전국 확대 및 육성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전국 학교로 선발 대상을 확대하여 2016년 전국 1,327개교 15,883명의 명예경찰소년단이 활동하였다. 그러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2017년부터는 명예경찰소년단을 희망하는 경찰서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였고, 명칭을 '명예경찰소년소녀단'으로 변경하였다.

명예경찰소년소녀단은 학교전담경찰과 학부모 순찰대, 교사 등과 합동으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학교 내 취약장소를 순찰하거나, 봉사활동 등 현장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친구 맺기' 또래보호활동을 전개하는 등 또래지킴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0년 156개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3,031명의 학생을 명예경찰소년소녀단으로 선발하였다.

〈표 9-2-8〉 연도별 명예경찰소년소녀단 현황(2011~2020)

(단위 : 개교, 명)

연도	구분	실시학교	명예경찰소년소녀단
2011		1,510	19,250
2012		1,422	16,935

연도	구분	실시학교	명예경찰소년소녀단
2013		1,644	17,853
2014		1,520	17,395
2015		1,431	17,690
2016		1,327	15,883
2017		632	7,606
2018		444	5,648
2019		265	3,556
2020		156	3,031

자료 : 경찰청(2012~2021). 경찰백서.

사. 학교·가정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

경찰청은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선도·지원계획 및 발굴 강화계획을 수립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발굴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년 ‘학교·가정 밖 등 위기청소년 집중발굴기간’을 운영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 5,393명을 발견하여 이 중 5,642건에 대하여 ‘청소년지원센터’ 등 연계하였고, 가정 밖 청소년 1,451명을 발견하여 이 중 1,741건에 대하여 ‘가정 복귀’ 등 연계하였다.

〈표 9-2-9〉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 현황(2017~2020)

(단위 : 명, 건)

구분	발견인원	연계조치건수				
		계	지원센터	학교복귀	청소년 안전망	선도 프로그램
2017	8,607	7,129	5,158	412	876	683
2018	6,753	6,070	4,801	417	185	657
2019	6,335	6,576	5,640	170	281	485
2020	5,393	5,642	4,590	182	393	477

자료 : 경찰청(2018~2021). 경찰백서.

〈표 9-2-10〉 가정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 현황(2017~2020)

(단위 : 명, 건)

구분	발견인원	연계조치건수					가출범	
		계	가정 복귀	쉼터 연계	청소년 안전망	선도 프로그램	개	명
2017	3,655	3,536	3,048	161	131	196	51	254
2018	3,654	3,615	3,223	145	107	140	91	435
2019	1,642	1,812	1,247	233	139	193	108	567
2020	1,451	1,741	1,071	286	252	132	125	674

자료 : 경찰청(2018~2021), 경찰백서.

2. 검찰의 예방활동

가. 우범소년 결연사업

‘우범소년 결연사업’은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5년 11월 1일부터 서울·부산·광주·제주지검 및 산하 지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중, 1995년 12월 6일 국무총리 주관 하에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회의’에서 검찰 추진과제의 하나로 선정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동 사업은 법사랑위원이 교육기관 등의 협조 하에 우범소년과 결연을 맺고,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선도하여 정상적인 학업과 생업에 복귀시킴으로써 소년범죄나 비행은 사전에 방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결연대상자는 학교에서 퇴학·정학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와 폭력서클에 가입하거나 학교 주변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 중심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연대상자는 선도결연회의를 통하여 선정하며, 결연활동 중 소년이 소재불명이 되거나 선도에 불응하여 결연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원 소년부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다.

2020년도 우범소년 결연사업 가운데 선도결연 회의 및 간담회는 817회 개최되었고, 법사랑위원 교육은 79회 실시되었다. 우범소년 중 결연 대상 3,457명을 선정하여 실제로 4,316명과 결연을 맺었다.

〈표 9-2-11〉 연도별 우범소년 결연사업 추진 실적(2011~2020)

(단위 : 회, 명)

연도	구분	선도결연 회의 및 간담회	결연대상 선정인원	결연인원	지역추진 대회	법사량위원 교육
2011		1,721	3,546	3,545	386	1,857
2012		2,206	7,049	7,205	473	2,348
2013		2,221	5,332	7,101	465	1,271
2014		1,956	4,868	5,723	353	401
2015		2,581	5,050	6,032	342	602
2016		2,447	5,925	6,567	349	1,118
2017		2,718	6,129	7,169	372	654
2018		2,387	5,046	5,955	567	432
2019		1,976	4,461	5,263	751	524
2020		817	3,457	4,316	224	79

자료 : 대검찰청(2012~2021), 검찰연감.

나. 학교담당검사제

학교담당검사제는 1995년 11월 27일 대통령의 학교주변 폭력근절지시에 따라, 같은 해 12월 6일 국무총리 주관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검찰의 3대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이후 학원폭력 근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학원폭력방지 및 처리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1996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학교담당검사제는 일정 지역 내의 수개의 중·고교에 대하여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유관기관이나 민간 봉사차원의 학원폭력 예방 및 단속활동과의 유기적인 지원·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예방·선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학교담당검사는 선도보호위원 및 교사선도위원, 학부모 위원 등의 구성원들과 정기 및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원폭력 정보수집 및 예방선도 활동방안을 모색하고, 탈선 초기의 학생 상대 개별면담과 학부모 접촉을 통한 비행의 사전방지, 청소년 범죄 다발지역에 대한 합동순찰, 담당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담당검사의 선도강연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도에 학교담당검사는 4,134회 합동순찰을 실시하였고, 1,223건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3,392명의 우범학생과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395건의 선도강연을 하였다.

〈표 9-2-12〉 연도별 학교담당감사제 활동 실적(2011~2020)

(단위 : 회, 명)

연도	구분	합동순찰	간담회	우범학생 면담인원	선도강연
2011		6,125	1,667	8,971	879
2012		6,632	2,079	15,360	1,904
2013		8,537	1,917	12,750	1,377
2014		7,430	2,259	13,398	1,380
2015		7,464	2,120	8,752	1,501
2016		6,840	2,346	8,310	1,472
2017		8,040	2,387	7,762	1,645
2018		7,472	2,911	7,189	979
2019		8,431	2,130	5,587	1,595
2020		4,134	1,223	3,392	395

자료 : 대검찰청(2012~2021). 검찰연감.

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통상의 기소유예 결정을 함에 있어서 계속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민간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도 도입의 배경은 소년이 성년과 달리 인격형성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감수성이 예민하여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개선의 가능성도 많으므로 죄질이 다소 중하다 하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소년에 대하여는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수용하기보다는 사회에서 덕망과 학식을 갖춘 법사랑위원에게 맡겨 선도·보호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초점이 있다.

1978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소년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처음 시행하였고, 1981년 1월

20일 법무부훈령 제88호 「소년선도보호지침」이 제정되어 전국에 확대 실시된 뒤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현재는 1996년 12월 27일 개정된 법무부훈령 제373호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소년선도보호 방법은 '접촉선도', '원호선도'로 구분할 수 있다. '접촉선도'라 함은 귀주처(歸住處)가 있는 유예소년과 접촉을 갖고 상담·지도 등을 통해 소년의 반사회성을 교정하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 시키며, 정서를 순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선도방법을 말한다. '원호선도'라 함은 귀주처가 없거나, 있더라도 돌아가게 할 곳이 적당하지 않은 유예소년에 대하여 선도보호위원의 주거나 복지시설에서 기거하게 하고, 의·식·주를 제공하면서 접촉선도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1981년 4,070명에 대하여 선도유예를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2020년에는 1,315명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다. 특히 단순 기소유예에 비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검찰단계에서도 일정한 개입이 실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2-13〉 연도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실적(2011~2020)

(단위 : 명, %)

연도	구분	소년사건 처리인원(A)	기소유예(B)	선도조건부 기소유예(C)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비율 (C/B×100)
2011		104,201	41,720	1,363	3.3
2012		118,714	44,349	5,812	13.1
2013		101,148	34,866	4,548	13.0
2014		87,854	28,759	3,473	12.1
2015		88,733	28,333	3,413	12.0
2016		82,277	26,558	3,409	12.8
2017		84,030	25,416	3,495	13.8
2018		75,150	20,237	3,031	15.0
2019		75,197	19,157	3,000	15.0
2020		72,344	15,952	1,315	8.2

자료 : 1) 대검찰청(2012~2021). 검찰연감.
2) 대검찰청(2012~2021). 범죄분석.

기존 검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및 보호관찰소위탁조건부 기소 유예 이외 다양한



조건부 기소유예를 소년범에게 적용함으로써 선도 및 재범방지의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그 종류를 살펴보면,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원에서 전문가를 통해 일정기간 ‘심리검사’, ‘정신교육’, ‘분노 조절 훈련교육’ 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재범방지’, ‘인성개발’ 등의 측면에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소년분류심사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자원봉사 대학생이 범죄청소년과 1:1로 결연하여 상담·스포츠·문화활동·봉사활동 등의 일정한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대상 청소년을 선도하는 ‘멘토 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전문상담가로부터 전문적 상담을 받게 하는 조건으로 소년범을 기소유예 처분하여 청소년 비행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사회봉사활동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등이 있다. 2020년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중 절도가 5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 280명, 폭력 190명, 교통사범 171명, 재산범죄 127명의 순이었다.

〈표 9-2-14〉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죄명별 현황(2013~2020)

(단위: 명)

연도	구분	계	폭력행위 등	절도	강도	강간	교통사범	재산범죄	기타
2013		4,548	1,015	2,068	12	32	424	345	652
2014		3,473	672	1,477	6	12	375	241	690
2015		3,413	664	1,503	1	23	328	325	569
2016		3,409	521	1,314	3	39	368	353	811
2017		3,495	582	1,422	3	8	515	293	672
2018		3,031	571	1,220	2	16	397	217	608
2019		3,000	539	1,182	4	30	401	230	614
2020		1,315	190	543	0	4	171	127	280

자료 : 대검찰청(2014~2021), 검찰연감.

2019년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중 16세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17세, 15세, 18세, 19세, 14세 순으로 높았다.

〈표 9-2-15〉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연령별 현황(2013~2020)

(단위 : 명)

연도 \ 구분	계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13	4,548	649	928	1,122	1,081	607	161
2014	3,473	477	723	874	830	488	81
2015	3,413	341	671	866	780	534	221
2016	3,409	258	492	755	856	643	405
2017	3,495	334	662	877	893	585	144
2018	3,031	329	669	637	655	518	223
2019	3,000	285	541	674	645	573	282
2020	1,315	104	232	319	306	215	139

자료 : 대검찰청(2014~2021). 검찰연감.

2007년 12월 21일, 「소년법」을 일부 개정하여 ‘검사결정전조사제도(「소년법」 제49조의2)’를 도입하여 검사 처분 전에 비행원인을 진단함으로써 비행소년에 대한 교육, 보호자 교육 등을 통해 비행인자를 사전에 제거하여 소년의 교화·개선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3년 5월 8일부터 학교폭력 등 학생사건에 대한 ‘교사의견 청취제도’를 시행하여, 소년사건에 대한 검사 처분 전에 비행원인 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조건부기소유예 제도 등과 연계하여 소년의 교화·개선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선도 또는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소년법」 제49조의3).

라.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1995년 1월 5일, 「갱생보호법」을 폐지하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면서 동법 제15조제3호(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의 실시)에 근거하여 1995년 4월 15일 법무부훈령 제332호 보호관찰소선도위탁규정이 제정·시행된 이래, 현재는 개정된 법무부 훈령 제620호(2008. 6. 3.)에 따라 위탁·시행되고 있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제도는

선도보호위원회에 의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는 달리 보호관찰소의 장이 선도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보호관찰소장은 선도대상자를 담당할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선도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방법은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선도교육·집단치료 또는 상담 등 적절한 지도를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도대상자의 가족, 이웃사람, 친구 등과 접촉할 수 있고, 선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비 보조, 취학·취업 알선, 기타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은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데 반하여, 보호관찰소 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은 소년범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령과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선도가 요구되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호관찰소에서는 2020년 998명으로 대상으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을 실시하였고, 그 중 재범 등으로 위탁이 취소된 인원은 73명이었다.

(표 9-2-16)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2011~2020)

(단위: 명)

연도	구분	기소유예자 전체	선도위탁 상황			
			선도대상자	계속(연장포함)	해 제	취 소
2011		353,564	4,950	6,716	2,833	313
2012		348,146	4,976	7,423	2,912	408
2013		330,407	4,495	7,900	2,439	269
2014		324,748	5,112	4,360	2,638	255
2015		354,370	5,184	4,052	3,098	353
2016		368,001	4,419	2,776	2,087	253
2017		325,215	4,371	2,549	1,679	205
2018		266,032	2,519	2,011	1,162	112
2019		226,842	1,845	1,373	905	100
2020		206,374	998	977	455	73

자료 : 대검찰청(2012~2021). 검찰연감.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3. 법무부의 예방활동

가. 청소년꿈키움센터 운영

법무부는 2007년 7월 23일 부산, 광주, 대전, 청주, 창원, 안산 등 6개 지역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직원 56명을 배치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6월 현재 19개 센터(비직제 1개 기관 포함)를 운영하고 있다. 기관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및 교육대상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고자 2013년 11월부터 대외명칭을 ‘청소년꿈키움센터’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청소년꿈키움센터는 그동안 소년분류심사원과 대행소년원에서 담당하던 부적응학생(일반 학교에서 의뢰)과 초기단계의 비행 청소년(검찰 및 법원 등 사법기관에서 의뢰)에 대한 대안 교육과 비수용 범죄소년에 대한 비행진단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자교육, 일반학생 및 국민에 대한 법교육,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문제 전문가에 대한 전문교육,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무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비행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표 9-2-17〉 청소년꿈키움센터의 주요 임무

구분	기관명	설립일	교육과정
청소년 꿈키움 센터	부산·대전	2007. 7.	청소년꿈키움센터 ※ 설립일 : 부산(07. 7.), 대전(17. 4.) - 상담조사 - 결정 전 조사 - 대안교육 - 보호자교육 - 청소년 심리상담 솔로몬로파크 ※ 설립일 : 대전(07. 7.), 부산(16. 7.) - 법교육 및 법문화 직무연수 -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안산	2007. 7.	
	창원·청주·광주	2007. 7.	
	대구·서울남부·서울북부·인천	2012. 6.	- 상담조사 - 결정 전 조사
	순천·전주·춘천	2013. 11.	- 대안교육
	부산동부·울산·수원	2014. 12.	- 보호자교육
	제주	2016. 5.	- 청소년 심리상담
	천안·의정부	2020. 9.	

주 : 부산·대전센터는 청소년꿈키움센터와 솔로몬로파크 기능 병행.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2021).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청소년꿈키움센터는 2012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2013년 「현장중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이 추진되면서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보호자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가족캠프,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주말 학교폭력 예방캠프, 학교폭력 예방 교원직무연수 등 학생, 보호자,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나. 대안교육 실시

2002년부터 청소년꿈키움센터는 비행초기 단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진단과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는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교장 등이 의뢰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선도처분 특별교육, ② 「소년법」 제49조의3 제2호에 따라 검찰이 의뢰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 ③ 「소년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의뢰한 대안교육명령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강명령, ④ 기타 사회복지시설, 보호관찰소,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서 의뢰한 소년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안교육으로는 진로·성격 등 심리검사, 심성훈련, 체험교육 등 1~5일 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대안교육 수료증을 수여하고 교육결과를 해당학교에 통보하여 학생 생활 지도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학부모에게 적성검사 결과 등 자녀지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해당 지방검찰청과 협의를 통해 기소유예대상자, 선도유예자에 대한 체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비행성의 조기개선과 함께 재비행 방지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 교육은 비합숙 체험교육방식으로 심리검사, 심성훈련 등 1~5일 과정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대안교육을 받는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검찰에서 의뢰된 대안교육대상자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학교외뢰, 법원의뢰 순이다. 2020년에 총 5,491명이 대안교육을 받았으며, 이 중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인해 대안교육을 받은 인원은 1,184명이고, 검찰에서 기소유예되어 대안교육을 받은 인원이 2,975명, 법원에서 보호처분의 일환으로 대안교육을 받은 인원은 774명이다.

〈표 9-2-18〉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 의뢰기관별 실시 현황(2014~2020)

(단위 : 명)

연도 \ 구분	계	학교	검찰	법원	기타
2014	9,563	4,026	4,993	278	266
2015	9,735	4,035	5,123	217	360
2016	11,127	4,824	5,757	255	291
2017	13,578	6,623	5,416	193	1,346
2018	13,801	7,028	4,365	1,090	1,318
2019	13,002	4,930	4,608	2,533	931
2020	5,491	1,184	2,975	774	558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2021).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다. 청소년심리상담실 운영

1996년 2월부터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분류심사업무를 대행하는 4개 소년원에서 청소년 심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심리상담실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능·적성·성격 등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소질과 특성에 맞는 진로지도 지침을 제공, 가정·학교·사회단체 등에서 의뢰한 문제 청소년에 대해서도 비행 성향을 규명하여 구체적인 개선지침을 제시하는 등 청소년문제 전문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심리상담실을 이용한 청소년은 2020년 3,871명이었다.

〈표 9-2-19〉 연도별 청소년심리상담실 운영 현황(2011~2020)

(단위 : 명)

연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인원	7,973	9,445	9,377	10,020	11,046	12,473	12,933	10,868	12,322	3,871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2021).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라. 법교육

법교육은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한국법문화진흥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법무부는

2005년 3단계 5개년 법교육 추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법교육시설 및 법문화 체험관 조성, 법교육 교사 양성,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하고 있다. 특히 2008년 3월 28일 「법교육 지원법」이 제정되어 대국민 법의식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법무부에서는 2019년 청각·시각 장애인을 위해 ‘쉽게 쓴 한국인의 법과 생활’을 수어영상도서로 개발하여, 수어영상 및 디지털 음성서비스를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에서 지원하는 등 수요자별 맞춤형 법교재를 개발하였다. 또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법교육 유관단체와의 협력 및 민간 법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대전에 법 체험기관인 ‘솔로몬로파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부산 솔로몬로파크를 건립하였고, 2022년에는 광주에 솔로몬로파크를 준공하여 개소할 예정이다.

마. 보호자특별교육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는 학교, 법원, 검찰청에서 의뢰한 보호자나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교육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년의 부적응 행동을 이해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울 양육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2020년에 총 3,341명에 대한 보호자 교육이 실시되었고, 그중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경우는 1,398명, 자원에 의한 경우는 1,943명이었다.

〈표 9-2-20〉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자교육 현황(2014~2020)

(단위: 명)

연도	구분	계	보호자특별교육명령(의무)	일반위탁소년 보호자(자원)
2014		9,192	1,237	7,955
2015		8,964	1,432	7,532
2016		9,465	1,871	7,594
2017		6,977	1,388	5,589
2018		7,046	2,497	4,549
2019		7,320	3,455	3,865
2020		3,341	1,398	1,943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2021).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제3장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건처리

소년범죄에 대하여는 일반 형사소송절차에 의한 형사처벌 이외에 비행소년의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한 보호처분 등을 인정하고 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선도·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범죄 소년에 대하여만 형사처벌을 하고, 개선 가능성이 있는 범죄소년에 대하여는 선도·보호 측면에서 교육적인 처우를 실시하고 있으며,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도 가능하다. 비행소년의 처리기관은 경찰, 검찰, 법원 등이 있다.

1. 경찰단계의 사건처리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가 발견되면, 경찰에서는 범죄내용과 신상 관계, 환경 등을 조사하여 가정법원 소년부에 보내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2015년부터 청소년 범죄자 수가 점차 감소하여 2020년에 경찰이 검거한 청소년 범죄자 수는 64,584명이었다.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 범죄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절도범이 17,097명, 폭력범이 15,791명, 강력범이 1,903명이었다.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 강력범죄자 가운데 강간범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9-3-1) 청소년 범죄자 유형별 검거 현황(2011~2020)

(단위 : 명)

연도	구분	계	강력범				절도	폭력	특별법범 등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등				방화
2011		86,643	3,202	12	1,143	1,881	166	32,707	23,797	26,937
2012		107,018	3,243	23	861	2,160	199	37,058	33,351	33,366



연도	구분	계	강력범				절도	폭력	특별법범 등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등				방화
2013		90,694	3,081	21	616	2,303	141	32,819	22,739	32,055
2014		78,794	2,630	33	414	2,026	157	26,209	20,082	29,873
2015		80,321	2,392	18	448	1,830	96	26,100	20,144	31,685
2016		76,356	2,418	19	316	1,936	147	22,589	20,468	30,881
2017		72,752	2,312	17	243	1,933	119	20,032	21,996	28,412
2018		66,259	2,272	9	215	1,939	109	16,957	20,695	26,335
2019		66,204	2,367	19	361	1,888	99	17,151	19,699	26,987
2020		64,584	1,903	9	321	1,474	99	17,097	15,791	29,793

자료 : 경찰청(2012~2021). 경찰백서.

2. 검찰단계의 사건처리

검찰에서는 경찰로 넘겨받은 청소년사건을 범죄혐의가 없거나 죄가 없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 불기소 처분을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52조). 재범가능성이 희박하고 선도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소유에 처분을 하고(「형사소송법」 제247조제1항),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이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소년법」 제49조제1항).

최근 10년간 검찰의 청소년 범죄 처리내역을 보면, 청소년 범죄의 기소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불기소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소년보호송치 비율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청소년 범죄자 52,062명 중 소년보호송치 42.4%, 기소유에 25.0%, 구공판 9.9%, 구약식 4.2%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성인범죄와 비교했을 때 청소년 범죄의 경우 기소율이 낮은 반면에, 기소유에 등 불기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검찰단계에서 소년부송치율과 불기소처분율이 여전히 높다는 것은 검찰단계에서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보다는 다이버전이나 보호처분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표 9-3-2〉 연도별 청소년범죄 처리 현황(2011~2020)

(단위 : 명, %)

연도	계	기 소			불 기 소					소년 보호 송치	가정 보호 송치	성매매 보호 송치	아동 보호 송치	참고인 중지	기소 중지
		소계	구공판	구약식	소계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2011	83,060 (100.0)	4,691 (5.6)	3,025 (3.7)	1,666 (2.0)	46,224 (55.7)	4,151 (5.0)	36,582 (44.0)	272 (0.3)	5,219 (6.3)	30,587 (36.8)	10 (0.0)	7 (0.0)	-	86 (0.1)	1,455 (1.8)
2012	102,871 (100.0)	7,877 (7.7)	4,898 (4.8)	2,979 (2.9)	56,668 (55.1)	6,113 (5.9)	43,013 (41.8)	324 (0.3)	7,218 (7.0)	36,478 (35.5)	21 (0.0)	- (0.0)	-	141 (0.1)	1,686 (1.6)
2013	88,062 (100.0)	8,758 (9.9)	5,293 (6.0)	3,465 (3.9)	47,486 (53.9)	5,925 (6.7)	34,914 (39.6)	202 (0.2)	6,445 (7.3)	29,641 (33.7)	35 (0.0)	2 (0.0)	-	108 (0.1)	2,032 (2.3)
2014	72,964 (100.0)	7,038 (9.6)	4,191 (5.7)	2,847 (3.9)	39,559 (54.2)	5,379 (7.4)	27,601 (37.8)	182 (0.2)	6,397 (8.8)	23,743 (32.5)	50 (0.1)	4 (0.0)	-	130 (0.2)	2,440 (3.3)
2015	56,050 (100.0)	6,252 (11.2)	4,034 (7.2)	2,218 (4.0)	30,198 (53.9)	4,518 (8.1)	19,623 (36.0)	105 (0.2)	5,952 (10.6)	18,216 (32.5)	119 (0.2)	-	-	54 (0.1)	1,211 (2.2)
2016	60,669 (100.0)	6,113 (10.1)	3,755 (6.2)	2,358 (3.9)	32,235 (53.1)	4,815 (7.9)	21,044 (34.7)	136 (0.2)	6,240 (10.3)	20,597 (33.9)	147 (0.2)	-	4 (0.0)	34 (0.1)	1,539 (2.5)
2017	58,218 (100.0)	5,833 (10.0)	3,449 (5.9)	2,384 (4.1)	31,371 (53.9)	4,636 (8.0)	20,108 (34.5)	121 (0.2)	6,506 (11.2)	20,578 (35.3)	136 (0.2)	-	2 (0.0)	29 (0.0)	269 (0.5)
2018	52,278 (100.0)	6,168 (11.8)	3,950 (7.6)	2,218 (4.2)	25,964 (49.7)	4,255 (8.1)	15,939 (30.5)	126 (0.2)	5,644 (10.8)	19,648 (37.6)	131 (0.3)	-	3 (0.0)	27 (0.1)	337 (0.6)
2019	52,973 (100.0)	6,498 (12.3)	4,308 (9.1)	2,190 (4.1)	25,102 (47.4)	4,729 (8.9)	15,129 (28.6)	114 (0.2)	5,130 (9.7)	20,885 (39.4)	177 (0.3)	-	4 (0.0)	26 (0.0)	281 (0.5)
2020	52,062 (100.0)	7,349 (14.1)	5,163 (9.9)	2,186 (4.2)	21,766 (41.8)	4,478 (8.6)	13,032 (25.0)	83 (0.2)	4,173 (8.0)	22,053 (42.4)	180 (0.3)	-	-	22 (0.0)	225 (0.4)

주 : 2020년 검찰처리 총 인원에서 보완수사요구 467명 제외.

자료 : 대검찰청(2012~2021), 범죄분석.

3.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비행진단 및 처우

가. 개요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자질과 비행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어떠한 처분이 적합한가를 분류심사하는 법무부 소속기관이다. 1977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처음 개원하였고, 이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 설치되었다가 2007년 7월 소년보호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서울 소년분류심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류심사원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으로 전환되어 운영 중에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않은 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춘천·제주 등 7개 지역에서는 소년원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소년원이 설치되지 않은 인천·수원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위탁소년의 수용관리와 분류심사업무를 맡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소년의 개체적 원인 규명, 소년비행의 조기발견과 치료, 소년비행의 실증적 요인 규명,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재비행 방지를 목적으로 위탁소년의 요보호성 여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그 결과를 법원 소년부에 보내 조사·심리 시에 참고하도록 하며, 소년원·보호관찰소에 처우지침을 제공하고 보호자에게 사후지도 방법을 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나. 위탁소년의 수용

위탁소년의 수용은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소년부의 위탁결정서에 의한다. 새로 수용된 위탁소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건강진단과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호자에게 수용사실을 통지한다. 위탁소년은 성별, 연령, 비행의 질, 공범 및 질병 유무 등을 고려하여 분류·수용되고, 인권보호와 보건·위생, 비행의 감염방지에 적정을 기함과 동시에 소년들이 교육적 환경에서 안정감을 갖고 생활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년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법원소년부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011년 소년분류심사원의 신수용인원은 6,682명이었고, 이후 증감을 반복하여 2020년 4,297명을 기록하였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표 9-3-3〉 연도별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수용 현황(2011~2020)

(단위 : 명)

연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신수용인원	6,682	6,582	6,711	5,909	6,178	5,408	5,909	5,703	4,955	4,297
1일 평균 수용인원	456	464	471	471	436	398	443	431	396	333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2021),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법무부(2021), 법무연감.

다. 처우·교육활동

위탁소년에 대해서는 성장기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급식관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차림표에 따라 급식하며 피복, 침구류, 세면용품, 학용품 등 생활용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소년원마다 의사와 간호사를 배치하여 위탁소년의 건강관리 및 질병을 치료하고, 시설 내 치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부병원에 통원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면회는 위탁소년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다.

위탁소년의 교육은 언어·행동·예절·규범 등 기초적인 생활지도와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심리극·분노조절훈련·감수성훈련 등 다양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체육활동·시청각교육·독서지도·레크리에이션 등 심성순화 교육과 기독교·천주교·불교·원불교 등 종교별 관계 인사를 초빙하여 신앙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지도층 인사를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하여 위탁 소년의 신상 및 진로문제에 관한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어머니회를 운영하여 무의탁소년 등 불우소년에 대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라. 분류심사

분류심사란, 비행소년의 요보호성 여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교정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밝혀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여기에서 요보호성이란 소년의 성격과 행동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방지할 경우 범죄로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인을 말하며, 요보호성 여부의 판단이 분류심사에서 중요요소가 된다.

분류심사는 심사대상에 따라 ‘수용분류심사’와 ‘외래분류심사’, 실시방법에 따라 ‘일반분류심사’와 ‘특수분류심사’로 구분한다. ‘수용분류심사’는 법원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외래분류심사’는 가정·학교·사회단체 등에서 의뢰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분류심사는 수용된 모든 소년을 대상으로 하되, 문제 또는 비행요인이 비교적 간단한 소년에 대하여 면접조사와 신체의학적인찰, 표준화검사, 자기기록 및 행동관찰 등을 주로 실시하며, 일반분류심사를 한 결과 문제 또는 비행요인이 증대하고 복잡한 소년에 대하여 개별검사와 정신의학적인찰, 자료조회 및 현지조사 등의 특수분류심사를 추가하여 실시한다. 이와 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담당 분류심사관과 심리학·교육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류심사위원회에서 재비행 위험성 정도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처우지침, 예후(豫後) 및 판정 종류 등을 기재한 분류심사 결과를 법원 소년부에 송부함으로써 심리자료로 제공하고, 보호처분 집행기관인 소년원·보호관찰소 또는 위탁소년의 보호자 등에게 지도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2020년에 수용된 소년 중 분류심사를 받은 소년은 4,267명이었다.

〈표 9-3-4〉 연도별 분류심사 실시 현황(2011~2020)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6,007	5,435	6,357	5,543	5,804	5,116	5,614	5,385	4,755	4,267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2021).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마. 소년심판절차 개선

법무부는 청소년 비행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구속송치 대상자 위주로 시행해오던 분류심사 제도를 불구속 송치자를 포함한 모든 소년보호사건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보호소년 상담조사제’와 ‘분류심사관 심리참여제도’를 대법원과 최종 협의를 거쳐 200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1) 보호소년 상담조사제 도입

2003년 7월에 새롭게 도입된 ‘보호소년 상담조사제’는 불구속 송치로 보호자 등에게 위탁되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원 소년부 판사 또는 가정법원 판사가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청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주간에만 3~5일 출석하여 상담과 조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대상청소년의 성격과 행동 특징, 능력과 욕구 등 개인의 자질과 환경적 특성에 대한 조사와 비행원인 규명을 위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담당 소년부 판사에게 심리자료로 송부하는 한편, 보호자에게는 소년의 훈육과 지도지침으로 제공하고 아울러 소년의 비행성을 없애기 위한 ‘특별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시설수용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 모든 소년사건 대상자에 대하여 개인적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처우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판사의 소년사건 심리 시 심층적·과학적 판단에 기여하며, 상담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된 자료를 토대로 보호자에게 자녀의 지도방향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 제도는 대상청소년에게 집단상담, 봉사활동, 체험교육 등을 통한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상담조사제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7개의 대행소년원(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춘천·제주소년원)에서 하고 있으며, 2020년 2,589명에 대해 실시하였다.

〈표 9-3-5〉 연도별 청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현황(2011~2020)

(단위: 명)

연도	구분	합계	분류심사	상담조사	결정전 조사
2011		11,429	6,007	5,296	126
2012		10,590	5,435	5,148	7
2013		10,739	6,357	4,382	-
2014		9,804	5,543	4,261	-
2015		9,924	5,805	4,119	-
2016		9,134	5,116	3,993	25
2017		11,222	5,614	4,179	-
2018		8,609	5,385	3,224	-
2019		7,176	4,755	2,421	-
2020		6,855	4,266	2,589	-

주 : 상담조사 인원에는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꿈키움센터, 소년원의 실적이 포함됨.

자료 : 법무부(2021). 법무연감.

2) 분류심사관 심리참여제도

분류심사관 심리참여제도는 소년사건 심리과정에서 각 소년부판사가 분류심사결과 통지서에 의문이 있거나 그 보고서만으로는 소년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소년의 성행과 비행 환경 등을 정확히 알고 있는 담당 분류심사관을 법정에 참여시켜 직접 의견을 듣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대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 사법참여 방안’의 일환이며, 소년분류심사원의 국가 후견자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소년법 이념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4. 소년법원에서의 사건처리

소년법이나 법원 조직상 소년법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소년법원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를 일컫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소년법원은 경찰, 검찰, 법원에서 보내온 소년사건에 대해 비행원인을 조사·심리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대구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울산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외에, 의정부·춘천·청주·창원·전주·제주에 지방법원 소년부 등이 있다. 소년보호사건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전문 인력과 시설이 확보된 가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꾸준히 가정법원이 확대되어 왔다.

소년법원에서는 소년의 성격·환경·비행경위·재비행성 여부에 대한 조사관의 의견과 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관의 심사의견,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조언 등을 참고하여 소년의 보호처분을 결정한다. 2020년도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된 인원은 38,590명으로, 검사로부터 송치된 인원이 24,872명(64.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찰서장으로부터 송치된 인원이 11,063명(28.6%), 다른 법원 소년부에서 이송된 인원이 1,362명(3.5%), 형사법원에서 송치된 인원이 1,023명(2.7%)이었다. 보호자 등의 통고에 의해 접수된 인원도 매년 증가하여 2020년 270명(0.7%)을 차지하였다.

〈표 9-3-6〉 연도별 소년보호사건 접수 인원 및 접수구분 인원(2011~2020)

(단위 : 명, %)

연도 \ 구분	계	법원 송치	검사 송치	경찰서장 송치	타법원 소년부에서 이송	보호자등에 의한 통고
2011	46,497 (100.0)	2,417 (5.2)	32,803 (70.5)	9,401 (20.2)	1,818 (3.9)	58 (0.1)
2012	53,536 (100.0)	2,848 (5.3)	36,133 (67.5)	12,799 (23.9)	1,588 (3.0)	168 (0.3)
2013	43,035 (100.0)	2,695 (6.3)	29,284 (68.0)	9,500 (22.1)	1,368 (3.2)	188 (0.4)
2014	34,165 (100.0)	1,610 (4.7)	24,110 (70.6)	7,104 (20.8)	1,146 (3.4)	195 (0.6)
2015	34,075 (100.0)	1,494 (4.4)	24,527 (72.0)	6,756 (19.8)	989 (2.9)	309 (0.9)
2016	33,738 (100.0)	1,357 (4.0)	24,319 (72.1)	6,788 (20.1)	915 (2.7)	359 (1.1)
2017	34,110 (100.0)	1,124 (3.3)	24,014 (70.4)	7,743 (22.7)	876 (2.6)	353 (1.0)
2018	33,301 (100.0)	954 (2.9)	22,578 (67.8)	8,335 (25.0)	1,027 (3.1)	407 (1.2)
2019	36,576 (100.0)	876 (2.4)	23,511 (64.3)	10,460 (28.6)	1,285 (3.5)	444 (1.2)
2020	38,590 (100.0)	1,023 (2.7)	24,872 (64.5)	11,063 (28.6)	1,362 (3.5)	270 (0.7)

자료 : 법원행정처(2012~2021). 사법연감.

소년법원의 판사는 검찰로부터 송부된 사건기록과 조사관의 조사의견을 종합하여 심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심리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소년보호사건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큰 차이는 없으나 보호처분 비율은 불처분이나 심리불개시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20년 불처분결정률은 7.5%, 심리불개시율은 20.7%인 반면, 보호처분을 결정한 비율은 66.8%였다.



〈표 9-3-7〉 연도별 소년보호사건의 처분 현황(2011~2020)

(단위 : 명, %)

연도	계	보호처분	불처분	심리불개시	검사송치	기타
2011	48,713 (100.0)	35,072 (72.0)	2,579 (5.3)	7,905 (16.2)	621 (1.3)	2,536 (5.2)
2012	50,771 (100.0)	36,150 (71.2)	2,278 (4.5)	9,209 (18.1)	693 (1.4)	2,441 (4.8)
2013	45,393 (100.0)	31,952 (70.4)	2,663 (5.9)	8,065 (17.8)	534 (1.2)	2,179 (4.8)
2014	34,600 (100.0)	24,529 (70.9)	2,543 (7.3)	5,669 (16.4)	456 (1.3)	1,403 (4.1)
2015	35,920 (100.0)	25,911 (72.1)	2,763 (7.7)	5,703 (15.9)	450 (1.3)	1,093 (3.0)
2016	33,142 (100.0)	23,526 (71.0)	2,650 (8.0)	5,547 (16.7)	313 (0.9)	1,106 (3.4)
2017	34,474 (100.0)	24,383 (70.7)	2,986 (8.7)	5,676 (16.5)	370 (1.1)	1,060 (3.1)
2018	34,276 (100.0)	24,494 (71.5)	2,805 (8.2)	5,590 (16.3)	1,082 (3.2)	1,082 (3.2)
2019	34,890 (100.0)	24,131 (69.2)	2,557 (7.3)	6,556 (18.8)	351 (1.0)	1,295 (3.7)
2020	38,293 (100.0)	25,579 (66.8)	2,886 (7.5)	7,948 (20.7)	364 (1.0)	1,516 (4.0)

자료 : 법원행정처(2012~2021). 사법연감.

2007년 「소년법」 개정으로 현재 10가지의 보호처분이 운용되고 있다. 기존에 보호관찰과 병합되었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이 독립처분으로 활용되고, 1개월 이내 소년원송치제도가 신설되었으며, 단기보호관찰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10가지 보호처분 중 실제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것은 보호자감호위탁과 보호관찰, 소년원송치 등이다. 2020년에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38,293명) 중 보호처분을 받는 비율은 66.8%(25,579명)이다. 보호처분 가운데 50% 이상이 1호 보호자감호위탁과 보호관찰을 병과하는 형태로 받고 있고, 소년원 송치가 6.3% 정도에 이르고 있다. 2020년 소년법원에서 처리한 보호처분의 현황을 보면, 1·2호 병합처분이 13.8%로 가장 높고, 1·2·4호 병합처분의 비율이 13.1%, 1호 처분이 12.3%로 나타났다.

〈표 9-3-8〉 소년보호처분의 유형별 현황(2013~2020)

(단위 : 명, %)

구분(호)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31,952 (100.0)	24,529 (100.0)	25,911 (100.0)	23,526 (100.0)	24,383 (100.0)	24,494 (100.0)	24,131 (100.0)	25,579 (100.0)
1	3,822 (12.0)	2,960 (12.1)	3,771 (14.6)	3,142 (13.4)	3,135 (12.9)	3,104 (12.7)	3,103 (12.8)	3,054 (12.3)
1+2	3,522 (11.0)	2,420 (9.9)	2,609 (10.1)	2,554 (10.9)	2,504 (10.3)	2,963 (12.1)	3,143 (13.2)	3,531 (13.8)
1+2+3	646 (2.0)	445 (1.8)	581 (2.2)	557 (2.4)	727 (3.0)	776 (3.2)	574 (2.4)	776 (3.0)
1+2+4	4,020 (12.6)	3,163 (12.9)	3,696 (14.3)	3,255 (13.8)	3,025 (12.4)	3,022 (12.3)	2,844 (11.8)	3,361 (13.1)
1+2+5	1,496 (4.7)	1,026 (4.2)	803 (3.1)	1,009 (4.3)	969 (4.0)	886 (3.6)	1,048 (4.3)	1,293 (5.1)
1+2+3+4	1,557 (4.9)	1,160 (4.7)	1,627 (6.3)	1,272 (5.4)	1,393 (5.7)	1,262 (5.2)	838 (3.5)	940 (3.7)
1+2+3+5	1,901 (5.9)	1,541 (6.3)	1,571 (6.1)	1,413 (6.0)	1,519 (6.2)	1,238 (5.1)	1,269 (5.3)	1,432 (5.6)
1+3	1,297 (4.1)	982 (4.0)	1,133 (4.4)	851 (3.6)	851 (3.5)	754 (3.1)	759 (3.1)	743 (2.9)
1+3+4	1,868 (5.8)	1,844 (7.5)	1,832 (7.1)	1,194 (5.1)	1,086 (4.5)	958 (3.9)	915 (3.8)	940 (3.7)
1+3+5	1,843 (5.8)	1,535 (6.3)	1,082 (4.2)	891 (3.8)	802 (3.3)	754 (3.1)	847 (3.5)	859 (3.4)
1+4	2,746 (8.6)	2,354 (9.6)	2,299 (8.9)	1,923 (8.2)	1,508 (6.2)	1,447 (5.9)	1,517 (6.3)	1,769 (6.9)
1+5	900 (2.8)	742 (3.0)	647 (2.5)	522 (2.2)	505 (2.1)	443 (1.8)	627 (2.6)	467 (1.8)
2	107 (0.3)	70 (0.3)	16 (0.1)	59 (0.3)	159 (0.7)	274 (1.1)	187 (0.8)	294 (1.2)
3	125 (0.4)	92 (0.4)	49 (0.2)	87 (0.4)	67 (0.3)	175 (0.7)	200 (0.8)	208 (0.8)
4	91 (0.3)	63 (0.3)	40 (0.2)	154 (0.7)	270 (1.1)	279 (1.1)	231 (1.0)	264 (1.0)
4+6	22 (0.1)	39 (0.2)	46 (0.2)	33 (0.1)	41 (0.2)	32 (0.1)	52 (0.2)	102 (0.4)

구분(호)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5	41 (0.1)	32 (0.1)	19 (0.1)	27 (0.1)	80 (0.3)	81 (0.3)	109 (0.4)	81 (0.3)
5+6	1,150 (3.6)	834 (3.4)	883 (3.4)	1,063 (4.5)	986 (4.0)	1,229 (5.0)	1,440 (6.0)	1,508 (5.9)
5+8	1,879 (5.9)	1,257 (5.1)	1,316 (5.1)	1,012 (4.3)	1,099 (4.5)	1,194 (4.9)	1,036 (4.3)	1,005 (3.9)
6	13 (0.0)	9 (0.0)	2 (0.0)	5 (0.0)	7 (0.0)	5 (0.0)	5 (0.0)	4 (0.0)
7	149 (0.5)	183 (0.7)	141 (0.5)	105 (0.4)	198 (0.8)	230 (0.9)	269 (0.7)	189 (0.7)
8	3 (0.0)	-	5 (0.0)	3 (0.0)	-	9 (0.0)	25 (0.0)	6 (0.0)
9	1,153 (3.6)	812 (3.3)	794 (3.1)	770 (3.3)	972 (4.0)	842 (3.4)	821 (3.4)	750 (2.9)
10	1,252 (3.9)	813 (3.3)	866 (3.3)	770 (3.3)	756 (3.1)	779 (3.2)	780 (3.2)	823 (3.2)
병과 기타	349 (1.1)	153 (0.6)	83 (0.3)	855 (3.6)	1,724 (7.1)	1,758 (7.2)	1,429 (5.9)	1,180 (4.6)

자료 : 법원행정처(2014~2021). 사법연감.

5. 형사법원에서의 사건처리

소년법원이 보호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이거나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형사법원으로 이송된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19세 미만 청소년의 제1심 소년형사사건의 재판 현황을 살펴보면, 소년부송치 처분을 제외하고 부정기형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년형사사건에서 사형과 무기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 징기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 2020년에 종국처리된 소년범 2,841명 중 사형이 선고된 예는 없었고, 무기형과 징기형이 선고된 사례도 없었다. 소년부로 송치되던 인원이 1,419명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정기형을 받은 인원이 626명(22.0%), 집행유예를 받은 인원이 367명(12.9%) 순으로 나타났다.

〈표 9-3-9〉 연도별 제1심 소년형사사건 재판 현황(2011~2020)

(단위 : 명, %)

구분 연도	계	사형	무기	정기형	부정기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 유예	무죄	소년부 송치	기타
2011	3,499 (100.0)	-	-	14 (0.4)	492 (14.1)	610 (17.4)	133 (3.8)	24 (0.7)	10 (0.3)	1,958 (56.0)	258 (7.4)
2012	4,422 (100.0)	-	-	7 (0.2)	804 (18.2)	557 (12.6)	118 (2.7)	28 (0.6)	20 (0.5)	2,561 (57.9)	327 (7.4)
2013	4,126 (100.0)	-	-	3 (0.1)	676 (16.4)	407 (9.9)	15 (0.4)	3 (0.1)	12 (0.3)	2,689 (65.2)	321 (7.8)
2014	3,574 (100.0)	-	-	14 (0.4)	634 (17.7)	405 (11.3)	110 (3.1)	15 (0.4)	7 (0.2)	2,082 (58.3)	307 (8.6)
2015	3,516 (100.0)	-	-	7 (0.2)	630 (17.9)	440 (12.5)	102 (2.9)	18 (0.5)	18 (0.5)	1,981 (56.3)	320 (9.1)
2016	3,242 (100.0)	-	-	1 (0.0)	697 (21.5)	395 (12.2)	94 (2.9)	15 (0.5)	8 (0.2)	1,721 (53.1)	311 (9.6)
2017	2,716 (100.0)	-	1 (0.0)	4 (0.1)	502 (18.5)	386 (14.2)	109 (4.0)	20 (0.7)	19 (0.7)	1,428 (52.6)	247 (9.1)
2018	2,837 (100.0)	-	-	-	626 (22.1)	367 (12.9)	77 (2.7)	14 (0.5)	15 (0.5)	1,419 (50.0)	319 (11.2)
2019	3,036 (100.0)	-	-	4 (0.1)	712 (23.5)	546 (18.0)	78(집유2) (2.7)(0.1)	4 (0.1)	10 (0.3)	1,386 (45.7)	294 (9.7)
2020	2,841 (100.0)	-	-	-	626 (22.0)	367 (12.9)	77(집유4) (2.7)(0.1)	14 (0.5)	15 (0.6)	1,419 (50.0)	319 (11.2)

자료 : 법원행정처(2012~2021), 사법연감.

제4장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교정교육

1. 소년원의 교정교육

가. 임무

소년원은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비행청소년을 수용·보호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과교육,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약물남용·발달장애·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가 필요한 소년에 대한 의료 및 재활교육과 심리치료·사회봉사활동 등 인성교육을 병행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1942년 처음 개원할 당시에는 교육보다 수용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두 차례에 걸친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꾸준히 높여왔다.

1988년에는 소년원 학생이 학령기 청소년이란 점을 강조하여 소년원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규 학교체제로 전환함으로써 학업연계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1999년에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직업능력배양과 안정된 사회정착을 위하여 교과교육 중심의 소년원 교육체제를 실용외국어와 컴퓨터 중심의 특성화교육체제로 혁신하였다.

1958년 공포된 「소년법」에 의하여 소년원에서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고,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에게는 종전에 재학했던 학교의 학교장 명의의 졸업장을 주고, 중도에 출원하는 학생은 일반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시켜 학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였다. 교육과정은 크게 일반 중·고등학교와 동일한 과정의 일반교육과정과 전체 교육시간의 70~80%를 실용외국어와 컴퓨터 등의 특성화 교과로 운영하는 특성화교육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영농, 축산, 원예로 시작된 소년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973년 안양소년원이 ‘법무부 제1공공직업훈련소’로 지정되고, 뒤이어 1974년 서울소년원 등 전국의 9개 소년원이 ‘법무부 제2~10공공직업훈련소’로 인가되면서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 현재 서울·부산·광주·안양소년원에서

자동화용접, 카일렉트로닉스, 증장비, 건축환경설비, 제과제빵, 피부미용, 헤어 디자인, 사무자동화, 영상미디어 등 10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도의 및 종교교육으로 출발한 소년원 인성교육은 2000년대 들어와서 국토순례, 야영훈련, 문화예술 교육, 공연관람, 사회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과 함께 학생 개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비행특성 등을 고려한 집단지도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에는 소년원 학생의 성행개선을 위하여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대구·춘천 소년원을 인성교육 전담소년원으로 개편하고, 2007년 이를 제주소년원으로 확대하여 현재 3개 소년원에서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담소년원 이외 소년원에서도 인성교육을 정규과정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1999년 교육현장의 자료와 전문가의 임상경험을 토대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라는 교재를 발간한 이래 2007년까지 총 30여 종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1996년 (구)대전소년원을 ‘약물남용원생 전담소년원’으로 지정·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 중 약물남용,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의료·재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부터는 대덕소년원이 법원으로부터 소년의료보호시설로 지정받으면서 「소년법」에 따라 병원, 요양소 위탁 처분을 받은 소년 까지 수용하여 의료·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9년 3월부터는 대덕소년원을 ‘대산학교’로 개교하고 8호 처분자의 경우 개방형 단기집중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5월 대덕소년원을 대전소년원으로 직제상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9년 7월 1일 부터는 청주소년원의 직제를 개정하여 여자소년원으로 개칭하고, 안양소년원에서 여자소년원생 중 8호, 9호 처분 대상자를 청주로 인수 하였다. 소년원은 서울·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안양·청주·춘천·제주 등 전국에 10개가 설치되어 있다. 이와 같이 소년원에서는 과거의 수용 위주의 소극적인 정책에서 탈피하여 수요자의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부합되는 적극적·개방적인 교육행정을 전개하고 있다.

2018년부터 증원된 감호전담인력(2018년 38명, 2019년 34명, 2020년 42명)을 활용하여 주간 교육 전담팀과 야간·휴일 수용전담팀(제4부제)을 별도 구성하여 운영하는 ‘교육·수용전담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8년 부산과 광주 2개 소년원에 우선 도입한 데 이어, 2019년 서울, 전주, 청주, 안양 4개 소년원에, 2020년 대구, 대전, 춘천 3개 소년원에 확대 실시하여 전문화된 처우 제공 등으로 교정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표 9-4-1〉 소년원 학교 명칭 및 교육과정

구분	기관(학교명)	대 상	교 육 과 정
서울경기관	서울소년원 (고봉중·고등학교)	9호,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 한식조리, 헤어디자인)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안양소년원 (정심여자중고등학교)	9호,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女) • 직업능력개발훈련(피부미용, 제과제빵)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중부권	대전소년원 (대산학교)	7호, 9호,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재활교육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
	청주소년원 (미평여자학교)	8호, 9호,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호(女)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예술분장, 커피바리스타, 헤어디자인, 제과제빵)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호남권	전주소년원 (송천중고등학교)	8호, 9호,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호(男)교육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광주소년원 (고령정보산업학교)	9호,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능력개발훈련(자동차정비, 에너지실비,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
영남권	대구소년원 (읍내정보통신학교)	9호,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 커피바리스타, 케이크디자인)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
	부산소년원 (오륜정보산업학교)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능력개발훈련(용접, 제과제빵, 헤어디자인)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
강원권	춘천소년원 (신촌정보통신학교)	9호,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능력개발훈련(헤어디자인, 그래픽디자인, 디저트)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
제주권	제주소년원 (한길정보통신학교)	8호, 9호,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호(제주지역男) 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 골프매니지먼트)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

자료 : 법무부(2021). 법무연감.

나. 보호소년의 수용

법원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자는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우범소년)이다.

소년법 개정 이전의 처우과정은 단기과정(6호), 일반과정(7호)으로 구분되었다. 단기과정은 6개월 이하를 수용하고, 일반과정은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A과정,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의 B과정, 15개월 이상 19개월 미만의 C과정으로 세분화하였다. 그러나 소년법 개정 이후의 소년원 처우 과정은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7호), 1개월 이내 과정(8호), 단기과정(9호), 장기과정(10호)으로 구분하여, 「소년법」 제32조제1항, 제7호 내지 제10호 처분에 따라 달리하고 있다. 7호 처분의 경우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의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것으로, 현재 대덕소년원에서 그 임무를 전담하고 있는바 위탁기간은 6개월이며 소년부 판사의 결정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호 처분의 경우는 1개월 이내로 소년원에 송치하고, 9호 처분의 경우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호 처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20년 소년원 수용기간별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6개월 미만 수용자가 65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2개월 이상자가 394명,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자가 257명, 3개월 미만자가 232명 순으로 많았다. 평균 수용기간은 2011년 4.66개월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0년에 6.9개월을 차지하였다.

〈표 9-4-2〉 연도별 소년원 수용기간별 인원(2011~2020)

(단위 : 명, 월)

연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2,716	3,399	3,005	2,531	2,171	2,138	2,275	2,328	1,943	1,546
1월 미만	1,370	1,680	1,348	969	883	773	902	830	16	11
3월 미만	76	125	96	80	62	62	47	64	705	232
6월 미만	649	796	894	769	670	676	777	773	535	652
6월 이상 12월 미만	160	209	232	208	181	189	179	214	300	257
12월 이상	461	589	435	505	375	438	370	447	387	394
평균 수용기간	4.66	4.66	4.90	5.18	4.80	5.35	4.85	5.1	5.6	6.9

자료 : 법무부(2021). 법무연감.

보호소년은 교육과정을 마치면 퇴원 또는 가퇴원을 하게 되는데 퇴원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퇴원은 관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가퇴원의 적부를 심사·결정하고, 6개월~2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소년원에 수용된 신수용 보호소년 추세를 보면 2013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20년에 1,637명을 기록하였다. 1일 평균 수용인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20년 927명을 기록하였다.

〈표 9-4-3〉 연도별 보호소년 수용 현황(2011~2020)

(단위 : 명)

연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신수용인원	2,960	3,429	3,037	2,363	2,288	2,096	2,450	2,199	2,077	1,637
1일 평균 수용인원	1,264	1,390	1,380	1,236	1,112	1,131	1,166	1,078	946	927

자료 : 법무부(2021). 법무연감.

다. 소년원 교육

소년원 교육혁신의 결과, 지난 1999년 9월 이후 일반학교 학생이 참가한 ‘전국 중·고등부 영어 말하기 대회’ 및 ‘컴퓨터 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소년원학생이 각종 수상을 하였으며, 컴퓨터 및 각종 기능 자격을 취득하였다. 최근 10년간 소년원생의 자격 취득 현황을 보면 증감을 반복하긴 하나, 최근에 컴퓨터 등의 분야에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직업훈련분야인 자동차정비, 용접, 헤어 디자인 등의 직종에서 전문기능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0년도에 자격증을 취득한 소년원생은 총 3,025명이고, 이 중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은 793명, 일반기능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은 838명이었다.

보호소년들이 임시퇴원 후 완전한 사회복귀를 실현하고 더 이상 재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 소년원에 취업 및 사후정착지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취업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 하는 등 민·관 합동의 총체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181명이 취업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였다.

소년원에서는 지속적인 교과교육을 통해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20년 상급 학교에 진학한 인원은 고등학교 66명, 대학교 64명 등 총 130명이었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표 9-4-4〉 연도별 소년원 학생 자격 취득 현황(2011~2020)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2,980	3,125	2,687	3,301	3,106	3,681	4,710	4,762	4,188	3,025
외국어	41	48	-	-	-	-	-	-	-	-
컴퓨터	1,642	1,581	1,292	1,590	1,288	1,415	1,524	1,341	1,181	793
일반기능	670	900	774	947	992	1,238	1,524	1,634	1,478	838
기타	627	596	621	764	826	1,028	1,662	1,787	1,529	1,394

자료 : 법무부(2021). 법무연감.

〈표 9-4-5〉 연도별 소년원 학생 취업 현황(2011~2020)

(단위 : 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취업인원	261	313	273	327	234	423	417	352	303	181

자료 : 법무부(2021). 법무연감.

〈표 9-4-6〉 연도별 상급학교 진학 현황(2011~2020)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11	137	115	134	154	159	167	165	104	130
대학교	22	45	45	71	91	93	88	86	55	64
고등학교	89	92	70	63	63	66	79	79	49	66

자료 : 법무부(2021). 법무연감.

라. 소년원생을 위한 사회복귀 지원

소년원생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가정관을 운영하여 단절된 가족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 소년원에 16평 규모의 가정관을 신축하여 학생과 가족이 함께 2~3일간 생활하며,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여 심리적 안정 하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국 10개 소년원에서 총 176명에 대하여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이 실시되었는데, 보호자 좌담회 93명, 가족합숙제 7명, 1일 생활제 60명, 가정관 면회제 16명이었다.

전국 소년원에서는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출원 후 취업 및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한 상담과 취업 알선, 구인업체 방문, 취업후견인 지정 지원, 산업체 현장 실습 등을 하고 있다. 2020년에 취업후견인 4명, 취업알선 187명, 산업체 현장실습 14명, 구인업체 방문 12명 등 총 217명에 대하여 취업지원이 이루어졌다

소년원 출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2001년 5월부터 기숙사 형태의 청소년자립생활관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자립생활관은 경기를 시작으로 2005년에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안양(여자 전용) 등 5개 지역에 추가 설치되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전주와 춘천지역에 대리부모가 24시간 상주하며 함께 생활하는 그룹홈 형태의 자립생활관을 신축하였다. 8개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총 1,853명이 신규 입주하였고, 취업알선, 학업연계, 심리치료, 가족찾기, 결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2020년 전국 청소년자립생활관의 입주정원은 총 130명이었고, 12월 31일 현재 91명이 입주하고 있다.

2014년 12월에는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숙형 직업훈련학교인 YES센터를 신축하였고, 2019년 2월에 YES센터를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로 명칭 변경하여, 자동차 정비, 용접, IT, 골프매니지먼트,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등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2018년 12월에는 여자 위기청소년에 대한 안정적 사회정착과 자립을 지원하는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가 설립되어 자격증 취득반과 취업대비반을 운영하고 있다.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의 정원은 2020년 기준 40명이었고, 12월 31일 현재 입주인원은 20명이다.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의 정원은 20명이나, 12월 31일 현재 입주인원은 12명이다.

마. 출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보호소년이 22세가 되면 퇴원하도록 하고, 22세에 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용 중인 학생이 교과성적이 양호하며 교정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년원장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퇴원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교정성적이 양호한 보호소년 중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년원장은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 입시퇴원 심사를 신청하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는 보호소년의 인격, 교정성적, 생활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부를 심사·결정한 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임시퇴원을 시키고 있다. 그러나 임시퇴원생이 임시퇴원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비행의 우려가 현저한 때에는 임시퇴원 허가를 취소하고 재수용하여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2020년 소년원 출원 사유별 인원 현황을 보면, 임시퇴원이 5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퇴원이 41.0%였다.

〈표 9-4-7〉 소년원 출원사유별 인원(2011~2020)

(단위 : 명, %)

출원사유 연도	계	퇴원	임시퇴원	처분변경·취소	기타
2011	2,761 (100.0)	1,790 (64.8)	926 (33.5)	33 (1.2)	12 (0.4)
2012	3,399 (100.0)	2,151 (63.3)	1,195 (35.2)	38 (1.1)	15 (0.4)
2013	3,085 (100.0)	1,919 (62.2)	1,086 (35.2)	60 (1.9)	20 (0.6)
2014	2,608 (100.0)	1,442 (55.3)	1,089 (41.8)	54 (2.1)	23 (0.9)
2015	2,242 (100.0)	1,283 (57.2)	889 (39.7)	56 (2.5)	14 (0.6)
2016	2,216 (100.0)	1,192 (53.8)	946 (42.7)	51 (2.3)	27 (1.2)
2017	2,349 (100.0)	1,329 (56.6)	946 (40.3)	44 (1.9)	30 (1.3)
2018	2,416 (100.0)	1,259 (52.1)	1,069 (44.2)	68 (2.8)	20 (0.8)
2019	2,058 (100.0)	1,060 (51.5)	884 (43.0)	93 (4.5)	21 (1.0)
2020	1,675 (100.0)	687 (41.0)	859 (51.3)	93 (5.6)	36 (2.1)

주 : 기타는 유죄판결, 사망, 이탈 등 인원.

자료 : 법무부(2021). 법무연감.

2. 소년교도소의 교정교육

소년교도소는 소년범죄자를 성인범죄자와 분리처우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소년교도소에 수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교도소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분리된 장소에 수용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3조). 다만, 소년 교도소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소년교도소는 2004년까지는 천안교도소와 김천교도소에서 나누어서 수용하고 있었으나, 2006년 1월 법무부예규에 의해 천안교도소는 20세 미만 남자소년 수형자를 전담 수용하였다. 그러나 교정본부 직제 개편으로 2009년 12월 31일부터 소년범죄자는 김천소년교도소에 수용되고 있다.

가. 수용 현황

최근 10년 동안 소년교도소 수형인원은 등락을 거듭하면서 2010년 146명이었던 것이 2020년 115명이 수용되어 있다. 최근 청소년 인구 수 감소와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의 자제 경향으로 인해 수형인원이 감소하고 있다.

〈표 9-4-8〉 연도별 소년교도소 수용 현황(2011~2020)

(단위 : 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7	2019	2020
수형인원	114	170	152	131	130	150	128	105	128	116	115

자료 : 법무부(2021). 법무연감.

최근 10년간 소년수형자의 죄명별 현황을 보면 절도·살인·강도 등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에, 강간 등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도 소년수형자 중 절도범과 강간범 등이 각각 21명(18.3%), 강도범과 폭력·상해범이 각각 13명(11.3%)이었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표 9-4-9〉 청소년 수형자 죄명별 인원(2011~2020)

(단위 : 명, %)

연도 죄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14 (100.0)	170 (100.0)	152 (100.0)	131 (100.0)	130 (100.0)	150 (100.0)	128 (100.0)	105 (100.0)	116 (100.0)	115 (100.0)
절도	26 (22.8)	42 (24.7)	43 (28.3)	34 (26.0)	26 (20.0)	23 (15.3)	24 (18.8)	17 (16.2)	10 (8.6)	21 (18.3)
사기· 횡령	-	2 (1.2)	1 (0.7)	2 (1.5)	10 (7.7)	2 (1.3)	12 (9.4)	12 (11.4)	9 (7.8)	8 (7.0)
폭력· 상해	5 (4.4)	17 (10.0)	17 (11.2)	5 (3.8)	10 (7.7)	27 (18.0)	4 (3.1)	3 (2.9)	11 (9.5)	13 (11.3)
강간 등	33 (28.9)	54 (31.8)	46 (30.3)	34 (26.0)	27 (20.8)	35 (23.3)	44 (34.4)	24 (22.9)	26 (22.4)	21 (18.3)
강도 등	18 (15.8)	24 (14.1)	16 (10.5)	11 (8.4)	14 (10.8)	19 (12.7)	8 (6.3)	5 (4.8)	14 (12.1)	13 (11.3)
살인	10 (8.8)	11 (6.5)	7 (4.6)	6 (4.6)	5 (3.8)	5 (3.3)	4 (3.1)	4 (3.8)	3 (2.6)	1 (0.8)
과실범	1 (0.9)	2 (1.2)	-	2 (1.5)	2 (1.5)	2 (1.3)	-	1 (1.0)	4 (3.4)	1 (0.8)
기타	21 (18.4)	18 (10.6)	22 (14.5)	37 (28.2)	36 (27.7)	37 (24.7)	32 (25.0)	39 (37.1)	39 (33.6)	37 (32.2)

주 : 폭력에는 폭행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포함됨.

자료 : 법무부(2021). 법무연감.

청소년 수형자의 형명을 보면 유기징역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금고형은 거의 없다. 최근 10년간 청소년수형자의 형기를 보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 '5년 이상'의 징역형, '1년 미만' 징역형 순으로 높았다. 대체로 장기징역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단기징역형의 비율은 늘어가는 추세였으나, 2012년 이후 장기징역형의 비율이 소폭 상승하였다. 2020년도 1년 이상 유기징역형의 비율이 47.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년 이상 유기징역형이 35.7%, 5년 이상 유기징역형이 13.1% 순으로 나타났다.



〈표 9-4-10〉 청소년수형자 형명·형기별 인원(2011~2020)

(단위: 명, %)

형명·형기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14 (100.0)	170 (100.0)	152 (100.0)	131 (100.0)	130 (100.0)	150 (100.0)	128 (100.0)	105 (100.0)	116 (100.0)	115 (100.0)
영 고 영	무기	-	-	-	-	-	-	-	-	-	-
	20년 이상	1 (0.9)	2 (1.2)	4 (2.6)	1 (0.8)	-	-	-	1 (1.0)	-	-
	10년 이상	4 (3.5)	5 (2.9)	4 (2.6)	3 (2.3)	2 (1.5)	2 (1.3)	-	-	1 (0.9)	-
	5년 이상	12 (10.5)	13 (7.6)	10 (6.6)	11 (8.4)	12 (9.2)	13 (8.7)	9 (7.0)	13 (12.4)	21 (18.1)	15 (13.1)
	3년 이상	38 (33.3)	44 (25.9)	39 (25.7)	42 (32.1)	48 (36.9)	56 (37.3)	47 (36.7)	33 (31.4)	45 (38.8)	41 (35.7)
	1년 이상	48 (42.1)	94 (55.3)	87 (57.2)	67 (51.1)	56 (43.1)	69 (46.0)	64 (50.0)	55 (52.4)	45 (38.8)	55 (47.8)
	1년 미만	10 (8.8)	12 (7.1)	8 (5.3)	7 (5.3)	11 (8.5)	8 (5.3)	8 (6.3)	2 (1.9)	4 (3.4)	2 (1.7)
	6개월 미만	1 (0.9)	-	-	-	1 (0.8)	1 (0.7)	-	1 (1.0)	-	2 (1.7)
영 고 영	3년 미만	-	-	-	-	-	-	-	-	-	-
	1년 미만	-	-	-	-	-	1 (0.7)	-	-	-	-

자료: 법무부(2021). 법무연감.

나. 출소

청소년수형자는 해당 형기가 종료하면 출소하게 되지만, 형기가 종료하기 전에도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이 무기형의 경우 5년,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1/3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소년법」 제65조). 청소년 수형자 중 가석방된 자의 비율은 2011년 40.8%에서 2015년 22.9%로 감소하는 추세였다가, 최근에 다시 증가하여 2020년에는 43.2%를 차지하였다.

〈표 9-4-11〉 청소년 수형자 석방사유별 인원(2011~2020)

(단위 : 명, %)

연도	석방사유	계	가석방	형기종료	기타
2011		157 (100.0)	64 (40.8)	75 (47.8)	18 (11.5)
2012		115 (100.0)	56 (48.7)	45 (39.1)	14 (12.2)
2013		122 (100.0)	53 (43.4)	45 (36.9)	24 (19.7)
2014		124 (100.0)	33 (26.6)	68 (54.8)	23 (18.6)
2015		118 (100.0)	27 (22.9)	78 (66.1)	13 (11.0)
2016		97 (100.0)	31 (32.0)	53 (54.6)	13 (13.4)
2017		113 (100.0)	28 (24.8)	64 (56.6)	21 (18.6)
2018		99 (100.0)	26 (26.3)	38 (38.4)	35 (35.4)
2019		97 (100.0)	35 (36.1)	43 (44.3)	19 (19.6)
2020		81 (100.0)	35 (43.2)	37 (45.7)	9 (11.1)

주 : 1) 집행종료결정은 단기만료 후 장기도래 전의 석방을 의미함.
 2) '기타'는 특별사면, 형집행정지, 사망, 노역종료 등을 포함함.
 자료 : 법무부(2021). 법무연감.

3. 보호관찰소의 교정교육

가. 개요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조사,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등에 관련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된 법무부 소속 국가기관이다.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교도소,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보내지 않고 일정기간 준수 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사회 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원호를 받게 하거나,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봉사를 하게 하거나,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자의 성행을 교정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최신 형사정책 수단이다. 1989년 7월 1일부터 소년법에 대하여 최초로 시행된 보호관찰은 제도의 실효성이 인정되어 성폭력사범(1994년), 성인형사범(1997년), 가정폭력사범(1998년), 성매매사범(2004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제도(2008년)로 까지 점차 그 대상이 확대되어 왔다.

전체 보호관찰 실시인원 중 청소년 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편이나, 청소년 대상자의 높은 변화가능성 및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다 더 집중적인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대상자들이 범죄로부터 벗어나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우수자원과 연계하여 재범방지 전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보호관찰의 재범방지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고자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보호관찰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조직

보호관찰행정 중앙조직으로는 인사 및 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있다. 2020년 말 기준 18개 보호관찰소, 39개 보호관찰지소, 2개 위치추적 관제센터, 5개의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다. 보호관찰 실시

청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에 의한 보호처분 대상자, 「형법」 제62조의2에 의한 집행유예 조건부 보호관찰을 부과받은 청소년 대상자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는데, 2020년 현재 청소년 보호관찰 인원은 39,291명으로, 전체 보호관찰 중 청소년 보호관찰이 차지하는 비율은 17.3%를 차지하고 있다.

- 제 1 부
- 제 2 부
- 제 3 부
- 제 4 부
- 제 5 부
- 제 6 부
- 제 7 부
- 제 8 부
- 제 9 부
- 제 10 부
- 부 록

〈표 9-4-12〉 연도별 청소년 보호관찰 실시 현황(2011~2020)

(단위 : 명, %)

연도 \ 구분	전체 보호관찰	청소년 보호관찰	청소년 보호관찰 비율
2011	179,767	70,549	40.0
2012	178,199	71,760	40.3
2013	175,318	65,815	37.5
2014	184,362	57,064	31.0
2015	199,713	51,978	26.0
2016	227,141	49,687	21.9
2017	240,073	47,493	20.0
2018	227,733	45,364	19.9
2019	223,072	40,587	18.2
2020	227,020	39,291	17.3

자료 : 법무부(2012~2021), 법무연감.

청소년 보호관찰 실시 현황을 보면 소년법에 근거한 보호관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조건부 기소유예의 한 유형으로 실시되는 선도위탁의 비율도 높은 편이다. 2020년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가운데 소년보호처분이 51,28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임시퇴원이 15,293명, 치료감호법에 의한 보호관찰이 4,403명, 선도위탁이 1,821명, 집행유예 796명 순이다. 최근 10년간 변화를 보면 집행유예자에 대한 보호관찰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에,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나 임시퇴원자에게 실시되는 보호관찰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9-4-13〉 연도별 청소년 보호관찰 실시 현황(2011~2020)

(단위 : 명)

연도 \ 구분	계	형법			소년법		가정 폭력법	성 폭력법	성 매매법	선도 위탁	성 구매자 교육	벌금 미납	아청법	아동 학대법	치료 감호법
		선고 유예	집행 유예	가석방	보호 처분	임시 퇴원									
2011	70,546	-	1,679	44	60,116	1,650	3	236	11	6,694	9	50	54	-	-
2012	71,756	1	1,365	51	61,850	2,009	10	193	1	6,172	9	34	61	-	-



구분 연도	계	형법			소년법		가정 폭력법	성 폭력법	성 매매법	선도 위탁	성 구매자 교육	벌금 미납	아청법	아동 학대법	치료 감호법
		선고 유예	집행 유예	가석방	보호 처분	임시 퇴원									
2013	65,813	1	1,073	45	55,724	2,091	13	153	1	6,585	10	50	67	-	-
2014	57,064	-	1,025	28	45,831	2,043	28	145	5	7,774	3	85	97	-	-
2015	51,978	1	801	21	42,318	1,732	31	118	7	6,714	2	91	142	-	-
2016	49,687	2	731	12	38,967	1,726	61	105	8	7,864	17	67	122	5	-
2017	47,493	5	709	13	38,675	1,807	55	107	12	5,894	11	68	129	5	3
2018	45,364	6	666	12	58,302	16,271	40	104	12	4,173	5	56	173	3	5
2019	40,587	3	755	19	34,842	1,787	61	127	7	2,750	3	37	185	3	3
2020	39,291	1	796	17	51,287	15,293	48	114	4	1,821	3	26	172	1	4,403

자료 : 법무부(2012~2021), 법무연감.

보호관찰 기간 중 청소년 대상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의 법정 준수사항¹⁾ 및 외출제한명령 등 법원 및 심사위원회에서 부과한 특별준수사항을 지키며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청소년대상자와의 초기면담,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일반 대상자, 주요 대상자, 집중 대상자 등으로 분류하고, 분류등급에 기초하여 차별화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최근에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통제를 위해 출석지도 위주의 보호관찰 방식을 탈피하여 주거지 방문, 생활 근거지에서의 면접 등 현장 중심의 적극적·역동적 보호관찰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11년부터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청소년대상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년 전담 직원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사회자원 연계를 통한 특화된 처우와 집중 감독을 실시하는 등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보호관찰관은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는 등 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형의 집행 등 불이익 처분 가능성을 경고하고, 계속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구인하고 유치한 후 보호처분 변경, 집행유예 취소, 가석방·임시퇴원 취소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실시한다. 그러나 보호관찰기간 중 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또는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부정기형 종료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처우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통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해 전국 57개 보호관찰(지)소에서 각 지역사회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특성별 재범방지 전문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사회봉사명령을 통하여 범죄에 대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배상, 범죄에 대한 속죄의식을 유도하는 등 교육적 효과를 목표로 한다. 청소년 대상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주로 처벌적 효과보다는 교육적 효과에 중점을 두고 노인, 장애인 등 생활복지시설에서 사회봉사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여 봉사체험을 통해 범죄에 속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년법」 개정에 따라 소년에게 단독 사회봉사명령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사회봉사명령의 부과 연령은 14세로 낮아졌으며, 사회봉사명령 시간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문화되었다(「소년법」 제33조제4항). 2020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사회봉사명령은 6,292명에게 실시되었는데, 이 중 보호관찰과 병과하여 부과받은 청소년은 4,004명, 사회봉사명령만 단독으로 명령받은 청소년은 2,288명이었다.

수강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시간 동안 강의, 체험학습, 심신훈련, 봉사활동 등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수강명령을 통해 대상자가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이나 행동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의 교육과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있다. 특히 대상자의 범죄내용에 따라 약물 오·남용 방지교육, 알코올남용 방지교육, 정신·심리치료교육, 성폭력방지교육, 준법운전강의, 가정폭력 방지교육 등 적합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8년 「소년법」 개정에 따라 소년에게 단독 수강명령결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수강명령 부과 연령은 12세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수강명령 시간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다(「소년법」 제33조제4항). 2020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강명령 집행된 인원은 총 6,724명이었는데, 이 중 보호관찰과 함께 부과된 청소년은 4,143명이었고, 수강명령만 단독으로 명령받은 청소년은 2,581명이었다.



〈표 9-4-14〉 청소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부과 형태(2011~2020)

(단위 : 명)

연도	구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계	보호관찰부	단독명령부	계	보호관찰부	단독명령부
2011		300	255	45	139	114	25
2012		10,347	7,482	2,865	13,792	9,339	4,453
2013		10,606	7,291	3,315	10,176	7,088	3,088
2014		9,442	6,017	3,425	7,297	4,991	2,306
2015		8,677	5,641	3,036	6,056	4,250	1,806
2016		7,616	4,973	2,643	5,587	3,999	1,588
2017		8,321	5,465	2,856	6,139	4,446	1,693
2018		7,845	5,111	2,734	5,952	4,151	1,801
2019		6,787	4,359	2,428	5,182	3,355	1,827
2020		6,292	4,004	2,288	6,724	4,143	2,581

자료 : 법무부(2012~2021), 법무연감.

마. 판결전조사, 결정전조사 및 환경조사

판결전조사는 법원이 형사 피고인(성인 및 소년)에 대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을 조건으로 한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명하기 위하여 판결 전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요청함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범죄의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의 제반사항에 관해 사실조사를 하는 것이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이 제도는 보호 관찰처분의 적합성 판별과 법원의 적정판결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청소년에 대한 판결전조사는 2014년 676건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 384건 실시하였다.

판결전조사 이외에도 법원은 「소년법」 제12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등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에 대해 결정전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즉, 보호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호처분의 결정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소년법」 개정에 따라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 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등에 대해 조사를 명할 수 있는 ‘검사결정전조사제도’가 신설되었다(「소년법」 제49조의2). 청소년 보호 사건에 대한 결정전조사는 2014년 8,154건에서 2020년 7,644건으로 감소하였다.

환경조사는 교도소, 소년원 등에 수용되어 있는 소년수용자, 보호감호소의 감호처분자에 대한 범죄의 동기 및 현재의 환경을 조사하는 것으로 교정 교육자료와 가석방·임시퇴원·가출소 등의 심사자료, 그리고 보호관찰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내용은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수용 전의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생계대책 등이며, 면접, 사실조회, 자료 분석 등의 기법이 사용된다. 환경조사 결과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보호관찰소장은 본인, 가족, 관계인의 동의 또는 협력을 얻어 수용자의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한다. 소년원에 의뢰된 환경조사는 2014년 1,488건에서 증감을 반복하다 2020년 1,351건으로 나타났다.

〈표 9-4-15〉 연도별 청소년 대상 판결(결정)전조사, 검사 결정전조사 및 환경조사 접수 현황(2014~2020)

(단위 : 건)

구분 \ 연도	판결전조사	법원 결정전조사	검사 결정전조사	환경조사
2014	676	8,154	5,818	1,488
2015	698	8,847	3,553	1,486
2016	592	8,046	3,761	1,473
2017	476	7,795	2,967	1,851
2018	513	8,601	1,225	1,472
2019	557	7,578	528	1,430
2020	384	7,644	642	1,351

주 : 법원 결정전조사는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결정전조사를 말함.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2021).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제10부 요약

제10부에서는 '청소년정책 추진 인프라'에 대해 다룬다. 청소년시설은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보호시설로 구분된다.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되는데, 청소년수련시설에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이 포함된다. 청소년이용시설에는 문화시설, 과학관, 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회복지관, 그리고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둔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청소년활동과 관련되어 설치된 시설이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중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설치·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복지시설로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시설로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는 청소년보호·재활센터가 있다.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하여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시설·단체 관련기관 종사자를 총칭한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 관련 분야의 경력·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한다.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상담실무 경력이나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100시간 이상의 연수를 마친 자이다. 지속적인 청소년지도자 양성이 이루어짐에 따라, 2021년을 기준으로 누적된 청소년지도자 양성 인원은 청소년지도사는 총 62,337명, 청소년상담사는 총 30,313명에 달한다.

대표적인 청소년 관련 단체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있으며, 행정기관으로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과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관련 부서 등이 존재한다. 그 중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는 청소년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의 협의·조정, 청소년정책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각각의 설립목적에 맞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으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있으며, 청소년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수행, 청소년정책 평가 및 자문·지원,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 정책 및 연구자료 제공 등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으로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대학원에 청소년 관련 학과나 전공을 둔 학교는 2021년 현재 전국 13개 시·도, 총 56개교에 달하고 있으나, 최근 학생 수 감소와 대학구조조정으로 인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국제협의체로서 세계 각국의 청소년 연구개발기관 간 정보 및 학술교류 확대를 통하여 서로 협력하고자 세계청소년 연구개발협의회(World Associ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Youth: WARDY)가 설립되어 2021년 현재 11개국 18개 기관 및 1개 국제학회가 참여하고 있다.

2021년 청소년정책 본예산은 약 2,344억 원이며, 추경은 약 2,357억 원으로 본예산에서 약 13억 원이 증액되었다. 이 예산은 청소년정책 기반강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청소년유해환경개선 및 피해예방,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청소년정책관기본경비, 청소년 참여지원,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매체활용능력증진 및 역기능해소,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청소년 치료재활센터운영에 사용되고 있다.

제10부

청소년정책 추진 인프라

제1장 청소년시설

제2장 청소년지도자

제3장 청소년 단체

제4장 청소년 관련 행정기관

제5장 청소년 관련 연구·개발기관

제6장 청소년정책 재정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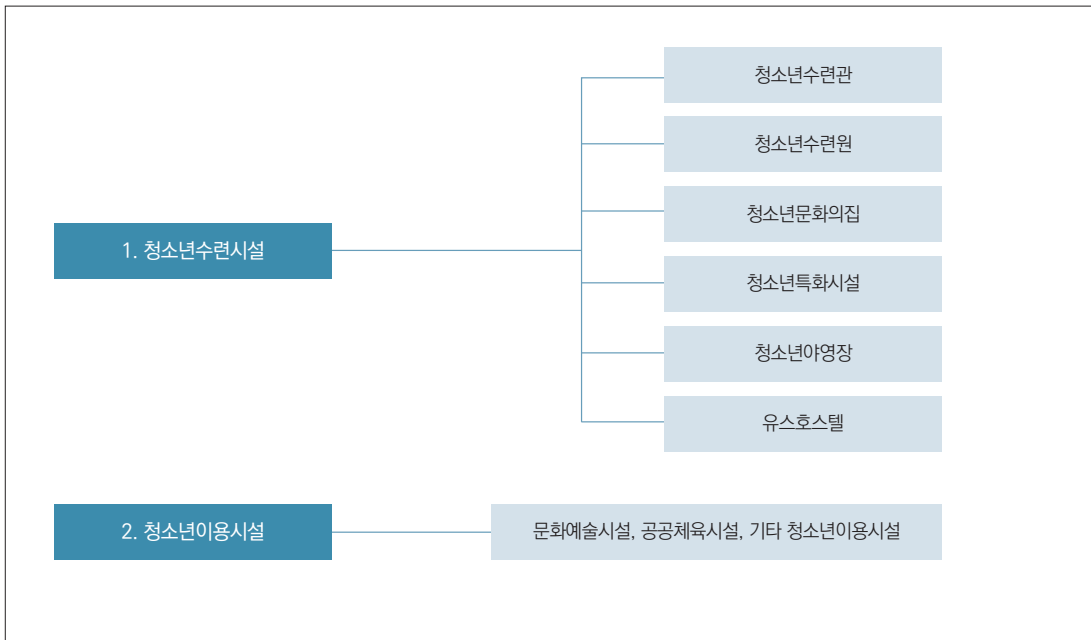
10

제1장 청소년시설

1.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서는 청소년 활동시설의 종류를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의 민간분야도 활동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가능하지만, 민간의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림 10-1-1] 청소년 활동시설의 종류



자료 : 여성가족부(2021).

가. 청소년수련시설

1) 수련시설 현황

청소년수련시설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 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은 기능이나 수련활동 및 입지적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전에는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리고 유스호스텔로 구분되어 왔으나, 2005년부터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을 시설과 역할에 따라 구분하면,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의미한다. ‘청소년수련원’은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청소년문화의집’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청소년특화시설’은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을 의미한다. ‘청소년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활동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을,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숙박체제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 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992년 이전에는 수련시설이 150여 개에 불과하였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기준 813개의 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표 10-1-1〉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총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계	813	195	314	154	33	103	14
공공	622	193	310	62	19	25	13
민간	191	2	4	92	14	78	1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표 10-1-2〉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총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계	813	195	314	154	33	103	14
서울	70	32	23	3	0	4	8
부산	22	8	9	3	1	1	0
대구	19	5	8	2	0	2	2
인천	20	8	6	2	0	4	0
광주	16	5	9	1	0	0	1
대전	14	4	8	2	0	0	0
울산	12	3	7	1	1	0	0
세종	5	2	3	0	0	0	0
경기	166	38	73	32	8	14	1
강원	76	16	33	13	3	10	1
충북	43	6	15	17	1	4	0
충남	48	11	15	12	3	7	0
전북	57	11	22	13	3	7	1
전남	58	9	23	13	5	8	0
경북	62	16	18	13	2	13	0
경남	75	18	18	23	4	12	0
제주	50	3	24	4	2	17	0

주 : 국립청소년시설(5개)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충청남도 천안시),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강원도 평창군), 국립청소년우주센터(전라남도 고흥군), 국립청소년해양센터(경상북도 영덕군),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전라북도 김제시).

자료 : 여성가족부(2021).

2) 수련시설의 설치

가) 중앙정부의 수련시설 설치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시설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및 ‘국립청소년우주센터’, ‘국립청소년 농생명센터’, ‘국립청소년 해양센터’를 건립·운영 중이며, 2021년에는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를 준공하여 2022년 개원할 계획이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수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및 연수, 국내·외 청소년교류 및 수련시설 간의 네트워크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수련시설이다.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면 독립기념관 내(동곡)에 부지 540,641㎡, 연면적 35,401㎡ 내외 규모로 약 6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1년 6월에 준공되었다.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은 자연권 청소년수련활동의 시범적 운영 및 총괄·지원을 위한 자연권 수련 시설로서, 수련시설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수련활동 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에 부지 483,818㎡, 연면적 22,348㎡ 규모에 약 2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998년 10월에 준공되었다.

국립청소년우주센터는 우주분야에 대해 전문화·특성화된 수련시설로서 청소년 우주체험 활동의 장을 해외에서 국내로 전환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우주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건립된 국립수련시설이다.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에 부지 320,757㎡, 연면적 13,711㎡ 규모의 우주체험관, 우주생활관 등을 약 4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0년 7월에 준공하였다.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는 농업생명체험에 대해 전문화·특성화된 수련시설로서 생명과학·농업 기술·생태환경의 특화된 체험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건립된 국립수련시설이다.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에 부지 38,806㎡, 연면적 11,893㎡ 규모의 농·생명 실험시설 등을 약 2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3년 7월에 준공하였다.

국립청소년해양센터는 해양환경체험에 대해 전문화·특성화된 수련시설로서 해양자원 개발 및 기술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건립된 국립수련시설이다.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에 부지 50,169㎡, 연면적 13,664㎡ 규모의 해양환경체험시설 등을 약 372억 원의 민간 자본을 투입하여 2013년 7월에 준공하였다.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는 산림생태체험에 대해 전문화·특성화된 수련시설로서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대응한 에너지, 환경, 산림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의 장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건립된 국립수련시설이다.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에 부지 106,222㎡, 연면적 8,572㎡ 규모의 온실체험관, 환경실험실 등을 약 2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1년 7월에 준공하였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수련시설 설치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많은 생활권 시설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1990년부터 지방양여금이 청소년시설 건립에 사용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에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었으며,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의한 지원으로 건립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주로 생활권수련시설로 행정구역별로 1개소씩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에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하며, 읍·면·동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씩 설치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

2019년까지 여성가족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련시설 신규건립과 더불어 기존 시설의 기능보강을 지원하여, 2017년도에는 51개소 신규건립, 79개소 기능보강, 2018년도에는 49개소 신규건립, 74개소 기능보강, 2019년에는 42개소 신규건립, 70개소 기능보강을 지원하였다. 2020년부터는 지방재정분권 실현을 목적으로 수련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 사업 예산은 지자체로 이양되어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다) 수련시설 설립 사전검토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르면 국립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련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 입지조건이나 내부구조, 설계사항 등 건립의 타당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 중 청소년 및 청소년 전문가의 참여비율을 각각 5분의 1이상으로 해야 한다.

3) 수련시설 운영지원

정부에서는 2006년도부터 정책적으로 수련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주요 구조부의 균열, 내구성 저하 등의 위험사항, 석축, 옹벽, 담장 및 부대시설의 안전성, 전기, 기계, 소방 및 냉·난방 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기타 관리 주체의 안전의식 및 재난 관리 체계 구축 여부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였으며,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설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제고하였다.

특히, 2014년 7월부터는 개정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에 따라 수련시설에 대한 감독 기관의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가 의무화(「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의3, 제19조의2)되었다. 그리고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안전관련 전문 기관과 연계한 분야별 종합 안전점검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을 통하여 시설운영 전반사항에 대하여

시설 종류별 2년 주기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21년에는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을 대상으로 종합 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였고, 2020년에는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유스호텔, 청소년야영장)을 대상으로 종합 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강화되어 시설 붕괴 우려 등 안전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의 운영 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리·감독 주체의 안전관리와 수련시설 운영주체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유지되고 있다.

나. 청소년이용시설

1) 청소년이용시설 개념과 유형

청소년이용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닌 시설이지만, 설치 목적의 범위 내에서 청소년 활동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청소년이용시설로는 ①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② 「과학관 육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③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④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⑤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⑥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⑦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 ⑧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고수부지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로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 여가선용을 위한 이용에 적합한 시설 등이 해당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이용시설 중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청소년이용 권장 시설로 지정하여 다른 청소년이용시설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청소년이용시설 현황

가) 문화시설

문화예술시설로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국가가 건립한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국립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이 있으며, 각 지역별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등의 시설이 있다. 문화공간은 공연시설(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등),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시설(도서관, 문고), 지역문화 복지시설(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문화보급전수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등으로 분류된다.

나) 과학관

과학관 중 대표적인 이용시설로는 국립중앙과학관과 국립서울과학관이 있다. 국립중앙과학관의 상설전시관에는 4개 분야 약 4,100여 점의 전시품이 전시되고 있다. 이 밖에 탐구관, 천체관, 영화관, 특별전시관, 야외전시장 등을 갖추고 있다. 국립서울과학관은 상설전시관, 특별전시관, 영화관, 과학교실, 세미나실, 놀이 및 휴식 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다) 체육시설

우리나라의 체육시설은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로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정부는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생활체육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이 집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과 전문선수의 육성을 위한 전문체육시설의 건설을 지원해 왔으며, 각종 국제경기대회 등의 개최를 계기로 국제수준의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종류로는 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동네운동장, 길거리농구대, 시·군 기본체육시설 등이 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02-2100-6266

2. 청소년보호·복지시설

가. 청소년보호시설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재활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시설은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2003년 9월부터 운영된 ‘청소년보호 종합지원센터(The Youth Center)’가 있다.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에서는 가정과 학교에서 학대와 폭력을 받는 청소년 및 가출청소년, 성범죄 피해 청소년, 임금체불 등 근로현장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 청소년, 약물남용 청소년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피해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지역별로 활동하는 NGO와 경찰, 행정당국 간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전개하였으며, 2004년에는 가출청소년과 성매매 구조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들의 긴급구조와 일시보호를 위한 드롭인센터(Drop-in center)를 개설하였다. 2005년부터는 서울지역에서만 부분적으로 운영하던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부산, 광주, 경기, 경남 등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지역단위에서도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2011년 「청소년 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재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변경되었다.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해매체 및 환경에 대한 보호와 인터넷 게임 중독 등에 대한 보호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 대해 상시적으로 전문적·효과적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설치유기관인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을 2014년 8월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에서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정도에 따라 1주, 2주, 3주, 4주 과정으로 차별화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집단상담, 가족상담 및 대안활동, 관계증진활동 등을 통해 참가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을 해소하고 올바른 이용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에 대한 보호·상담 및 치료·재활을 지원하는 기숙형 청소년치료재활시설인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2012년 10월 경기도 용인에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1개소를 추가 건립하여 2021년 11월 개원했다.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기과정(디딤과정)은 12주간이며 전문상담, 심리치료, 대안교육, 진로탐색 및 대인관계 기술 등 사회적응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청소년 보호법」에 명시된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보호시설로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청소년지원시설’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규정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등이 있다. 그리고 상담 시설로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명시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등이 있다.

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서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를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1) 청소년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쉼터의 주요기능으로는 가정 밖 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청소년의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지원활동,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에 관한 활동 등이 있다.

청소년쉼터는 9~24세의 청소년들을 입소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호기간은 쉼터유형에 따라 일시 7일 이내, 단기 3개월(최장 9개월) 이내, 중장기 3년(필요시 1년 연장)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1992년 최초로 서울 YMCA에 청소년쉼터를 설치·지원하였으며, 1996년 이후 광역시 중심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2021년 국가에서는 전국 총 134개소 쉼터의 운영을 지원 중이며,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굴·긴급구조 및 초기개입으로 신속한 가정 및 사회복귀를 돕는 거리상담 전문인력 및 야간 시간대 청소년의 연계 의뢰 및 자해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야간보호상담원을 배치·지원하고 있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일정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회복지원시설에서 생활하여 지원을 받았음에도 자립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로서, 2012년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전부개정에 따라 청소년 복지 시설의 한 유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2018년부터 서울, 인천, 경기 총 4개소에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하였으며, 2021년 현재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충남에 총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최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의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청소년 시설에서는 보호, 치료, 교육, 자립 등에 대한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청소년의 성장·발달과정에 맞는 보다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치료·재활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정서적·행동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심리상담 및 치료, 보호, 자립지도, 교육 등 종합적·전문적 치유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해 거주형 치유기관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를 2012년 12월에 개원하였다.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의 입교대상자는 ADHD, 우울증, 불안장애, 품행장애 등 정서적·행동적 장애를 가진 만 9~18세 청소년이고, 입·퇴교판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입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개원 이후 2021년까지 총 7,509명의 청소년이 장·단기 치료·재활 서비스를 지원받았으며(’20년 197명, ’21년 251명), 이중 상당수가 정서적 안정감이 향상되고 문제행동이 감소되어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1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를 추가 개원하여 2021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 정식 운영한다.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는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에 대한 보호·상담 및 치료·재활 지원뿐만 아니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는 복합시설로서 운영한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지역 수요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호남권역에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1개소를 추가 건립할 예정이다. 2022년 예산(설계비)을 반영하고 건립사업을 추진한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을 감호위탁 기간 동안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2016년 11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그동안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청소년을 위해 민간 차원(일명 ‘청소년 회복센터’)에서 시설이 운영되어 왔는데, 법적근거의 마련을 통해 해당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여건이 마련되었고, 2019년에는 최초 국비 확보를 통해 종사자 대상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었으며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경남, 제주에 총 15개소의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주요기능은 처분 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지원, 심리 지원, 학업·진로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해, 보호 소년들의 재범 방지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며, 향후 시설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운영 서비스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 보호 서비스 수준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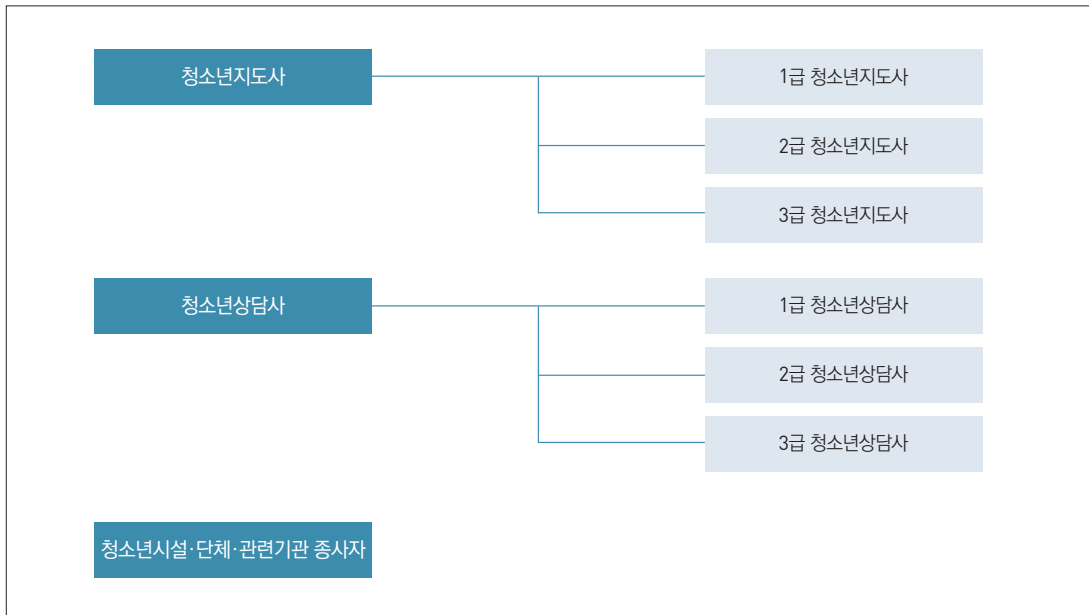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7, 6278~9

제2장 청소년지도자

1. 청소년지도자의 정의 및 유형

‘청소년지도자’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총칭한다. 국가 전문 자격인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2021년까지 총 62,337명이 배출되었으며,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도 26,364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림 10-2-1] 청소년지도자의 분류



자료 : 여성가족부(2021).

2. 청소년지도사

가.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체계적인 청소년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춘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이 필요하다. 청소년지도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성을 위해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1993년부터 국가공인 청소년 지도사를 양성해 오고 있다. 청소년지도사는 1, 2, 3급으로 구분되며, 청소년 관련 분야의 경력·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한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역·국가 간 교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예술활동 등을 지도한다.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기준과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10-2-1〉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 기준

등급	응시자격 기준
1급 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급 청소년지도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4.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등급	응시자격 기준
3급 청소년지도사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자료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

〈표 10-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

구분	검정과목	검정방법	
1급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 청소년지도자론	주·객관식 필기시험	
2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객관식 필기시험	면접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험 면제)
3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활동,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객관식 필기시험	면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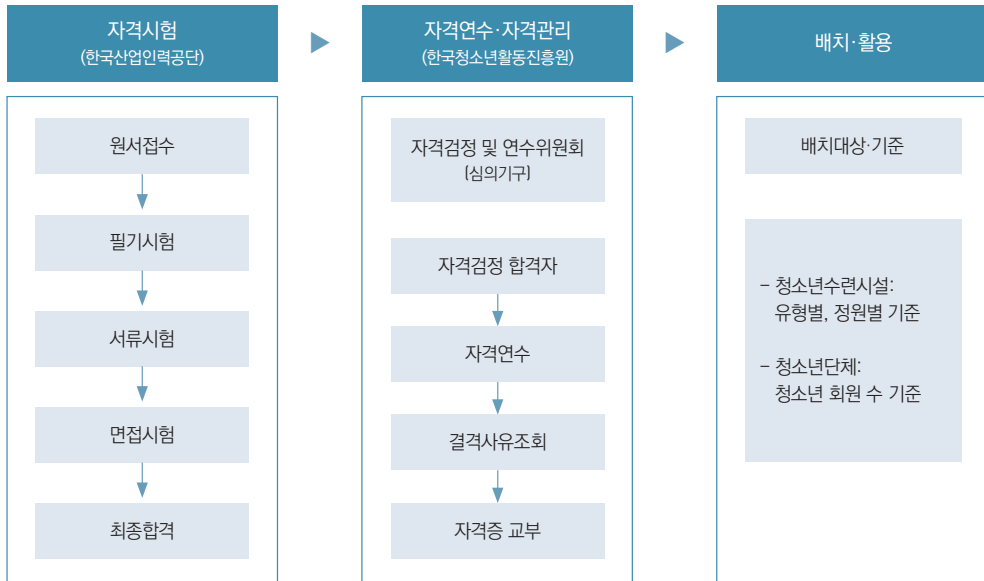
주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과 관련된 전공과목의 인정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함.

자료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제20조제3항 관련).

나.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청소년지도사 양성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연수를 실시한 후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체계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0-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체계도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합격 기준은 필기시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한다. 또한 2008년 1월부터는 2급 자격기준 중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와, 3급 지도사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는 해당 급수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는 30시간 이상으로 하며, 자질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다. 청소년지도사 양성실적

청소년지도사 양성계획에 따라 1993년부터 2021년까지 1급 청소년지도사 2,151명, 2급 청소년지도사 45,089명, 3급 청소년지도사 15,097명 등 총 62,337명의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를 배출하였다. 2021년도의 경우 총 4,317명의 청소년지도사를 배출하였는데 이 중 여성이 3,065명으로

71.0%를 차지하고 있으며 1급은 179명, 2급은 3,404명, 3급은 734명이었다. 연도별 청소년지도사 양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0-2-3〉 청소년지도사 양성 현황

(단위: 명)

연도별	계	1급		2급		3급		남		여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계	62,337	2,151	3.4%	45,089	71.8%	15,097	24.8%	18,215	29.2%	44,122	70.8%
2021	4,317	179	4.1%	3,404	78.9%	734	17.0%	1,252	29.0%	3,065	71.0%
2020	4,245	107	2.5%	3,294	77.6%	844	19.9%	1,172	27.6%	3,073	72.4%
2019	3,929	135	3.4%	2,966	75.5%	828	21.1%	1,114	28.4%	2,815	71.6%
2018	3,872	64	1.7%	3,024	78.1%	784	20.2%	1,092	28.2%	2,780	71.8%
2017	3,781	51	1.3%	3,032	80.2%	698	18.5%	1,032	27.3%	2,749	72.7%
2016	4,096	76	1.9%	3,346	81.7%	674	16.5%	1,137	27.8%	2,959	72.2%
2015	4,062	28	0.7%	3,275	80.6%	759	18.7%	1,062	26.1%	3,000	73.9%
2014	106	-	-	62	58.5%	44	41.5%	25	23.6%	81	76.4%
2013	3,837	41	1.1%	3,041	79.3%	755	19.7%	935	24.4%	2,902	75.6%
2012	3,262	8	0.2%	2,502	76.7%	752	23.1%	620	19.0%	2,642	81.0%
2011	3,051	82	2.7%	2,262	74.1%	707	23.2%	606	19.9%	2,445	80.1%
2010	3,295	53	1.6%	2,374	72.0%	868	26.3%	634	19.2%	2,661	80.8%
2009	2,931	34	1.2%	2,165	73.9%	732	25.0%	556	19.0%	2,375	81.0%
2008	2,744	27	1.0%	2,086	76.0%	631	23.0%	463	16.9%	2,281	83.1%
2007	909	31	3.4%	695	76.5%	183	20.1%	295	32.5%	614	67.5%
2006	1,248	90	7.2%	792	63.5%	366	29.3%	505	40.5%	743	59.5%
2005	1,392	31	2.2%	456	32.8%	905	65.0%	391	28.1%	1,001	71.9%
2004	1,317	74	5.6%	663	50.3%	580	44.0%	440	33.4%	877	66.6%
2003	1,370	90	6.6%	700	51.1%	580	42.3%	510	37.2%	860	62.8%
2002	1,429	117	8.2%	837	58.6%	475	33.2%	577	40.4%	852	59.6%
2001	1,583	97	6.1%	990	62.5%	496	31.3%	700	44.2%	883	55.8%

연도별	계	1급		2급		3급		남		여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00	988	113	11.4%	585	59.2%	290	29.4%	464	47.0%	524	53.0%
1999	868	128	14.7%	530	61.1%	210	24.2%	439	50.6%	429	49.4%
1998	593	120	20.2%	280	47.2%	193	32.5%	302	50.9%	291	49.1%
1997	635	131	20.6%	314	49.4%	190	29.9%	375	59.1%	260	40.9%
1996	341	47	13.8%	193	56.6%	101	29.6%	195	57.2%	146	42.8%
1995	715	101	14.1%	361	50.5%	253	35.4%	411	57.5%	304	42.5%
1994	708	96	13.6%	375	53.0%	237	33.5%	444	62.7%	264	37.3%
1993	713	-	-	485	68.0%	228	32.0%	467	65.5%	246	34.5%

자료 : 여성가족부(2021).

라.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시설과 단체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청소년시설별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10-2-4〉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배치대상		배치기준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 두되,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수련원	1)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 두되, 수용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과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 계절에만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배치대상		배치기준
청소년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두되, 숙박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야영장	1)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다만, 설치·운영자가 동일한 시·도 안에 다른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다른 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둔 경우에는 그 청소년야영장에 청소년지도사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야영장으로서 청소년수련거리의 실시 없이 이용 편의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청소년특화시설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 둔다.
청소년단체		청소년회원 수가 2천 명 이하인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두되, 청소년회원 수가 2천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천 명마다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두며, 청소년회원 수가 1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의 5분의 1 이상은 1급 청소년지도사로 두어야 한다.

자료 : 여성가족부(202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02-2100-6269

마. 청소년지도사의 보수교육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 등에서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는 역량강화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24조2에 근거하여 2013년부터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2017년 1월,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개정(2017. 1. 1. 시행)으로 교육시간이 20시간 이상에서 15시간 이상으로 완화되었으며 청소년정책 및 권리교육, 성평등교육,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청소년활동과 안전, 청소년현장에 필요한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49

3. 청소년상담사

가.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은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상담실무 경력이나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100시간 이상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이다. 청소년상담사는 국가차원의 청소년상담 관련 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초·중·고·대학의 학생상담소,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청소년 관련 복지시설, 경찰청이나 법무부 등 청소년업무 지원부서, 사설 청소년상담실, 아동·청소년 대상 병원, 일반 청소년 관련 사업체, 근로 청소년 관련 사업체 등에서 청소년상담업무에 종사한다.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과 자격 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10-2-5〉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 기준

등급	응시자격 기준
1급 청소년상담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급 청소년상담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급 청소년상담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주 : 1) 상담 실무경력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은 별표 1의 비고 제4호와 같다.
 3) 응시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자격검정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료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별표 3.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기시험 과목은 1급 5과목, 2급과 3급은 각각 6과목이며,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필기시험 합격 후 면접시험을 볼 수 있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심사를 실시한다.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를 자격검정 최종 합격자로 본다.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10-2-6〉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과 방법

등급	검정과목		검정방법	
	구분	과목		
1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필기시험	면접시험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행상담·성상담·약물상담·위기상담 중 2과목 		
2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이상심리 	필기시험	면접시험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상담·집단상담·가족상담·학업상담 중 2과목 		
3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심리 • 집단상담의 기초 • 심리측정 및 평가 • 상담이론 • 학습이론 	필기시험	면접시험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이해론·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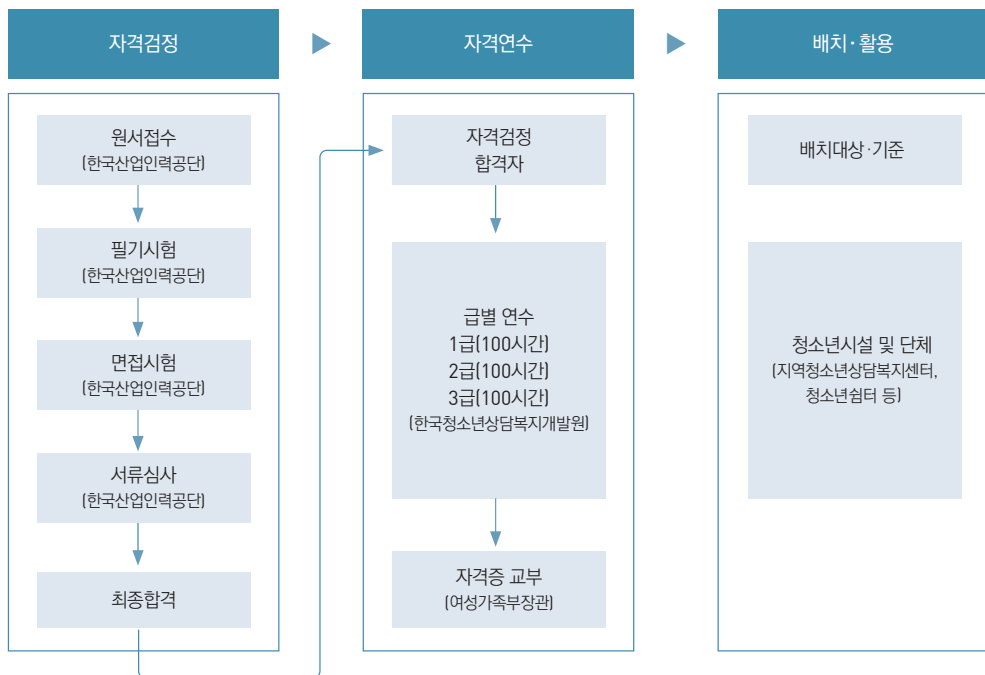
주 : “청소년 관련 법”이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을 말하며, 그 밖의 법령을 포함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함.

자료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별표 4.

나. 청소년상담사 양성체계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100시간 이상 의무 연수를 실시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배치·활용된다.

[그림 10-2-3] 청소년상담사 양성체계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과목은 청소년 상담관련 이론과 실제적인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1급·2급·3급 모두 5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격연수 형태는 급별 책무에 맞는 질적 교육을 위하여 이론, 세미나,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0-2-7〉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과목

등급	연수과목		
1급 청소년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상담·수퍼비전 • 청소년문제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상담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관련 법과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위기개입II
2급 청소년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상담과정과 기법 • 청소년 위기개입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상담 • 청소년 진로·학업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상담
3급 청소년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개인상담 • 청소년 상담 현장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집단상담 • 청소년 발달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매체상담

자료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제1항 별표 5.

다. 청소년상담사 양성실적

청소년상담사 양성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총 20회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이 있었으며, 청소년상담사 1급 969명, 2급 10,940명, 3급 18,404명으로 총 30,313명의 청소년상담사를 양성하였다.

〈표 10-2-8〉 청소년상담사 양성 현황

(단위 : 명)

연도	1급		2급		3급		계
	남	여	남	여	남	여	
2003	8	99	22	271	37	247	684
2004	4	17	6	84	11	92	214
2005	5	16	21	150	19	132	343
2006	6	24	17	154	10	196	407
2007	0	1	11	166	17	279	474
2008	6	41	23	171	39	411	691
2009	3	12	20	219	56	461	771
2010	1	13	12	128	21	311	486
2011	1	18	16	282	27	391	735
2012	3	26	31	304	65	863	1,292

연도	1급		2급		3급		계
	남	여	남	여	남	여	
2013	3	9	17	208	94	896	1,227
2014	3	12	39	370	142	1,416	1,982
2015	9	43	48	516	135	1,396	2,147
2016	5	34	74	756	239	1,902	3,010
2017	10	78	98	944	193	1,401	2,724
2018	15	94	84	703	193	1,322	2,411
2019	17	70	155	1,438	223	1,400	3,303
2020	20	159	175	1,649	213	1,247	3,463
2021	9	75	150	1,408	351	1,956	3,949
계	128	841	1,019	9,921	2,085	16,319	30,313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1).

라. 청소년상담사 배치기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배치대상 청소년시설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청소년상담사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10-2-9〉 청소년상담사 배치기준

배치대상 청소년시설	배치기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 3명 이상을 둔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을 둔다.

배치대상 청소년시설	배치기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을 둔다.

자료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별표 5.

청소년지도사와 마찬가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배치된 청소년 상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청소년 기본법」 제23조).

마.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청소년 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라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청소년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는 자질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7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제3장 청소년 단체

1.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The National Council of Youth Organizations in Korea)’는 “국제 연합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국내·외 청소년단체의 상호연락과 제휴 및 협조를 도모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5년 12월 8일 국내 15개 민간 청소년단체의 협의기구로 창립되었다. 청소년문제에 대한 공동연구, 정보교환, 청소년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청소년 관련 정부부처, 유관 사회단체, 각급학교 및 세계청소년기구와의 연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활동하고 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1966년 8월 10일에는 ‘세계청소년단체협의회(World Assembly of Youth : WAY)’에 가입 하였으며, 1972년 8월 15일에는 ‘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Asian Youth Council : AYC)’의 창설멤버가 되어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 속으로 발돋움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하는 등 청소년육성 운동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육성법」과 「청소년헌장」 제정 등 청소년정책이 추진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청소년육성법」에 따라 1988년 11월 11일 사단법인으로서의 조직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2005년에는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청소년 기본법」 제40조에 근거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청소년육성과 국내·외 청소년단체 상호간의 협력 및 교류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단체들의 협의체 역할 및 기능수행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현재 9개의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포함하여 64개 청소년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262만여 명의 청소년회원과 26만여 명의 청소년지도자 등 총 287만여 명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회원단체 가입은 「청소년 기본법」에 준하여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신청하면 이사회 승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설립목적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해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에 대한 협조·지원, 청소년지도자의 연수와 권익증진, 청소년 관련 분야의 국제기구(WAY, AYC, UN Youth Unit, AUN 등) 활동 및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교류, 청소년육성을 위한 홍보 및 실천운동, 청소년 관련 도서출판 및 정보지원, 청소년활동에 관한 조사·연구지원, 우수 청소년단체와 모범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의 포상, 국제청소년센터의 운영 및 관리, 기타 청소년 및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 관련 이슈를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회원단체, 유관기관, 청소년 관련기관·단체 등과의 연대를 통해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전개하였고, 청소년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청소년정책토론회 등 관련 활동에 진력하였다. 또한, 청소년지도자의 전문 역량강화를 위해 청소년단체 소속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국내·외 연수를 진행하였다. 청소년 분야 정보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특히 청소년학과목의 기본·전문지식 습득과 청소년지도자의 교양 함양을 위해 2017년부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사이버 평생교육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연간 사업실적을 망라한 사업 활동 종합보고서 발간 등 홍보·출판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회원단체 협력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23개 회원단체를 선정하여 단체활동 활성화를 지원하였고, 2021년에는 청소년지도자들의 소통을 통한 화합과 교류의 장인 ‘제17회 전국청소년지도자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학교 내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가능성 모색 연구 TF팀을 구성하여, 단체별 활성화방안 및 활동결과를 결과보고회(12. 23, 온라인)를 통해 발표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세계청소년단체협의회’와 ‘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청소년국제기구의 정회원국으로서 역할을 다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영상회의 등을 활용한 ‘2021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을 통한 국제 교류 활동을 통해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한국 청소년단체협의회는 국내·외 청소년 교류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유스호스텔인 ‘국제 청소년 센터’를 2000년에 개원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매년 세계 각국의 청소년 및 지도자들이 참가하는 다양한 교류 사업을 개최하고 있고, 이외에도 기업 및 기관의 교육연수 장소이자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의 장으로 활용되는 등 청소년교류 및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The Korea Association Of Youth Centers)’는 전국의 800여 개 공공 및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의 발전을 위한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간 연계 협력을 위한 협의와 조정,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정책 제안 등을 위해 1989년 10월 1일 민간 청소년수련시설 중심으로 창립하였다. 1994년 6월에 사단법인(문화체육관광부)으로 승인받았으며, 2002년도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을 포함하여 조직과 기능을 재정립하였으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로 명칭을 정하여 2004년 2월에 공포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0조 의거 2005년 9월에 특수법인(국가청소년위원회)으로 재출범하였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청소년활동 기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14개소)와 시설유형별협의회(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또한, 시설협회의 회원인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가 실시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지원, 청소년 지도자의 연수·권익증진 및 교류사업,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 및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조사·연구·지원사업,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사업 및 활동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청소년활동 참여 극대화를 위한 지역사회 및 학교 등과의 연계사업 개발·운영지원, 청소년활동을 통한 지역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실천 방안 수립, 청소년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방협회 구성 및 지역단위 청소년활동 지원체제 구축 등도 수행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다양한 청소년활동 욕구 수용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 지원, 청소년활동 기반 확대를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운영 여건 개선 및 안전관리 능력 향상, 청소년수련시설이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청소년 지도자의 연수·권익증진 및 교류사업, 수련활동의 활성화 및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간담회 개최 및 홍보, 수련활동에 대한 조사·연구·지원 사업과 국제교류사업, 청소년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지도자 양성사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사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설간의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우수사례 공모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 및 지도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오픈강좌 등 청소년수련시설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과 청소년수련시설의 정책 개발 및 추진 체제 구축 등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주인인 청소년이 직접 자문·평가·참여토록 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 선정 및 사례 발표,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단 구성·운영,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대표자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변화, 안전성 강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환경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변화와 혁신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활동의 전문화 및 활성화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국가 성장 동력이 됨은 물론, 그들과 함께 땀 흘려 헌신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02-2100-6266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제4장 청소년 관련 행정기관

1.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 설치 경위

청소년 업무를 전담하는 최초의 정부조직은 청소년 관련 최초의 종합법률인 「청소년육성법」이 시행된 1988년 당시 체육부에 설치된 청소년국이다. 체육부의 청소년국은 1991년 청소년정책 조정실로 확대·개편되었고, 1993년 3월에는 정부조직의 통합에 따라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로 변화되었다. 이후 1997년 3월, 늘어나고 있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유해약물에 대한 유통규제와 단속,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시행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1997년 7월 문화체육부에 설치되었다.

청소년 조직은 다시 1998년 2월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청소년정책실이 청소년국으로 변화되어 문화관광부에 존치되었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변경되어 활동하여왔다. 이렇게 이원화된 청소년 중앙행정조직은 행정기관 분리에 따라 체계적·종합적 정책수행이 곤란하였고,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응능력이 미비하였다. 또한 각 부처에 산재한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역할을 시행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04년 12월 17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정부의 청소년정책 기능(육성 및 보호)을 통합하는 방안으로 국무총리 소속하에 ‘청소년위원회’ 설치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2004년 12월 20일에 ‘청소년위원회’ 설립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였으며, 2005년 3월 24일에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청소년위원회’ 설치를 위한 관계법률(「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정부조직법」)을 개정·공포하였다. 또한 2005년 4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청소년위원회 직제를 제정하였으며, ‘청소년위원회’를 공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5년 4월 27일 국무총리 소속하의 ‘청소년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이후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라 2006년 3월 30일 ‘국가

청소년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8년 3월에는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종전 보건복지부의 아동정책, 여성부의 보육정책,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정책을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로 개편되었다. 이와 함께 2008년 2월 29일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수행했던 가족 및 보육정책 기능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고,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조정·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

2010년 1월 18일 가족해체 및 다문화가족 등 현 사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및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가족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어 가족정책 및 청소년 육성·보호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나. 조직구조 및 업무

청소년가족정책실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청소년정책관, 가족정책관 등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청소년정책관과 가족정책관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보하고 있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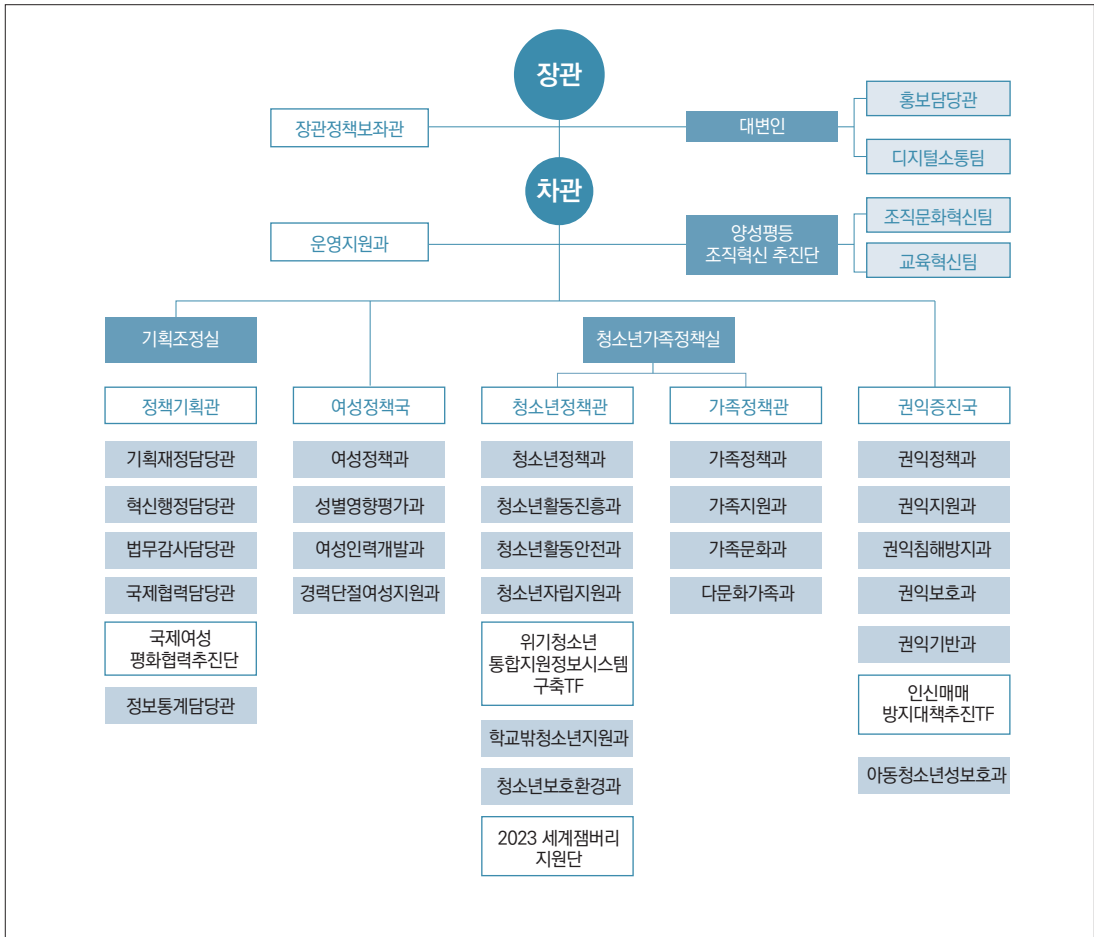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그림 10-4-1] 여성가족부 조직도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의 조직과 기능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¹⁾에 잘 정리되어 있으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

〈표 10-4-1〉 청소년정책관의 조직과 기능

구분	내용
청소년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정책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의 협의·조정 총괄 • 청소년정책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 운영 • 청소년정책 전담 기구·공무원 등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 관계 기관 청소년정책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 달 등 청소년 관련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 • 청소년 관련 통계의 유지 및 백서 등의 발간 • 청소년 관련 산하기관 및 법인 관리 총괄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지도·감독 •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종사자의 교육·훈련 • 청소년지도자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인권 보호 등 청소년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 • 청소년 특별회의 및 참여위원회 등 청소년 정책참여기구 구성·운영 지원 •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청소년 우대정책의 수립 및 교육·홍보 • 청소년증의 발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청소년활동진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활동진흥, 역량개발 및 국제교류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운영 지원 • 청소년 프로그램·사업의 개발·보급 및 평가 • 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문화·예술체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축제, 동아리,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청소년 활동정보 제공·지원 •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연수 및 활동 지원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방과 후 활동프로그램의 개발·지원 • 청소년의 국제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개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청소년활동안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시행 •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업무관리, 온라인 종합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운영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청소년수련활동 이행 실태 점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관리, 지도·감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공개에 관한 사항 • 국·공립 청소년수련시설 확충계획 수립 및 건립에 관한 사항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지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국립청소년수련원의 지도·감독 및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구분	내용
청소년자립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복지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시행 • 청소년복지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 청소년복지서비스의 조사·연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지원 및 청소년복지·지원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지도·감독 •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연수 등에 관한 사항 • 취약계층 청소년의 보호·상담·자립 등에 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가출 등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청소년 비행·폭력 등의 예방 및 선도에 관한 사항 • 폭력, 학대 등에 노출된 청소년의 상담, 치료 및 법률 서비스 지원 •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조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상담·구조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지도·지원 • 청소년 전화·청소년 모바일 상담 및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운영 • 청소년의 사회진출 및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학교밖청소년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시행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상담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청소년보호환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매체물·업소·약물·물건 등의 청소년 유해성 심의·결정 등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 단속, 규제 및 개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인터넷 중독 등 매체의 역기능 피해의 예방·치료 및 재활 지원 •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 활용능력증진 및 건전한 매체 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 • 청소년 대상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등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신·변종 유해업소 등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활동 • 지방행정기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유도 및 평가 •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추진상황 종합 점검·관리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2023 세계잼버리 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설립 준비 • 세계잼버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 • 세계잼버리 기반시설 설치 협업 • 세계잼버리 6대 유치공약(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등) 추진 • 세계잼버리 홍보 및 붐업 조성 • 세계잼버리 영내외 프로그램 개발·지원

주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의 조직은 청소년정책관과 가족정책관으로 구성되며, 그 중 청소년 정책관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활동안전과, 청소년자립지원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과, 청소년보호환경과, 2023 세계잼버리 지원단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 정책실 청소년 정책관'의 정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0-4-2〉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 정원 현황

(단위: 명)

직급	고위공무원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2	1	5	3	19	16	7	3	2	58

자료: 여성가족부(2021).

2. 청소년 관련 업무 추진기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중앙정부 부처는 고유기능에 따라 청소년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각 부처의 청소년 관련 업무를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상의 정책 영역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4-3〉 청소년정책 영역별 소관부처 현황

영역	세부과제	소관부처	
1.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1-1. 청소년 참여 확대	1-1-1.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 확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1-1-2. 학교에서의 참여 및 권익 증진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1-1-3. 청소년 참여 방식의 다변화	전 부처
	1-2.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1-2-1. 청소년 인권 및 권리 의식 제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2-2.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예방 및 보호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1-2-3. 아동·청소년 여가권 신장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1-2-4. 청소년 정신 건강권 보호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1-2-5. 청소년 신체 건강권 보장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병무청

영역	세부과제		소관부처
1.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1-3.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1-3-1.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선거관리위원회,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제처, 방송통신위원회, 통일부
		1-3-2. 양성평등 의식제고	여성가족부, 교육부
		1-3-3.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한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2.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2-1.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2-1-1.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2-1-2.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 활성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2-1-3. 과학기술·산업분야 핵심인재 양성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2-1-4. 수요자 중심으로 청소년활동 인프라 재구조화	여성가족부
	2-2. 청소년 체험 활동 활성화	2-2-1.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2-2-2.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2-2-3. 국제교류 활성화 및 내실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외교부
		2-2-4. 남·북한 청소년 교류 기반 조성	여성가족부, 통일부
		2-2-5. 청소년 체험활동 안전관리 강화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해양경찰청
	2-3. 청소년 진로교육 체계 강화	2-3-1. 대상별 맞춤형 진로활동 내실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2-3-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강화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2-3-3.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교육부
		2-3-4. 청소년(청년) 취업 지원 기반 강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2-3-5. 청소년(청년) 창업 활성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3.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3-1.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3-1-1. 촘촘한 청소년 복지지원체계 운영
3-1-2.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 확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3-1-3. 청소년 폭력예방 및 아동 안전 강화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3-1-4. 가족관계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교육부
3-1-5.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법무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영역	세부과제		소관부처
3.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3-2. 대상별 맞춤형 지원	3-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3-2-2. 가출 청소년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3-2-3. 비행 청소년 재범 예방 및 회복 지원	법무부, 경찰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3-2-4. 다문화 청소년 지원 강화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3-2-5. 청소년 한부모 지원 강화	교육부, 여성가족부
		3-2-6.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기반 마련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3-2-7. 나홀로 청소년 활동·돌봄 지원 강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3-3.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3-3-1. 청소년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3-3-2.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 보호	교육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3-3.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4.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4-1.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강화	4-1-1. 청소년정책의 실효성 제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4-1-2. 통합형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4-1-3. 청소년정책 위상 강화	여성가족부
	4-2. 지역·현장 중심의 청소년정책 활성화	4-2-1.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지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여성가족부
		4-2-2.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여성가족부
		4-2-3. 청소년 사업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을 이어주는 플랫폼 마련	여성가족부
	4-3.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4-3-1.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강화	여성가족부
		4-3-2.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여성가족부

자료 : 여성가족부(2021).

부처별 청소년 업무의 특성을 보면 ‘부’단위 기관에서는 고유의 정책기능과 관련된 사업 중 청소년이 대상고객인 사업에 일정부분을 투자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청’단위 기관에서는 정책 예산보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성 예산을 지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청소년 관련 시·도 행정조직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로 구분되어 추진되던 아동·보육·청소년정책은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되어 추진되어 오다가 2010년 1월에 청소년정책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다. 17개 시·도의 청소년 관련 행정은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및 시·도 청소년 업무 총괄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중앙정부와의 청소년 업무 연계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각 시·도 청소년 관련 행정조직은 다음과 같다.

〈표 10-4-4〉 시·도 청소년 관련 행정조직 현황

구분	담당 실·국	청소년 분야
서울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부산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대구	여성청소년교육국	청소년과
인천	여성가족국	청소년정책과
광주	여성가족국	교육청소년과
대전	청년가족국	교육청소년과
울산	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종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
경기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강원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가족과
충북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충남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전북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전남	자치행정국	희망인재육성과
경북	아이여성행복국	아이세상지원과
경남	여성가족아동국	아동청소년과
제주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자료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4.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의 소속 하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충북을 제외하고 16개 시·도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표 10-4-5〉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성격

구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성격	구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성격
서울	심의	강원	심의
부산	심의	충북	미설치('22. 1. 1~) 구성·운영
대구	심의	충남	심의
인천	심의	전북	심의
광주	심의	전남	심의
대전	심의	경북	심의
울산	심의	경남	심의
세종	심의	제주	심의
경기	심의	-	-

자료 : 각 지방자치단체(2021. 12. 31. 기준).

5. 정부 산하기관

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의해 청소년활동 현장과 정책을 총괄 지원하여 청소년 육성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지원 사업으로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인증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지원과 기록 관리, 청소년들이 신체단련·자기개발·자원봉사·탐험활동을 고르게 수행하여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지원 및 안전 관련 컨설팅 홍보, 그리고 국내·외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의 글로벌역량강화를 위한 교류활동의 진흥 및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 활동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국립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과 청소년지도자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국가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여 2021년 말 현재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충남 천안),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강원 평창), 국립청소년우주센터(전남 고흥),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전북 김제), 국립청소년해양센터(경북 영덕) 총 5개소의 국립 청소년수련시설을 각 원별 특성을 살려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지도자 양성과 관련하여 국가 자격증인 청소년지도사(1급, 2급, 3급) 자격 부여를 위한 자격 연수와 함께 현직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운영하고, 청소년지도사 자격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다양한 전문연수를 개설하고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함양을 목표로 한 전문 연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체험 활동을 진흥시켜 청소년의 잠재역량 계발과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청소년활동을 조성하며, 수련·참여·교류·권리 증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며 자신의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2100-6239

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KYCI)은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22조에 의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주요 기능으로는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관계자 회의, 지도·지원 등을 실시하고, 종합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이슈가 되는 청소년 문제들을 분석·연구함으로써 문제 해결과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상담복지 정책에 대한 증장기적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하고 심각해진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청소년 유관 기관에 보급·운영하는 등 청소년 상담기법의 연구 및 상담 자료의 제작·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변화하고 다양화되는 청소년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상담의 전문화, 청소년 상담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를 위탁 운영하여 자격연수 및 보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 외에도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친구의 문제해결을 돕는 또래상담자 양성, 건강한 청소년 성장에 목적을 둔 인성 및 품성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경제적, 환경적 어려움이나 새로운 진로를 찾기 위한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거나,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립의지를 심어주고, 학교복귀, 진로 및 취업을 지원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 내 학대, 가정해체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가정 밖 청소년들을 조기발견하여 생활보호, 심리상담, 학업지원,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청소년복지시설 내실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건강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인터넷·스마트폰치유캠프(11박 12일, 중·고생 대상), 가족치유캠프(2박 3일, 초등생 및 보호자 대상)를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지원할 뿐만 아니라 국립청소년 인터넷드림마을을 위탁 운영하여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해소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서·행동장애 청소년들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하여 상담·치료, 대안교육, 자립지원 등의 장·단기 과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상담·집단상담·심리검사 등의 전문상담과 사이버 상담 등 청소년상담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다.

제 1
부제 2
부제 3
부제 4
부제 5
부제 6
부제 7
부제 8
부제 9
부제 10
부부
록

- 청소년 상담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
-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의 개발 및 운영·지원
- 청소년 상담기법의 개발 및 상담자료의 제작·보급
- 청소년 상담·복지 인력의 양성 및 교육
-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기관 간의 연계 및 지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지도 및 지원
- 청소년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 국가가 설치하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및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유지·관리 및 운영
- 그 밖에 청소년상담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사업

자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밝은 미래를 위해 다양한 상담복지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청소년 및 청소년 가족이 가진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3

제5장 청소년 관련 연구·개발기관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가. 설립배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송병국)은 「청소년육성법」 제19조에 의거하여 1989년 7월 1일에 ‘한국청소년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YPI)’으로 설립되어 청소년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 국가 청소년정책 수립에 기여해오고 있다. 1991년 12월 31일에 제정·공포된 「청소년기본법」 제50조에 의거하여 1993년 1월 1일에 ‘한국청소년개발원’으로 확대 및 개편 되었고, 1999년 1월 29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인문사회연구회’에 소속되었다. 한편, 2005년 국무총리 산하 ‘인문사회연구회’와 ‘경제사회연구회’가 통합되어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NRC)’로 소속이 이관되었고, 2007년 5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잠재력 계발, 청소년의 디지털·글로벌 역량 강화, 청소년 인권과 참여를 위한 사회 환경 개선,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복지·지원 등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와 자료축적을 통하여 미래사회의 새로운 국가발전 동력 창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수행, 청소년정책평가 및 자문·지원,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 정책 및 연구자료 제공 등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 및 정책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청소년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및

자문을 제공하는 등 청소년분야의 중추정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육성 및 보호를 위한 기초조사 및 이론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를 전망한다. 둘째, 청소년정책 연구 및 평가·분석을 통한 고객 만족을 실현한다. 셋째, 국내·외 교류협력과 결과 홍보를 통하여 청소년분야 국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한다.

이와 같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주요 기능에 따른 주요 업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청소년 생활·의식 실태와 변화양상에 대한 종합적 조사연구를 통해 청소년 정책 수립의 시제열적 기초 자료를 축적한다. 둘째,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및 정책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과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셋째,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효과분석을 위한 평가 사업 추진 및 자문 등을 지원한다. 넷째, 국내·외 청소년 전문기관 및 관련기관과의 국제 교류 및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교류·협력활동을 수행한다. 다섯째, 청소년 연구 및 정책 개발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세미나·협의회 등을 개최하며, 정책연구 자료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나. 조직 및 방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93년 1월 한국청소년연구원에서 한국청소년개발원으로 확대·개편될 당시 원장을 중심으로 부원장과 5실 7부의 체계였으나, 1995년 12월 이후 기획조정실, 홍보사업단, 복지환경실, 수련활동실, 정보자료실, 행정실 등 5실 1단 12부로 조직이 개편되었다.

1997년 1월에는 외부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팀제를 도입하여 4실 5부 8팀으로 재개편하였으며, 청소년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부설기구로 설치하여 청소년자원봉사중앙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1998년에는 자립경영 기반구축 및 경영혁신 추진을 위해 육성정책연구실, 복지정책연구실,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연구기획부, 총무부 등 2실 1센터 2부로 기구를 축소하였다. 그러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 기획부와 총무부를 기획조정실과 사무국으로 확대·개편하고, 주요영역별 업무를 팀제로 편성하였으며,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사업부서인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등 3실 1국 1부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2005년 초반에는 청소년의 생활·의식 실태와 변화양상에 대한 종합적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고자 2009년에는 1본부 1국 4실 5팀 체제로 개편하였다. 기획조정



본부에 연구기획팀, 예산기획팀, 대외협력·자격검정팀 등 3팀으로, 감사실 외에 청소년정책연구실, 아동정책연구실, 통계조사연구실 등 3개의 연구실로, 사무국에 총무팀과 경리팀 등 2팀으로 각각 개편하였다.

이후 2010년 중앙 및 지자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및 실적 분석·평가를 위해 ‘청소년 정책분석평가센터’가 설치되었으며, 2014년에는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지원 정책의 수립·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2015년에는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국제 정세에 대비하기 위해 ‘동북아청소년분석센터’를 설치하였다. 연구실의 경우 2012년 활동·역량 연구실, 보호·복지연구실, 통계·기초연구실로 개편하였고, 2015년에는 현안정책전략실을 신설 하였으며 2016년에는 활동·참여연구실, 보호·복지연구실, 자립·역량연구실, 통계·기초연구실의 4개 연구실로 개편하였다. 기획조정본부는 2011년에 연구기획·대외협력팀과 예산기획·성과 관리팀으로 운영되다가 2013년에 정보자료전산보안팀이 추가되었다. 2016년에는 연구·성과 기획팀, 예산기획팀, 현안·협력팀, 학술·정보팀의 4팀으로 운영하였다. 한편, 2017년에는 부원장 직제가 신설되면서 기획조정본부는 기획조정실로 개편되었고, 원내 통합조사 등 기타 통계·기초조사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통계아카이브센터’가 신설되었다. 또한, ‘동북아 청소년분석센터’는 연구 대상을 동북아지역으로 특정하지 않고, 확대하기 위해 ‘청년연구센터’로 센터명이 변경되었으며,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는 ‘학업중단예방센터’와 ‘대안교육지원 센터’로 분리되어 운영되었다.

2018년에는 1본부 5실 5센터로 다시 개편되었다. 부원장 제도가 폐지되고 기획조정실이 기획조정 본부로 승격되었다. 이와 함께 연구·성과기획팀을 연구조정팀과 성과관리팀으로 분리하였고, 글로벌 역량 강화차원에서 현안·협력팀을 대외·국제협력팀으로 변경하였으며, 패널조사 강조를 위해 통계·기초연구실을 통계·패널연구실로 변경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학업중단예방센터’와 ‘대안교육 지원센터’는 통합되어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로 변경되었으며, 2018년 5월부터 지속 가능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와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가 신설 되어 운영 중이다.

2019년에는 1본부, 7실, 6센터로 개편되었다. 기획조정본부의 연구기획팀은 연구기획실로 승격 되었으며, 경영지원실의 총무·인사팀은 총무팀과 인사팀으로 분리되었다. 신설된 센터는 ‘청소년 진로개발센터’로 진로교육지원을 목적으로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 및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미디어연구센터’는 2019년 4월에 개소되어 청소년 미디어 연구과제 발굴 및 수행, 청소년 미디어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단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미디어 캠프 등 관련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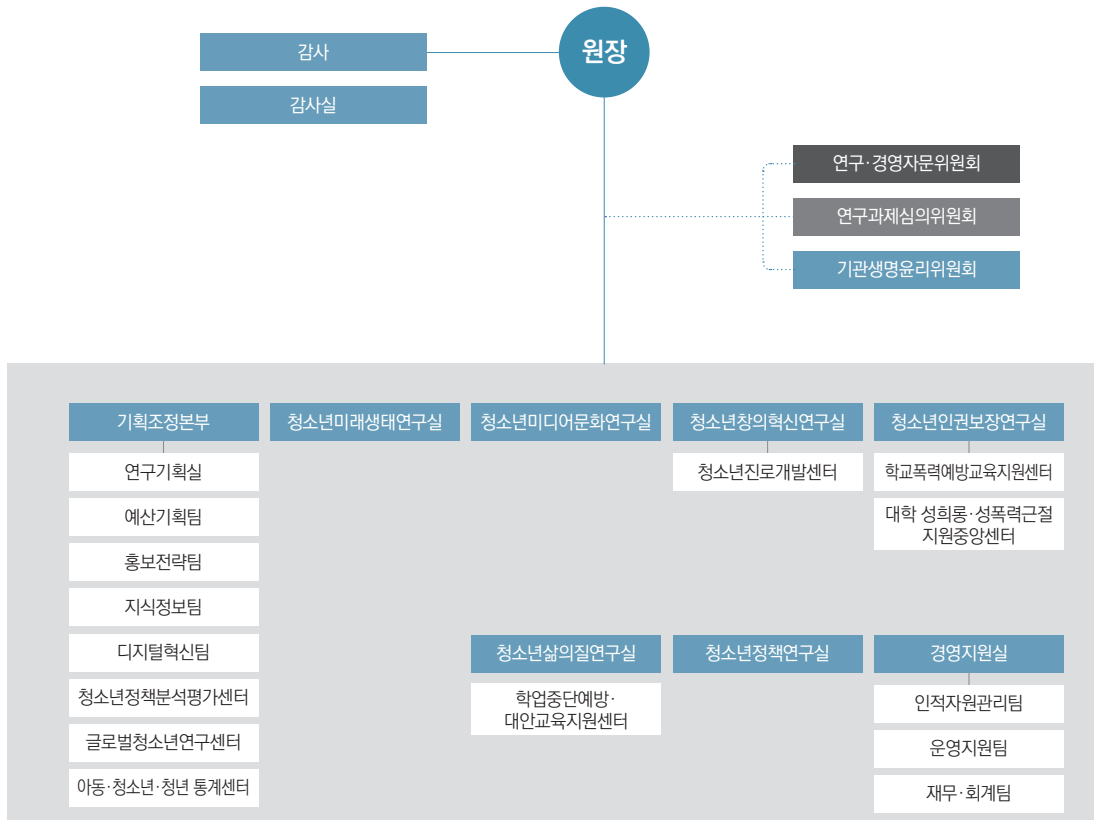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사업을 운영 및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1본부, 7실, 6센터로 조직을 유지하여 운영하였고, 2021년에는 1본부 7실, 6센터로 개편되었다. 2021년에 신설된 센터는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와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중앙센터’다.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는 국제기구와 국외의 청소년 정책을 파악하고 해외의 유관 기관과의 교류를 활발하게 관장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중앙센터’는 대학 내의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전담기구 담당자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신설되었다.

[그림 10-5-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직 현황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향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 관련 기초연구와 정책연구에 기반하여 미래사회의 새로운 국가발전 동력 창조에 기여함으로써 융합적인 청소년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청소년의 바른 성장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융합적 청소년정책연구 추진, 둘째, 청소년

정책연구 허브기관으로서 국내·외 연구네트워크 강화와 고객체감 연구 성과 확산, 셋째, 조직의 윤리성·공공성 강화와 조직의 역량 극대화를 경영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해오고 있다.

다. 사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1년 사업목표는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연구기획의 체계화 및 과학적 연구관리 체제 확립, 둘째, 고객중심 현장중심 연구체제 구축, 셋째, 연구 성과의 정책반영 및 사회적 확산 강화, 넷째, 청소년정책 관련 교류·협력체제 강화이다. 이를 토대로 2020년도 연구과제는 ① 정관상의 기관설립 목적 및 정부시책과의 부합성, ②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위상에 부합한 과제, ③ 아동·청소년·가족과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 과제, ④ 연구결과의 정책반영도 현장 적용성이 높은 과제, ⑤ 연구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예산 및 인력 구성, ⑥ 원내 각 실별 고유기능 및 주요 연구 영역에의 부합성 등 6개의 기준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선정되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사업은 크게 기관고유사업과 특수사업으로 구분되는데, 기관 고유사업 중 기본연구사업은 5가지 연구목표와 방향을 토대로 추진된다. 첫째, 연구원의 정관상 설립목적 및 전문화된 특성, 둘째, 연구원의 경영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 셋째, 국정과제 및 국가의제, 넷째, 연구 목표 및 방향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다섯째, 사회적·정책적 환경 및 시대적 요구 변화 관련 사항이다. 2021년 기본연구사업 과제로 총 9개의 연구과제가 수행 중이다. 수행 중인 기본연구사업은 ①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② 미래지향적 청소년시설 및 공간 혁신방안 연구, ③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④ 아동·청소년의 놀이문화 실태 및 성장지원 방안 연구, ⑤ 장애청소년 친화적 청소년정책 추진방안 연구, ⑥ 지역사회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⑦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⑧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 연구, ⑨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와 활성화방안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특수사업은 일반사업, 협동연구사업으로 구분되며, 일반사업은 4개, 협동연구사업 5개의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일반사업 과제는 ①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인권 실태, ② 202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③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제 구축 방안 연구 III, ④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정책 대응 방안 연구이며, 협동연구사업은 ①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 ② 청년 사회 첫 출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일자리, ③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I, ④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I: 후기청소년, ⑤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연구 IV: 질적 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 위탁사업으로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를, 교육부 위탁사업으로 ‘학업중단 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청소년진로개발센터’를, 교육부 지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중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청소년연구센터’를 두어 국제의 관련 기관과의 소통과 교류를 기획 및 추진하고 있고, ‘청소년 통계 아카이브센터’를 두어 NYPI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조사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청소년통계아카이브센터’는 「NYPI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NYPI Youth and Children Data Archive)」를 구축하여 통합조사시스템의 구성을 통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생산한 아동·청소년 데이터의 대내외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학업중단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는 중앙과 지방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정책 구현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추진의 책임성 강화와 정책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2010년 개소하였다. 주요 사업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분석평가 사업 추진, 둘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의 성과평가를 위한 자료분석·지표개발, 셋째, 청소년정책 포럼·세미나 개최 및 컨설팅 추진, 넷째,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워크숍 개최, 다섯째,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종합분석, 여섯째, 청소년백서 발간 지원 등이 있다.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는 학업중단예방과 학교 및 대안학교의 대안교육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3월 교육부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학업중단예방센터를 지정하고, 동년 8월 추가로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함에 따라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다.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사업으로는 크게 연구/프로그램 개발 사업, 교육청/학교지원 사업, 정책홍보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연구/프로그램 개발 사업으로는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모듈개발(초등용), 미인가 대안학교 실태조사 연구, 홈스쿨링 도입 방안 연구 등을 진행하며, 교육청/학교지원 사업에는 시·도교육청 담당자 워크숍 지원,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추진 지원, 원격연수 활성화, 관리자 및 담당자 연수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UCC 공모전 등을 통해 정책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는 교육부의 학교폭력예방교육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5월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설치되었다. 정책 추진전략은 크게 3가지로, 단위학교 국가수준 예방 프로그램 적용 확대 및 자율적 예방 활동 강화, 언어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지속가능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체제 기반 구축 등이다. 이를 위해 센터에서는 ‘어울림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학교폭력예방 교육 프로그램 체계화, 학교폭력예방 교육 지원체계 구축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진로개발센터’는 소외계층 학생 유형별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2019년 1월 1일에 개소되었다. 정책 추진방안은 크게 3가지로, 소외계층 진로교육 및 상담지원 자료 개발과 보급, 학생 진로탄력성 지원단 활동 지원 및 선도교원 양성, 캠프 및 포럼 등을 통한 소외계층 진로교육 확산이다. 이와 관련하여 진로탄력성 심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진로지도프로그램 개발, 학생 맞춤형 상담지원 진로카드 개발 및 보급, 진로탄력성 지원단 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선도교원 컨설팅 활동 지원, 진로탄탄 TV(youtube채널) 운영,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공모전 등을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는 국제기구와 국외의 최신 청소년 정책을 파악하여 해외의 관련 연구기관과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관장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1월에 신설되었다. 해외의 청소년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선진국을 포함하여 말라위, 감비아, 몽골, 과테말라, 아프가니스탄 등의 청소년 현안과 동향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을 주축으로 10개국 18개 청소년 전문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WARDY)의 허브 조직으로서 회원기관과의 소통과 교류를 활발하게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중앙센터’는 2021년 4월에 신설되었다. 주요 업무로는 첫째,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기반 강화다. 이를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실태 조사 및 운영을 내실화하고 맞춤형으로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는 교육을 지원하고,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를 전문화하고, 전담기구 운영의 우수사례를 공모 및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담당자 역량 강화다. 이를 위하여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 연수를 체계화하고 내실화하며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담당자 대상 자문 및 슈퍼비전을 지원하고 있다.

2. 청소년 관련 학과 및 민간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문제가 대두되었지만, 1990년 초반까지는 청소년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학문적 기반이 충분하게 조성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정책의 발전과 전문적인 청소년지도인력의 양성 및 확보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국내에서는 1991년부터 대학에 청소년 관련 학과들이 신설되기 시작하였다.

2021년 현재, 청소년 관련 학과(대학 및 대학원 포함)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총 56개교²⁾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학위과정별로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총 9개교로, 2년제 3개교, 3년제 5개교, 사이버대학 1개교가 운영 중이다. 다음으로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총 29개교로 일반 4년제 대학교(21개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1개교), 4년제 사이버대학(7개교)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석사, 박사, 석·박 통합과정은 28개 대학교(대학원대학교 포함)의 36개 대학원에 존재한다. 이들 대학원 과정은 일반대학원(11개교)과 교육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상담대학원 등을 포함하는 특수대학원(23개교), 전문대학원(1개교)으로 구분되어 운영 중에 있다³⁾.

1991년에 청소년 관련 학과가 최초로 개설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 관련 분야의 발전과 확장에 기인하여 청소년 관련 학과의 수가 증가해왔으나, 최근 학생 수 감소와 대학구조조정 으로 인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한편, 청소년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창출하며,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행하는 청소년 관련 학회들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연구와 관련된 대표적인 학회로는 한국청소년학회,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청소년활동학회, 한국청소년상담학회 등이 있다.

한국청소년학회는 청소년 분야 일반의 공익을 위한 사단법인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수행하고 청소년(관련)학 분야의 학술연구 및 연구자 상호 간의 전문적 지식과 정보 교환을 통하여 청소년학의 정립과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1년 설립되었다. 한국청소년학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인 ‘청소년학연구’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술대회 및 세미나,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는 2004년 청소년학의 정체성 확립과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 연구자 상호 간의 정보교환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미래청소년학회지’를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또한 춘계, 추계 학술대회를 통하여 다양한 학술세미나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육체와 정신을 발달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02년 창립되었다. 청소년 육성·보호를 위한 시설물의 확대 방안 및 기존 시설의 활성화 방안, 청소년 시설물의 연계 활용 방법, 시설물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한 국제교류, 봉사활동, 국제심포지엄, 학술대회, 작품집 발간, 월례세미나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청소년시설

2) 2021년 12월 기준, 청소년 관련 학과(대학 및 대학원 과정 포함)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는 서울(17개교), 경기(6개교), 강원(1개교), 충남(8개교), 충북(2개교), 경북(4개교), 전남(3개교), 부산(3개교), 대구(2개교), 전북(3개교), 광주(2개교), 대전(2개교), 인천(1개교)에 소재하고 있음.

3) 청소년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명 및 학과명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1에서 제시하고 있음.

환경'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한국청소년복지학회는 1998년에 청소년복지의 연구와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창설되었으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청소년복지연구' 학술지를 발간하고, 비정기적으로 학술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한국청소년활동학회는 청소년활동 분야의 연구 활동과 국내·외 학계, 현장 전문가들 간의 학술적 교류를 통하여 청소년활동의 이론체계를 정립 및 청소년활동의 학문발전과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2012년에 설립되었다. 한국청소년활동학회는 학술발표 및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학회지(한국청소년 활동연구)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학회는 2013년에 '현장 전문가' 중심의 청소년문제 예방 및 해결, 청소년 상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학회이다. 부설기관으로 '한국청소년상담연구소'를 두어 현장상담사례 중심의 학술지인 '한국청소년상담학회지'를 발간하고, 청소년상담 프로그램을 연구 및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학회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청소년 관련 이슈에 대해 세미나, 학술대회 등도 개최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대구한의대학교 부설 청소년문제연구소, (사)청소년교육 전략 21 등에서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속하고 있다.

3.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WARDY)

세계 각국의 청소년에 대한 연구 및 개발관련 기관 간의 협의회로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World Associ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Youth: WARDY)가 운영되고 있다. 협의회의 설립목적은 세계 각국의 청소년연구개발기관 간 정보 및 학술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연구에 도움이 되고, 21세기 지구촌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다.

협의회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1995년 11월 24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일본청소년 연구소, 중국 사회과학원(청년사회학연구회)은 이러한 취지의 세계협의기구 구성에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하여 1997년 10월 7일 중국,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6개국의 8개 기관 대표들이 한국에 모여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WARDY)를 발족하였고, 2020년 현재까지 11개국 18개 기관

1개 국제학회가 참여하고 있다.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의 주요 사업은 크게 4개로 구분된다. 첫째, 청소년 연구 및 개발에 관한 공동사업 추진, 둘째, 청소년 및 청소년 전문가의 상호방문을 통한 교류 추진, 셋째, 청소년 관련 국제 학술회의 등 회원국 간의 상호교류와 연대를 통한 연구협력 강화, 넷째, 청소년 관련 정보와 자료의 상호교환 등이다.

협의회의 주요 실적은 크게 국제세미나 개최와 공동연구 수행으로 구분된다. 국제세미나는 1997년 협의회 발족 이후 매년 1~4회 개최되고 있다. 제1차 WARDY 국제학술회의는 1997년 10월 7일 ‘청소년폭력의 국제 비교’란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제2차 WARDY 국제학술회의는 1999년 10월 11일 중국 북경에서 ‘21세기를 지향한 청소년과 청소년 연구’란 주제로 개최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의 청소년 육성정책 수립의 과제’, ‘사이버상의 청소년 보호와 역량 강화’,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다문화주의’, ‘미래시민주로서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과 교육’, ‘청소년정치참여실태’ 등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청소년정책 이슈에 대한 공통의 내용으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2020년에는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 기관인 유로필로 조피와 함께 ‘2020 유로필로조피 서울 대회’ 온라인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또한 협의회는 1997년 이후 매년 1~3개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수행한 연구 주제로는 1997년 ‘청소년의식에 관한 한·중·일 국제비교연구’, 1999년 ‘청소년 성공의식에 관한 국제 비교연구-한·중·일을 중심으로’, 2000년 ‘새천년 청소년 생활실태와 의식에 관한 국제 비교연구-한·미·일·프를 중심으로’, 2001년 ‘주요 외국의 청소년정책 동향 연구’ 등이 있다. 최근 2010년대에는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연구(한·중·일·미)’,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 및 정책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 ‘4개국(한·중·미·일) 청소년 건강실태조사’ 등이 수행되었으며, 2018년에는 ‘한·중·일·미 청소년 장래 및 유학의식에 관한 비교’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표 10-5-1〉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 회원 현황

NO	국가	기관명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1	한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6~7층	http://www.nypi.re.kr	82-44-415-2114



NO	국가	기관명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2	중국	중국청년정치학원 (Chinese Youth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25 Xisanhuan Beilu, Haidian District, Beijing, People's Republic of China, 100089	http://international. cyu.edu.cn/	86-10-88567233
3		상해청년관리간부학원 (Shanghai Youth College of Management)	Hongkou District, 573 West Bay Road, Shanghai, China	http://www.shqgy. com.cn	86-21-56662668
4	일본	게이오대학 (Keio University)	6th Floor, Mita Toho Building 3-1-7 Mita, Minato-ku Tokyo 108-0073, Japan	http://www.coe-ccc. keio.ac.jp	81-3-5427-1045
5		일본청소년연구원 (Japan Youth Research Institute)	15, Kasumigaokacho. Shinjuku- ku, Tok 0160, Japan	www1.odn.ne.jp/ youth-study	81-3-3475-2535
6		아시아진로개발학회 (Asia Regional Association for Career Development)	1-1, East 9, North 16, Higashi-ku, Sapporo, Hokkaido 065-8567, Japan	http://www.aracd. asia/	81-11-742-1965
7		슈레 대학교 (Shure University)	28-27, Wakamatsu-cho, Shinjuku-ku, Tokyo, Japan	http://shureuniv.org/	81-3-5155-9801
8	몽골	과학기술대학 (Mongol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MUST))	International Affairs Mongol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8th khoroo, Baga toiruu 34, Sukhbaatar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14191	http://www.must. edu.mn	976-11-329081
9	말레이 시아	사회과학연구원 (Institute Pengajian Sains Sosial(IPSAS))	43400 UPM Serdang, Selangor Darul Ehsan, Malaysia	http://www.ipsas. upm.edu.my/	60-3-8947-1865
10		말레이시아 푸트라 대학교 (Universiti Putra Malaysia)	Universiti Putra Malaysia 43400 UPM Serdang Selangor Darul Ehsan MALAYSIA	http://www.upm. edu.my/	60-3-8947-1865
11	호주	멜버른대학 청소년연구센터 (Youth Research Centre)	Youth Research Centre Melbourn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University of Melbourne Victoria 3010	http://web.education. unimelb.edu.au/ycrc/	61-3-8344-9633
12		태즈메이니아대학교 청소년연구센터 (Center for Applied Youth Research)	PO Box 5011 UTAS LPO, Sandy Bay Tasmania 7005, Australia	http://cayr.info/	61-3-5294-0444

NO	국가	기관명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13	핀란드	핀란드 청소년연구네트워크 (The Finnish Research Network)	Finnish Youth Research Society Asemapäälikönkatu 1 (2nd and 3rd floors) FI-00520 Helsinki Finland	http://www.youthresearch.fi/	358-20-755-2662
14	미국	뉴욕아동환경연구그룹 (Children's Environments Research Group)	365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6	https://cernyc.org/	212-817-1902
15		캘리포니아 대학교 리버사이드, 김영옥 센터 (UCR, The Young Oak Kim Center for Korean American Studies)	900 University Ave. 4031 CHASS INTN Riverside, CA92521	http://www.yokcenter.ucr.edu	951-827-5661
16		재외한인사회연구소 (The Research Center for Korean Community at Queens College)	Kissena Hall I, Room 333 Queens College 65-30 Kissena Blvd Flushing, New York 11367	http://www.qc.cuny.edu/Academics/Centers/RCKC/Pages/default.aspx	718-570-0300
17	베트남	청소년연구소 (Youth Research Institute)	No.5 Chua Lang st., Dong Da dist. Hanoi, Vietnam	http://www.yri.edu.vn/	0084-4-3-7754263
18	노르웨이	노르웨이 응용과학대학교 (Inland Norway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Inland Norway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Postboks 400 2418 Elverum Norway	https://eng.inn.no/	47-61-28-8286
19	프랑스	유로필로조피 (EuroPhilosophie)	Bureau de coordination EuroPhilosophie Université Toulouse II – Jean Jaurès 5 allée Antonio Machado 31058 Toulouse Cedex 9	https://europhilomem.hypotheses.org/	33-5-6150-4308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제6장 청소년정책 재정기반

1. 청소년정책 재정 현황

2021년도 청소년정책 예산은 총 2,344억 여원으로 일반회계 1,019억 여원, 청소년육성기금 1,338억 여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0-6-1〉 연도별 청소년 예산

(단위 : 백만 원)

구분 연도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관실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정책실	문화부청소년국		청소년 보호 위원회	국가 청소년 위원회	예비비 (일반 회계)	군특회계 (구, 광특회계)	청소년육성기금		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농특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육성사업	시설용자	
1995	-	-	28,098	2,000	-	-	-	13,654	4,309	10,000	58,061
1996	-	-	37,896	3,000	-	-	-	18,984	6,300	10,000	76,180
1997	-	-	52,591	3,000	-	-	-	21,645	10,803	10,000	98,039
2000	-	-	25,954	1,000	4,111	-	-	26,525	10,814	12,350	80,754
2003	-	-	25,084	-	7,077	-	-	36,607	13,979	7,000	89,747
2004	-	-	23,149	-	8,817	-	-	30,248	41,610	6,000	109,824
2005	-	-	10,872	-	9,950	-	8,138	37,643	52,436	6,000	125,039
2006	-	-	-	-	-	19,825	321	45,442	67,727	4,500	137,815
2007	-	-	-	-	-	35,388	-	43,128	74,812		153,328
2008	-	116,433	-	-	-	-	-	39,251	75,182		230,866
2009	-	182,641	-	-	-	-	-	36,522	81,741 (증진기금 3,463 포함)		300,904

구분 연도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관실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정책실	문화부청소년국		청소년 보호 위원회	국가 청소년 위원회	예비비 (일반 회계)	균특회계 (구, 광특회계)	청소년육성기금		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농특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육성사업	시설용자	
2010	20,885	-	-	-	-	-	-	34,215	90,652	145,752	
2011	21,671	-	-	-	-	-	-	49,417	73,491	144,579	
2012	47,435	-	-	-	-	-	320	41,477	58,036	147,268	
2013	58,427	-	-	-	-	-	-	50,550	62,435	171,412	
2014	67,694	-	-	-	-	-	-	44,991	64,405	177,090	
2015	67,711	-	-	-	-	-	-	65,564	80,472	213,747	
2016	68,691	-	-	-	-	-	-	48,117	89,364	206,172	
2017	87,469	-	-	-	-	-	-	62,491	95,310	245,270	
2018	77,948	-	-	-	-	-	-	87,931	102,404	268,283	
2019	87,267	-	-	-	-	-	-	78,180	114,518	279,965	
2020 (추경)	102,585 (102,173)	-	-	-	-	-	-	-	130,327 (126,647)	232,912 (228,820)	
2021 (추경)	100,564 (101,876)	-	-	-	-	-	-	-	133,808 (133,808)	234,372 (235,684)	

주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권익기반과(구 폭력예방교육과) 청소년 예산은 제외되었음.

- 2010년 : 4,603백만 원(일반회계 1,085백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3,518백만 원).
- 2011년 : 5,687백만 원(일반회계 1,580백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3,926백만 원, 여성발전기금 181백만 원).
- 2012년 : 5,979백만 원(일반회계 2,053백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3,926백만 원).
- 2013년 : 8,623백만 원(일반회계 3,441백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5,182백만 원).
- 2013년 : 8,623백만 원(일반회계 3,441백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5,182백만 원).
- 2014년 : 11,664백만 원(일반회계 6,310백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5,354백만 원).
- 2015년 : 13,97백만 원(일반회계 8,032백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5,965백만 원).
- 2016년 : 13,785백만 원(일반회계 8,040백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5,745백만 원).
- 2017년 : 12,292백만 원(일반회계 6,813백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5,479백만 원).
- 2018년 : 12,359백만 원(일반회계 7,029백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5,330백만 원).
- 2019년 : 12,894백만 원(일반회계 7,441백만 원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청소년육성기금 5,453백만 원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
- 2020년(본예산) : 12,946백만 원(일반회계 7,378백만 원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청소년육성기금 5,568백만 원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
- 2021년(본예산) : 12,632백만 원(일반회계 6,903백만 원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청소년육성기금 5,669백만 원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일반예산은 청소년정책 기반강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청소년유해환경개선 및 피해예방,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청소년정책관기본경비 사업에 사용되고 있고,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참여지원, 청소년방과후 활동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매체활용능력증진 및 역기능해소,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청소년 치료재활센터운영에 사용되고 있다.

2.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현황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기본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이 설치되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청소년 기본법」 제54조)은 정부의 출연금,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3항제1호 및 「경륜·경정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출연금,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에 의한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용도(「청소년 기본법」 제55조)는 ① 청소년활동의 지원, ②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지원, ③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 ④ 청소년단체의 운영과 활동을 위한 지원, ⑤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⑥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원, ⑦ 청소년 육성정책의 수행 과정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지원, ⑧ 기금 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⑨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청소년육성에 관한 홍보, 청소년의 포상 및 격려, 기금의 운용 및 관리, 그밖에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등이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은 기금 조성 초기에는 정부출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액 등이 수입 재원이었으나 현재는 경륜·경정사업 법정 분담금과 복권기금전입금으로 주로 조성되고 있다. 그나마 2011년에 「경륜·경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수익금의 30%를 받던 것이 19.5%로 축소되었다.

2021년까지의 누계 조성규모는 16,635억 원이며, 재원별로는 정부출연금 350억 원, 국민 체육진흥기금전입금 766억 원, 경륜·경정사업수익 법정출연금 4,560억 원, 복권기금전입금 8,390억 원, 이자수입 등 운용수익 적립금이 2,570억 원 등을 차지하고 있다.

- 제 1 부
- 제 2 부
- 제 3 부
- 제 4 부
- 제 5 부
- 제 6 부
- 제 7 부
- 제 8 부
- 제 9 부
- 제 10 부
- 부 록

또한, 청소년육성기금 사용액을 살펴보면, 2021년까지 청소년육성 사업 지원에 15,766억 원, 기타 경비 등에 91억 원, 복권기금 반납금 189억 원을 합하여 총 16,046억여 원을 사용하였으며, 순 조성액 누계는 2021년 590억 원이다.

〈표 10-6-2〉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내역

(단위 : 백만 원)

구분 연도	조성액(A)						사용액(B)				순 조성액 (A-B)	조성액 누계
	정부 출연금	민간 출연금	경륜· 경정사업 수익법정 출연금	복권 기금 전입금	이자 등 기타	계	청소년 사업지원	기타 경비	복권 기금 반납금	계		
1989	-	5,000	-	-	206	5,206	132	-	-	132	5,074	5,074
1990	-	5,000	-	-	1,363	6,363	847	3	-	850	5,513	10,587
1991	-	5,010	-	-	2,299	7,309	1,031	9	-	1,040	6,269	16,856
1992	-	8,150	-	-	3,415	11,565	1,507	12	-	1,519	10,046	26,902
1993	10,000	5,000	-	-	3,965	18,965	1,613	6	-	1,619	17,346	44,248
1994	-	11,000	-	-	5,285	16,285	9,034	13	-	9,047	7,238	51,486
1995	10,000	10,000	-	-	7,749	27,749	4,484	15	-	4,499	23,250	74,736
1996	10,000	10,000	-	-	8,739	28,739	5,415	8	-	5,423	23,316	98,052
1997	5,000	10,000	111	-	11,598	26,709	8,209	6	-	8,215	18,494	116,546
1998	-	4,400	5,888	-	15,453	25,741	6,245	6	-	6,251	19,490	136,036
1999	-	3,000	6,251	-	13,271	22,522	12,547	7	-	12,554	9,968	146,004
2000	-	-	11,836	-	11,201	23,037	9,905	7	-	9,912	13,125	159,129
2001	-	-	32,320	-	13,160	45,480	7,284	84	-	7,368	38,112	197,241
2002	-	-	46,920	-	10,094	57,014	9,443	21	-	9,464	47,550	244,791
2003	-	-	70,805	-	14,725	85,530	14,363	31	-	14,394	71,136	315,927
2004	-	-	40,786	-	14,686	55,472	40,670	72	-	40,742	14,730	330,657
2005	-	-	24,623	-	19,710	44,333	48,721	57	-	48,778	-4,445	326,212
2006	-	-	14,330	-	16,878	31,208	68,857	48	-	68,905	-37,697	288,515
2007	-	-	2,846	735	17,634	21,215	74,750	62	-	74,812	-53,597	234,918



구분 연도	조성액(A)						사용액(B)				순 조성액 (A-B)	조성액 누계
	정부 출연금	민간 출연금	경륜· 경정사업 수익법정 출연금	복권 기금 전입금	이자 등 기타	계	청소년 사업지원	기타 경비	복권 기금 반납금	계		
2008	-	-	17,489	255	8,141	25,885	75,138	45	-	75,183	-49,298	185,620
2009	-	-	15,672	860	11,085	27,617	61,060	262	22	61,344	-33,727	151,893
2010	-	-	19,312	2,964	5,947	28,223	69,473	113	213	69,799	-41,576	110,317
2011	-	-	20,266	4,318	2,841	27,425	70,247	3,286	306	73,839	-46,414	63,903
2012	-	-	22,235	34,417	1,955	58,607	58,650	3,207	30	61,887	-3,280	60,623
2013	-	-	16,933	43,403	2,074	62,410	68,238	49	622	68,909	-6,499	54,124
2014	-	-	12,744	46,694	4,707	64,145	70,096	1,088	1,408	72,592	-8,447	45,677
2015	-	-	9,655	76,412	1,744	87,722	85,568	38	1,118	86,724	998	46,675
2016	-	-	16,441	85,230	3,236	104,907	95,499	41	1,179	96,719	8,188	54,863
2017	-	-	17,285	91,235	3,897	112,417	101,548	320	3,527	105,395	7,022	61,885
2018	-	-	15,853	97,605	3,206	116,664	108,758	37	3,219	112,014	4,650	66,535
2019	-	-	8,511	107,598	3,631	119,740	119,390	40	1,211	120,641	-901	62,228
2020	-	-	6,900	119,418	5,511	131,829	131,751	36	2,308	134,095	-2,266	59,962
2021(결산)	-	-	-	127,857	8,919	136,776	163,718	42	3,699	167,459	-30,683	29,279
계	35,000	76,560	456,012	839,001	258,325	1,664,809	1,604,191	9,091	18,862	1,632,124	32,685	3,877,501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2100-6241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부록

부록 1. 청소년 관련 학과(전공) 현황

부록 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 현황

부록 3.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 현황

부록 4.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쉼터, 자립지원관) 현황

부록 5.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

부록 6. 지방자치단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현황

부록 7.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현황

부록 8. 청소년백서 용어집

부록 1 청소년 관련 학과(전공) 현황

(2021년 12월 기준)

학교명	학과·전공명(학위과정)	주소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상담전공(석사)	(1697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 Tel: 031-2803471
경기대학교	휴먼서비스학부 청소년전공(학사) 일반대학원 청소년학과(석·박사) 교육대학원 청소년지도상담교육전공(석사)	(1622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산로 154-42 Tel: 031-249-9490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청소년·가족전공(학사)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Tel: 02-3299-8657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상담전공(석사)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Tel: 053-580-6332
고구려대학교	청소년복지상담학과(전문학사)	(58280)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백호로 125 Tel: 061-330-7400
고려사이버대학교	청소년상담학과(학사)	(03051)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06 Tel: 02-6361-1862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교육·상담전공(석사)	(32553)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27 Tel: 041-850-1361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교육전공(석사)	(32588)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Tel: 041-850-8159
광신대학교	상담치료대학원 청소년상담지도학과(석사)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Tel: 062-605-1125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아동청소년전공(석사)	(01897)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20 Tel: 02-940-5411
광주대학교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학사)	(61743)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277 Tel: 062-670-2057
군장대학교	청소년교육지도과(전문학사)	(54045)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군장대길 13 Tel: 063-450-8240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청소년복지학전공(학사)	(3117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48 Tel: 041-570-7772
대구과학대학교	아동청소년지도과(전문학사)	(41453)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47 Tel: 053-320-1139

학교명	학과·전공명(학위과정)	주소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청소년학과(학사)	(38453)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Tel: 053-850-5000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학사) 보건·복지대학원 청소년가족상담학과(석사) 일반대학원 청소년학과(석사)	(38610) 경상북도 경산시 한의대로 1 Tel: 053-819-1348
대원대학교	청소년지도상담과(전문학사)	(27135) 충청북도 제천시 대학로 316 Tel: 043-645-3143
대전대학교	아동교육상담학과(학사) 상담대학원 아동청소년상담학과(석사)	(34520) 대전광역시 동구 대학로 62 Tel: 042-280-2452
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교육학습컨설팅전공(석사)	(11159)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007(선단동) Tel: 031-539-2128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청소년심리상담학과 (석·박사·석·박통합)	(38066)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Tel: 054-770-2508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청소년상담심리전공(학사)	(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7 Tel: 051-320-1908
동아보건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평생교육복지전공(전문학사)	(58439)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영산로 76-57 Tel: 061-470-1746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청소년상담학과(학사) 교육대학원 청소년교육·상담전공(석사)	(4734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176 Tel: 051-890-2180
디지털서울문화예술 대학교	사회문화계열 평생교육·청소년학과(학사)	(0364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37길 60 Tel: 02-2287-0253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학사) 사회교육대학원 청소년지도학과(석사)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아동·청소년복지전공(석사) 일반대학원 청소년지도학과(석·박사)	(036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Tel: 02-300-0620
명지전문대학	청소년교육복지과(전문학사) 청소년교육복지학과(학사)	(0365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좌로 134 Tel: 02-300-1207, 3961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청소년학전공(학사) 상담대학원 청소년상담학전공(석사)	(31065)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로 1 Tel: 041-550-2527, 2597-8
부산디지털대학교	상담치료학부 아동청소년상담학전공(학사)	(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Tel: 051-320-2782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아동·청소년상담학과(석사)	(03016)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문2길 20 Tel: 02-2287-5120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청소년복지전공(학사)	(01133) 서울특별시 강북구 숭매로49길 60 Tel: 02-944-5631~3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학교명	학과·전공명(학위과정)	주소
서울여자대학교	청소년학전공(학사)	(01797)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21 Tel: 02-970-7931
서정대학교	상담아동청소년과(전문학사)	(11429) 경기 양주시 은현면 화합로 1049-56 Tel: 031-860-5100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아동·청소년학과(학사) 일반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석·박·석·박통합)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Tel: 02-760-0525
성산호대학원대학교	HYO아동청소년교육학과(석·박사)	(2150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43 Tel: 032-433-1996
세종사이버대학교	아동가족학부 청소년학과(학사)	(05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121 Tel: 02-2204-8666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청소년교육상담학과(학사)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청소년상담전공(석·박·석·박통합) 일반대학원 청소년교육학과(석·박·석·박통합)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청소년교육전공(석사)	(31538) 충청남도 아산시 순천향로 22 Tel: 041-530-1146
송실사이버대학교	청소년코칭상담학과(학사)	(06978)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Tel: 02-828-5501
안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상담교육전공(석사)	(1402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37번길 22 Tel: 031-467-0700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교육전공(석사)	(54896) 전라북도 전주시 백제대로 567 Tel: 063-270-2739
전주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아동·청소년상담심리학과(석사)	(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Tel: 063-220-2693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석·박·석·박통합) 사회복지대학원 청소년학과(석사)	(0697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Tel: 02-820-5149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대학 청소년상담교육학과(학사)	(32244)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대학길 25 Tel: 041-630-3114
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 아동청소년상담학과(석사)	(58530)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380 Tel: 061-450-1881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보건보육청소년과(전문학사)	(28150)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덕암길 10 Tel: 043-210-8260
칼빈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상담학과(학사)	(1691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184 Tel: 031-284-4752-5
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교육상담학과(학사) 일반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석·박사) 사회복지대학원 아동청소년복지학과(석사)	(17869)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3825 Tel: 031-659-8114

학교명	학과·전공명(학위과정)	주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학사) 특수대학원 청소년교육학과(석사)	(03087)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86 Tel: 02-3668-4400
한국복지사이버대학	청소년복지상담학과(전문학사)	(38695)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남천로 746-10 Tel: 1644-9775
한국체육대학교	생활체육대학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학사) 사회체육대학원 스포츠청소년지도전공(석사)	(05541)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Tel: 02-410-6753
한남대학교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 청소년지도학과(석사)	(34430)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Tel: 042-629-7226~7, 8098
한려대학교	사회복지청소년학과(학사)	(57764)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한려대길 94-13 Tel: 061-760-1117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청소년학과(학사)	(24252)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Tel: 033-248-1740
한서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청소년상담심리학과(석·박사)	(31962)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360 Tel: 041-660-1049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아동청소년상담전공(석사)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Tel: 02-2220-2611
한양사이버대학교	심리상담학부 청소년코칭상담학과(학사)	(04763)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0 Tel: 02-2290-0340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학사) 일반대학원 청소년문화·상담학과(석사) 문화복지상담대학원 청소년문화·상담학과(석사)	(31066)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호서대길 12 Tel: 041-560-8140, 8114

자료 : 대학알리미(2021).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부록 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 현황

(2021년 12월 기준)

단체명	대표자		설립 년-월-일	총 회원 수 (명)	청소년 회원 수 (명)	설립목적
	성명	직위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이용권	이사장	1996-12-30	83,537	83,327	아동·청소년 육성, 복지, 자선사업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존엄성 실현
국제교류문화진흥원	유정희	원장	2009-03-03	6,214	5,974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청소년 교육, 자원봉사 활동, 국제교류활동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국제청소년연합	박문택	회장	2001-05-31	106,267	105,665	국제교류를 통한 국제화 시대 주도 청소년 양성
기독교청소년협회(CYA)	정진해	이사장	1995-10-30	3,854	3,140	기독교정신에 의한 청소년상담 교육으로 인재양성
대건청소년회	이성효	이사장	1998-09-21	1,136	1,000	청소년활동을 통해 건전 사회기풍 조성 및 국가와 사회발전에 필요한 올바른 청소년육성
대한불교청년회	하재길	중앙회장	1920-06-20	9,311	8,389	불타의 가르침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심신계발과 사회정화
대한안전연합	정현민	대표	2008-06-05	4,468	3,813	재해·재난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연구, 홍보 활동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함
대한적십자사청소년적십자 (RCY)	신희영	회장	1953-04-05	259,522	245,936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현 및 세계평화와 인류복지 공헌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	김순권	이사장	1929-12-01	9,627	9,004	종교, 지육, 체육, 봉사생활로 바른 교회생활 기여
대한청소년총효단연맹	김영희	총재	1997-12-30	16,960	15,930	총·효·예의 연구와 교육 및 수련활동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
비로자나청소년협회	송귀영	회장	2000-07-24	6,018	5,956	청소년에게 불교이념을 통한 인류공영에 이바지
빅드림	강미소	대표	2011-09-02	5,487	5,350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
삼동청소년회	양재호	이사장	1989-01-18	8,270	7,508	일원주의 사상의 도덕적 품성 함양과 세계평화에 기여
서울가톨릭청소년회	정순택	이사장	1999-09-01	22,026	21,262	가톨릭정신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육성

단체명	대표자		설립 년-월-일	총 회원 수 (명)	청소년 회원 수 (명)	설립목적
	성명	직위				
성산청소년호재단	최성규	이사장	1994-02-28	110,042	107,200	기독교 신앙에 입각하여 보호· 지도육성 및 가치관 확립
세계도덕재무장(MRA/IC) 한국본부	차광선	총재	1948-06-21	41,157	40,457	절대 정직·순결·무사·사랑으로 청소년 건전지도 육성
세계학교교육문화재단	이돈희	이사장	2009-02-13	3,880	3,580	세계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청소년단체활동
아름기청소년문화재단	안구현	이사장	1992-06-29	451	431	지·덕·체가 균형잡힌 청소년육성과 한민족의 주체성 전파
아이섹코리아	조은비	중앙위원장	1962-11-26	700	700	미래의 유능한 경영인 양성과 국제적 교류
어린이재단	지훈상	대표이사	1948-10-15	614,221	587,029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토록 보호 및 지원
울산청소년선도지도회	김일수	회장	1977-03-17	3,514	1,013	선도활동 및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건전 청소년 육성
육영재단	조수연	이사장	1969-04-24	-	-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인터넷꿈희망터	김은호	이사장	2011-03-07	3,167	3,160	인터넷 및 다양한 미디어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
청소년과사람사랑	신명철	이사장	1994-12-22	5,560	5,161	청소년 수련활동 및 문화활동을 통한 청소년 육성
청소년교육전략21	김영성	이사장	2002-01-15	307	220	아동, 청소년과 시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지도자연수 등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탁틴내일	최영희	이사장	1995-03-01	334	95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청소년 문화환경 조성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정성호 (지현)	회장	1996-09-30	47,216	46,396	민족의 주체성 확립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
푸른나무재단	문용린	이사장	1995-10-31	400,132	398,830	청소년 수련활동·선도·유해환경 정화, 복지증진
한국119소년단연맹	윤명오	총재	2013-03-21	17,203	16,442	청소년들에게 안전에 대한 의식과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교육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함
한국4-H본부	고문삼	회장	1954-11-09	30,809	20,042	4-H 농·어촌 청소년에 대한 소양과 기술 지원
한국YMCA전국연맹	안재웅	이사장	1903-04-03	12,123	9,327	기독교신앙을 바탕으로 한 민중의 복지향상과 새 문화 창조

제 1
부제 2
부제 3
부제 4
부제 5
부제 6
부제 7
부제 8
부제 9
부제 10
부부
록

단체명	대표자		설립 년-월-일	총 회원 수 (명)	청소년 회원 수 (명)	설립목적
	성명	직위				
한국YWCA연합회	원영희	회장	1922-04-20	11,526	5,683	젊은 여성의 기독생활 실천 및 평화와 정의사회 건설
한국걸스카우트연맹	김종희	총재	1946-05-10	109,558	94,969	소녀와 젊은 여성의 잠재력 계발과 민주시민 자질 함양 및 봉사 실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서상기	총재	1989-03-11	58,042	55,042	우주시대 인재양성 및 정보화 선진과학입국 실현
한국라보	유시경	이사장	1973-12-31	3,932	3,512	각국 간의 상호민박을 통한 친선 문화교류
한국로타리청소년연합	장기윤	이사장	1997-07-15	161,192	39,232	청소년의 지역사회 봉사와 국제간의 이해 증진
한국숲사랑청소년단	김명전	이사장	1991-07-24	10,910	10,439	국토보전을 위한 나무심기 운동 전개 및 푸른숲선도원 선발·육성
한국스카우트연맹	강태선	총재	1922-10-05	158,153	136,443	민주시민 자질향상 도모와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
한국유스호스텔연맹	신용우	총재	1967-04-17	28,389	28,235	야외여행활동을 통한 풍부한 지식과 건전 청소년육성
한국청소년골프협회	김창연	회장	2005-12-24	1,988	1,877	청소년골프선수 선발 및 육성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	한미영	총재	2002-03-22	2,543	2,411	발명영재의 발굴지원을 통해 유능한 발명인 육성
한국청소년복지진흥회	최노사	회장	1991-05-04	22,079	21,809	복음선교와 후원활동을 통한 청소년육성
한국청소년봉사단연맹	박승주	총재	2011-04-19	18,155	15,507	국제사회에 기둥이 될 청소년세대를 육성하는데 기여
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	김동연	이사장	1999-8-16	4,774	4,753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가치관 및 인성교육을 위한 교화
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강경순	총재	2003-10-06	10,548	10,000	해양스포츠 지도교육 능력 함양 및 해양환경보전활동
한국청소년연맹	한기호	총재	1981-03-19	243,868	240,313	청소년 전인교육을 통한 민족·국가관 확립
한국청소년육성회	박문서	총재	1970-11-11	3,879	3,151	청소년의 비행예방과 건전활동 지도로 민주시민 육성
한국청소년인권센터	강병연	이사장	1993-08-25	388	256	심신단련과 지도육성을 통해 건전한 가치관 확립
한국청소년재단	황인국	이사장	2002-02-25	360	350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
한국항공소년단	안현호	총재	2005-08-02	6,876	6,849	항공, 우주교육을 통한 도전, 개척정신 함양
한국해양소년단연맹	강무현	총재	1962-12-07	106,453	100,021	해양개척정신 고취를 통한 진취적 기상증진

단체명	대표자		설립 년-월-일	총 회원 수 (명)	청소년 회원 수 (명)	설립목적
	성명	직위				
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	박계홍	회장	1989-07-10	62,335	62,321	강건한 신체와 올바른 품성 및 국가관 확립
한국환경청소년단	양광선	총재	2001-05-09	5,909	5,149	환경친화적 생활양식 정착과 자연환경 계몽 감시운동
행복함께나누는재단	이원희	이사장	2011-04-21	358	200	소외계층·저소득층 청소년의 교육 및 청소년 활동을 지원
흥사단	박만규	이사장	1913-05-13	7,775	6,586	무실, 역행, 충의, 용감의 정신으로 인재 양성
경기청소년단체협의회	곽진현	회장	2018-11-01	8개 지역청소년단체		지역청소년단체 상호 간의 협력·지원과 청소년건전육성원
광주청소년단체협의회	박춘현 (도제스님)	회장	2008-03-24	30개 지역청소년단체		
대구청소년단체협의회	김영민	회장	1996-03-01	22개 지역청소년단체**		
대전청소년단체협의회	유덕순	회장	2002-10-11	36개 지역청소년단체**		
부산청소년단체협의회	백명숙	회장	2001-09-26	36개 지역청소년단체		
울산청소년단체협의회	김진	회장	1998-03-05	17개 지역청소년단체		
인천청소년단체협의회	김말숙	회장	2002-06-07	16개 지역청소년단체**		
전북청소년단체협의회	김경희	회장	1995-05-11	13개 지역청소년단체		
진주시청소년단체협의회	윤현중	회장	1992-09-26	9개 지역청소년단체		

주 : 1) 청소년단체 현황은 2021년 12월 기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2) ** : 해당 단체에 문의하여 파악하였음.

자료 : 1)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2021).

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홈페이지(www.ncyok.or.kr).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부록 3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 현황

(2021년 11월 기준)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서울	송파청소년센터	수련관	송파구청장	사)한국청소년연맹
서울	서울시립금천청소년센터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재)푸른나무청예단
서울	시립목동청소년센터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서울	시립강북청소년센터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학교법인 광운대학교
서울	서울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사)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
서울	시립창동청소년센터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광운학원 광운대학교
서울	서울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학)명지학원 명지전문대학
서울	서초구립방배유스센터	수련관	서초구청장	재)푸른나무청예단
서울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재)서울카톨릭청소년회
서울	시립서울청소년센터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서울	서울시립중랑청소년센터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사)한국청소년연맹
서울	마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송파구청장	(재)행복함께나누는재단
서울	시립수서청소년센터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사)한국청소년세상
서울	시립은평청소년센터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사)엔젤스헤이븐
서울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사)한국청소년재단
서울	서울중구청청소년센터	수련관	중구청장	중구시설관리공단
서울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사)한국청소년연맹
서울	관악청소년회관	수련관	관악구청장	사)온터드레회
서울	구립강남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강남구청장	사)한국YWCA연합회 후원회
서울	강남구립역삼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강남구청장	사)홀리비전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서울	구립서초유스센터	수련관	서초구청장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서울	시립화곡청소년센터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사)흥사단
서울	마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학)명지학원 명지전문대학
서울	시립구로청소년센터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한국청소년연맹
서울	구립용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용산구청장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서울	시립강동청소년센터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사)한국청소년연맹
서울	서울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재)푸른나무청예단
서울	시립성동청소년센터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서울	서울시립광진청소년센터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사)흥사단
서울	서울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재)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서울	삼성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재)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재단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서울	도봉숲속마을	수련원	박형호	재)송석교육문화재단
서울	북한산생태탐방연수원	수련원	환경부장관	국립공원관리공단
서울	양천구립신월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집	양천구청장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수녀회
서울	사당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동작구청장	사)청소년교육전략21
서울	동작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동작구청장	사)청소년교육전략21
서울	성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성동구청장	서울YWCA
서울	구립홍은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대문구청장	사)한국청소년재단
서울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도봉구청장	사)청소년교육전략21
서울	구립마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마포구청장	사)한국청소년재단
서울	창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도봉구청장	사)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
서울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문화의집	노원구청장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	구립망원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집	마포구청장	사)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서울	구립도화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마포구청장	사)한국청소년재단
서울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영등포구청장	재)청소년과사람사랑
서울	은평구청청소년문화의집신나는에프터센터	문화의집	은평구청장	사)열린사회시민연합
서울	성북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성북구청	한국스카우트연맹
서울	용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용산구청장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서울	갈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은평구청장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서울	구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구로구청장	사)한국청소년재단
서울	송파구립잠실청소년센터	문화의집	송파구청장	사)인터넷꿈희망터
서울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특화시설	서울특별시장	재)푸른나무청예단
서울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특화시설	서울특별시장	재)대산문화재단
서울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특화시설	서울특별시장	재)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
서울	서울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특화시설	서울특별시장	학)연세대학교
서울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특화시설	서울특별시장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서울	서울시립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	특화시설	서울특별시	사)한국스카우트연맹
서울	미래교육센터 오금Hub	특화시설	송파구청장	사)한빛청소년대안센터
서울	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특화시설	조광운	(학)광운학원·광운대학교
서울	서울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특화시설	서울특별시장	(사)한국청소년연맹
서울	서울유스호텔	유스호텔	서울특별시장	사)한국스카우트연맹
서울	서울올림픽파크텔	유스호텔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	하이서울유스호텔	유스호텔	서울특별시장	(사)한국청소년연맹
서울	국제청소년센터유스호텔	유스호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부산	부산광역시양정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부산광역시장	재)안국청소년도량
부산	사상구청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사상구청장	부산YMCA
부산	함지골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부산광역시장	재)내원청소년단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부산	금정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부산광역시장	(재)범어청소년동네
부산	금곡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부산광역시장	(사)삼동청소년회
부산	기장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기장군수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부산	구덕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구청장	재)내원청소년단
부산	해운대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해운대구청장	부산YMCA
부산	기장문화예절학교	수련원	기장군수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부산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청
부산	부산북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북구청장	(사)삼동청소년회
부산	부산중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중구청장	(재)내원청소년단
부산	부산진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부산진구청장	재)부산YMCA
부산	사하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사하구청장	재)내원청소년단
부산	부산서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구청장	재)안국청소년도량
부산	부산진구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집	부산진구청장	(사)틴스토리
부산	수영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수영구청장	재)범어청소년동네
부산	해운대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해운대구청장	해운대구청 가족복지과
부산	부산관광공사 아르피나	유스호스텔	부산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
대구	대구달서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달서구청장	(사)마하아나불교문화원
대구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구청장	함께하는 마음 재단
대구	대구수성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수성구청장	(사)마하아나불교문화원
대구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	수련관	북구청장	재)대구광역시 북구청소년회관
대구	달성군청소년센터	수련관	달성군수	재)달성복지
대구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대구광역시장	(재)대구가톨릭청년회
대구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수성구청장	(사)마하아나불교문화원
대구	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대구광역시장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대구	중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중구청장	대구광역시 중구청
대구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달성군수	재)달성복지재단
대구	대구동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대구동구청	사)대한불교조계종 마하아나불교문화원
대구	대구청소년문화의집꿈지락발전소	문화의집	대구광역시청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	동구청소년문화의집아름드리	문화의집	대구광역시동구청장	사)대한불교조계종 마하아나불교문화원
대구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창작센터	특화시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대구광역시 남구청
대구	대구청소년창의센터 꿈&꿈	특화시설	대구광역시	대구가톨릭청소년회
대구	팔공산맥섬석유스호텔	유스호텔	곽성근	주)팔공산맥섬석유스호텔
대구	비슬산유스호텔	유스호텔	달성군수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인천	인천서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구청장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인천광역시청	인천시설공단
인천	동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동구청장	재)성산청소년효재단
인천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부평구청장	재)부평구문화재단
인천	연수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연수구청장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인천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미추홀구청장	재)성산청소년효재단
인천	계양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계양구청장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인천	바다의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정신철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인천	성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재)성산청소년효재단	재)성산청소년효재단
인천	그레이스힐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유승배, 박근원	서울도시가스(주)
인천	마니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주)마니산수련원	(주)마니산수련원
인천	검단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구청장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	연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구청장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	남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남동구청장	남동구청
인천	가좌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구청장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인천	연수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연수구청장	연수구청
인천	서해청소년유스호텔	유스호텔	주)서해교육문화	주)서해교육문화 고재룡
인천	강화로얄호텔	유스호텔	주)강화로얄호텔	주)강화로얄호텔
광주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북구청장	사)한국청소년인권센터
광주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동구청장	사)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
광주	광산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광산구청	(재)광주기독교 청년회 유지재단
광주	광주광역시남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남구청장	학)호심학원
광주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구청장	재)광주기독교 청년회 유지재단
광주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광주광역시장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수녀회
광주	화정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광주광역시장	사)흥사단광주지부
광주	광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박금호	사)광천사랑숲
광주	광주광역시원당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광주광역시	한국스카우트광주연맹
광주	서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구청장	지역교육네트워크 화월주
광주	광주광역시각화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광주광역시장	사)꿈과도전
광주	광주광역시용봉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광주광역시	사)광주기독교청소년협회
광주	월곡동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	문화의집	광산구청장	광산구청
광주	광주광역시청소년살디자인센터	특화시설	광주광역시장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대전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수련관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전	대전대덕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대덕구청장	재)대전가톨릭청소년회
대전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유성구청장	백석대학교
대전	대전청소년위캔(WeCan)센터	수련관	대전광역시장	대전YWCA
대전	대전청소년수련마을	수련원	대전광역시장	사)대전청소년심신수련회
대전	살레시오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대전	도솔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구청장	(사)대전흥사단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대전	대흥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중구청장	대전YWCA
대전	탄방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구청장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광역시지부
대전	장대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유성구청장	백석대학교
대전	도화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구청장	사)월드유스비전 대전시지부
대전	갈마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구청장	사)한국항공소년단
대전	도안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구청장	사)은누리청소년문화재단
울산	울주서부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울주군수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울산	울주중부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울주군수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울산	청소년차오름센터	수련관	울산남구청장	사)울산흥사단
울산	삼동배내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이순식	사)삼동청소년회
울산	남목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동구청장	울산YMCA
울산	공업탑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남구청장	사)마이코즈
울산	문수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남구청장	한국걸스카우트울산연맹
울산	울산광역시동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동구청장	유네스코울산광역시협회
울산	울산중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중구청장	사)꿈빛소금
울산	북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북구청장	사)울산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
울산	성남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중구청장	울산YWCA
경기	토당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고양시장	재)고양시청소년재단
경기	동안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안양시장	재)안양시청소년재단
경기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수련관	평택시장	재)평택시청소년재단
경기	부천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부천시장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
경기	군포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군포시장	재)군포시청소년재단
경기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수련관	수원시장	재)수원시청소년재단
경기	상록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안산시장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경기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의왕시장	재)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부천시장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
경기	용인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용인시장	재)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경기	구리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구리시장	재)구리시청소년재단
경기	시흥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시흥시장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경기	과천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과천시장	과천시청
경기	화성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화성시장	재)화성시문화재단
경기	성남시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성남시장	재)성남시청소년재단
경기	성남시청소년재단 수정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성남시장	재)성남시청소년재단
경기	성남시중원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성남시장	재)성남시청소년재단
경기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성남시장	재)성남시청소년재단
경기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성남시장	재)성남시청소년재단
경기	김포중봉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김포시장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안양시만안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안양시장	재)안양시청소년재단
경기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남양주시장	남양주도시공사
경기	포천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수련관	포천시장	포천시청
경기	의정부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의정부시장	재)의정부시청소년재단
경기	권선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수원시장	재)수원시청소년재단
경기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수련관	이천시장	재)이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광교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수원시장	재)수원시청소년재단
경기	연천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연천군수	재)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경기	광명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광명시장	재)광명시청소년재단
경기	고양시마두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고양시장	재)고양시청소년재단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경기	광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광주시장	재)한국청소년진흥재단
경기	동두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동두천시청	동두천시청
경기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고양시장	재)고양시청소년재단
경기	부천시소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부천시청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
경기	단원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안산시	재)안산시청소년재단
경기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성남시장	재)성남시청소년재단
경기	하남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하남시장	사)한국청소년재단
경기	딱따구리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신필호	신필호
경기	미리내캠ป์	수련원	이광섭	(주)미리내
경기	여주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홍영광	홍영광
경기	유스토리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김성식	김성식
경기	하내테마파크	수련원	전학열	전학열
경기	한울유스센터	수련원	임화순	임화순
경기	한터캠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김용실	김용실
경기	양주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양주시청	양주시청
경기	김포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김포시장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김민용	효정국제문화재단
경기	새싹동산청려수련원	수련원	김종희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봉사회
경기	엄마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임계두	너리굴문화마을
경기	평택시무봉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평택시장	재)평택시청소년재단
경기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경기도지사	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	서경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서경대학교	학)서경대학교
경기	아침햇살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주)바로교육	(주)바로교육
경기	영산수련원	수련원	재)순복음선교회	(재)순복음선교회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경기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경기	(주)축구마을	수련원	(주)축구마을	(주)축구마을
경기	용인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용인시장	재)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경기	(재)서울YMCA 일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재)서울YMCA	재)서울YMCA
경기	자연나라수련원	수련원	정신	농업회사법인(주)자연나라
경기	포천염광수련원	수련원	학)염광학원	학)염광학원
경기	여주중앙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여주시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	김포로그밸리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김형금	김형금
경기	청학서당예절교육수련원	수련원	서재욱	서재욱
경기	덕평수련원	수련원	덕평골프장	덕평수련원
경기	상천수련원	수련원	남상순	한국기독교에덴성회 선교재단
경기	대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윤은도	사회복지법인 대순진리회복지재단
경기	삐띠프랑스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한홍섭	주)삐띠프랑스
경기	국제광림비전랜드	수련원	광림교회	광림교회
경기	해찬여울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정영섭	(주)해찬여울청소년수련원
경기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부천시장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경기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군포시장	재)군포시청소년재단
경기	문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파주시장	파주청소년문화원
경기	부천여성청소년센터	문화의집	부천시장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
경기	안양시만안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안양시장	재)안양시청소년재단
경기	안양시석수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안양시장	재)안양시청소년재단
경기	창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이천시장	재)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평택시북부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평택시장	재)평택시청소년재단
경기	평택시평성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평택시장	재)평택시청소년재단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경기	고양시성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고양시장	재)고양시청소년재단
경기	장안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수원시장	재)수원시청소년재단
경기	금촌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파주시장	파주청소년문화원
경기	신갈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용인시장	재)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경기	영통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수원시장	재)수원시청소년재단
경기	오름청소년활동센터	문화의집	광명시장	재)광명시청소년재단
경기	이천부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이천시장	재)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일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안산시장	재)안산시청소년재단
경기	해남청소년활동센터	문화의집	광명시장	재)광명시청소년재단
경기	하남시덕풍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하남시장	사)인터넷꿈희망터
경기	사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김포시장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성남시청소년재단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성남시장	재)성남시청소년재단
경기	성남시청소년재단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성남시장	재)성남시청소년재단
경기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부천시장	재)부천시독교청년회유지재단
경기	안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안산시장	안산YWCA
경기	양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양주시장	양주시청
경기	통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김포시장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교하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파주시장	파주YMCA
경기	금광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김영삼	대한예수교장로회 금광교회
경기	동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화성시장	재)화성시여성가족재단
경기	오산남부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오산시장	사)오산예일
경기	가평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가평군	한국스카우트연맹
경기	나름청소년활동센터	문화의집	광명시장	재)광명시청소년재단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경기	시흥시구미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시흥시장	시흥YMCA
경기	여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여주시장	여주시청
경기	당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군포시장	재)군포시청소년재단
경기	안중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평택시장	재)평택시청소년재단
경기	양촌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김포시장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오산시장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	유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용인시장	재)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경기	고양시탄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고양시장	재)고양시청소년재단
경기	디딤청소년활동센터	문화의집	광명시장	재)광명시청소년재단
경기	안양시호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안양시장	재)안양시청소년재단
경기	꿈빛나래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오산시장	오산시
경기	사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안산시장	재)안산시청소년재단
경기	선부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안산시장	재)안산시청소년재단
경기	새말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의정부시장	재)의정부시청소년재단
경기	수지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용인시장	재)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경기	운정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파주시장	파주기독교청년회
경기	청미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이천시장	재)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포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포천시장	포천시청 교육지원과
경기	누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화성시장	재)화성시여성가족재단
경기	서정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평택시장	사)평택YFC
경기	안양시평촌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안양시장	재)안양시청소년재단
경기	연천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연천군수	재)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원평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평택시장	사)흥사단평택안성지부
경기	철보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수원시장	재)수원시청소년재단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경기	시흥능곡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시흥시장	시흥YMCA
경기	안성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안성시	사)청소년선도위원회 안성시지부
경기	천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수원시장	재)수원시청소년재단
경기	흥선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의정부시장	재)의정부시청소년재단
경기	고촌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김포시장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정왕어울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시흥시장	시흥YMCA
경기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의왕시장	재)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경기도청소년야영장	야영장	경기도지사	경기도
경기	서삼릉청소년야영장	야영장	사)한국스카우트연맹	사)한국스카우트 경기북부연맹
경기	중앙(근지암)야영장	야영장	재)한국스카우트재단	사)한국스카우트연맹
경기	가평힐링캠프	야영장	남상환	남상환
경기	안성시다목적야영장	야영장	안성시장	안성시청
경기	골목대장 잉클 팜	특화시설	장지성	(주)농업회사법인 골목대장잉클팜
경기	캠프그리브스 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경기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	수원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수원시장	재)수원시청소년재단
강원	원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원주시장	원주YMCA
강원	동해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동해시장	사)푸른동해
강원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수련관	철원군수	철원군청
강원	영월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영월군수	원주YMCA
강원	홍천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홍천군수	춘천YMCA
강원	강릉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강릉시장	강릉시
강원	고성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고성군수	고성군
강원	춘천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춘천시장	재)춘천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강원	삼척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삼척시장	삼척시청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강원	화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화천군수	화천군청
강원	횡성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횡성군수	횡성군청
강원	양양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양양군수	양양군청
강원	속초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속초시장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강원	태백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태백시장	재)태백시복지재단
강원	정선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정선군수	사)한국BBS중앙연맹
강원	호림오대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호림오대산청소년수련원	주)호림동산 평창점
강원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수련원	강릉시장	한국해양소년단 강원연맹
강원	강원도치악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강원도지사	사)한국청소년야외활동협회
강원	미리내 캠프	수련원	이지연	(주)미리내 캠프
강원	안전문화수련원	수련원	정기성	안전문화수련원
강원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수련원	강원도지사	한국스카우트연맹
강원	철원군병영체험수련원	수련원	철원군수	철원군수
강원	만해마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강원	간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황민혜	황민혜
강원	강원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강원도청	재)춘천가톨릭청소년회
강원	평창힐링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주)리드패밀리	(주)리드패밀리
강원	치악산환경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이성주	(주)피노키오
강원	강촌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원윤희	재)서울시립대학교발전기금
강원	거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고성군	고성군
강원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춘천시장	춘천동부디아코니아
강원	도계청소년장학센터	문화의집	삼척시장	삼척시청
강원	속초시아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속초시장	속초YMCA
강원	북면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인제군수	인제군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강원	원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원주시장	원주YMCA
강원	기린면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인제군수	인제군청
강원	강릉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강릉시장	강릉시청
강원	중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원주시장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강원	현내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고성군	고성군
강원	신동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문화의집	정선군수	한국청소년연맹
강원	동해시향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동해시장	사)푸른동해
강원	사북청소년장학센터	문화의집	정선군수	한국청소년강원연맹
강원	원덕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삼척시장	삼척시청
강원	사내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화천군수	화천군청
강원	임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정선군청	사)한국BBS중앙연맹
강원	영월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영월군수	사)아름다운청소년들
강원	진부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평창군수	평창군청
강원	평창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평창군수	평창군청
강원	근덕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삼척시장	삼척시청
강원	횡성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회성군수	횡성군청
강원	철암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태백시장	재)태백시복지재단
강원	상장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태백시장	재)태백시복지재단
강원	화천청소년야영장	야영장	화천군수	화천군청
강원	한국안전체험관	특화시설	태백시장	태백시청
강원	동서울유스호텔	유스호텔	(주)동서울레스피아	(주)동서울레스피아
강원	신안종합유스호텔	유스호텔	신안종합리조트(주)	신안종합리조트(주)
강원	휘닉스빌유스호텔	유스호텔	휘닉스중앙 주식회사	휘닉스중앙 주식회사
충북	청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청주시장	학)주성학원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충북	증평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증평군수	재)증평복지재단
충북	진천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진천군수	진천군청
충북	영동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영동군	영동군청
충북	나인밸리포레스트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박주희	박주희, 최지수
충북	한국전통문화체험학교	수련원	박명숙	월악민속놀이학교
충북	청소년수련마을보람원	수련원	서윤덕	(재)오운문화재단
충북	속리산유스타운	수련원	주)계룡산업	주)계룡산업
충북	박달재수련원	수련원	이종진	재)단촌청소년활동개발원
충북	괴산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괴산군수	대한청소년총효단
충북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수련원	충청북도지사	학)주성학원
충북	꽃동네사랑의연수원	수련원	오웅진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충북	충주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충주시장	재)단촌법인청소년활동개발원
충북	송호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임묘진	(주)송호연수원
충북	진천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진천군수	진천군
충북	속리산알프스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한창환	(주)속리산알프스수련원
충북	제천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제천시장	사)아름다운대한민국
충북	로하스아카데미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이상부	주)로하스아카데미
충북	청주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청주시장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
충북	음성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음성군수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충북	제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천시장	(재)단촌청소년활동개발원
충북	괴산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괴산군수	괴산군수
충북	단양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단양군수	단양청소년문화의집
충북	매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단양군청	매포청소년문화의집
충북	보은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보은군수	한국BBS충북연맹 보은군지회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충북	금양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음성군수	한국BBS충북연맹 음성군지회
충북	음성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음성군수	음성군청
충북	황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영동군	영동군청
충북	덕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진천군수	진천군
충북	장락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천시장	제천시청
충북	청주시청원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청주시장	사)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충북	태동유스호텔	유스호텔	(주)속리산알프스수련원	(주)속리산알프스수련원
충남	홍성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홍성군수	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충남	보령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보령시장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충남	태안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태안군수	태안군
충남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수련관	아산시장	학)동은학원 순천향대학교
충남	천안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천안시장	호서대학교
충남	예산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예산군수	(재)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
충남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천안시장	학)백석대학교
충남	서산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산시장	재)서산시복지재단
충남	서천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천군수	사)서천청소년문화마당 봄
충남	논산시청소년문화센터	수련관	논산시장	재)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충남	서해천수만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반채홍	사)한국인성문화원
충남	청양송의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재)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충남	부여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부여군수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충남	만리포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오인근	주)만리포수련원
충남	군포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군포시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충남	서해안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차군규	재)서해안청소년수련원
충남	청포대썬셋수련원	수련원	함승우	(주)케이와이엠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충남	대천오성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김경석	대천오성청소년수련원
충남	삼정부여유스타운	수련원	박명길	(주)삼정관광호텔
충남	한양여자대학교 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김종량	한양여자대학교
충남	마달피삼육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황춘광	재)제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유지재단
충남	아산늘푸름수련원	수련원	재)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대한청소년총효단
충남	케이티엔지상상마당논산	수련원	주)케이티엔지	컴퍼니에스에스(주)
충남	제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진경수, 김미숙	제천청소년수련원(주)
충남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충남	합덕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당진시장	당진시청
충남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보령시장	(사)보령시청소년교화연합회
충남	당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당진시장	당진시청
충남	서산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산시장	재)서산시복지재단
충남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집	서천군수	재)서울기독교청년회(서울YMCA)
충남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집	공주시장	사)한국B.B.S 대전·충남연맹 공주시지회
충남	광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홍성군수	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충남	예산군청소년미래센터	문화의집	예산군수	재)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
충남	금산청소년미래센터	문화의집	금산군수	금산군청
충남	청양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청양군	청양군청
충남	공주시청소년꿈창작소	문화의집	공주시장	사)한국BBS 대전충남 공주시지회
충남	아산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아산시장	재)아산시청소년재단
충남	공주유스호텔	유스호텔	서경원	공주유스호텔
충남	해기든유스호텔	유스호텔	오백근	주)해기든유스호텔
충남	부여군유스호텔	유스호텔	부여군수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전북	익산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익산시장	사)세백이슬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전북	솔내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전주시장	재)쌍백합청소년육성회
전북	진안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진안군수	진안YMCA
전북	정읍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정읍시장	정읍YMCA
전북	무주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무주군수	재)쌍백합청소년육성회
전북	군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군산시장	사)군산기독교청년회(군산YMCA)
전북	김제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김제시장	김제시장
전북	남원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남원시청	삼동청소년회
전북	고창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고창군수	고창군청
전북	청정테마힐링센터	수련원	이강동	이강동
전북	진실되게하는 지리산유스캠프	수련원	이종범	주)진실되게하는 지리산유스캠프
전북	무주수련원	수련원	이장호	이장호
전북	임실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임실군수	임실군청
전북	대광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장흥기	장흥기
전북	상생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사)상생복지회	사)상생복지회
전북	부안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부안군수	부안군청
전북	모악산유스타운 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최지승	최지승
전북	무주덕유산유스타운	수련원	이종혁	주)무주덕유산리조트
전북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군산시장	사)군산기독교청년회(군산YMCA)
전북	덕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전주시장	사)흥사단
전북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전주시장	(사)삼동청소년회
전북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익산시장	사)삼동청소년회
전북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전주시장	재)한기장복지재단
전북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전주시장	사)아모스청소년회
전북	남원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남원시장	사)삼동청소년회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전북	안성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무주군수	재)쌍백합청소년육성회
전북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완주군수	사)봉상청소년육영회
전북	부안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부안군수	부안군청
전북	금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김제시장	김제시장
전북	만경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김제시장	김제시장
전북	한국스카우트송광훈련장	야영장	홍오남	한국스카우트전북연맹
전북	진안군마이산청소년야영장	야영장	진안군수	(사)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 진안지회
전북	부안군청림청소년수련시설	특화시설	부안군수	부안군청
전북	익산유스호텔	유스호텔	익산시장	사)삼동청소년회
전북	전북 JK유스호텔	유스호텔	조희천	전주기전대학 학교기업 JK여행사
전남	나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나주시장	광주YMCA
전남	영암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영암군수	한국청소년인권센터
전남	광양시청소년문화센터	수련관	광양시장	광양기독교청년회(광양YMCA)
전남	장성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장성군수	사)광주기독교청소년협회(CYA)
전남	여수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여수시	사)여수기독교청년회
전남	장흥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장흥군수	사)한들청소년센터
전남	무안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무안군수	무안군청
전남	완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사)삼동청소년회	사)삼동청소년회
전남	진도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진도군수	(사)삼동청소년회
전남	목포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목포시장	목포YMCA
전남	순천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순천시장	한국스카우트연맹
전남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전라남도지사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전남	신안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최호성	신안군청소년수련원
전남	보성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보성군수	(사)흥사단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전남	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곡성군수	사)푸른청소년육성개발원
전남	보성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보성군수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전남	고흥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고흥군수	고흥군청
전남	광양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광양시장	광양YMCA
전남	담양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담양군수	담양군청
전남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집	목포시장	목포YMCA
전남	완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완도군수	사)꿈틀
전남	삼호읍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영암군수	사)청우인재육성회
전남	함평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함평군수	재)광주가톨릭청소년회
전남	황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해남군	사)청소년공룡왕국
전남	목포시하당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집	목포시	목포YMCA
전남	여수시여문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여수시	사)여수기독교청년회(여수YMCA)
전남	옥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곡성군청	푸른청소년육성개발원
전남	여수시미평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여수시장	사)한국청소년육성회여수지구회
경북	문경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문경시장	한국청소년경북연맹
경북	영천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영천시장	영천시
경북	상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상주시장	상주시
경북	칠곡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칠곡군수	칠곡군
경북	경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경주시장	경주시청
경북	구미시선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구미시장	구미대학교
경북	울진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울진군수	울진군청
경북	안동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안동시장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경북	봉화군청소년센터	수련관	봉화군수	봉화군청
경북	포항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포항시장	재)포항시청소년재단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경북	보문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주)보문청소년수련원	(주)보문청소년수련원
경북	국민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이주환	(주)국민관광농원
경북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경상북도지사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경북	포항시구룡포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포항시장	(재)포항시청소년재단
경북	오케이그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대한불교진각종유지재단	노장환
경북	영양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영양군수	영양군청
경북	영주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영주시장	사)한국B.B.S 경북지회
경북	안동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안동시장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경북	화랑마을	수련원	경주시장	경주시청
경북	경산시계림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경산시장	학)대구의한대학교
경북	군위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군위군청	(재)대구가톨릭청소년회
경북	상주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상주시장	상주시
경북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김천시장	김천시청
경북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문경시장	문경시청
경북	영천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영천시장	영천시청
경북	안동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집	장채기	(재)고운청소년재단
경북	칠곡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칠곡군수	칠곡군청
경북	성주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성주군수	성주군청 가족지원과
경북	고령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고령군	고령군청
경북	산내유스호텔	유스호텔	경주시장	사)청소년서라벌문화원
경북	문경새재유스호텔	유스호텔	문경시장	문경관광진흥공단
경북	Remember유스호텔	유스호텔	김성기	김성기
경북	성보촌유스호텔	유스호텔	주)성보문화재단	주)성보문화재단
경남	김해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김해시장	김해시복지재단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경남	거제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거제시장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남	진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진주시장	진주시청
경남	창원시늘푸른전당	수련관	창원시장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경남	창녕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창녕군수	(재)푸른섬터장학회
경남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수련관	창원시장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경남	양산시청소년회관	수련관	양산시장	양산시장
경남	진해청소년전당	수련관	창원시장	재)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
경남	창원시봉림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창원시장	사)봉림
경남	함안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함안군	재)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
경남	진해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창원시장	재)반석청소년재단
경남	거창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거창군청	거창군수
경남	밀양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밀양시장	재)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
경남	하동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하동군수	하동군
경남	남해유스타운	수련원	조문권	남해유스타운
경남	김해수련장	수련원	김은진	김은진
경남	거제그린유스타운	수련원	임만규	임만규
경남	온누리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김윤희	김윤희
경남	지리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조임순	조임순
경남	몽양당청학동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김보곤	김보곤
경남	해운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박해운	해운개발(주)
경남	황석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정철상	박미화
경남	통영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통영시장	한국해양소년단 경남남부연맹
경남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경상남도지사	한국스카우트경남연맹
경남	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거창군	거창흥사단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경남	남해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한대섭	한려개발
경남	덕유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강철훈	덕유산청소년수련원
경남	홍의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학교법인)문화교육원	사)경남청소년교육개발원
경남	부일수련원	수련원	윤영화	윤영화
경남	하동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하동군수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
경남	청학동서당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서흥석	서흥석
경남	가배강리조트수련원	수련원	주)거제해양복합리조트	주)거제해양복합리조트
경남	알펜라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엔데버주식회사	엔데버주식회사
경남	사랑도천문대수련원	수련원	김학	주)사랑도천문대
경남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창원시장	(재)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
경남	옥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거제시장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남	양산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양산시청	양산시장
경남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고성군수	고성군청
경남	영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창녕군수	(재)푸른쉼터장학회
경남	거창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거창군수	거창군수
경남	마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창원시장	마산YMCA
경남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밀양시장	재)푸른쉼터장학회
경남	고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거제시장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남	사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사천시	재)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
경남	남지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창녕군수	(재)푸른쉼터장학회
경남	의령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의령군수	경남홍의청소년육성회
경남	통영동원유스호텔	유스호텔	장정규	주)남양종합개발
제주	제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제주	비자림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흥사단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제주	(주)부영주택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주식회사 부영주택	(주)부영주택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제주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서귀포YWCA
제주	강정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강정마을회	강정마을회
제주	송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귀포시장	서귀포시
제주	도남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제주	아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제주	법환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귀포시장	법환동청소년문화의집
제주	한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제주	예래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예래마을회	예래동주민자치위원회
제주	추자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추자면사무소
제주	화북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제주	용담1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제주	이도1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제주	도평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제주	구좌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제주	애월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청
제주	하효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귀포시장	하효마을회
제주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청소년과미래
제주	조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YMCA
제주	조이빌제주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주)아트오브리빙	(주)아트오브리빙
세종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수련관	세종특별자치시	사)삼동청소년회
세종	조치원청소년센터	문화의집	세종특별자치시장	사)한국청소년진흥재단세종특별자치시지부
세종	새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세종시장	세종YMCA
세종	고운청소년센터	문화의집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주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 현황은 2021년 11월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자료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2021).

부록 4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쉼터, 자립지원관) 현황

(2022년 기준)

지역	시설명	시설유형	주소	연락처
서울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권)	청소년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1길 11, 3층 (인사동 YMCA 별관)	02-722-1318
서울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남권)	청소년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1길 11, 3층 (인사동 YMCA 별관)	02-722-1318
서울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권)	청소년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81길 39(성내동) B1층	02-6239-2014
서울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남권)	청소년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81길 39(성내동) B1층	02-6239-2014
서울	서울특별시청소년일시쉼터(용산일시)	청소년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만리재로 156-1(서계로)	02-718-1318
서울	서울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청소년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40길 5-26 (수유3동)	02-6435-7979
서울	서울시립강남일시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43 신관 5층	02-2051-1371
서울	은평구립일시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89길 6-20(갈현동)	02-382-1388
서울	강서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록마을로10길 5, 201호	02-2697-7377
서울	서울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	청소년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376, 대경빌딩 3층	02-876-7942
서울	서울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	청소년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43, 신관 1층	02-3281-8200
서울	서울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	청소년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송림길 156	02-493-1388
서울	서울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	청소년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247길 54, 301호	02-3281-7942
서울	서울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	청소년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73길 10-16 (독산동)	02-6959-1011

지역	시설명	시설유형	주소	연락처
서울	서울시립은평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92길 37-6 (불광동 동산출타운)	02-6959-2401
서울	어울림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48길 76, 예루뜨빌 303호	02-302-9006
부산	부산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청소년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덕로 82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1층 112호	051-303-9677
부산	부산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청소년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덕로 82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1층 122호	051-303-9670
부산	부산광역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덕로 82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2층 211호	051-303-9672
부산	부산광역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255번길 58 (구. 부산광역시 민락동 165-7)	051-756-0924
부산	부산광역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팔송로39번길 109, 2층	051-581-1388
대구	대구광역시이동형일시청소년쉼터(다운)	청소년쉼터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34길 16, 3층 302호	053-754-1388
대구	대구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1길 5, 흥사단회관 2층(범어동)	053-764-1388
대구	달서구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10안길 11	053-526-1318
대구	대구광역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81길 66-5, 4층	053-659-6290
대구	대구광역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8길 14(3층)	053-426-2275
대구	대구광역시중장기여자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로 106(성당동 4층)	053-426-2276
인천	인천시일시청소년쉼터(꿈꾸는별)	청소년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56	032-817-1318
인천	인천시일시청소년쉼터(한울타리)	청소년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1059번길 10	032-516-1318
인천	인천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우리들)	청소년쉼터	인천 부평구 아트센터로60번길 4	032-442-1388
인천	인천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바다의별)	청소년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남주길125번길 5	032-438-1318

지역	시설명	시설유형	주소	연락처
인천	인천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 하늘목장)	청소년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45-2, 201호	032-528-2216
인천	인천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 하모니)	청소년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01 대영빌딩 5층	032-468-1318
인천	인천시청소년중장기쉼터(남자, 별마루)	청소년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일로40번길 85, 401호 (대창스페이스빌라 가동)	032-875-7718
인천	인천시중장기청소년쉼터(여자, 예꿈)	청소년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157번길 34-15 원빌리지 301호	032-465-1393
광주	광주광역시청소년일시쉼터(이동형)	청소년쉼터	광주광역시 남구 제중로46번길 1, 2~3층	062-527-1318
광주	광주광역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광주광역시 북구 면양로 87, 3층	062-227-1388
광주	광주광역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광주광역시 북구 중가로 43, 5층	062-525-1318
광주	광주광역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로24번길 5-1 풍암빌402~404호	062-714-1388
광주	광주광역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맥지쉼터)	청소년쉼터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로 34, 5층	062-366-1318
대전	대전광역시청소년이동일시쉼터	청소년쉼터	대전광역시 중구 서대로1466번길 53	042-221-1092
대전	대전광역시청소년드롭인센터	청소년쉼터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159, 503호 지앤지 빌딩	042-673-1092
대전	대전남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488번길 9 보육정보센터 5층	042-223-7179
대전	대전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488번길 9 보육정보센터 4층	042-256-7942
대전	대전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342번길 현진빌라 402호	042-528-7179
대전	대전광역시중장기청소년쉼터(여자)	청소년쉼터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251번길 18-54 상희빌 402호/403호	042-534-0179
울산	울산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울산광역시 중구 먹자거리 31(성남동) 2층	052-245-1388
울산	울산광역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울산광역시 북구 화동11길 28(화봉동)	052-261-1388

지역	시설명	시설유형	주소	연락처
울산	울산남구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울산광역시 남구 돈길로27번길 14(신정동)	052-269-1388
울산	울산울주군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북2길 18-1	052-223-5186
울산	울산남구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울산광역시 남구 꽃대나리로15번길 6, 드림타운	052-265-1388
경기	김포시이동형일시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경기도 김포시 겔포로 76	031-980-1604
경기	의정부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청소년쉼터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395, 5층(가능동)	031-871-1318
경기	성남시일시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80, 2층	031-758-1388
경기	부천시청소년일시쉼터	청소년쉼터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54번길 9(심곡동)	032-654-1318
경기	안양시일시청소년쉼터 민들레뜨락	청소년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63번길 31 (안양동)	031-464-1388
경기	남양주시일시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경기도 남양주시 흥유릉로248번길 39 다남빌딩 203호	031-591-1319
경기	고양시자단기청소년쉼터 등지	청소년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견달산로161번길 77	031-969-0091
경기	성남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12 우남이타워프라자 8층	031-722-6260
경기	수원남자단기청소년쉼터(청소년달보듬터)	청소년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61 (세류동, 리치타워 3층)	031-216-4313
경기	시흥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꿈다락)	청소년쉼터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로1073번길 4-2	031-314-9072
경기	안산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징검다리)	청소년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35, 501, 502호(제일프라자)	031-481-8232
경기	안양남자단기청소년쉼터(FORYOU)	청소년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346 (관양동, 코오롱동산타워) 상가동 401호	031-455-9182
경기	용인남자단기청소년쉼터(푸른꿈)	청소년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문인로39번길 7 (풍덕천동 667-3)	031-276-0770
경기	의정부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56, 유흥빌딩 5층	031-829-1318

지역	시설명	시설유형	주소	연락처
경기	구리여자단기청소년쉼터(보급자리)	청소년쉼터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32-1	031-564-7707
경기	부천모듬이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763번길 16-23(역곡동)	032-343-1880
경기	성남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 29 력키참조은 201, 202호	031-758-1213
경기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77, 3층 (송산빌딩)	031-216-8677
경기	시흥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경기도 시흥시 오동마을로 33, 5층	031-434-1318
경기	안산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대학로8길 17 (월피동)	031-486-0079
경기	화성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매봉로 478, 대호프라자 303호	031-227-7935
경기	오산시립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곁동 366(2층)	031-374-1388
경기	의정부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경기도 의정부시 비우로 12, 청소년비전센터 3, 4층	031-837-1318
경기	이천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나르사)	청소년쉼터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227번길 28, 대호 2차@ 111호	031-631-7305
경기	평택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경기도 평택시 매봉산4길 26(비전동 825-15)	031-652-1384
경기	구리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민들레)	청소년쉼터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51, 3~4층(수택동)	031-568-1318
경기	군포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하나로)	청소년쉼터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789 온누리청소년센터	031-399-7997
경기	성남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1151번길 25 (성남동)	031-752-9050
경기	하남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 208(덕풍동)	031-791-1337
경기	고양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현중로26번길 37-9	031-918-1366
경기	성남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원터로106번길 4, 요림빌딩 3층	031-758-1720

지역	시설명	시설유형	주소	연락처
경기	안양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호숙)	청소년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06, 5층 (호계동, 봉성빌딩)	031-468-5141
경기	용인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푸른꿈)	청소년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89번길 4-11 (풍덕천동 738-9)	031-264-7733
강원	강원도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청소년쉼터	강원도 춘천시 동면 춘천로 527-40, 1층	033-255-1005
강원	강원도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청소년쉼터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379번길 27, 3층	033-256-0924
강원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청소년쉼터	강원도 원주시 복원로2718번길 17 (101호-102호)	033-742-0924
강원	강원도남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379번길 27, 4층	033-255-1002
강원	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강원도 강릉시 금성로 28-2, 2층(금학동)	033-655-1424
강원	원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강원도 원주시 라웅정길 3-21, 1층	033-761-7591
강원	강원도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강원도 춘천시 동면 춘천로 527-40, 2층	033-255-1004
강원	강원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강원도 춘천시 화목원길 166	033-244-5118
강원	강원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강원도 춘천시 동면 춘천로 527-40	033-256-7179
충북	청주시청소년일시이동쉼터	청소년쉼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26번길 21 (서운동)	043-225-1888
충북	청주남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31-9 (수곡동)	043-231-2676
충북	친구청소년쉼터(남자)	청소년쉼터	충청북도 충주시 금봉3길 27(용산동)	043-911-3479
충북	제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충청북도 제천시 고암로4가길 3	043-643-7946
충북	청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느티나무	청소년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194번길 60-4 (가경동)	043-231-2676
충북	충청북도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울로 166(3층)	043-266-2204

지역	시설명	시설유형	주소	연락처
충북	충주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충청북도 충주시 봉현로 109	043-852-0924
충남	아산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개목5길 34, 2층	041-578-1388
충남	천안남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 29 성심빌딩 4층	041-548-1326
충남	홍성남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36번길 49 다기능복지센터 3층	041-634-6564
충남	논산꿈이레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원앙로1348번길 97	041-735-1075
충남	아산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896-36	041-534-1388
충남	천안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14길 77	041-576-1316
충남	홍성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36번길 49 다기능복지센터 4층	041-631-6560
충남	공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충청남도 공주시 백미고을길 5-1(금성동)	041-853-1337
충남	공주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충청남도 공주시 버드나무1길 64(옥룡동)	041-853-4486
전북	익산일시청소년쉼터(디딤돌)	청소년쉼터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28길 31(영등동), 3층	063-857-1091
전북	전주한울안남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범안1길 26-8, 402호	063-251-3530
전북	전주푸른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3길 5-6	063-903-1091
전북	전주임마누엘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6길 30-22	063-244-1774
전북	군산꽃동산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전라북도 군산시 검다매안길 6-6(2층)	063-451-1091
전남	목포남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전라남도 목포시 호남로52번길 19-1, 3~4층	061-278-1388
전남	여수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전라남도 여수시 대교로 51, 2층	061-644-0918

지역	시설명	시설유형	주소	연락처
전남	여수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3길 2, 3층	061-661-0924
전남	목포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전라남도 목포시 상리로15번길 19	061-287-1388
경북	경상북도청소년남자쉼터	청소년쉼터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34길 31(형곡동)	054-455-1234
경북	구미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경상북도 구미시 원남로10길 13-3	054-444-1388
경북	경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경상북도 경주시 봉황로 168(성건동)	054-748-1388
경북	포항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171번길 43-1	054-284-1388
경북	경상북도청소년여자쉼터	청소년쉼터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270(안막동)	054-857-6137
경북	포항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100번길 64, 2층	054-244-1318
경남	경상남도일시청소년쉼터(남.여)	청소년쉼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133번길 11 (3층)	055-285-7361
경남	창원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하라)	청소년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하남천서길37번길 6-4	055-237-1318
경남	김해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277, 5층	055-332-1318
경남	경상남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마야)	청소년쉼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55번길 14-3	055-274-0924
경남	경상남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클라라의 집)	청소년쉼터	경상남도 진주시 석갑로142번길 3	055-745-1316
제주	제주버프일시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별량길 47(삼양삼동)	064-723-017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일시청소년쉼터 (고정형)	청소년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월로 324-3	064-796-0922
제주	서귀포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동로 35	064-739-9805
제주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만덕로3길 2, 3층(건입동)	064-751-1388

지역	시설명	시설유형	주소	연락처
제주	제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별랑길 47(삼양삼동)	064-759-1388
제주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수로 2(동홍동)	064-733-1376
서울	관악돌꽃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지원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우16길 17, 1층(신림동)	02-851-1924
서울	서울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지원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15길 93(방학동) 대원리츠빌 102동 203호	02-6959-5012
부산	부산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지원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덕로 82 청소년종합지원센터	051-303-9671
대구	대구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지원관	대구광역시 남구 자유6길 45-1, 1층	053-657-1924
인천	인천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 별바라기	청소년자립지원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367번길 40	032-875-1319
인천	인천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 행복자리	청소년자립지원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169번길 40-17, B동 301호(간석동, 가람주택)	032-467-1398
경기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지원관	경기도 의정부시 비우로 12, 청소년비전센터 1층	031-928-1316
경기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지원관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789 온누리청소년센터 4층	031-360-1824
경기	성남시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지원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71번길 21-13	031-723-7942
충남	천안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지원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개목5길 34, 3층	041-578-1380

자료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2022).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부록 5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

(2022년 기준)

시도	센터명	주소	연락처
서울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54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1길 23, 7층	02-2285-1318
서울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16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로 212-19, 2층	02-2091-1388
서울	양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8067)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83길 53, 신월6동 행정복합타운 2층	02-2646-8341
서울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73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영로22길 36, 해광빌딩 2층	02-844-0924
서울	동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슬기동 2층	02-834-1355
서울	강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362)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144(수서동 749), 2층	02-2226-8555
서울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254)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217, 청소년수련관 3층	02-490-0222
서울	강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1012)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74, 강북청소년수련관 3층	02-6715-6661
서울	도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1412)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9길 132 창동문화체육센터 1층	02-6956-4508
서울	성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718)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6길 24-15	02-2299-1388
서울	금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8645)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30길 54(시흥동) 금천청소년수련관 2층	02-803-1873
서울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67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30길 45-9 휴먼센터 3~4층	02-3141-1318
서울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476)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4길 16, 은평청소년수련관	02-384-1318
서울	서초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70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5길 11, 2층 (방배동, 구립방배유스센터 내)	02-525-9128

시도	센터명	주소	연락처
서울	송파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834)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4길 4 송파청소년센터(구. 송파청소년수련관) 3층	02-407-7179
서울	마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009) 서울특별시 마포구 희우정로 77, 상가동	02-6376-9900
서울	광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072)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24길 17, 자양공공힐링센터 3층	02-2205-2300
서울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7718)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18길 14-5	02-2649-1318
서울	관악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879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34길 73 상글빙글교육센터 병글동 4층	02-871-7942
서울	동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58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2길 23-9, 산설동복지지원센터 2층	02-2236-1318
서울	용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316)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329(원효로 1가) 꿈나무종합타운 4층	02-3273-5829
서울	구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8365)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1115 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2층	02-867-1318
서울	강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2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93길 47 서울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 2층	02-6252-1388
서울	종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076)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35가길 13	02-762-1318
서울	성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8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242 성북아동청소년센터 4층	02-3292-1780
부산	부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4724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 43, 6층(전포동)	051-804-5001
부산	영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9113)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321 합지골청소년수련관 1층	051-405-5224
부산	부산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405번길 85, 양정청소년수련관 2층	051-868-0950
부산	금정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6267)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찰로96번길 47, 2층	051-581-2072
부산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6579)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 3(구포1동 610-1)	051-334-3000
부산	해운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805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151-21 해운대청소년수련관 4층	051-715-1388

시도	센터명	주소	연락처
부산	수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8308)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521번길 77, 수영구청소년문화의집 3층	051-759-8411
부산	사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9412)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매로 161	051-207-7179
부산	부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849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24, 5층	051-621-4831
부산	기장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6069)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서로 86, 대라다목적도서관 4층	051-792-4932
부산	동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7710)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523 SK허브스카이 A3동 06호	051-555-1388
부산	부산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9206) 부산광역시 서구 시약로 125, 1층	051-714-0701
부산	사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6927)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952, 사상아동보건센터 3층	051-327-0808
부산	부산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8723) 부산광역시 동구 범곡로 9, 비전센터 3층	051-632-1388
부산	부산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8954)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길 39-2, 3층	051-245-1388
부산	연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7525)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243번길 19, 거제동원타워상가 503호	051-506-1388
대구	대구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41934)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81길 66-5 대구청소년지원재단 3층	053-659-6272
대구	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2726)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7길 39(월성동)	053-638-1388
대구	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20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1 (범어동, 범어도서관 5층)	053-666-4201
대구	대구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1155)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16길 20, 아인빌딩 2층	053-984-1318
대구	대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1770)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222, 3층	053-216-8310
대구	대구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1439)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561 읍내동행정복지센터 3층	053-324-1388
대구	대구달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42985)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52, 3층	053-614-1388

시도	센터명	주소	연락처
대구	대구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1919)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으로 541, 8층	053-423-1388
대구	대구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2410)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49길 25, 2층	053-624-1388
인천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2573)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인천교구 가톨릭청소년센터 1층	032-721-2300
인천	연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1936)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83 연수3동 주민센터 4층	032-819-7308
인천	계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1026)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937 계양구청소년수련관 4층	032-547-0856
인천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2543) 인천광역시 동구 솔빛로 82, 3층	032-777-1389
인천	인천미추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213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82 청소년미디어센터 5층	032-728-6840
인천	인천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2771)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7번길 12 가좌청소년센터 2층	032-584-1388
인천	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1387)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37번길 1	032-509-8910
인천	남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45 남동구평생학습관 2층	032-471-1388
인천	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2309)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72번길 25, 동인천동행정복지센터 3층	032-773-1318
인천	중구영종청소년상담복지센터	(22379)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북로 1000-26, 하늘문화센터 복지동 2층	032-747-1318
인천	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3033) 인천광역시 강화읍 강화읍 향나무길22번길 30-1, 2층	032-932-1388
광주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61475)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196번길 5, 4층	062-232-2000
광주	광주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61132) 광주광역시 북구 대천로 86, 북구청소년수련관 1층(문흥동 1009-1)	062-268-1388
광주	광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62363)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46-7, 2층	062-951-1380
광주	광주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61727)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693	070-4044-7081

시도	센터명	주소	연락처
광주	광주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62048)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278 국민생활관 2층, 213~215호(풍암동염주체육관 내)	062-375-1388
광주	광주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46, 광주YMCA 3층	062-229-3308
대전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4630)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천동로 508, 6층	042-257-2000
대전	대전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35334)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 72, 3층	042-527-3112
대전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34097)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58 유성구청소년수련관 3층	042-862-7942
울산	울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44532) 울산광역시 중구 강북로 105, 상가동 2층 (성남동, 롯데캐슬스카이)	052-227-2000
울산	울산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4011)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9길 13(서부동) 남목청소년문화의집 4층	052-209-3435
울산	울산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4224)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1길 6, 복음빌딩 4층	052-283-1390
울산	울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4692)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 106, 마이코즈건물 3층	052-227-2011
울산	울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45006)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남로 5, JS빌딩 3층	052-229-9630
울산	울주군중부청소년상담복지센터	(44920)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 101-20 울주중부청소년수련관 3층, 중부거점상담실	052-229-9656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0024)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로 108, 2층	044-867-2000
경기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1630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55 행정동우회관 1층	031-248-1318
경기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438)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997번길 7, 4층	031-756-1388
경기	의정부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622)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27, 청소년수련관 3층	031-872-1388
경기	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99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63번길 31	031-8045-2745
경기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459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 복사골문화센터 301호	032-325-3002

시도	센터명	주소	연락처
경기	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4241)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 34, 노들동 1동 1층	02-809-2000
경기	평택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7903)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616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4층	031-654-1388
경기	동두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362)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로 95 청소년수련관 3층	031-865-0785
경기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538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76, 4층	031-482-3181
경기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5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633번길 25, 토당청소년수련관 2층	031-970-4003
경기	구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922)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32-10 구리시청소년수련관 3층	031-557-2000
경기	남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2244)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51-47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2층	031-590-8098
경기	오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8136)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278번길 3(오산동 2층)	031-372-4004
경기	시흥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4914)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179 시흥시청소년수련관 별관 1층	031-318-7100
경기	시흥시정왕청소년상담복지센터	(15049) 경기도 시흥시 오동마을로 33, 금광빌딩 3층	031-318-7101
경기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2919)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111 하남시청소년수련관 2층	031-790-6681
경기	군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5823)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112, 슬기관 2층 (산본동, 수리산상마을)	031-390-1468
경기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6077) 경기도 의왕시 문화공원로 33, 3층	031-458-5037
경기	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청소년수련관 4층	031-324-9300
경기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894)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 운영행복센터 6층	031-540-5300
경기	이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7371)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 260, 서희청소년문화센터 3층	031-634-2777
경기	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7591) 경기도 안성시 낙원길 108 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 2층(낙원동)	031-676-1318

제 1
부제 2
부제 3
부제 4
부제 5
부제 6
부제 7
부제 8
부제 9
부제 10
부부
록

시도	센터명	주소	연락처
경기	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099) 경기도 김포시 걸포로 76, 중봉청소년수련관 2층	031-980-1681
경기	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469) 경기도 양주시 옥정서로 254 행복플러스 어린이집 2층	031-8082-4326
경기	여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2623)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88, 3층	031-882-8889
경기	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8732) 경기도 화성시 태안로 145, 유엔아이센터 2층(병점동)	031-267-8771
경기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2779)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350-17, 청소년수련관 3층	031-762-2219
경기	연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026)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영로 11 연천군종합복지관 2층	031-839-2000
경기	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12452)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은고개로 39, 청평호반문화체육센터 1층	031-582-2000
경기	양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12556) 경기도 양평군 양근로 183, 삼진빌딩 2층	031-770-2715
경기	포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184)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523번길 59-56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내 2층	031-538-2219
경기	과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28) 경기도 과천시 참마들로 9 과천시청소년수련관 1층	02-502-1318
경기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648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93, 희망등대센터 3층	031-212-1318
강원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27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4	033-256-2000
강원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5474)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72-21 강릉시청소년수련관 2층	033-646-8666
강원	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6475)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234 원주시청소년수련관 이음관 2층	033-734-1388
강원	철원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043)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179번길 26	033-450-5622
강원	영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6237)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제방안길 100	033-375-1328
강원	속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867) 강원도 속초시 관광로 377	033-633-0741

시도	센터명	주소	연락처
강원	정선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6150) 강원도 정선군 사복읍 사복6길 12-6	033-591-1311
강원	동해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5735) 강원도 동해시 부곡1길 6	033-532-3070
강원	태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6044)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1663(문곡동)	033-582-1387
강원	홍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5131)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산림공원2길 31 청소년수련관 2층	033-432-1386
강원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400)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외솔길19번길 45	033-818-1389
강원	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5236)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문예로 75, 청소년수련관 1층	033-340-2078
강원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5919) 강원도 삼척시 엑스포로 50-1, 3층	070-4469-7735
충북	충청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2851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3(문화동 69-1)	043-220-6826
충북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7411) 충청북도 충주시 증원대로 3324	043-856-7804
충북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8543)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30, 청하빌딩 5층	043-223-0755
충북	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7152)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264, 비둘기상가 A동 2층	043-642-7939
충북	단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7012)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187-18 단양군청소년수련관 2층	043-420-3142
충북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2843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351번길 56 (청주시청소년수련관 3층)	043-297-8802
충북	영동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9149)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성안길 8, 청소년수련관 2층	043-740-3968
충북	음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7703)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설성공원길 16 음성청소년문화의집 1층	043-873-1320
충북	옥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9040)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39, 청소년수련관 1층	043-731-1388
충북	진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7832)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포석길 37-10, 4층 (청소년수련관)	043-536-3430

시도	센터명	주소	연락처
충북	괴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8035)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6길 20-9 괴산경찰서 앞	043-834-7944
충북	증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7948) 충청북도 증평읍 증평읍 보건복지로 64-2	043-835-4189
충북	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8936)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뱃들4길 11-14	043-542-1388
충남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311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66, 3~4층 (두정동, 진암빌딩)	041-554-2000
충남	공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2546) 충청남도 공주시 대통1길 57	041-858-1318
충남	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2726) 충청남도 금산읍 금산읍 1559 다락원 만남의 집 3층	041-751-1383
충남	논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2993)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대로 424 논산시청소년수련관 1층	041-730-6041
충남	당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1772)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7길 142-26	041-360-6963
충남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3466) 충청남도 보령시 문화원길 9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3층	041-936-3893
충남	부여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3149)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의일로 43	041-837-1898
충남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1967) 충청남도 서산시 서령로 136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3층(동문동)	041-669-2000
충남	서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3644)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천향교길 3, 2층	041-953-9799
충남	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1513) 충청남도 아산시 시장길 29 시민문화복지센터 303호	041-541-0039
충남	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242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뽕꽃로 214-17 예산군청소년수련관 2층	041-335-5700
충남	청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3339) 충청남도 청양읍 청양읍 중앙로 207-50 청양청소년문화의집 3층	041-942-1388
충남	태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2140)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199 청소년수련관 1층	041-674-2800
충남	홍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2293)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744번길 14	041-632-4859

시도	센터명	주소	연락처
충남	계룡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2829)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문화1로 13 계룡문화예술의전당 3층	042-841-0343
충남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1129)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은행길 15-1 도시창조두드림센터 4층	041-523-1318
전북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5493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46	063-274-1388
전북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508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94, 3층	063-227-1005
전북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4121) 전라북도 군산시 동리2길 7	063-468-2870
전북	익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4620)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87, 상공회의소 5층	063-853-1388
전북	정읍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6190) 전라북도 정읍시 상동중앙로 14 청소년문화체육관 3층	063-536-1388
전북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5749)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72, 남원시청소년수련관 3층	063-633-1977
전북	김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4378) 전라북도 김제시 오촌길 45 지평선아울림센터 2층	063-545-0112
전북	진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5432)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진주로 1054-14 청소년수련관 3층	063-430-8073
전북	완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5340)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125, 완주군청소년수련관 2층	063-291-3303
전북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5514)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26-34, 2층	063-324-6688
전북	장수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5631)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신천로 81 장수군여성청소년문화센터 1층	063-351-2000
전북	임실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5927)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 33-50 임실군청소년문화의집 2층	063-640-3028
전북	순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6047)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192 순창군청소년수련관 3층	063-652-1388
전북	고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6431)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곡뉴타운1길 11 커뮤니티센터 1층	063-563-6793
전북	부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6305)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81, 2층	063-580-4518

시도	센터명	주소	연락처
전남	전라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여진누리길 30 전남여성가족재단 4층	061-280-9005
전남	나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8254) 전라남도 나주시 죽림길 34, 2층	061-333-1368
전남	목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8684) 전라남도 목포시 신흥로83번길 14, 복지동 2층 (옥암동, 목련아파트)	061-272-2546
전남	여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9761) 전라남도 여주시 신월로 648 전남대학교 국동캠퍼스 협동관 1층	061-662-4646
전남	해남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9028)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수성2길 9(2층)	061-537-1318
전남	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9327)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37-23, 2층	061-863-1317
전남	진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8927)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7195 진도여성플라자 2층	061-540-3156
전남	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7992) 전라남도 순천시 명말1길 57, 3층	061-749-4232
전남	완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9115)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159번길 41, 2층	061-555-1318
전남	광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779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14, 청소년문화센터 2층	061-795-7008
전남	영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7047)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3길 6-10 영광군청소년문화센터 2층	061-353-9188
전남	화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8114)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231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2층	061-375-7444
전남	영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8418)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로 1511, 2층	061-470-1004
전남	고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9535)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793 청소년문화의집 2층	061-830-6652
전남	보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9453)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281-7	061-853-1381
전남	강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9226)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청림길 1, 청소년수련관 3층	061-432-1387
전남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7344)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지침6길 29, 3층	061-381-9845

시도	센터명	주소	연락처
전남	무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8517)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공항로 347-83	061-450-5508
전남	장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7222)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문화로 110 장성군청소년수련관 별관	061-393-1388
전남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7504)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리문5길 11-5 옥과문화의집 5층	061-363-9586
전남	함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7156)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곤재로 36-33 군립도서관 3층	061-323-9995
전남	구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7636)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로 508 청소년문화의 집 2층	061-782-0882
전남	신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8824)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보건소동 4층	061-240-8703
경북	경상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36708)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0(옥야동, 398-22번)	054-850-1000
경북	경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8627) 경상북도 경산시 서상길 75, 2층	053-815-4105
경북	경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8088) 경상북도 경주시 알천북로 131	054-760-7740
경북	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6073)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63	054-639-5865
경북	영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8844) 경상북도 영천시 운동장로 92, 체육시설사업소 2층	054-338-2000
경북	포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760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호로 533, 청소년수련관	054-240-9140
경북	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9570) 경상북도 김천시 다삼로 3	054-431-2009
경북	구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9221)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11길 13	054-472-2000
경북	문경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6949) 경상북도 문경시 중앙로 50 문경시의회 후관 문경시드림스타트 3층	054-550-6600
경북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7195) 경상북도 상주시 왕산로 219-11번지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층	054-534-3511
경북	울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6324)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대나리향길 2 고우이청소년수련관 2층	054-783-8284

시도	센터명	주소	연락처
경북	청송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7433)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복지타운길 77 청소년수련관 2층 상담센터	054-870-6696
경북	의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7331)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충효로 68	054-830-6947
경북	칠곡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9885)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2번도로길 83, 3층	054-971-0419
경북	청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8333)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려로 1846 청소년수련관 3층	054-373-1611
경북	예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6708)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393	054-650-8237
경북	성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40031)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9 청소년문화의집 3층	054-931-1397
경북	안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6708)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42번지 안동시청소년수련관 2층	054-841-7933
경북	봉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6238)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1길 17-20 (봉화군청소년센터 2층)	054-673-1231
경북	고령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40138)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30, 대가야문화누리 4층	054-956-1384
경북	영덕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6427)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강변길 324	054-730-7371
경북	군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9013)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158, 군위국민체육센터 3층	070-4922-8001
경북	영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6540)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동서대로 92, 영양군청소년수련관 2층	054-683-1387
경남	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5113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45번길 59 경남대표도서관 청소년관 3층, 4층	055-711-1388
경남	창원시창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	(51412)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97, 3층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5-225-3901
경남	창원시마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1358)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28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별관 2층	055-225-7299
경남	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2686) 경상남도 진주시 북장대로6번길 9, 1층(인사동)	055-749-6222
경남	창원시진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	(51629)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2호	055-225-6812

시도	센터명	주소	연락처
경남	통영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3017)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해안로 187 통영체육청소년센터 3층	055-644-2000
경남	사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2561) 경상남도 사천시 문선4길 23 청소년수련관 3층	055-832-7942
경남	김해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0912)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176번길 3	055-330-4635
경남	김해서부청소년상담복지센터	(51016) 경상남도 김해시 을하2로 210 김해서부문화센터 2층	055-340-7181
경남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0436)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송림길 26, 밀양시청소년수련관 2층	055-352-7942
경남	거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3246)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로 46, 고현청소년문화의 집 2층	055-639-4981
경남	양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0620) 경상남도 양산시 양주3길 36, 양산시청소년회관 2층	055-372-2000
경남	의령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2151)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령대로 1577-25 청소년문화의집 2층	055-570-4971
경남	함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2046)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1길 10 (청소년수련관 2층,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5-583-0924
경남	창녕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0332)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화왕산1로 46, 5층	055-533-4288
경남	고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2932)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61 고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층	055-670-2951
경남	남해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2419)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종합사회복지관 3층	055-860-3885
경남	하동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2326)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72, 하동군청소년수련관 3층	055-880-6039
경남	산청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2226)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웅석봉로 92 산청군청소년수련관 2층	055-970-6591
경남	함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0034)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여중길 10 함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층	055-583-0924
경남	거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013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 거창군청소년수련관 3층	055-940-8860
경남	합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0231)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옥산로 96-5, 3층	055-930-3911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시도	센터명	주소	연락처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632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로7길 4, 2층	064-759-9950
제주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6359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643, 3층	064-763-9190
제주	제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6309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녕로 39, 3층	064-725-3799

자료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2022).

부록 6 지방자치단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현황

(2021년 11월 기준)

시도명	센터 명칭	센터 주소	연락처
서울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02-849-0404
부산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48792)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11	051-852-3461~2
대구	대구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41934)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81길 66-5	053-659-6210
인천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21556)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9 (구월동 경인일보사), 3층	032-833-8057~9
광주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61477)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226번길 13-3번지 흥사단회관 2층	062-234-0755~6
대전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201(만년동) 평송청소년문화센터 3층	042-488-0924
울산	울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44660)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84 가족문화센터 A동 3층	052-227-0606~7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30026) 세종특별자치시 마은로 284, 2층	044-864-7935
경기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1630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55, 2층	031-232-9383~5
강원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26428)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89 원주시민복지센터 4층	033-731-3704
		(25474)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72-21 강릉시청소년수련관 2층	033-641-3990
충북	충청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2851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3 충북도청 제3별관	043-220-6821~2
충남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311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66, 4층 (두정동 진암빌딩)	041-554-2000
전북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5499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64 JK사이언스 2층	063-232-0479

시도명	센터 명칭	센터 주소	연락처
전남	전라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여진누리길 30 전남여성가족재단 4층	061-280-9002
경북	경상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36708)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0	054-850-1004
경남	경상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5113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45번길 59 청소년관 3층	055-711-1355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632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로7길 4 (이도2동)	064-751-5041~3

자료 : 각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홈페이지(2021).

부록 7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현황

(2021년 12월 기준)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서울	서울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454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1길 23, 7층	02-2285-1318
서울	용산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4316)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329, 용산꿈나무종합타운 4층	02-706-1318
서울	광진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5072)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24길 17 자양공공힐링센터 3층	02-2205-2300
서울	동대문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258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2길 23-9 신설동복지지원센터 2층, 3층	02-2237-1318
서울	종량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2254) 서울특별시 종량구 용마산로 217, 3층	02-490-0222
서울	성북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284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6다길 8-2	02-3292-1785
서울	강북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1012)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74 강북청소년수련관 3층 강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6715-6665
서울	도봉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1412)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9길 132 창동문화체육센터 1층 도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6956-4505
서울	노원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16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로 212-19, 3층	02-930-1388
서울	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3476)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4길 16, 1층	02-384-1318
서울	서대문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367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30길 45-9 3층, 4층	02-3141-1388
서울	마포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4016) 서울시 마포구 희우정로 77 상가동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6376-9900
서울	강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7647)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학대로42길 23-19 강서청소년회관 3층	02-3662-1388
서울	구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8365)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1115, 2층	02-863-1318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서울	금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8645)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30길 54, 2층	02-803-1873
서울	영등포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736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영로22길 36 해광빌딩 2층	02-2637-1318
서울	동작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61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2층	02-834-1358
서울	관악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879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34길 73 싱글빙글교육센터 빙글동 4층	02-877-9400
서울	서초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670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5길 11, 2층	02-525-9128
서울	강남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6362)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144, 2층 상담복지센터	02-2226-8555
서울	송파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5807)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14길 7, 2층	02-3402-1318
서울	중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4596)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5길 19, 2층	02-2250-0543
서울	강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52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93길 47, 2층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6252-1388
서울	성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4718)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6길 24-15	02-2296-1318
서울	양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8067)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83길 53, 2층	02-2645-1318
서울	종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3065)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길 90, 4층	02-742-138
부산	부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724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 43, 6층 꿈드림 사무실	051-304-1318
부산	영도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9113)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321, 1층	051-405-5224
부산	부산진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405번길 85, 2층	051-868-0905
부산	동래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7710)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523, SK허브스카이 A3동 06호	051-555-1389
부산	부산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9245)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47, 2층	051-253-2525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부산	부산 남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849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24, 5층	051-621-4831
부산	부산 북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6579)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 3	051-334-3003
부산	부산 중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8954)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길 39-2, 3층	051-245-1388
부산	해운대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808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151-21 해운대청소년수련관 4층	051-715-1377
부산	사하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9320)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티로 59, 대티까지어울림센터 3층	051-207-7142
부산	금정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6267)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찰로96번길 47	051-714-2079
부산	부산 강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6700)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63번길 31	051-972-4595
부산	연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7525)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243번길 19 동원타워상가 23동 503호	051-506-1385
부산	수영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8308)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521번길 77, 청소년문화의집 3층	051-759-8422
부산	사상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6931)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상로 129	051-316-2214
부산	기장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6069)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서로 86 (대라다목적도서관 4층)	051-792-4927
부산	부산 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8723) 부산광역시 동구 범곡로 9, 3층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1-632-1388
대구	대구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1761)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41길 10, 4층	053-431-1388
대구	대구 중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1919)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으로 541, 8층	053-422-2121
대구	대구 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1155)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16길 20, 2층	053-963-9400
대구	대구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1770)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222, 3층	053-216-8310
대구	대구 남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2452)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64, 대구YWCA 3층	053-652-5656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대구	대구 북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1516)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71-17 북구청소년회관 2층 207호	053-384-6985
대구	수성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20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1, 5층	053-666-4207
대구	달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2676)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7길 39	053-638-1378
대구	달성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2985)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52, 3층	053-614-1389
인천	인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2573)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1층	032-721-2320
인천	인천 중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2309)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72번길 25 동인천동 행정복지센터 3층	032-765-1009
인천	인천 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2543) 인천광역시 동구 솔빛로 82, 3층	032-777-1383
인천	인천 미추홀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213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82, 2층	032-728-6845
인천	연수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1913)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429, 4층	032-822-9840
인천	남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45, 2층	032-471-1318
인천	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1387)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37번길 1, 3층	032-509-8919
인천	계양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1026)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937, 4층	032-547-0853
인천	인천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2771)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7번길 12 가좌청소년문화의집 2층	032-584-1387
광주	광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62024) 광주광역시 서구 학생독립로 37, 2층	062-376-1324
광주	광주 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61502)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로 34, 1층	061-673-1318
광주	광주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62048)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278 국민생활관 2층 213~215호	062-710-1388
광주	광주 남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61727)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693, 1층	062-716-1324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광주	광주 북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61132) 광주광역시 북구 대천로 86, 1층	062-268-1318
광주	광산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62359)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46-7(우산동) 101동 2층	062-951-1378
대전	대전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4630)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천동로 508 청소년위캔센터 6층 꿈드림	042-222-1388
대전	대전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5334)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 72, 3층	042-527-1388
대전	유성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4166)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798-1, 2층	042-826-1388
울산	울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4532) 울산광역시 중구 강북로 105 롯데캐슬 스키야 2층	052-227-2000
울산	울산 남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4692) 울산광역시 남구 둔질로 106, 3층	052-291-1388
울산	울산 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4011)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9길 13, 4층	052-232-5900
울산	울산 북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4224)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1길 6, 4층	052-281-0924
울산	울주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5001)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남로 5, 4층	052-229-9635
세종	세종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0024)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로 108 세종조치원금융센터 2층	044-868-1318
경기	경기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650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 (이의동, 광교비즈니스센터) 105호	031-253-1519
경기	수원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648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93 수원청소년문화센터 B1층	031-236-1317
경기	성남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3438)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997번길 7, 금담빌딩 4층	031-729-9171
경기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1649)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 9, 5층	031-828-9570
경기	안양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399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63번길 31	031-8045-5012
경기	부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4727)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92번길 33 송내어울마당 5층	032-327-2322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경기	광명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4241)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34 노들마을 1호동 3층	02-6677-1318
경기	평택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7903)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616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2층	070-4159-5482
경기	동두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1362)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로 95 동두천청소년수련관 3층	031-865-2000
경기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538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76, 4층	031-414-1318
경기	고양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05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633번길 25 토당청소년수련관 2층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970-4032
경기	과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3828) 경기도 과천시 참마들로 9, 1층	02-502-1318
경기	구리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1934)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32-1, 1층	031-565-1388
경기	남양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2244)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51-47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2층	031-590-3951
경기	오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8136)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278번길 3, 2층	031-372-4004
경기	시흥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4914)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179 별관 1층 (대야동, 청소년수련관)	031-318-7100
경기	군포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5823)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112 군포책마을 슬기관 2층	031-399-1366
경기	의왕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6014)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82	031-347-1334
경기	하남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2919)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111, 하남시청소년수련관 2층	031-790-6314
경기	용인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61번길 69-2, 2층	031-328-9848
경기	파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0915) 경기도 파주시 금릉역로 85, 금릉역사 2층	031-540-5340
경기	이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7371)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 260, 3층	031-634-2777
경기	안성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7562)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5로 28	031-647-6151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경기	김포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0099) 경기도 김포시 걸포로 76, 2층	031-980-1691
경기	화성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8299)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효행로 212, 2층	031-278-0179
경기	광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2779)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350-17 광주시청소년수련관 4층	031-762-1318
경기	양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1492)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 205 양주시청소년문화의집 2층	031-8082-4121
경기	포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1184)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523번길 59-56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내 2층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538-3398
경기	여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2623)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88, 3층	031-886-0542
경기	가평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2452)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은고개로 39, 1층	031-582-2000
경기	양평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2515)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북길 59-7, 청소년문화공간	031-775-1317
강원	강원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427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4, 1층	033-257-9805
강원	원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6475)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234 원주시청소년수련관 이음관 3층 꿈드림센터	033-813-1318
강원	강릉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5474) 강원도 강릉시 종합경기장길 72-21, 2층	033-646-7942
강원	동해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5735) 강원도 동해시 부곡1길 6, 2층	033-535-1038
강원	속초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4867) 강원도 속초시 관광로363번길 14, 1층	033-635-0924
강원	홍천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5131)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산림공원2길 31	033-432-1386
강원	영월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6237)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제방안길 100	033-375-1328
강원	정선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6150)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6길 12-6	033-591-1311
강원	철원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4037)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179번길 26	033-450-5388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강원	춘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6046) 강원도 춘천시 거두택지길 70, 2층	033-818-1318
강원	삼척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5919) 강원도 삼척시 엑스포로 50-1, 3층	033-575-5002
강원	태백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6044)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1663	033-582-1389
충북	충청북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850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3, 3층	043-257-0105
충북	청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8543)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30, 7층(청하빌딩)	043-223-0753
충북	청주시 서청주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843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351번길 56	043-264-8807
충북	충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7411) 충청북도 충주시 중원대로 3324	043-842-2007
충북	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7152)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264, 2층	043-642-7950
충북	보은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8936)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뱃들4길 11-14	043-542-1388
충북	옥천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9040)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39, 청소년수련관 1층	043-731-1388
충북	영동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9149)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성안길 8, 2층	043-744-5700
충북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7948)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64-2 증평군청소년수련관 2층	043-835-4193
충북	진천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7832)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포석길 37-10, 4층	043-536-3430
충북	괴산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8026)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6길 20-9	043-834-7945
충북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7702)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음성천동길 122, 2층	043-872-9024
충북	단양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7012)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187-18 청소년수련관 2층	043-421-8370
충남	충청남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11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181, 3층(대연빌딩)	041-554-1380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충남	천안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1123)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먹거리11길 45	041-415-1318
충남	공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2546) 충청남도 공주시 대통1길 57	041-854-7942
충남	보령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3466) 충청남도 보령시 문화원길 9, 3층	041-935-1388
충남	아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1513)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 31, 동성빌딩 6층	041-544-1388
충남	서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1967) 충청남도 서산시 서령로 136 청소년수련관 3층	041-669-9056
충남	논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2993)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대로 424 청소년수련관 1층, 논산시청소년지원센터	041-730-6051
충남	계룡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2829)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문화1로 13 계룡문화예술의전당 3층	042-551-1318
충남	당진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1772)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7길 142-26	041-357-2000
충남	금산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2726)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559 다락원 만남의 집 3층	041-751-1383
충남	서천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3644)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천향교길 3, 2층	041-953-4040
충남	청양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3339)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187-1 청양청소년문화의집 3층	041-940-4810
충남	홍성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2293)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744번길 14	041-642-1388
충남	예산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242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214, 2층	041-335-1388
충남	태안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2140)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199 태안군청소년수련관 내 1층	041-674-2800
충남	부여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3149)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의열로 43	041-837-1898
전북	전라북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493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46	063-274-1388
전북	전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508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94, 3층	063-227-1005

제 1
부제 2
부제 3
부제 4
부제 5
부제 6
부제 7
부제 8
부제 9
부제 10
부부
록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전북	군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4121) 전라북도 군산시 동리2길 7, 청소년지원센터	063-468-2870
전북	익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4621)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87, 익산상공회의소 5층	063-853-1388
전북	정읍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6190) 전라북도 정읍시 상동중앙로 14, 2층	063-537-5003
전북	남원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5749) 전라북도 남원시 총정로 72, 남원시청소년수련관 3층	063-633-1977
전북	김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4368) 전라북도 김제시 도작로 224-32	070-4190-8246
전북	완주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5340)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125	063-291-3303
전북	무주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5514)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26-34, 2층	063-324-6688
전북	순창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6047)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192, 3층	063-652-1388
전남	전라남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8726) 전라남도 목포시 북교길 22, 3층	061-242-7474
전남	목포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8684) 전라남도 목포시 신흥로83번길 14, 목련아파트 복지동 1층	061-284-0924
전남	여수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9761)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648, 1층	070-4165-0087
전남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7956) 전라남도 순천시 장천안길 9, 2층	061-749-4235
전남	나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8254) 전라남도 나주시 죽림길 34, 2층	061-335-1388
전남	광양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779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14 청소년문화센터 2층	061-795-7953
전남	담양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7344)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지침6길 29, 3층	061-381-0924
전남	곡성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7504)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리문5길 11-5	061-363-9586
전남	보성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9453)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281-7	061-853-1377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전남	강진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9226)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청령길 1, 3층	061-432-1388
전남	해남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9028)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수성2길 9, 2층	061-535-1315
전남	무안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8517)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공향로 347-83	061-450-5527
전남	함평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7156) 전라남도 함평군 곤재로 36-33, 3층	061-323-9995
전남	영광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7045)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19, 1층	061-353-6188
전남	장성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7222)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문화로 110 청소년수련관 별관 노란원형건물 1층	061-393-1387
전남	신안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8827)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보건소동 4층	061-240-8702
전남	화순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8114) 전라남도 화순군 광덕로 231	061-375-7443
전남	장흥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9327)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37-23	061-863-1318
전남	영암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8418)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영암로 1511, 1층	061-470-6791
전남	구례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7636)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구례로 508, 2층	061-782-0882
전남	진도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8926)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7195	061-540-3156
전남	완도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9115)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159번길 41	061-555-2323
전남	고흥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9535)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793, 2층	061-830-6056
경북	경상북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6708)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0	054-850-1003
경북	포항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760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호로 533	054-240-9140
경북	경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8088) 경상북도 경주시 알천북로 131	054-760-7744-5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경북	김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9570) 경상북도 김천시 다삼로 3	054-431-2009
경북	안동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6708)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42 안동시청소년수련관 2층	054-841-7937
경북	구미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9221)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11길 13	054-472-2000
경북	영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6073)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63 영주청소년문화의집 2층	054-639-5865
경북	영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8844) 경상북도 영천시 운동장로 92 체육시설사업소 2층	054-338-2000
경북	상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7195) 경상북도 상주시 왕산로 291-11, 2층	054-534-3513
경북	문경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6949) 경상북도 문경시 중앙로 50, 3층	054-556-6600
경북	경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8627) 경상북도 경산시 서상길 75 경산문화원 2층	053-815-4105
경북	칠곡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9885)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2번도로길 83, 3층	054-971-0425
경북	고령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0138)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30 문화누리 3층	054-956-1320
경북	봉화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6238)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1길 17-20, 2층	054-674-1318
경북	울진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6324)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대나리항길 2 고우이청소년수련관 2층 상담실	054-789-5436
경남	경상남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115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45번길 59 경남대표도서관 4층	055-711-1336
경남	창원시 창원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1412)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97 늘푸른전당 3층	055-225-3907
경남	창원시 마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1358)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28, 별관 2층	055-225-7292
경남	창원시 진해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1629)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1101번길, 203호	055-225-3893
경남	진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2686) 경상남도 진주시 북장대로6번길 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층	055-749-7939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경남	통영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3017) 경상남도 통영시 죽림해안로 187, 3층	055-641-0079
경남	사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2561) 경상남도 사천시 문선4길 23 청소년수련관 3층 상담복지센터 사무실	055-832-7942
경남	김해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0912)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176번길 3	055-324-9190
경남	밀양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0436)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송림길 26 청소년수련관 2층	055-352-0924
경남	거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3246)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로 46 고현청소년문화의집 2층	055-639-4980
경남	양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0520)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대로 1009-2, 지하 1층	055-367-1318
경남	의령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2151)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령대로 1577-25, 2층	055-570-4972
경남	함안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2046)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1길 10	055-583-0921
경남	고성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2936)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61, 3층	055-670-2921
경남	남해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2419)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종합사회복지관 3층	055-864-7962
경남	하동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2326)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72 청소년수련관 2층	055-884-3001
경남	산청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2226)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응석봉로 92 산청군청소년수련관 2층	055-970-6591
경남	함양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0034)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여중길 10, 2층	055-960-4972
경남	거창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013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 청소년수련관 3층	055-940-3969
경남	합천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0231)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옥산로 96-5, 3층	055-930-3909
경남	창녕군 청소년상담센터 꿈드림	(50332)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화왕산1로 46, 창녕군청소년수련관 5층	055-532-2000
제주	제주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632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 152(2층)	064-759-9982
제주	서귀포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6359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643, 2층	064-763-7191

자료 : 여성가족부(2021).

부록 8

청소년백서 용어집

● 가족치유캠프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주관하는 것으로, 인터넷 과의존 청소년 가족치유캠프와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가족치유캠프가 있다. 이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문제로 인하여 학업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4~6학년 초등학생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2박 3일간 진행되는 캠프이다. 가족치유캠프에서는 가족 간 소통·친밀감 향상과 올바른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 지도를 위한 상담지원(집단상담, 가족/부모교육, 심리검사), 활동지원(체험활동, 대안활동), 생활지원(멘토링, 숙식 제공), 사후관리지원(사후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경제활동인구(經濟活動人口,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일정 연령 이상의 인구 가운데 노동 능력이나 노동 의사가 있어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같은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인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 학생, 주부, 환자 등 노동 능력이나 노동 의사가 없는 사람을 제외한 인구이며,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한다.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教育福祉于先支援事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사업대상학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수급권자, 법정 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다문화가족의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그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중에서 사업 학교의 장이 상담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학생에게 필요에 맞는 학습, 문화 체험, 심리치료, 복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복지 프로그램은 특기적성 프로그램, 개별 학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현물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학교 및 학교 주변에 교육환경위생에 지장이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한 지역을 말하며 쾌적하고, 명량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부'에서 지정하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절대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실림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을 의미하고,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國民基礎生活保障受給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최저생계비와 가구 소득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조건 불이행시 생계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될 수 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 국제금장총회(International Gold Event : IGE)

영국의 에든버러 공작과 교육학자들이 고안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활동을 통해 금장을 포상 받은 청소년 중 20~35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리더십 연수 프로그램으로 매 3년마다 개최되며 한국이 주최한 2014년에는 40개국에서 100명의 금장 포상 청소년인 차세대 리더들이 참석해 자신의 포상활동 경험을 지역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The Duke of Edinburgh's International Award)

만 14~24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신체단련, 자기개발, 봉사활동 및 탐험활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적 청소년 자기성장 프로그램으로 1956년 영국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143여 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 PISA)

국제학업성취도평가는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소양 수준 파악 및 소양 수준에 영향을 주는 배경변인과의 연계 분석을 통해 각국 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지식을 상황과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강조하는 평가로 평가 주기는 3년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무교육이 종료되는 시점인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 기소유예제도(起訴猶豫制度)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에 따라 검사가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소송 조건을 구비하여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피해자와의 관계·범행 동기·수단·

결과·범죄 후의 정황 등 사황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제도이다.

● 꿈드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으로 나온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당당하게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 공간’으로, 학교 밖에서 학업을 희망하거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기를 원하는 등,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싶은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꿈’과 ‘드림(Dream)’의 합성어로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드린다는 의미

● 내일이룸학교

내일이룸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근거로 청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내일이룸학교는 ‘청소년의 내일(미래 또는 나의일)을 이룬다’는 의미로 학교밖청소년, 비진학청소년, 청소년한부모, 가출청소년 등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직업훈련프로그램이다.

● 다문화 중점학교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 학생이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 제고, 다문화 이해, 반(反)편견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학교로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 드림스타트(Dream Start)

드림스타트의 시초는 학대, 방임 아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아동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06년 20개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아동보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이다. 2007년 희망스타트라는 이름으로 1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 사업명을 ‘희망스타트’에서 ‘드림스타트’로 변경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레드존(Red Zone)

윤락가나 유흥가, 숙박업소 밀집지역 등 청소년의 범죄비행탈선 위험이 있는 유해환경에 청소년이 접근하거나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정한 구역을 일컫는 말이다. 레드존은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이라는 명칭으로 명시되어 있다.

●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

1992년 2월 7일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유럽 공동체 가입국이 서명하고 1993년 11월 1일부터 발효된 조약으로 유럽 연합의 기초가 되는 조약이다. 유럽중앙은행 창설과 단일통화사용의 경제

통화 동맹, 노동조건 통일의 사회부문, 공동방위정책, 유럽시민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명목임금(名目賃金, Nominal Wage)

현행 구매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임금으로, 명목임금은 생활용품 구입량이 물가변동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즉, 가격이 오르면 생활용품의 구입이 줄고 가격이 내리면 구입량이 증가하므로 이것으로는 생활 실태 변화의 파악이 어렵다.

● 명예경찰소년단

명예경찰소년단은 경찰, 학교, 선도단체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스스로가 각종 범죄 및 제반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봉사활동과 교통질서 등 기초질서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생 중에서 선발하는 제도이다. 명예경찰 소년단은 경찰서에서 호신술을 배우는 명예경찰 무도학교, 경찰관서 치안시스템 견학, 지역경찰관과 합동순찰 등 현장체험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내에서도 학교폭력예방활동, 교통질서·기초질서 캠페인,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 방과후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활동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교육 활동을 말한다.

●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상 ‘보호대상아동’을 의미한다. 보호대상 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 사랑의교실

폭력, 절도 등 범죄나 비행으로 인해 경찰조사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을 선도하여 재비행 방지를 위한 맞춤형 선도프로그램이다. 보호자와 청소년이 사랑의 교실 입교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경찰관서에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전문선도기관에 의뢰하여 다양한 인성교육 및 재범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 산학협동(産學協同)

학계와 산업계가 교육의 성과를 높이고 동시에 산업경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으로, 자매결연·협정 등의 방법을 통해 서로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을 산업체에 파견하여 현장실습 경험을 얻게 하거나 학계와 산업계 인사가 상호 교류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연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산업계 자원인사들의 교육 참여 등 각종 인적·물적 교류 관계가 모두 이에 포함된다.

●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MDGs)**

2000년 9월,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서 개최된 밀레니엄서밋에서 채택된 빈곤 타파에 관한 범세계적인 의제이다. 당시에 참가했던 191개의 국제연합 참여국은 2015년까지 빈곤의 감소, 보건, 교육의 개선, 환경보호에 관해 지정된 8가지 목표를 실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① 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② 초등교육의 완전보급, ③ 성평등 촉진과 여권 신장, ④ 유아 사망률 감소, ⑤ 임산부의 건강개선, ⑥ 에이즈와 말라리아 등의 질병과의 전쟁, ⑦ 환경 지속 가능성 보장, ⑧ 발전을 위한 전 세계적인 동반관계의 구축을 들 수 있다.

●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른 신고의무 대상시설의 운영자,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소년·소녀가정**

부모의 사망, 이혼, 질병, 심신장애, 가출 등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가정을 말한다.

● **소년법**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여기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

●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Devotion to Best Interests of the Child)**

무차별 원칙, 생존과 발달의 권리 원칙, 어린이 의견 존중 원칙과 함께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이 되는 원칙이다. 동법 제3조에서는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행정·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모든 아동 관련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도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법률 제6261호, 2000. 2. 3., 제정).

● **아동보호전문기관(Child Protection Agency)**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 **아동학대(兒童虐待, Child Abuse)**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아웃리치(Outreach)**

일반적으로는 보다 넓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 아웃리치는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기다리기 보다는 직접 현장에 나가 그들에게 도움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여러 이유로 인해 복지 기관이나 상담소를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실시하는 구제지원활동을 말한다. 한 예로, 노숙인 지원 단체나 청소년 단체 등에서도 직접 거리로 나가 노숙인이나 청소년을 만나 상담활동을 전개한다.

● **우범소년(虞犯少年)**

죄를 범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성격이나 환경으로 보아 점차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일컫는다. 우범소년에 대하여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본인을 보호교도 개선시키기 위하여 형사정책적으로 보안처분(보호처분)을 과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예로 되어 있다. 한국의 소년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품행의 교정(矯正)을 위하여 보호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 **유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이다. 이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한국(1991년 가입)과 북한을 포함하여 세계 193개국에 비준했다. 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 의사 표시권, 고문 및 형벌 금지, 불법해의 이송 및 성적학대금지 등 각종 아동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가입국은 이를 위해 최대한의 입법·사법·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UN SDGs(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는 17가지로 구성되며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종료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를 의미한다. 인류의 보편적 사회문제(빈곤, 질병, 교육, 여성, 아동, 난민, 분쟁 등), 지구 환경 및 기후변화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인프라구축, 대내외 경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요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이다.

● 이주배경청소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문화 적응 및 언어 학습 등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 인터넷치유캠프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주관하는 11박 12일의 인터넷중독 기숙형 치료캠프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터넷·스마트폰과 단절된 환경에서 상담지원, 활동지원, 생활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캠프 종료 후에도 청소년동반자, 멘토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사후모임을 실시하여 참여 청소년 치유 효과가 지속되도록 돕는다.

● 조사망률(粗死亡率, crude death rate)

1년간의 사망수를 그 해의 인구로 나눈 것으로 보통 1,000배하여 인구 1,000대로 표시한다. 연령, 계층, 성별, 사인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정하지 않은 채로 나타난 사망률을 말한다.

※ 조사망률(%) = (특정 1년간의 총 사망건수 / 당해 연도의 연앙 인구) × 1,000

● 조이혼율(粗離婚率, crude divorce rate)

1년간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 연도의 주민등록에 의한 연앙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이다.

※ 조이혼율(%) = (특정 1년간의 총 이혼건수 / 당해 연도의 연앙 인구) × 1,000

● 조출생률(粗出生率, crude birth rate)

특정인구집단의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로서 1년간의 총 출생아 수를 당해 연도의 총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이다.

※ 조출생률(%) = (특정 1년간의 총 출생아 수 /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 × 1,000

● 조혼인율(粗婚姻率, crude marriage rate)

1년간 발생한 총 혼인건수를 당해 연도의 주민등록에 의한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이다.

※ 조혼인율(%) = (특정 1년간의 총 혼인 수 /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 × 1,000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 ADHD)

아동기에 많이 나타나는 장애로,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여 산만하고 과다활동,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증상들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아동기 내내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일부의 경우 청소년기와 성인이가 되어서도 증상이 남게 된다.

● 중도입국 청소년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본국의 자녀를 데려온 경우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재입국한 청소년의 경우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의 소속하에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 및 자문하는 기구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며, 청소년육성·보호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자문, 시책의 조정 및 평가에 대한 자문,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문역할 등을 수행한다. 위원회의 성격은 각 시·도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심의기구, 자문기구 등의 성격을 갖는다.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청소년 정책 전달 체계상의 정책기관으로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주요 사업은 지역청소년활동 요구 조사,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 지역 교육기관과의 연계 및 지원, 지역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신고제 지원 등이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 Net : CYS-Net, 청소년안전망)**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한 위기 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상황(학업중단, 가출, 인터넷중독 등)에 빠진 청소년에게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아동 복지이용시설로서, 18세 미만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 **청소년(靑少年, Youth)**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의거해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는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청소년 기본법(靑少年基本法)**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법률 제4477호, 1991. 12. 31., 제정).

● **청소년 보호법(靑少年 保護法)**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법률 제5297호, 1997. 3. 7., 제정).

●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의거해 청소년보호 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로 「청소년 보호법」 규정에 따른다. 동법 제7조에 의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심의·결정하는 곳은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보호위원회'이다.

● **청소년 유해약물**

「주세법」에 의한 주류,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환각물질 및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약물을 말한다.

●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8호에 근거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 등, 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 **청소년동반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동반자' 사업의 핵심인력으로 가출, 비행·폭력, 학업중단, 성매매 피해 등 심화된 위기 상황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찾아가서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전일제 동반자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를 실시하되, 청소년의 시간에 맞추어 저녁, 휴일 등에 탄력적으로 근무한다. 반면 시간제 동반자는 주 12시간 근무하며 이들은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근거로 움직이나 실제적인 사무실은 '청소년이 있는 현장'이다.

●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매체물(인터넷, 음반, 게임물, 영상물 등) 모니터링 사업이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며, 주요 업무로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청소년문화의 집은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수련시설로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운영할 의무가 있다.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에 의해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기반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방과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및 생활관리 등 청소년을 위한 종합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靑少年福祉 支援法)**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법률 제7164호, 2004. 2. 9., 제정).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청소년 기본법」 제3조4호). 청소년은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인종·종교·성·연령·학력·신체조건 등의 조건에 의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상담1388

청소년의 일상적인 고민 상담부터 가출,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등 위기에 이르기까지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등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일정기간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상담선생님과 상담이 진행되며,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42조의2에 근거하여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0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및 212개 시·군·구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 청소년상담사

국가 차원의 청소년상담 관련 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초·중·고·대학의 학생 상담소,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센터, 청소년 관련 복지시설, 경찰청이나 법무부 등 청소년업무 지원부서, 사설 청소년상담실, 아동·청소년 대상 병원, 일반 청소년 관련 사업체, 근로청소년 관련 사업체 등에서 청소년상담업무에 종사한다.

● 청소년성문화센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이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체험형 현장 중심의 성교육장으로 청소년 스스로 자기주도적, 실천적 체험학습을 통해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하게 하도록 하여 건강한 성 가치관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로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 및 운영할 의무가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청소년센터로 명칭을 바꾸어 사용하는 기관들도 있다.

●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계획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참가자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하는 제도이다.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활동 운영 전반의 안전을 점검하게 되고, 범죄경력자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지도자의 활동 운영을 막을 수 있으며,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수련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 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관리 제공하는 국가인증제도이다. 국가가 청소년수련활동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인증함으로써 청소년 활동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교육·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양질의 청소년활동 정책과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청소년활동 정보제공 및 청소년 활동 참여 활성화 기능을 하며 자기 계발 및 진로모색 등에 활용 가능한 활동 기록을 관리하고 제공한다.

● 청소년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라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 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출 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선도·수련활동, 학업 및 직업 훈련 지원활동,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지원 활동 등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 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법적 근거로 한다.

● 청소년어울림마당

문화예술, 스포츠 등을 소재로 한 공연, 경연, 전시, 놀이 체험 등 문화체험이 펼쳐지는 장으로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하고 다양한 지역 사회 자원이 결합된 일정한 공간(상설 공간)을 의미한다. 청소년어울림마당지원 사업은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활용 육성을 위해 놀이 마당식 체험 공간에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0조, 제61조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다.

●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등을 청소년들이 직접 자문평가토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는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 보호법」 제5조 및 제48조에 의거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 중인 민간단체를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으로 지정하여 청소년 선도·보호와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고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해 감시 및 고발과 청소년유해매체물 모니터링 및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하고자 한다.

●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기본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청소년 육성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참여지원,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청소년 육성기금의 주요조성 재원은 기금 조성 초기에는 정부출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액 등이었으나 2020년 현재 경륜경정사업 법정 분담금과 복권기금전입금으로 조성되고 있다.

● 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국민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으로 제정한 달로, 해마다 5월 이다(「청소년 기본법」 제16조). 행사 주관 부처는 여성가족부이며,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청소년단체 및 직장별로 각각 실정에 따라 기념행사를 연다. 행사 내용은 ①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②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③ 모범 청소년, 청소년 지도자 및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④ 대중 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⑤ 그밖에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등이다.

● 청소년자기지도전포상제

우리나라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중 저연령인 만 9~13세(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2학년)의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를 모태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자기 개발, 신체단련, 봉사 및 탐험활동 4가지 활동영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자기 스스로 정한 목표를 성취해가며, 숨겨진 끼를 발견하고 꿈을 찾아가는 자기성장 프로그램이다.

●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일정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회복지원시설에서 생활하여 지원을 받았음에도 자립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 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 및 제도 개선,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유관부처 간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기구이다.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청소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청장, 여성가족부 차관이 위촉하는 민간 청소년 전문가 등 총 20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2018년 12월에는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정수를 20명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하고, 청소년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시 청소년을 일정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토록 하는 방향으로 「청소년 기본법」을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청소년증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 대중교통 박물관 공원 미술관 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 요금 적용이 된다. 2017년 1월 11일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되어 대중교통 및 편의점, 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도 가능하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총칭한다.

●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기본법」 제53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청소년참여기구이다.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통해 청소년이 청소년정책의 형성·집행·평가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청소년 친화적 정책의 구현이 가능하다.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정서·행동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에게 보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치료·재활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청소년복지시설이다. 2012년 12월에 거주형 치유기관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가 처음으로 개원하였으며, 입교대상자는 ADHD, 우울증, 불안장애, 품행장애 등 정서적·행동적 장애를 가진 만 9~18세 청소년이고, 입·퇴교판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입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17개 시·도 청소년과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가 토론과 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여 정책화하는 전국 규모의 청소년참여기구이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青少年活動振興法)

「청소년 기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법률 제7163호, 2004. 2. 9., 제정).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을 감호위탁 기간 동안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법률 제12700호, 2014. 5. 28., 제정).

●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

각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되어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상담 등을 담당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은 강의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상담으로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을 선도 및 보호하며 학부모, 교사와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여 학교폭력을 예방 및 근절하는 것이다.

● 학교폭력(學校暴力)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하여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말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법률 제7119호, 2004. 1. 29., 제정).

● 학령인구(學齡人口)

학령인구는 교육인구 규모를 가능할 수 있는 일차적 요인으로 우리나라 학령인구는 만 6세 이상부터 만 21세 인구, 즉 6~11세는 초등학교 해당 인구이고, 12~17세는 중등학교, 18~21세는 고등교육인구에 해당한다.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국내 청소년단체들의 자발적인 민간협의체로 약칭 '청협(靑協)'이라 한다.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청소년문제에 대한 공동연구, 정보교환, 청소년단체 간의 상호협력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청소년 관련 정부부처, 유관 사회단체, 각급학교 및 세계청소년기구와의 연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활동하고 있다.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책 상담복지 중추기관으로서 청소년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일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 상담 및 복지과 관련된 정책의 연구,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의 개발 및 운영지원, 청소년 상담기법의 개발 및 상담 자료의 제작보급, 청소년 상담복지 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이 있다.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의해 청소년활동 현장과 정책을 총괄 지원하여 청소년 육성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주요 정책지원 사업으로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인증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지원과 기록 관리, 청소년들이 신체단련·자기개발·자원봉사·탐험활동을 고르게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꿈과 끼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지원 및 안전 관련 컨설팅 홍보, 국내·외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교류활동의 진흥 및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활동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과 청소년지도자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

● 합계출산율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특히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연령별출산율의 합으로 계산된다.

● Wee센터

Wee는 We(우리들)와 education(교육), emotion(감성)의 합성어로,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지원하는 다종의 통합 지원 서비스망이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2021 청소년백서 편집위원 및 집필진 명단

기획·편집

양철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장
하형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재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전문위원
유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임혜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집필진(부처별)

김권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양철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장

인정숙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장

공 석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장

김은형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장

김영옥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

장석준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장

박선옥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유성렬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장여옥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교수

김 민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센터 부연구위원

한수연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센터 연구원

하형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유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선미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주무관

김은희 보건복지부 아동권리와 주무관

조수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와 주무관

강지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와 주무관

조혜령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서기관

문성혁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사무관

유다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주무관

박대선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사무관

정민재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사무관

전보현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연구사

차병준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연구사

권동주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주무관

임경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정책사업2부 대리

김다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정책사업2부 대리

홍예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폭력예방부원

2021 청소년백서

발행인 | 정영애
발행처 | 여성가족부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기 획 |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전 화 | 02-2100-6000
인 쇄 |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발행일 | 2022. 3.
발간등록번호 | 11-1383000-000102-10

www.mogef.go.kr
